호남한국학 자료총서 1

답문류편 3

答問類編

기정진 지음
奇正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저본은 1983년 전남 장성군 고산서원(高山書院)에서 간행한《노사선생전집(蘆沙先生全集)》의 부록 〈답문류편(答問類編)〉으로 하였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缺字)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답문류편 권11

제5편 논례(論禮第五) 8
통례 5-1[通禮五之一] 8
관례 5-2[冠禮五之二] 35
혼례 5-3[昏禮五之三] 40

답문류편 권12

상례 5-4 상[喪禮五之四上] 46

답문류편 권13

상례 5-4 하[喪禮五之四下] 146

답문류편 권14

제례 5-5[祭禮五之五] 210
방례 5-6[邦禮五之六] 234

답문류편 권15

제6편 논사(論史第六) 246
제7편 문인을 훈계함 263
-지구에 대한 것을 덧붙임-(訓門人附知舊第七)
답문류편 발문(答問類編跋) 297
부록 1 299
부록 2 300

《답문류편》
答問類編

권11 卷之十一

제5편 논례(論禮第五)

통례 5-1[通禮五之一]

관례 5-2[冠禮五之二]

혼례 5-3[昏禮五之三]

제5편 논례
論禮第五

통례 5-1
通禮五之一

[문] 오늘날의 예문(禮文)은 번다하다고 할 만합니다. 예를 배우려면 먼저 무슨 책을 보아야 합니까? -최숙민-[1)]
今世禮文, 可謂繁滋. 若要學, 先看何書?【崔琡民】

[답] 《의례(儀禮)》 17편은 예의 근원이 겨우 전해진 책인데 주자(朱子)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2)]는 부지런히 애써서 예설(禮說)을 모아 만든 책이니, 옛것을 배우는 선비가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평소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공부하지 못하였다.
《儀禮》十七篇是源頭之僅傳者, 朱子《經傳通解》, 辛勤湊合成書, 稽古之士, 不可不讀. 鄙人素來力量不及, 未之下工耳.

[문] 〈사당(祠堂)〉에 "지붕으로 덮어서 집안사람들을 수용하여 차례대로

---

1) 최숙민(崔琡民) : 1837~1905. 본관은 전주(全州). 처음의 자는 원칙(元則)이었으나 뒤에 이름을 바꾸면서 치장(穉章)이라 했으나 처음의 자가 널리 알려져 그대로 썼다. 호는 계남(溪南), 초명은 최유민(崔有民)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생으로, 김평묵(金平默) 최익현(崔益鉉) 등 화서학파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30권 10책의 《계남집(溪南集)》이 있다.

2)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의례》를 중심으로 《예기(禮記)》와 경사(經史)에 있는 예설, 선유(先儒)들의 학설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원집 37권과 속집 29권으로 되어 있다. 원집의 내용은 가례(家禮), 향례(鄕禮), 학례(學禮), 방국례(邦國禮) 등이다. 주희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제자인 황간(黃榦)과 양복(楊復)이 누락된 상례와 제례(祭禮) 부분을 보충하여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편찬하였다. 속집은 황간이 편찬한 상례 15권과 양복이 편찬한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2권과 제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게 한다."[3]라고 하였는데 지붕의 앞 처마가 과연 사람들을 가릴 수 있습니까? -소필기-[4]
〈祠堂〉"以屋覆之, 容家衆敍立", 屋之前簷果能芘歟?【蘇弼基】

[답] "지붕으로 덮는다."라고 한 것은 별도로 빈 처마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 사당의 앞 처마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以屋覆之"云者, 似別爲虛簷之稱而非指祠堂前簷也.

[문] 정침(正寢)의 두 기둥 사이[兩楹間][5]에 대해 묻습니다. 두 기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박계만-[6]
正寢兩楹間. 兩楹指何?【朴契晩】

[답] 먼저 정침의 제도를 안 뒤에 두 기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대략을 말하면 정당(正堂)은 세 칸인데 그 앞쪽에 반드시 두 기둥을 둔다. 두 기둥의 동쪽에는 동계(東階)가 있으니 주인이 오르내리는 계단이고, 서쪽에는 서계(西階)가 있으니 손님이 오르내리는 계단이다. 무릇 "두 기둥 사이에 빈(殯)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손님과 주인의 자리가 그 좌우에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7]

---

3) 지붕으로 …… 한다 : 《가례(家禮)》 권1 〈통례(通禮) 사당〉에 "사당의 제도는 세 칸이니, 밖에 중문을 만들고 중문 밖에 양쪽으로 계단을 만드는데 모두 세 층이다. 동쪽을 조계라 하고 서쪽을 서계라 한다. 계단 아래에 공간의 넓이를 따라 지붕으로 덮어서 집안사람들을 수용하여 차례대로 설 수 있게 한다.[祠堂之制, 三間. 外爲中門, 中門外爲兩階, 皆三級, 東曰阼階, 西曰西階. 階下隨地廣狹, 以屋覆之, 令可容家衆敍立.]"라고 하였다.

4) 소필기(蘇弼基) : 1811~? 호는 추남(秋南)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생으로, 광주에서 거주하였다.

5) 두 기둥 사이 : 두 기둥은 당상(堂上)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을 말한다. 은(殷)나라 때는 사람이 죽으면 이 두 기둥 사이에 빈소를 차렸다. 공자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서 제사 음식을 받는 꿈을 꾼 뒤 7일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禮記 檀弓上》

6) 박계만(朴契晩) : 1812~?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익정, 호는 휴재(休齋)이다. 광양(光陽)에 거주하였으며,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7) 무릇 …… 것이다 :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나 문 앞을 거닐며

先知正寢制度而後, 兩楹可知. 言其大槩, 則正堂三間, 其前面必有兩楹. 兩楹之東有東階, 主人之階也, 西有西階, 客之階也. 凡"兩楹間"云者, 欲賓主夾之也.

[문] 아버지가 맞이한 부인이 서넛에 이른다면 아울러 부제(祔祭)[8]해야 합니까? -여봉섭-[9]
父之所娶, 至於三四, 當幷祔耶?【呂鳳燮】

[답] 무릇 정처(正妻)는 모두 아울러 부제하고 합제(合祭)해야 하니, 이는 주자의 정론(正論)이 있다.[10]
凡正妻, 皆當幷祔合祭, 有朱子正論.

"태산이 무너지려는가? 대들보가 내려앉으려는가? 철인이 병들려는가?[泰山其頹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한 뒤, 방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하(夏)나라는 동쪽 계단 위에 빈(殯)하였으니 여전히 주인의 자리인 조계(阼階)에 둔 것이고, 은나라는 두 기둥 사이에 빈하였으니 손님과 주인의 자리 사이에 둔 것이며, 주(周)나라는 서쪽 계단 위에 빈하였으니 손님으로 대한 것과 같다. 나는 은나라 사람인데, 간밤에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는 꿈을 꾸었다. 밝은 임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천하에 어느 누가 나를 두 기둥 사이의 존귀한 자리에 앉혀 존숭하겠는가. 내가 아마 곧 죽으려나 보다.[夏后氏殯於東階之上, 則猶在阼也, 殷人殯於兩楹之間, 則與賓主夾之也, 周人殯於西階之上, 則猶賓之也. 而丘也殷人也, 予疇昔之夜, 夢坐奠於兩楹之間. 夫明王不興, 而天下其孰能宗予? 予殆將死也.]"라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8) 부제(祔祭) : 졸곡을 지낸 다음, 망자의 신주를 조상의 신주가 있는 곳에 합사(合祀)하는 제사이다.

9) 여봉섭(呂鳳燮) : 1834~?.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석천(石泉)이다. 기정진의 문인으로 담양(潭陽)에서 거주하였다.

10) 주자의 정론(正論)이 있다 : 정이(程頤)의 《제의(祭儀)》에 "무릇 배향(配享)할 때는 정처(正妻) 한 사람만을 쓴다. 혹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재취(再娶)의 소생이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배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휘(李煇)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 "배향할 때는 정처 한 사람만 쓴다는 말이 옳습니다. 만약 재취에게 아들이 없다면 별도의 자리에 부제(祔祭)를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재취의 아들인 경우, 낳아준 어머니로 배향하는 것을 허락하고 정처는 아들이 없어서 마침내 배향할 수 없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자, 주희가 "정 선생의 이 말은 잘못인 듯합니다. 《당회요(唐會要)》에 '무릇 적모(嫡母)가 있다면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부제하고 합제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옛날 제후의 예와는 다릅니다.[程先生此說恐誤. 《唐會要》中有論'凡是嫡母, 無先後, 皆當並祔合祭'. 與古者諸侯之禮不同.]"라고 답하였다. 《晦庵集 卷62 答李晦叔》

[문] 손자는 조부(祖父)에게 합부(合祔)하는데, 만약 조부가 살아있다면 한 소목(昭穆)[11]을 건너뛰어 올라가 고조에게 합부합니까?[12] -김석귀-[13]
孫祔於祖, 而若祖在, 則中一以上, 祔高祖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죽었는데 아들이 없고 아내 및 시마복(緦麻服)[14]을 입어 주는 친족만 있다면 누가 제사를 주관합니까? 시마복을 입어 주는 친족으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 아들 없이 죽은 자를 사당에 반부(班祔)[15]하는 것은 애초에 시마복을 입어 주는 친족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부인으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 고조의 신주(神主)도 부인을 기준으로 세대를 헤아려 조천(祧遷)[16]

---

11) 소목(昭穆) : 종법(宗法) 제도에서 종묘(宗廟)나 종묘 안 신주(神主)를 배열하면서 그 순서를 시조를 중앙에 두고, 2세·4세·6세는 시조의 왼쪽에 차례대로 배치하는데 이를 소(昭)라 일컫고, 3세·5세·7세는 시조의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를 목(穆)이라 하였다. 이는 종족 내부의 장유(長幼)와 친소(親疎) 및 원근(遠近)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12) 조부가 …… 합부합니까 : 소목(昭穆)의 차례를 기준으로 고조에게 합부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소목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시는 차례를 말하는데, 왼쪽 줄이 '소', 오른쪽 줄이 '목'이다. 시조의 신주는 가운데에 모시고 2·4·6대를 소에, 3·5·7대를 목에 모신다.

13) 김석귀(金錫龜) : 1835~1885.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경범(景範), 호는 대곡(大谷)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1880년 1월 10일 기정진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에서 자신은 소년일 때 문하에 나아가 30년이 되었으니 은혜를 입은 것이 두터운 데도 이룬 것이 없어 애통해하는 제문이 전한다.

14) 시마복(緦麻服) : 상사(喪事)에 3개월 동안 상복(喪服)을 입는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종증조(從曾祖), 삼종형제(三從兄弟), 중증손(衆曾孫), 중현손(衆玄孫) 등이 해당한다.

15) 반부(班祔) : 방친(旁親) 중 후사가 없는 자를 소목의 차례에 따라 합부하는 것을 말한다. 백조부모(伯祖父母)와 숙조부모(叔祖父母)는 고조에게 합부하고, 백부모(伯父母)와 숙부모(叔父母)는 증조에게 합부하고, 처와 형제와 형제의 처는 조부에게 합부하고, 자식과 조카는 아버지에게 합부한다. 《家禮卷1 通禮 祠堂》 반은 반차(班次)로 소목의 차례를 말하며, 부는 연접[屬]과 같다. 《儀禮注疏 士虞禮》

16) 조천(祧遷) :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하여 신위를 사당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가(私家)의 경우는 5대가 지난 신주를 사당에서 옮겨 땅에 묻었고, 왕실의 경우는 5대가 지난 왕의 신위를 종묘(宗廟)의 별묘(別廟)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재필-
死而無子, 只有妻及緦親, 則誰爲主祭? 以緦親主祭, 則祠堂班祔, 初不及於緦親, 以婦人主祭, 則其高神亦以婦人計世而不祧遷歟?【鄭在弼】

[답] 반부하는 것이 시마복을 입어 주는 친족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사당에서 행하는 경례(經禮)를 가지고 한 말이다. 만약 종가(宗家)에 주관할 사람이 없어서 시마복을 입어 주는 친족이 임시로 제사를 주관한다면 우선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면서 제사를 주관할 후사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혹 한 가지 방도일 것이다. 부인이 고조와 증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한 미망인(未亡人)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고조의 신주를 조천하는 의리는 없을 듯하다.
班祔不及緦親, 以自家祠堂經禮而言也. 若宗家無主, 權爲主祭, 則姑爲仍舊, 以待主祀之立, 或者一道乎? 婦人之於高曾, 亦未亡人代旣化者奠獻也, 恐無祧遷之義.

[문] 장방(長房)이 형편상 제사를 받들 수 없으면 장손이 신주를 환봉(還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묘(別廟)에 신주를 모십니까?[17] -조의곤-[18]
長房勢不能奉祀, 則長孫可還奉歟? 別廟歟?【曺毅坤】

[답] 장방이 제사를 받들 수 없으면 별묘에 신주를 모시는 것이 옳고, 장손은 신주를 환봉할 수 없다.
長房不能奉祀, 別廟則可, 長孫不可還奉.

조(祧)는 원조(遠祖)의 신주를 합사(合祀)하는 사당이다.

17) 장방(長房)이 …… 모십니까 : 장방은 4대 이내의 자손 중에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장방은 봉사손(奉祀孫)에게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받든다. 이 장방이 죽으면 다음 장방이 모셔 가는데, 자손 중에 4대손이 다 죽은 뒤에는 그 신주를 땅에 묻는다.

18) 조의곤(曺毅坤) : 1832~189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사홍, 호는 동오(東塢)이다. 조현위(曺炫瑋)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문] 종손(宗孫)이 후사 없이 죽어서 고조의 신주가 이미 장방에게 체천(遞遷)되었다면 증조의 제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최장방(最長房 장방(長房))이 제사를 아울러 주관합니까? -신재철-[19]
宗孫無后而死, 高祖已遷于長房, 而曾祖孰爲主祭? 最長房並主之歟?【愼在哲】

[답] 고조는 이미 종가(宗家)에서 체천되었으므로 최장방이 제사를 주관하지만 증조는 아직 체천되지 않았으니, 어찌 최장방으로 주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종가의 제사를 대신 주관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
高祖已自宗家遞遷, 故最長房主之, 曾祖尙未遷, 則豈可以最長房主之乎? 攝主宗家祀者主之, 可也.

[문] 종자(宗子)가 죽고 적손(嫡孫)이 제사를 받드니, 조주(祧主)[20]가 이미 장방에게 체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손이 또 죽고 아직 후사를 세우지 못해 종자의 아우가 임시로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조주는 도로 사당에 들여야 합니까? -정희원-[21]
宗子死, 嫡孫承祀, 則祧主已遷長房. 嫡孫又死, 姑未立后, 宗子之弟權奉, 則祧主當還入於祠堂耶?【鄭禧源】

[답] 도로 사당에 들여서는 안 될 듯하다.
恐不當還入.

[문] 종손(宗孫)이 죽었는데 다른 후사가 없고 재종제(再從弟)만 있다면,

---

19) 신재철(愼在哲) : 1803~?.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명오(明吾), 호는 송암(松庵)이다. 신희남(愼喜男)의 후손이며, 전라도 영암(靈巖)에서 살았다. 송내희(宋來熙), 기정진의 문인이다.

20) 조주(祧主) : 제사를 지낼 대수(代數)가 다하여 사당에서 내오는 신주이다.

21) 정희원(鄭禧源) : 1879~1956.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대수(大受),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고종(高宗) 31년(189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442위(471/1055)이다.

고조와 증조의 신주는 체천하여 모셔야 하고 이하의 신주는 형세상 장차 매안(埋安)해야 하는데, 또한 마음에 편치 않은 일입니다. -정희원-
宗孫死, 無他立後, 只有再從弟, 高曾神主, 當遷奉, 以下神主, 勢將埋安, 而亦情所不安.【鄭禧源】

[답] 종손이 죽었는데 후사를 세우지 못했다면 증조 이하의 신주를 매안하는 것은 형세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비록 박절하나 어찌할 수 있겠는가. 예(禮)에 '반부(班祔)' 두 글자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말하면 종조(從祖)의 신주는 갑자기 매안하기 어렵다.
宗孫死, 而不能立後, 則神主埋安, 勢所不免, 雖迫切, 奈如之何? 禮中有"班祔"二字, 以此言之, 則從祖主, 難遽埋.

[문] 종자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고 오직 서제(庶弟) 한 명만 있다면 아버지와 조부의 신주는 우선 서자(庶子)로 방제(旁題)[22]하여 종자의 후사를 세우기를 기다렸다가 개제(改題)[23]합니까? -김석귀-
宗子亡而無后, 惟有一庶弟, 其父祖神主, 姑以庶子旁題, 以待宗子立后而改題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5대조나 6대조의 상에도 신주를 만들어야 합니까?[24] 신주를 만들어야

---

22) 방제(旁題) : 신주 아래의 왼쪽에 제사(祭祀)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23) 개제(改題) : 봉사손(奉祀孫)이 죽었을 경우, 다음 봉사손의 대수(代數)에 맞추어 신주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한다.

24) 5대조나 …… 합니까 : 일반적으로 위로 4대조까지만 사당에 신주를 모셔 제사를 지내고, 친진(親盡)한 5대조의 신주는 사당에서 꺼내 매안하기 때문에 신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물은 것이다.

한다고 하면, 신주를 만들어 영연(靈筵)에 모셨다가 3개월 뒤 영연을 치우면 신주를 매안해야 할 것이니, 봉안(奉安)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석귀-
五代六代祖喪亦當造主耶? 曰當造主, 奉之靈筵, 三月後撤靈筵則埋之, 以其無奉安之地也.【金錫龜】

[답] 비록 5대손이나 6대손이라도 살아 계실 때 이미 봉양하였다면 종신토록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 어찌 3개월 뒤 신주를 매안할 수 있겠는가.
雖五代六代孫, 生時, 旣奉養, 則當終其身奉祀. 何可三月後埋主?

[문] 일찍이 5대조나 6대조의 상(喪)에 영연을 치우면 신주를 매안하는 것에 관한 설을 여쭌 데 대해, 신주(神主)를 매안해서는 안 된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에서는 3개월 뒤 신주를 옮겨서 매안하는 것이 잘못인 것만 말씀하고 봉안하는 곳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으므로 매번 다시 여쭈려고 하였는데, 정재규(鄭載圭)가 "5대조나 6대조가 살아 계실 때 손자가 이미 봉양하였다면 돌아가셨을 때 손자가 상을 주관해야 하니, 어찌 종신토록 제사를 받들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편치 않은 곡절이 없지는 않다. 5대조가 살아 계실 때 고조 이하의 신주는 마땅히 부위(祔位)[25]에 있어야 한다. 상을 마치고 개제(改題)하였을 때는 5대조 이상은 체천해야 하고 이하는 정위(正位)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5대조의 신주는 과연 봉안할 자리가 없으니, 혹여 별실(別室)에 봉안하는가? 5대조의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고조 이하의 신주가 대뜸 정위로 올라가니, 아버지가 전하면 아들이 계승하면서 세대의 차례가 번갈아 옮겨지는 의리에 흠결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또 "훗날의 적손이 전중(傳重)[26]한 정조(正祖)

25) 부위(祔位) : 방친 가운데 후사가 없거나,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자로서 먼저 죽은 자의 신위(神位)를 말한다. 정위(正位)의 신주 곁에 합쳐서 모신다.

26) 전중(傳重) : 상사(喪事)·제사나 종묘의 중임(重任)을 자손에게 전하여 잇는 것을 말하는데,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전중'이고 자손 입장에서 보면 '승중(承重)'이다. 적장자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조부모의 차자(次子)가 있더라도 적손이 조(祖)를 계승하고, 조부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증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적증손자(嫡曾孫子)가

를 모시면서 정묘(正廟)에 모시지 않고 곧바로 별실에 옮긴다면 또한 편치 않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의론이 진실로 옳으니, 어떻게 해야 알맞겠습니까? -김석귀-

曾以五六世祖喪撤筵埋主之說奉稟, 下答云云. 此但言三月後遷埋之非, 不明言奉安之地, 故每欲更稟. 鄭載圭云: "生旣奉養, 死當主喪, 而奉祀豈有不終其身之理? 但不無曲折之難安者. 蓋五代祖生時, 其高祖以下神主, 宜在祔位. 而及其喪畢改題也, 五代祖以上當遷, 以下當躋正位, 則五代祖果無奉安之位. 或奉安別室耶? 五世祖未入廟, 而高祖以下遽躋正位, 其於父傳子承世次迭遷之義, 不有欠闕耶?" 又以爲: "後之嫡孫, 奉傳重之正祖, 而不於正廟, 徑遷之別室, 亦不有未安耶?" 此論誠然. 如何爲當?【金錫龜】

[답] 대상(大祥)[27]을 지낸 뒤 신주를 사당에 들였다가 길제(吉祭)[28]를 지낼 날이 되었을 때 "5대가 사당에 함께 있는 것은 전례(典禮)상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고유(告由)하고서 별실에 옮기면 되니, 어찌 어렵게 여겨 망설일 필요가 있겠는가.

祥後入廟, 而及吉祭之期, 以"五世同廟, 典禮有礙"之意告由, 而遷于別室. 何持難之有?

[문] 체천한 신주는 비록 서얼(庶孼)이라도 아직 친진(親盡)[29]하지 않았다면

증조를 계승하는 것이다.

27) 대상(大祥) : 상례의 한 절차로, 사람이 죽은 뒤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5개월 만인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28) 길제(吉祭) : 사람이 죽은 뒤부터 28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禫祭)를 지낸 다음 달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아뢰고 새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주를 고쳐 쓰는 등의 일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이다.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날을 잡아 제사지낸다. 길제를 마친 다음날부터 상주(喪主)는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삼우제(三虞祭) 뒤에 지내는 졸곡(卒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담제는 초상(初喪)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다음 달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29) 친진(親盡) : 제사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하여 조상의 신주를 원조(遠祖)의 사당으로 옮기는 것이다. 4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고 5대가 되면 친진하게 된다. 왕가(王家)에서는 친진한 신주를

집으로 옮겨서 모십니까? -여봉섭-
遞遷廟雖庶孽, 親未盡, 則移奉於其家否?【呂鳳燮】

[답] 그렇다.
然.

[문] 《가례증해(家禮增解)》[30]에 "승중(承重)[31]한 서자의 신주는 본종(本宗)의 사당에 들어가야 하나 나란히 앉혀서는 안 될 듯하다.[承重庶子神主, 當入於本宗祠堂, 而似不可幷坐.]"[32]라고 하였는데, 이 설이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서자라도 승중한 이상 바로 적자(嫡子)가 되니, 어찌 나란히 앉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석귀-
《增解》"承重庶子神主, 當入於本宗祠堂, 而似不可幷坐". 此說可疑. 雖是庶子, 旣已承重, 則便成嫡子, 何可不幷坐也?【金錫龜】

[답] 그대가 논한 말이 옳다.
所論是.

원조의 사당으로 옮기지만 사가(私家)에서는 제사 지낼 대수가 끝나지 않은 4대 이내 방손(傍孫) 가운데 가장 항렬이 높은 사람, 즉 최장방(最長房)의 집으로 신주를 차례대로 옮기다가 그 대수가 모두 끝나면 묘소(墓所) 옆에 묻었다.

30) 가례증해(家禮增解) : 조선 정조 때의 학자 이의조(李宜朝, 1727~1805)가 주희의 《가례》를 보충하고 해설한 책이다. 이의조의 부친이 《가례》를 바탕으로 하여 고금의 예설을 수집한 것을 다시 교정하여 1824년(순조24)에 14권 10책으로 간행하였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부터 도암(陶菴) 이재(李縡)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노론의 《가례》 연구를 집성한 방대한 예서이다.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의의가 달라진 여러 변례(變禮)를 많이 인용하고 고례(古禮)의 본질을 자세하게 해설하였다. 송환기(宋煥箕)의 서문과 정만석(鄭晩錫)의 발문이 있다.

31) 승중(承重) : 전중(傳重),즉 적통(嫡統)을 물려주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는 제도 중에서, 적장손(嫡長孫)이 부친과 조부를 대신해서 선조의 상제(喪祭)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친 대신 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하고, 부친과 조부 대신 증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증손(承重曾孫)이라고 한다. 《儀禮 喪服》

32) 승중(承重)한 …… 듯하다 : 《가례증해》 권1 〈통례(通禮) 사당(祠堂)〉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승중이 '승적(承嫡)'으로 되어 있다. 혹자가 승적한 서자의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야 하는지 묻자, 김집(金集)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서자는 적장자가 아닌 아들, 즉 적장자의 아우를 가리키고, 본종은 자기를 낳아 준 친부모인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종(宗)을 가리킨다.

[문] 종자(宗子)가 아들 없이 죽어서 족인(族人)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니, 그 생부(生父)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를 수락하였는데 생부가 또 죽었습니다. 종자의 후사를 잇는 것에 대한 고묘(告廟)[33]는 문장(門長)[34]이 주관합니까, 후사가 될 사람이 스스로 고합니까?[35] -민치량-[36]
宗子無子而死, 將以族人之子爲后. 其生父在時已受諾, 而其生父又死. 繼后告廟, 門長主之耶? 爲后者自告歟?【閔致亮】

[답] 출계(出繼)[37]할 사람의 생부가 먼저 죽었으니, 고유(告由)는 문장으로 하게 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난처하니, 생부의 생전에 일찍 정해놓지 않은 것이 아쉽다.
出繼者生父先亡, 告由, 似當以門長爲之. 然而此事極難處. 恨不於生父生前, 早爲區別也.

[문]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백부(伯父)의 후사로 나가 본생가(本生家)에

---

33) 고묘(告廟) : 나라, 왕실, 집안에 일이나 변고가 있을 때 그 일을 사당 또는 종묘에 고하는 일을 말한다.

34) 문장(門長) : 한 문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최고 어른이다.

35) 그 생부(生父)가 …… 고합니까 : 이 부분은 일부 생략되었다. 민치량의 《계초문집(稽樵文集)》 권3 〈상노사기선생문목(上蘆沙奇先生問目)〉에는 "그 생부가 살아있을 때 이미 허락하였는데 봉사(奉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그 생부가 또 죽었으니, 그렇다면 이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후사를 이어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문장으로서 일을 주관하는 자가 소후부의 사당에 고유합니까? 아니면 후사가 될 자가 스스로 고유합니까?[其父在時已受諾, 而奉祀則猶未也. 不幸其生父又下世, 則待此子長成而繼后奉祀也. 門長主事者告由於所后父之廟歟? 抑使其爲后者自告其由歟?]"라고 되어있다.

36) 민치량(閔致亮) : 1844~1932. 자는 주현(周賢), 호는 계초(稽樵), 산청(山淸) 출신이다. 그는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1870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이 되었으며 외세의 핍박이 심하자 대신들이 눈치만 보는 등 난정(亂政)을 일삼자 비상시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소(疏)를 올리고 낙향하여 조성가(趙性家), 정재규(鄭載圭) 등과 서로 교유하면서 경전과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계초집(稽樵集)》 12권 5책이 있다.

37) 출계(出繼) : 아들을 다른 사람의 양자(養子)로 주어 그 집의 대를 잇게 하는 것, 또는 양자가 되어 대를 잇는 것을 말한다.

후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소후가(所後家)[38]의 제사를 받드므로 자신이 본생의 제사를 받드는데 보첩(譜牒)에 손자로 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본생조(本生祖)에게 후사가 없으니, 그대의 형이 반부(班祔)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이 예에 합당하다. 그런데 하필 보첩에 한 세대를 빠뜨리고서 손자로 단단 말인가?"라고 힐난하니, 그 사람이 "예는 의(義)에 따라 만드는 것이고,[39] 또한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으로 볼 때는 혹 거의 예에 맞지만 의로 볼 때는 맞는 곳이 없습니다. -나도규-[40]

有人其父出伯父後, 本生無后. 其兄奉所後祀, 己奉本生祀, 而以孫系於譜牒. 小子詰之曰: "子之本生祖無后, 子之兄班祔奉祀, 於禮停當. 何必於譜闕一世而系之?" 其人曰: "禮以義起, 亦出於情."云, 此於情或庶幾, 而於義無湊泊處.【羅燾圭】

[답]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만세토록 폐단이 없을 터인데, 근세에 간혹 이를 행하는 자가 있다.

如來說, 則萬世無弊. 而近世或有行之者矣.

[문] 어떤 사람이 그의 증조에게 형제가 있는데 형이 백부(伯父)에게 출계하고서 후사를 두었고 아우는 본가에 있으면서 후사가 없어서 형이 마침내 파계(罷繼)되어 본생가의 족보에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지금 그

---

38) 소후가(所後家) : 자신이 후사로 들어간 집을 말한다.

39) 예는 …… 것이고 : 전례(前例)나 예문(禮文)에 없는 것을 인정과 인리를 참작하여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기》 〈예운(禮運)〉에 "예라는 것의 의(義)의 실체이니, 의에 합하여 맞으면 그 예가 비록 선왕(先王)이 예를 만든 때에 있지 않았더라도 의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것이다.[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라고 한 말이 보인다.

40) 나도규(羅燾圭) : 1826~188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치문(致文), 호는 덕암(德巖)이다. 1841년(헌종 7)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예대로 행하였고, 이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경전과 제자(諸子)의 글을 널리 배웠으며 예학을 탐구하였다. 저서로 시문집인 《덕암만록(德巖漫錄)》 상·하권이 남아 있다.

증손이 다시 족보를 수정하면서 형파(兄派)의 자손으로 양가 족보에 두 줄로 모두 기록하여 구별 없이 뒤섞으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손자 한 사람을 골라서 뒤를 잇게 한다면 세대에 누락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훈-[41]

或人其曾祖有兄弟, 兄繼伯父而有後, 弟在本家而無嗣, 兄遂罷繼而載其名於本生譜. 今其曾孫再修譜, 欲以兄派子孫, 雙行俱錄於兩家, 混無分別矣. 今別選一孫繼之, 則世代有闕. 奈何?【金勳】

[답] 저 사람은 애초에 예에서 벗어난 일을 하기를 꺼리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행할 만한 예를 찾으려고 하는가? 예는 이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彼人也初旣不憚爲禮外之事, 今乃忽欲尋可行之禮乎? 禮不爲此等人設.

[문] 충장공(忠壯公)[42]에게 후사가 없어서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형의 자손을 후사로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43] 족보에도 후손으로 기록할

---

41) 김훈(金勳) : 1836~1910. 자는 자원(子元), 호는 지장재(智藏齋) 지재(智齋) 동해(東海)이다. 스승은 송내희(宋來熙), 조병덕(趙秉德), 임헌회(任憲晦), 기정진(奇正鎭)이다. 전라남도 함평을 출신으로 동학, 의병 등 활동을 하고 전국 팔도 유람을 즐겨서 〈팔유록(八遊錄)〉이라는 작품까지 남겼다. 저서는《동해집》이 있다.

42) 충장공(忠壯公) : 조선 선조 때의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의 시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자는 경수(景樹)이다. 광주(光州) 석저촌(石底村)에서 태어났다. 1593년(선조26) 담양(潭陽)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1596년 홍산(鴻山)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李夢鶴)과 내통했다는 무고를 당해 여섯 차례의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였다. 1661년(현종2)에 신원(伸寃)되고 복관(復官)되었으며, 1788년(정조12)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출생지인 석저촌의 이름이 충효리(忠孝里)로 변경되었다.

43) 선왕(先王)의 …… 하였으니 :《김충장유사(金忠壯遺事)》에 대략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김덕령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우인 풍암(楓巖) 김덕보(金德普)가 아들 김거(金璩)에게 대대로 김덕령의 제사를 받들게 하되, 친진(親盡)하면 사판(祠版)을 매안(埋安)하게 하였다. 그 후 정조(正祖) 때 김덕령이 시호를 받았을 때 김덕령의 6세 방손(旁孫) 김치옥(金致玉)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정조가 문중(門中)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할 사람 한 명을 골라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연천집(淵泉集)》〈증좌찬성충장김공신도비명(贈左贊成忠壯金公神道碑銘)〉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본문의 형은 김덕홍(金德弘)이다.

수 있습니까? -충효리 김씨-[44]
忠壯公無后, 先王朝以其兄孫立後奉祀, 譜牒亦可以後孫載錄?【忠孝里金氏】

[답] 소목(昭穆)[45]의 차례를 넘어서 후사를 세워 준 것은 성조(聖朝)가 충의를 지닌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 끊어진 대를 잇게 한 것이니, 크고 넓은 은전(恩典)을 후사를 세우는 보통의 격례(格例)로 논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는 법이니,[46] 어찌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는 허락하고 족보로는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충장공의 사손(祀孫)을 곧바로 충장공 아래에 후손으로 기록한 뒤에야 이름이 바루어지고 말이 순해지니, 다시 널리 물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越昭穆而立後, 乃是聖朝悶忠繼絶. 曠蕩之恩典, 不可以立後之常格論也. 君子名之, 必可言也. 豈有以奉祀則許之, 以譜牒則不許之理乎? 忠壯公祀孫, 直以後孫載錄於忠壯公之下, 然後名正言順, 更爲廣詢而處之, 如何?

[문] 벗 아무개가 죽었는데 비록 아이가 있으나 불길한 염려가 있어서 다시 후사를 세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룡-[47]

---

44) 충효리(忠孝里) 김씨(金氏) : 《노사집(蘆沙集)》 〈연보(年譜)〉에 근거하면 김치의(金致儀) 혹은 김치호(金致浩)라는 인물인 듯하다.

45) 소목(昭穆)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로, 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4세·6세는 왼편에 모셔 소(昭)라 하고, 3세·5세·7세는 오른편에 모셔 목(穆)이라 한다, 천자는 7묘로 3소·3목이고, 제후는 5묘로 2소·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1목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항상 배(配)가 된다.《文獻通考 宗廟考》

46) 군자가 …… 법이니 : 《논어》 〈자로(子路)〉에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아니하고, 말이 순조롭지 아니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형벌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형벌이 타당하지 아니하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가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을 할 수 있으며, 말을 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事不成則禮樂不興, 禮樂不興則刑罰不中,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라고 하였다.

47) 김원룡(金元龍) : 1807~1880.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내량(乃良), 호는 우수(愚叟)이다. 기정진의 문인이다. 기우만(奇宇萬)이 지은 〈우수김공행장(愚叟金公行狀)〉에는 자를 내량(乃亮)이라고 하였다. 월봉(月峯) 김광원(金光遠)의 후손으로, 장흥군 금곡(金谷)에서 태어났다. 관수재(觀修齋)를 지어 독서하는 곳으로 삼았다.

某友亡, 雖有兒, 有不吉之慮, 更欲立後. 如何?【金元龍】

[답] 아이가 아직 살아 있는데 다시 후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리로 헤아려 보면 혹 잘못된 점이 있는 듯하다. 옛말에 "없어진 집안을 보존하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 준다.[存亡繼絶]"[48]라고 하였지, "없어지지 않은 집안을 보존하고 끊어지지 않은 세대를 이어 준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현재 살아 있는 아이에게 혹여 불길한 염려가 있다면 새롭게 후사로 들이는 아들은 반드시 길할 것임을 그대는 미리 알 수 있는가? 벗의 도리가 돈독하더라도 자신의 일처럼 여길 뿐이니,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어찌 벗에게 할 수 있겠는가.
有兒尙在, 而更欲立後, 揆之事理, 或涉過矣. 古云"存亡繼絶", 不云"存未亡而繼不絶". 見存者或有不吉之虞, 則新來者之必吉, 兄能逆知乎? 友道雖篤, 如己而已. 己所不可爲, 豈可施之於友乎?

[문] 선대의 족보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의현-[49]
先世系牒有疑, 則當如何云云?【金懿鉉】

[답] 내 마음은 하늘의 밝은 도가 있는 곳이니, 마음을 속인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격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마음이 편치 않은 곳에는 감히 잠깐이라도 처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그러한데 하물며 선대의 족보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심을 안으로 품고서 함부로 조상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吾心卽天明之所在, 欺其心則是欺天也. 是以君子之於心所不安, 不敢須臾處, 於身猶然. 況於先世系牒, 可內抱不決之疑, 而冒以爲祖乎?

---

48) 없어진 …… 준다 : 한(漢)나라의 옥리(獄吏) 노온서(路溫舒)가 올린 〈상덕완형서(尙德緩刑書)〉에 보인다.

49) 김의현(金懿鉉) : 1832~?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진여(振汝) 혹은 진여(進汝), 호는 성헌(誠軒)이다. 기정진의 문인이며 창평(昌平)에 거주하였다.

[문] 저의 고조는 경성(京城)에서 진양(晉陽 진주(晉州))으로 이사하였다고 하는데 징험할 만한 문헌이 없습니다. 이에 앞서 작성한 족보는 왕고(王考)의 묘비(墓碑)와 기록이 서로 달랐습니다. 묘비와 족보는 모두 김녕군(金寧君) 휘(諱) 목경(牧卿)을 중조(中祖)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묘비에는 김녕군 이하로는 전하는 것이 없고 조고의 휘 아래에 다만 18세손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 족보에는 묘비에 전하는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전하는 부분이 있고 18세가 바뀌어 21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묘비가 앞서고 족보가 나중이니, 징험할 만한 문적(文蹟)이 없다면 작성한 족보는 거짓된 세계(世系)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족보를 놔두고 묘비를 취하여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는 의리를 따르려 하나 중대한 일이어서 끝내 황공한 점이 있습니다. 서술한 가승(家乘)의 서문(序文)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니다. -김현옥-[50]

顯玉高祖自京城移晉陽云, 而無文獻可徵. 前此修譜, 與王考墓碑所載相左. 碑與譜皆以金寧君諱牧卿爲中祖. 然碑則金寧君以下無傳, 而於祖考諱下, 只書十八世孫, 譜則無傳爲有傳, 十八世變爲二十一世. 蓋碑先而譜後, 無文蹟可徵, 則所修之譜, 不免誣系. 今舍譜取碑, 以從傳疑之義, 而事繫重大, 終涉惶恐. 竝以所述家乘序仰稟.【金顯玉】

[답] 사람에게는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하늘에 두렵지 않은가.[51] 본래 후손을 이롭게 할 계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인데 먼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후손에게 무엇이 이롭겠는가.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다. 그대가 지은 서문은 배운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니, 나는 반드시 그대에게 훌륭한 후손이 있을 것임을 알겠다.

不愧于人, 不畏于天? 本欲爲利後計, 而先獲罪于天, 後孫何利焉? 不思甚矣. 君之序文, 可謂不負所學. 吾知其必有後乎.

---

50) 김현옥(金顯玉) : 1844~1910. 자는 풍오(豐五), 호는 산석(山石),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이다. 저서로는《산석집》이 있다.

51) 사람에게는 …… 않은가 :《시경(詩經)》〈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보이는 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인용한 것이다.

[문] 계모 소생은 호적에 응당 '계외조(繼外祖)'라고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 외조(前外祖)'라고 적습니까? -김희창-
繼母所生者, 戶籍當書"繼外祖"? 或書"前外祖"?【金喜昌】

[답] 계모 소생은 호적에 '계외조'라고 적어야 하니, 전 외조에게는 입어 주는 상복이 없다.
繼母所生者, 戶籍當書"繼外祖". 於前外祖無服.

[문] 사당에 배알하는 것은 중자(衆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정희원-
廟謁, 衆子不可獨行歟?【鄭禧源】

[답] 사당에 배알하는 것은 주인이 행하는 예이니, 주인이 아닌데 단독으로 배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廟謁, 主人之禮. 非主人而獨謁, 或未安.

[문] 절[拜]과 읍(揖)을 동시에 병행합니까? -오계수-[52]
拜揖幷行?【吳繼洙】

[답] 《예기(禮記)》와 《의례(儀禮)》가 근본이 되는 경서(經書)이니,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사례(鄕射禮)〉 등을 두루 살펴보면 절과 읍은 각기 쓰는 곳이 있고 동시에 병행한 경우는 없다. 또 오늘날 사은숙배(謝恩肅拜)할 때의 홀기(笏記) 및 문묘(文廟)에 제향할 때의 의주(儀註)에는 다만 "국궁

52) 오계수(吳繼洙) : 1843~1915.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중함(重涵), 호는 난와(難窩)이다.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895년(고종32) 을미사변이 일어나 민비(閔妃)가 시해되자, 기우만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가담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두문불출하던 중 은사금(恩賜金)을 거절한 일로 장성 헌병부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으나 끝내 굴하지 않았다. 그 뒤로는 영사재(永思齋)에 들어가 오직 독서로 생애를 보냈다. 문집에 《난와유고(難窩遺稿)》 17권이 있다.

(鞠躬)[53]하고 절한 다음 일어난다."라고만 하였고 일찍이 읍을 하는 절차를 둔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풍속은 동시에 절과 읍을 병행하니, 출처를 모르겠다.
《禮經》《儀禮》是本經, 歷考〈鄕飮〉〈鄕射〉等禮, 拜揖各有用處, 未有一時並行者. 且如今日肅謝笏記及文廟祭享儀註, 但曰"鞠躬拜興"而已, 未嘗有揖也. 而今俗則一時並行拜揖, 未知出處.

[문] 절하거나 읍할 때는 오른손을 위에 둡니까, 왼손을 위에 둡니까? -이규로-[54]
拜揖時, 尙右? 尙左?【李奎魯】

[답] 공부자(孔夫子)께서 공수(拱手)할 때 오른손을 위에 두자 문인들이 공수할 때 모두 오른손을 위에 두니, 공자께서 "그대들은 배우기를 매우 좋아하는구나. 나는 누이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55]라고 하였으니, 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위에 두어서는 안 됨이 분명하다.
孔夫子拱而尙右, 門人皆尙右. 子曰: "甚矣, 二三子之好學也! 予則有姊之喪故也." 平時不可尙右, 明矣.

[문] 망일(望日)에는 신주(神主)를 꺼내지 않고 술을 마련하지 않으니, 삭참(朔參)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정현-[56]

---

53) 국궁(鞠躬) : 윗사람이나 위패(位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는 것을 이른다.

54) 이규로(李奎魯) : 1834~?. 본관은 영주(瀛州), 자는 희문(希文), 호는 송파(松坡)이다. 전라북도 부안에 거주하였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55) 공부자(孔夫子)께서 …… 때문이다 :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문인(門人)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공수할 때 오른손을 왼손 위에 두었는데, 두세 명의 제자들도 모두 오른손을 위에 두자, 공자가 이르기를 '그대들은 배우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누이의 상(喪)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문인들이 모두 왼손을 위에 두었다.[孔子與門人立, 拱而尙右, 二三子亦皆尙右. 孔子曰: "二三子之嗜學也! 我則有姊之喪故也". 二三子皆尙左.]"라고 하였다.

56) 박정현(朴鼎鉉) : 1821~1885.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필서(弼瑞), 호는 농와(農窩)이다. 기정진

望日不出主, 不設酒, 與朔參不同, 何也?【朴鼎鉉】

[답] 초하루[朔]와 보름[望]은 말은 비록 서로 이어서 썼으나[57] 초하루는 보름에 비해 경중이 현격히 다르니, 참배(參拜)하는 예에 차등이 있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朔望, 語雖相連, 而朔之於望, 重輕懸殊, 參禮之有隆殺, 固當.

[문] 절기에 새로 나온 식물(食物)을 얻으면 올리되, 얻은 식물이 지극히 적으면 그릇 하나에 함께 담아 올립니까? -정시림-[58]
得新物則薦, 而所得至略, 以一器合薦否?【鄭時林】

[답] 한 그릇에 담아 올리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一器之薦, 恐亦未妨.

[문] 묘우(廟宇)가 무너져 청사(廳事)에 신주를 이안(移安)하였습니다. 고유(告由)할 때 말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원-
廟宇頹落, 移安于廳事. 告由措辭, 如何?【鄭禧源】

[답] "지금 사우(祠宇)의 벽이 무너졌으므로 수리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청사에 임시로 봉안(奉安)합니다."라고 하라.
"今以祠宇壁頹, 修理前不得不權安於廳事".

(奇正鎭)의 문인으로, 고종(高宗) 25년(188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55위(84/324)이다.

57) 초하루와 …… 썼으나 : 삭망참(朔望參)이나 삭망전(朔望奠)으로 삭망을 이어서 쓰는 것을 말한다.

58) 정시림(鄭時林) : 1839~1912. 자는 백언(伯彦), 호는 월파(月波),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교유 인물로, 최익현(崔益鉉) 김평묵(金平默) 기우만(奇宇萬) 최영조(崔永祚) 정의림(鄭義林, 1845~1910) 등이 있다. 저서로는《월파집(월파집)》이 있다.

[문] 불에 탄 신주를 다시 만들었으니, 사당 빈터에서 제주(題主)[59]해야 할 듯합니다. -김석귀-
火焚神主更造, 似當題之於廟墟.【金錫龜】

[답] 사당의 빈터에서 제주해야 한다.
當題於廟墟.

[문] 이사한 뒤에 화재가 사당까지 미쳤는데 이번에 거처할 집이 새로 완성되어서 신주를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신주를 만들고서 제주하는 것은 화재가 난 빈터에서 해야 합니까, 옛날에 살던 집의 정침(正寢)에서 해야 합니까? -김훈-
移家後, 災及祠堂, 今新成居屋, 方營改造神主. 造題, 當於失火之墟耶? 舊居正寢耶?【金勳】

[답] 자손이 있는 곳이 바로 선조의 영령(英靈)이 의지하는 곳이니, 새집의 정침에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전날 화재가 난 빈터 및 옛날에 살던 집의 정침을 찾아서 한다면 잘못이다.
子孫所在, 卽祖靈之所依, 當於正寢造成. 若求前日失火之墟及舊宅正寢, 則誤矣.

[문] 어떤 사람이 혹여 곤궁으로 신주를 만들지 못하여 추후에 제주하려고 한다면 제주는 묘소에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여봉섭-
人或窮未造主, 後欲題主, 於墓耶? 於家耶?【呂鳳燮】

[답] 만약 옛날에 살던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제주해야 한다. 만약 당초에 집이 없었고 이제 새집을 짓는다면 묘소 앞에서 제주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듯하다.

---

59) 제주(題主) : 신주(神主)에 죽은 이의 관함을 쓰고, 그 옆에 상주(喪主)의 방주를 쓰는 것을 말한다.

若有舊屋子, 則當於屋子題主. 若當初靡室, 今構新屋, 則題於墓前, 其或可也.

[문] 이전 세대에서 신주를 만들지 못한 경우 후손이 신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성조-[60]
前世未能造主, 後孫造主, 何如?【魏成祚】

[답] 만약 이전 세대에서 예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자자손손 영원히 예를 다시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도리에 맞는 일이겠는가.
若以前世不能成禮, 而子子孫孫, 永不復行, 則豈理也?

[문] 나중에 신주를 만든 경우, 도암(陶菴)[61]이 "궤연(几筵)에 고한다.[告几筵.]" 라고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뒤라면 묘소에 고해야 합니까? -송영순-[62]
追後造主, 陶菴云: "告几筵." 三年後則當告於墓所耶?【宋榮淳】

[답] 반혼(返魂)할 때 혼이 이미 집으로 돌아왔으니, 고하는 것과 제주(題主)

---

60) 위성조(魏成祚) : 1801~? 자는 성헌(聖憲)이고, 호는 괴산(槐山)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창평에서 살았다.1880년(고종17) 2월 4일에 기정진(奇正鎭)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이 전한다.

61) 도암(陶菴) : 이재(李縡, 1680~1746)의 호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로, 본관은 우봉, 자는 희경(熙卿), 다른 호는 한천(寒泉)이다. 1707년(숙종33) 문과 중시에 급제한 후 이조 정랑, 홍문관 수찬, 성균관 대사성,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1716년 부제학으로 있을 때 《가례원류(家禮源流)》 시비가 일어나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공격하였으며, 이후 함경도 관찰사, 대사헌, 이조 참판 등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가 소론이 집권하면서 삭직되었다. 임인옥사(壬寅獄事) 때 벼슬을 그만두었다가 영조 즉위 후 부제학에 복직하여 대제학, 이조 참판 등을 지냈다. 정미환국(丁未換局) 때 문외출송(門外黜送)되어 용인으로 내려가 임성주(任聖周), 김원행(金元行) 등의 학자를 양성하여 북학(北學) 사상의 토대를 이루었다.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서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등을 내세우며 정계와 학계를 배후에서 움직였고, 탕평정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여 영조가 산림(山林) 또는 반탕평론의 선봉으로 지목하여 비난하였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낙론(洛論)의 대표적 인물이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에 《도암집(陶菴集)》,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이 있다.

62) 송영순(宋榮淳) : 생몰연대 미상. 호는 석송(石松)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주로 장성에서 활동하였다.

는 굳이 묘소에서 할 필요 없고, 지방(紙榜)을 마련해서 고하고 제주한 뒤에 불태워야 한다.
返魂時, 魂已返室堂矣, 告與題不必於墓所, 當設紙榜而告, 題後焚之.

[문] 나중에 신주를 만든 경우 축문(祝文)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정희원-
追後造主, 祝辭何以?【鄭禧源】

[답] 축문은 "장사 지낼 때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고하라.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祝文以"葬時未成"之意, 措語告之. 何疑乎?

[문] 조부 이상의 신주(神主)를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친의 장사로 인하여 뒤늦게 신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요덕-
祖以上未造主. 今因母葬而追造云云.【金堯悳】

[답] 아직 만들지 못한 신주를 상에 임해서 만드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급작스러우니, 삼년상을 마친 뒤 길제(吉祭)를 지낼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일의 완급이 다르니, 어찌 모친을 우선하고 조부를 나중으로 하는 혐의를 두겠는가.
未造之主, 臨喪造成甚輕遽, 當竢三年畢後吉祭時. 事之緩急不同, 豈有母先祖後之嫌也?

[문] 문목(問目)은 위와 같다. -정도원-
問目同上.【鄭道源】

[답] 신주를 만들 겨를이 없어 만들지 못했다가 새로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길례(吉禮)가 될 듯하나 굳이 오늘날에 신주를 만드는 것은 조금 흠결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造主未遑而新造, 在自家似爲大吉禮, 必於今日行之, 稍涉斑駁. 如何? 如何?

[문] 아명(兒名)으로 제주한 사람이 관례를 치른 뒤에 이름을 고쳤으니, 마땅히 개제(改題)하되 방제(旁題)[63]만 지워야 할 듯합니다. -김훈-
幼名題主者, 冠後改名, 似當改題, 只洗旁題.【金勳】

[답]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도 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제만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새하얀 백발인데도 아버지와 조부는 여전히 아명으로 부를 것이니, 개제하지 않은들 무슨 문제이겠는가.
此事種種有之, 而不能改題者, 以只洗旁題爲難故也. 以生存人言之, 白髮皤然, 而其父與祖, 尙呼幼名, 不改題何妨耶?

[문] 선고(先考) 이상은 '익연(益衍)'으로 방제하고 선비(先妣)는 '양연(亮衍)'으로 방제하였으니, 사당 하나에 이름이 다른 것이 진실로 편치 않습니다. -기양연-[64]
先考以上, 旁題以"益衍", 先妣, 旁題以"亮衍", 一廟異名, 實爲未安.【奇亮衍】

[답] 방제할 때 이름을 달리한 것은 과연 난처하나 이로 인해 신주에 개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름의 한 글자만 단독으로 삭제해 고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내 생각에는, 개명한 곡절 및 "감히 신주에 손을 대어 삭제해 고치지 못하고 이 뒤의 축판(祝板)부터는 일체 양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63) 방제(旁題) : 방제(傍題)라고도 하는 바, 신주 하단의 왼쪽에 봉사자(奉祀者)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64) 기양연(奇亮衍) : 1831~1911. 자는 덕수(德水), 호는 사상경수(沙上耕叟)이다. 옥수군수, 정읍현감(井邑縣監)을 역임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한 번 고유하면, 이후로는 비록 글자를 삭제해 고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旁題異名果難處, 而因此改題主, 不可, 單刮亦未安. 吾意以改名曲折及"不敢犯手刮改, 而後此祝板, 一體以亮衍施行"之意, 一番告由, 自此以後, 雖不刮改, 可以安心矣.

[문] 매안(埋安)할 때 독(櫝)을 사용하는 것과 독을 빼는 것 중 무엇이 옳습니까? 혹 목갑(木匣)을 사용하고 회격(灰隔)[65]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홍연-[66]
埋安用櫝去櫝, 孰是? 或用木匣而灰隔, 何如?【奇弘衍】

[답] 독은 여닫는 물건인데 매안은 여닫는 뜻이 없으니, 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다. 목갑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회격하는 것은 지나친 예인 듯하다.
櫝是開闔之物, 埋安無開闔之意, 用櫝恐無義. 木匣甚當, 灰隔似過禮.

[문] 조주(祧主)[67]를 묘소에 매안하려고 하는데 본묘(本墓)가 매우 머니, 배위(配位)에 가까운 묘소에 매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상봉-[68]

---

65) 회격(灰隔) : 관(棺)의 주위에 석회(石灰)를 채워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66) 기홍연(奇弘衍) : 1828~1898.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경도(景道), 호는 용산(龍山). 아버지는 기중진(奇重鎭)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로 강항(姜沆)의 후손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부모를 여읜 뒤로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으며, 서예에도 뛰어난 실력이 있었다. 한편, 사도책(師道策)을 지어 당시 교육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러한 폐단을 없애는 방법으로 문벌과 지연의 통일(通門地), 당론의 제거(去黨論), 과거제도의 개혁(革科擧)을 촉구하였다. 말년에는 주서(朱書) 공부에 힘써 《주서표기(朱書標記)》 등을 만들어 실천하고, 좌우명으로 삼았다. 저서로 《용산유고(龍山遺稿)》가 있다.

67) 조주(祧主) : 체천(遞遷)한 신주로, 체천은 봉사손이 친진(親盡)한 5대조의 신주를 아직 친진하지 않은 최장방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다. 최장방이 죽으면 또 다음 최장방의 집으로 옮기는데, 현손 항렬이 다 죽어 다시 옮길 곳이 없으면 그 신주를 땅에 묻는다.

68) 오상봉(吳相鳳) : 1801~1884.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태지(台至), 호는 지소(止巢)이다. 전라도

祧主埋墓所, 本墓甚遠, 則埋配位近墓, 何如?【吳相鳳】

[답] 편지에서 말한 신주를 매안하는 문제는, 신주는 본래 사당 가운데 두 계단 사이에 매안하니, 이는 인적(人跡)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묘(家廟)는 대부분 모양새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묘하(墓下)에 매안하니, 가까운 묘소에 신주를 매안하더라도 망자(亡者)의 넋을 해치지 않을 듯하다.
所示埋主, 本埋廟中兩階間, 蓋人跡不踏之地也. 今人家廟, 多不成樣, 故埋於墓下, 近墓埋主, 恐無傷於神理.

[문] 심의(深衣)는 선왕이 예법(禮法)에 근거해 규정한 복식인데, 옛날에는 길례(吉禮)와 흉례(凶禮)가 있을 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문인(文人)과 무인(武人),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착용하였으나 현재는 입는 자가 적습니다. -민기용-[69]
深衣先王法服, 而古者吉凶, 貴賤文武男女之通用, 今世則着之者鮮矣云云.【閔璣容】

[답] 심의는 과연 길례와 흉례가 있을 때 공통으로 입었으나 제도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가례도(家禮圖)〉에 의거하여 심의를 만들면 배와 등이 비틀어져서 몸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대 유자(儒者)들의 의론이 벌떼처럼 일어나 어느 하나로 귀결된 것이 없지만, 《의절가례(儀節家禮)》[70]

운봉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병인양요에 격문을 돌려 창의(倡義)하였고, 임종 때 《중용》, 《대학》, 《근사록(近思錄)》을 함께 매장하게 하고, 기정진이 준 지팡이도 함께 광중(壙中)에 넣도록 하였다.

69) 민기용(閔璣容) : 1824~?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중호(仲浩), 호는 봉리(鳳里)이다. 제천(堤川)에서 거주하였으며,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70) 의절가례(儀節家禮) : 명(明)나라 구준(丘濬, 1420~1495)이 지은 예서(禮書)인 《가례의절(家禮儀節)》을 말한다. 주희(朱熹)의 《가례》를 당시의 제도에 맞게 가감하고, 매 장(章)의 끝에 주석과 고증을 붙여 8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에 실린 백운(白雲) 주씨(朱氏)의 말 한 단락[71]을 보면 대략을 알 수 있다. 본래의 제도를 몰라서 요사스러운 복장을 하는 데에 가까울 바에야 몸에 편안하고 꼭 맞는 현재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낫다. 소요부(邵堯夫)의 말[72]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深衣果吉凶通服, 而制度未瑩. 若依〈家禮圖〉裁成, 則腹背辟戾, 不堪身著, 故後儒議論蠭起, 莫適歸一. 觀於《儀節家禮》白雲 朱氏一段語, 則可知其梗槩矣. 與其不獲本制而近於服妖, 不如今服之安穩, 邵堯夫之言, 豈欺我哉?

[문] 구변(鉤邊)은 겨드랑이 아래 꿰맨 곳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이른바 구갑(句甲)의 꿰맨 곳과 같습니까? -소필기-

鉤邊指腋下之縫, 而如今所謂句甲之縫耶?【蘇弼基】

[답] 《가례》의 뜻은 아마도 이러할 듯한데, 심의의 본문[73]은 끝내 이해하기

---

71) 백운(白雲) …… 단락 : 백운 주씨(朱氏)는 명나라 사람 주우(朱右, 1314~1376)로, 자는 백현(伯賢), 호는 추양자(鄒陽子)이다. 저서에 《백운고(白雲稿)》, 《심의고오(深衣考誤)》 등이 있다. 주우의 말은 "상의의 몸통 부분에 베 1폭을 쓰고, 소매에 베 1폭을 쓰고, 별도의 베 1폭으로 영(領)을 재단하고, 또다시 베 1폭으로 비스듬하게 잘라 두 조각으로 재단하여 안쪽과 바깥쪽의 금(襟)을 만들어 이를 상의의 몸통 부분에 꿰매어 이으면 상의는 6폭이 된다. 치마는 베 6폭을 사용하여 12조각으로 재단하는데, 뒤의 6조각은 옛 법식대로 하고 앞의 4조각은 바깥쪽의 금(襟)에 꿰매어 잇고 2조각은 안쪽의 금에 꿰매어 잇는다. 상의와 하상이 통틀어 12폭이 되니, 이렇게 하면 〈심의〉 본장(本章)의 문세가 순하게 된다. 옛 제도에는 금(襟)이 없으므로 영(領)이 약간 반듯하기만 할 뿐 각이 지지 않았다. 지금은 영의 양쪽 끝을 각각 안과 밖의 금 위에 꿰매어 붙인다. 그러므로 착용할 때 오른쪽 금의 끝을 왼쪽 겨드랑이 아랫부분[餘]에 비스듬하게 물리고, 왼쪽 금의 끝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비스듬하게 물리면, 양쪽 영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부분이 저절로 곱자 모양처럼 반듯하게 각이 지게 된다.[衣身用布一幅, 袖用一幅, 別用一幅布裁領, 又用一幅, 交解裁兩片, 爲內外襟, 綴連衣身, 則衣爲六幅矣. 裳用布六幅, 裁十二片, 後六片如舊式, 前四片綴連外襟, 二片連內襟, 上衣下裳, 通爲十二幅, 則於《深衣》本章, 文勢順矣. 舊製無襟, 故領微直而不方. 今以領之兩端, 各綴內外襟上. 穿著之際, 右襟之末, 斜交於左脅, 左襟之末, 斜交於右脅, 自然兩領交會, 方如矩矣.]"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내용은 《가례의절》 심의후도(深衣後圖)의 주(註)에 보인다.

72) 소요부(邵堯夫)의 말 : 소요부는 소옹(邵雍)을 가리킨다. 사마광(司馬光)이 《예기》에 근거하여 심의를 만들어 입었는데 소옹에게도 이를 입어 보라고 권하자, 소옹이 "저는 지금 사람이니, 지금 사람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某爲今人, 當服今人之衣.]"라고 대답하였다. 《宋名臣言行錄 外集 卷5》

73) 심의의 본문 : 《가례》의 심의제도(深衣制度) 조(條)를 가리킨다.

어려운 곳이 있다.
《家禮》之意, 恐是如此, 而深衣本文終有難通者.

[문] 심의의 제도에 대해 묻습니다. -안중섭-[74]
深衣之制云云.【安重燮】

[답] 심의에 관한 설명은《예기(禮記)》본문이 이미 소상하지 않은 데다〈가례도〉에 보이는 심의 역시 착용하기에는 알맞지 않다. 그러므로 송(宋)나라 이후 유자들의 의론이 여러 가지였으니, 사람들 중에 누가 오랫동안 분분한 의론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한다.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이 입는 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이니, 소옹(邵翁 소옹(邵雍))의 말이 진실로 내 마음과 부합한다. 내가 아는 바는 이와 같을 뿐이다.
深衣,《禮記》本文旣不消詳, 而〈家禮圖〉亦不合於服著, 故宋後諸儒議論多端, 人誰能決其聚訟也? 是以吾則付之無可奈何. 今人著今人之服, 邵翁之言, 實合吾心. 所知者如是而已.

74) 안중섭(安重燮) : 1808~1883.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순화(舜華), 호는 연상(蓮上)이다. 전라북도 고창(高敞) 출신으로, 기정진의 문인이다. 1880년(고종17)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進士) 3등으로 합격하였으며, 학행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저서에《연상집(蓮上集)》이 있다.

관례 5-2

冠禮五之二

[문] 계빈(戒賓)의 서식(書式)[75]과 사당의 고사(告辭)[76]에 있는 '모(某)' 자에 관해 묻습니다. -김영식-[77]
戒賓書式祠堂告辭"某"字.【金永植】

[답] 계빈을 주인이 스스로 행하면 위 절(節)의 말을 쓰고,[78] 만약 족인(族人)을 대신해서 행하면 아래 절을 써야 한다.[79] 절마다 위쪽의 '모(某)' 자는 계빈하는 사람의 이름이고, 아들[子] 아래쪽의 '모' 자는 장차 관례(冠禮)를 치를 사람의 이름이다. 사당의 고사(告辭)도 이와 같다.
戒賓主人自行, 用上節之辭, 若代其族人行之, 則當用下節. 每節上"某"字, 戒者名也, 子下"某"字, 將冠者之名也. 祠堂告辭亦然.

---

75) 계빈(戒賓)의 서식(書式) : 계빈은 관례를 치를 때에 빈이 되어 주기를 청하는 것으로, 《가례》에서는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를 아는 사람으로 한 명을 택한다고 하였다. 계빈의 서식은 "아무개에게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또는 아무개의 아무 친족에게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니, 그대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某有子某若某之某親有子某, 將加冠於其首, 願吾子之敎之也.]"이다. 《家禮 卷2 冠禮》

76) 사당의 고사(告辭) : 고사는 의식 때에 글로 써서 읽어 축하하거나 권고·훈시하는 말이다. 사당의 고사 형식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또는 아무 친족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오늘 관례를 마치고 감히 뵙습니다.[某之子某若某親某之子某, 今日冠畢敢見.]"이다. 《家禮 卷2 冠禮》

77) 김영식(金永植) : 1899~1930.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본적은 전라남도 장성(長城)이다. 대한독립애국단 가입 후 전라북도 고창(高敞)의 부호 강대직(姜大直)을 상대로 군자금 확보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강대선(姜大宣)·이기하(李起夏)·유희영(柳熙永)·이병국(李炳國) 등을 동지로 포섭하였다.

78) 주인이 …… 쓰고 : "아무개에게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니, 그대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某有子某, 將加冠於其首, 願吾子之敎之也.]"로 쓰라는 말이다.

79) 족인(族人)을 …… 한다 : "아무개의 아무 친족에게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려고 하니, 그대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某之某親有子某, 將加冠於其首, 願吾子之敎之也.]"로 쓰라는 말이다.

[문] 지금의 철옷은 입자(笠子)인데 입자는 어느 때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필기-
今之時服是笠子, 而笠子未知何時所製?【蘇弼基】

[답] 경산(瓊山)[80]의 설에 근거하면 입(笠)을 모(帽)라고 하였으니, 대명(大明) 때의 제도인 듯하다.
據瓊山說, 則以笠爲帽, 蓋大明時制.

[문] 모자의 제도는 어떤 모양입니까? -소필기-
帽子其制何樣?【蘇弼基】

[답] 구경산(丘瓊山)이 또한 "모자와 조삼(皂衫)[81]은 그 제도를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오늘날 쓰는 모자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다. 이른바 큰 모자[大帽]는 바로 입자이니, 비와 햇빛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이른바 작은 모자[小帽]는 주름진 깁[皺紗]이나 얇은 비단[羅]이나 두꺼운 비단[段]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이 설에 근거하면 머리에 쓰는 모든 복식이 모두 모자이다.
丘瓊山亦云: "帽子皁衫, 其制不可考." 又云: "今世所戴帽子有二等, 所謂大帽者, 乃是笠子, 用以蔽雨日之具. 所謂小帽者, 以皺紗或羅或段爲之." 據此說則凡冒於頭者, 皆帽子也.

---

80) 경산(瓊山) : 명(明)나라 때 경산(瓊山) 사람인 구준(丘濬)의 호(號)이다. 자는 중심(仲深)이고, 다른 호는 심암(深菴), 경대(瓊臺)이다. 경태(景泰) 5년에 진사가 되었고 한림원 편수(翰林院編修), 진시강(進侍講) 등을 거쳐 예부 상서(禮部尙書)를 지냈으며, 홍치(弘治) 4년에는 문연각 대학사(文淵閣大學士)를 지냈다. 주자학(朱子學)에 정통하였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며 저서에 《경대집(瓊臺集)》,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주자학적(朱子學的)》, 《가례의절(家禮儀節)》 등이 있다.

81) 조삼(皂衫) : 공복(公服)의 일종인 검은 저고리이다. 《송사(宋史)》 〈여복지(輿服志)〉에 사대부가에서 제사와 혼인, 관례 때의 성복에 처사(處士)가 입는 옷이라 했다.

[문] 자(字)는 이름을 높이려는 것인데, 지금 풍속은 별호(別號)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높여야 하는 분에게 별호로 부르는 것은 옳지만 나이가 비록 앞서더라도 마음에 높이지 않는 사람을 별호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김훈-
字以尊名, 今俗別號盛行. 於所尊, 呼以別號, 可也. 而年代雖先, 心所不尊者, 呼以別號, 似不可.【金勳】

[답] 옛날에는 자(字)로 이름을 높였는데 후세에는 문식(文飾)을 더해서[82] 별호로 자를 높였으니, 이는 옛날의 의리가 아니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오늘날에 태어나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내가 높여야 하는 분에게는 풍속을 따라 별호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 마음에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름과 자가 있으니, 어찌하여 이름이나 자를 피하고 별호를 부른단 말인가. 비록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한 마음속으로 천시하고 미워하여 일부러 상대방의 별호를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주자(朱子)가 장자소(張子韶)를 일컬어 '무구(無垢)'라고 하고,[83] 진회(秦檜)를 일컬어 '일덕대신(一德大臣)'이라고 한 것[84]이 이런 경우이다. 별호를 부르는 가운데에 폄하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또한 매번 부를 때마다 번번이 별호를 부를 필요는 없다. 내가 별호를 부르는 것과 별호를 부르지 않는 것에서 무엇을 택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古者字以尊其名, 後世彌文, 別號以尊其字, 非古義也. 雖然, 吾不能生今反

---

82) 문식(文飾)을 더해서 : 본문의 '미문(彌文)'은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우렵부(羽獵賦)〉에 "제도를 말할 때 혹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를 일컬으니, 이는 어찌 후세의 제왕이 문식을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或稱羲農, 豈或帝王之彌文哉?]"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文選 卷8》

83) 주자(朱子)가 …… 하고 : 장자소(張子韶)는 송(宋)나라 때 학자 장구성(張九成, 1092~1159)으로, 자소는 그의 자이다. 호는 무구거사(無垢居士) 또는 횡포거사(橫浦居士)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전당(錢塘) 출신으로 양시(楊時)의 제자이다. 벼슬은 예부 시랑(禮部侍郎), 형부 시랑(刑部侍郎)을 지냈으며, 경학(經學)에 전념하여 많은 훈해(訓解)를 남겼다. 선학(禪學)에 조예가 깊어 당시의 고승인 대혜(大慧) 종고(宗杲)의 법을 이었는데, 이로 인해 주희(朱熹)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에 《횡포집(橫浦集)》, 《맹자전(孟子傳)》, 《심전록(心傳錄)》 등이 있다.

84) 진회(秦檜)를 …… 것 : 진회(秦檜, 1090~1155)는 송나라 때의 재상으로, 자는 회지(會之)이다. 송 고종(宋高宗)이 즉위하기 전에 부인 형씨(邢氏)가 금(金)나라에 잡혀가 있었는데 고종이 즉위한 뒤에 형씨를 황후로 삼았다. 이때 진회가 금나라와 강화(講和)를 맺자 금나라가 형씨를 되돌려 보냈는데, 진회가 자신의 공이라고 여겨 집에 '일덕격천각(一德格天閣)'을 지었다. 《朱子書節要講錄 答詹帥書》

古, 則吾之所尊者, 從俗號之爲當. 若心所不尊, 旣有名與字, 何故回避而稱別號也? 雖然, 其間亦有心所賤惡而故稱其號者, 如朱子稱張子韶爲"無垢", 稱秦檜爲"一德大臣"是也. 蓋貶在稱號之中, 亦不必每稱輒號也. 吾之於號不號, 可以知所擇矣.

[문] 이름은 휘(諱)하고 자는 휘하지 않는 것이 옛날 일에 증거가 있습니까? -김유-[85]
諱名不諱字, 於古有證否?【金濡】

[답] 주자 이전에 이름을 휘하고 자를 휘하지 않은 것은 또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정(二程)[86]은 주무숙(周茂叔)[87]의 문인인데 어떤 사람이 이정에게 "어디에서 유학(遊學)하였는가?"라고 묻자, "주무숙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朱子以前, 諱名不諱字, 又有明證. 二程乃周茂叔之門人. 而有問於二程曰: "遊於何所乎?" 曰: "遊於周茂叔之門."

[문] 서찰(書札)에서 자신을 일컫는 말이 허다한데 높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간혹 '생(生)'이나 '병생(病生)'이라고 일컫습니다. -김훈-
書札自稱許多, 尊者於少者, 或稱"生"稱"病生".【金勳】

---

85) 김유(金濡) : 생몰연대 미상. 중호(仲浩)이고 호(號)가 송호(松浩), 본관은 원주(原州)로 두암(斗巖) 응남(應南)의 후손이며 기노사(奇蘆沙)의 문인(門人)이다.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여 백가경사(百家經史)에 통효(通曉)하지 않음이 없고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데부터 생각해 가니 조예(造詣)를 실제 터득하여 누차 스승의 문하에서 권장하고 치켜세워 줌을 받았다. 문집이 있다.

86) 이정(二程) : 송나라의 유학자인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킨다.

87) 주무숙(周茂叔) : 주돈이(周敦頤, 1017~1073)로, 자는 무숙, 호는 염계(濂溪)이다. 지방관으로서 각지에서 공적을 세운 후 만년에는 여산(廬山) 기슭의 염계서당(濂溪書堂)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문인들이 염계 선생이라 불렀다.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가르쳤으며 도학(道學 신유학)의 새로운 이론을 창시하였다. 저서에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서(通書)》가 있으며, 수필 〈애련설(愛蓮說)〉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답] 서찰 속에서 자신을 일컫는 말은 옛날에는 상하를 통틀어 모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지금 자신을 일컫는 허다한 말들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요컨대 모두 말세의 폐풍(弊風)이다. 높은 사람이 '생'이나 '병생'이라고 자신을 일컫는 것은 대체로 어떤 사안을 해명하는 곳에서 사용하는데, 모두 옛날대로 이름을 일컫는 것만 못하다.

書札間自稱, 古者通上下皆自名, 今之許多自稱, 不知其昉於何時, 要之, 皆末俗弊風也. 若尊者自稱"生"與"病生", 大抵分疎處用之, 都不若依古稱名.

혼례 5-3

昏禮五之三

[문] 지금 풍속에서 혼례 때 친영(親迎)하는 예를 쓰지 않으니, 이것이 혹 권도(權道)[88]에 부합합니까? -여봉섭-

今俗昏禮, 不用親迎之禮, 此或合於權宜耶?【呂鳳燮】

[답] 지금 사람이 행하는 혼례는 예를 제정한 본래의 의미에 크게 어긋난다. 예에서 벗어난 예는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

昏禮今人所行, 大違制禮之本義. 禮外之禮, 存而勿論, 可也.

[문] 초자(醮子)[89]를 할 때는 어머니의 당부[命]가 없는데 딸을 보낼 때는 부모와 서모(庶母)가 모두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석귀-

醮子, 無母命, 而送女, 父母與庶母皆有命, 何?【金錫龜】

[답] 초자는 딸을 보내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붕우(朋友)가 먼 길을 떠날 때에도 증언(贈言)[90]이 있는데, 하물며 어머니가 출가(出嫁)하는 딸에게 어찌 말 한마디가 없을 수 있겠는가.

醮子不可與送女比. 朋友遠行, 亦有贈言, 况母之於女之出嫁, 其可無一言乎?

[문] 지금 풍속은 평상시에 아내와 서로 절하는 경우가 적으니, 이는 항렬이

88) 권도(權道) : 임시방편으로 시의(時宜)에 맞게 조처하는 것을 말한다. 경도(經道)는 상도(常道)라고도 하는데, 정도(正道)를 지켜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89) 초자(醮子) : 혼례에서 신랑의 부모가 신랑이 친영하러 갈 때 전송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 의식이다.《家禮 卷3 昏禮》

90) 증언(贈言) : 이별할 때 떠나는 사람에게 격려나 충고의 말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기홍연-
今俗平時, 鮮能與妻相拜, 待之以卑幼?【奇弘衍】

[답] 아내는 나와 대등한 사람[敵體]이니,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예를 행할 때 절을 해야 하는 것에는 의심할 것이 없다.
妻是敵體, 不可以卑幼論, 行禮時當拜無疑.

[문]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개암[榛], 밤[栗], 포(脯), 긴 포[脩], 대추[棗], 헛개[棋]의 폐백이 있는데, 만약 시부모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폐백을 나누어 묘현(廟見)할 때 올리더라도 혹 옳겠습니까? -여봉섭-
新婦見舅姑, 有榛栗脯脩棗棋之贄, 若舅姑一有先沒, 則分其贄物, 廟見時薦之, 或可耶?【呂鳳燮】

[답] 폐백을 나누어 묘현할 때 사용하는 것은 행해서는 안 될 듯하다.
分其贄物而用於廟見, 恐不可行.

[문] 장인과 장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아내의 선조의 사당에 참배(參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봉섭-
妻父母已沒, 則參謁於妻之先廟, 何如?【呂鳳燮】

[답] 선조의 사당에 참배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參謁於先廟, 何妨也?

[문] 신혼 때 처가에서 난물(餪物)[91]을 보내는데 이를 가묘(家廟)에 올리는

91) 난물(餪物) : 여자가 시집간 뒤 3일 만에 친정이나 친척이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음식을 말한다.

것이 정례(情禮)에 맞습니까? -여봉섭-
新婚時, 婦家有餟物, 薦于家廟, 得於情禮否?【呂鳳燮】

[답] 난물을 사당에 올리는 것은 설만한 짓에 가깝다.
餟物薦廟, 近於褻.

[문] 인가(姻家)를 '사돈[査]'이라고 일컫는 것은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척가(戚家)와 혼인을 하였으니, 척가의 군종(群從)[92]과 함께 모두 서척(敍戚)[93]해서는 안 됩니까? -소필기-
姻家稱"査", 出處安在? 不用何如? 結親於戚家, 則與其羣從皆不可敍戚耶?【蘇弼基】

[답] 인가를 '사돈'이라고 일컫는 출처는 듣지 못했으나 이를 쓰면 지금의 예절을 따르는 것이 될 듯하고 쓰지 않으면 또한 옛날의 예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척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어찌 군종인 친척까지 관계를 파할 필요가 있겠는가.
姻家稱"査", 出處未聞, 用之似或爲從今, 不用亦爲存古. 戚人結親, 何必幷破羣從之戚耶?

[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약혼하였는데 상을 마치기를 기다려 혼례를 이루고자 하여 담제(禫祭)를 지내는 달 안으로 혼인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혼례를 행할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혼례를 일단 행해야 합니까, 정해진 날짜를 물려야 합니까? -소필기-
有人與人約昏, 欲待喪畢成禮, 而定昏日于禫月之內, 晩覺不然, 而日已迫.

---

92) 군종(群從) : 당형제(堂兄弟) 및 조카들을 가리킨다.

93) 서척(敍戚) : 멀어진 딴 성(姓)의 겨레붙이가 그 친척 관계를 서로 말하는 것이다.

權行耶? 退期耶?【蘇弼基】

[답] 혼례를 행하면 담제에 방해가 되고, 담제를 행하면 혼례에 방해가 되니, 어찌 양쪽 다 편한 방도가 있겠는가.
行禮則妨私, 行私則妨禮, 豈有兩便之道?

[문] 외종형제와 자매가 혼인을 하는 것을 옛날에는 혐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봉섭-
外從兄弟姊妹爲昏, 古之時, 不以爲嫌耶?【呂鳳燮】

[답] 동성(同姓) 간에는 백세토록 통혼(通婚)하지 않는 것이 주(周)나라의 도이다. 그러나 이성(異姓)은 꺼리지 않기 때문에 내종과 외종은 통혼하는 경우가 있다.
百世婚姻不通, 周道也. 異姓不忌, 故內外從有通婚者.

[문] 먼 족조손(族祖孫)이 이종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김훈-
遠族祖孫爲姨從兄弟, 何以呼之?【金勳】

[답] '이형(姨兄)'이나 '이제(姨弟)'로 불러야 할 듯하다.
恐當稱"姨兄""姨弟".

[문] 지금 풍속은 아내가 죽고 장사를 지낸 뒤에 으레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데 저는 자식이 있어서 정리상 차마 할 수 없습니다. 3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경연-
今俗妻死葬後, 例行改娶. 而慶衍有息子, 情在所不忍, 待三年何如?【奇慶衍】

[답] 예에 “3년이 지난 뒤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다.”[94]라고 하였으니, 네가 행하려는 것이 진실로 원칙적인 예에 부합한다.

禮云: “三年而娶, 達子之情.” 汝之所行, 實合經禮.

94) 3년이 …… 위함이다 : 《의례》〈상복(喪服)〉 부재위모장(父在爲母章)의 전(傳)에 “아버지가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장가를 드는 것은 자식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다.[父必三年然後娶, 達子之志也.]”라고 하였다. 자식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죽은 어머니를 위해 압굴(壓屈)되어 기년복(朞年服)을 입으나, 심상(心喪)은 3년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비록 아내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더라도 심상을 치르는 자식의 마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 3년이 지난 뒤에 재취(再娶)하는 것이다.

《답문류편》
答問類編

권12 卷之十二

상례 5-4 상[喪禮五之四上]

상례 5-4 상

喪禮五之四上

[문] 임종할 때는 병든 사람을 정침(正寢)으로 옮기는데,[95] 비단 마음이 슬플 뿐만이 아니라 들어서 부축하여 옮길 때 혹시라도 갑자기 숨이 끊어지게 된다면 효자(孝子)의 마음에 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재규-[96]
將死, 遷出正寢, 不但傷其心也, 扶擧遷動之際, 或致奄絶, 孝子之心, 能無憾乎?【鄭載圭】

[답] 옛사람은 예(禮)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니, 곁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옮기게 한 것이 아니다.
古人習於禮, 故病者自能如此, 非傍人强之使遷也.

[문] 지금 사람은 병이 위독해지면 내실(內室)로 옮겨 거처하니,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병든 사람을 안정시키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김한기-
今人遷居內室, 遷動恐非安穩病人之道.【金漢驥】

[답] 예는 궁실(宮室)에서 시작되었으니, 옛사람이 정침을 둔 것은 예를 행하기 위함이다. 중요하지 않은 잡무는 하실(下室)[97]을 두어 처리하였다.

---

95) 임종할 …… 옮기는데 : 《가례(家禮)》 권4 〈상례(喪禮) 초종(初終)〉에 "병이 위독해지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한다.[疾病, 遷居正寢.]"라고 하였다.

96) 정재규(鄭載圭) : 1843~1911.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영오(英五)·후윤(厚允), 호는 노백헌(老柏軒)·애산(艾山)이다. 청계(淸溪)는 초계의 이칭(異稱)이다. 김홍집(金弘集) 등 개화파에 의한 개화운동이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장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유림에게 통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진 후 최익현(崔益鉉) 등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저서로 《노백헌집(老柏軒集)》이 있다.

97) 하실(下室) : 살아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일을 보던 곳을 말한다. 연침(燕寢), 내실(內室), 내당(內堂)과 같은 의미이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경의 내자로 아직 군주의 명을 받지 않은 자는 하실에서 숨을 거두고, 시신을 정침으로 옮긴다.[內子未命, 則死於下室, 遷屍於寢.]"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 여염(閭閻)의 내실에서 어찌 병이 위독한 장부(丈夫)를 옮겨 거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거처를 옮기는 것에 관한 우려로 말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는 병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아랫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禮起於宮室, 古人之有正寢, 所以行禮. 冗雜事蓋有下室焉. 今之閭閻內室, 豈容疾病丈夫遷居? 行不得之事. 若遷動之慮, 則却不然. 此是病人所欲, 非自下强之也.

[문] "안팎을 안정시키고 조용히 하여 병든 사람의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98]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병든 사람이 임종할 적에 자녀가 된 자는 몹시 애통하여 스스로 그만둘 수 없으니, 어떻게 안정시키고 조용히 하여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립니까? -김한기-
"內外安靜, 以俟氣絶". 將終之際, 爲子女者, 哀痛迫切, 自不能已, 何以安靜以俟乎?【金漢驥】

[답] 정종(正終)[99]은 하나의 큰일이니, 어찌 감히 자신이 매우 애통하다는 이유로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매우 옳지 않다.
正終是一大事, 豈敢以己之哀痛迫切亂之? 大不可.

[문] 상(牀)을 치우는 절차에서 《상례비요(喪禮備要)》[100]에는 평상시에

정현(鄭玄)의 주에 "하실은 편안하게 거처하던 곳이다.[下室, 其燕處也.]"라고 하였다.

98) 안팎을 …… 기다린다 : 《가례》 권4 〈상례 초종〉의 '병이 위독해지면 정침으로 옮겨 거처한다' 조목에 "안팎을 안정시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으며, 부인은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內外安靜, 以俟氣絶. 男子不絶於婦人之手, 婦人不絶於男子之手.]"라고 하였다.

99) 정종(正終) : 임종 때 바르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늙어 집에서 죽는 것을 말한다. 증자(曾子)가 죽을 때 "내가 바름을 얻어서 죽는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吾得正而斃焉, 斯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禮記 檀弓上》

100) 상례비요(喪禮備要) : 신의경(申義慶)이 《가례》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예설(禮說)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을 치우는 절차를 쓸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101] 또 어찌하여 천시(遷尸)[102]·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103] 조(條)에서 상을 언급하였습니까? -정재규-
廢牀之節,《備要》以平時不用, 謂無所施, 而又何言牀於遷尸襲陳小大斂條耶?【鄭載圭】

[답] 평상시에는 비록 상을 사용하지 않지만 시상(尸牀 시신을 안치하는 침상)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常時雖不用牀, 而尸牀不可無.

[문] 복부를[復] 때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을 잡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기(喪大記)〉에 "혼이 천지 사방 사이에서 오기를 바란다."[104]라는 문구가 있는데, 복부를 때 굳이 북쪽을 향해 부르는 것은

참고하여 1권 1책으로 편찬한 책인데, 뒤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여러 대목을 보충하고 시속의 예제(禮制)까지 참고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다음 서문을 붙였으며, 그 뒤 김장생의 아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이를 교정하여 2권 1책으로 1648년(인조26)에 간행하였다.

101) 평상시에 …… 하였는데 : 《상례비요》〈초종(初終)〉에 "고례(古禮)에 상을 치우는 절차가 있으니, 《가례부주(家禮附註)》 및 《가례의절》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평상시에 상을 쓰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시행할 곳이 없다.[古禮有廢牀之節,《家禮附註》及《儀節》皆收錄. 但我國人平時不用牀, 則無所施耳.]"라고 하였다. 《가례부주》는 주희의 제자 양복(楊復)이 지은 《가례잡설부주(家禮雜說附註)》를 말한다.

102) 천시(遷尸) : 시신을 옮겨 놓는다는 뜻이다. 초상에 시신을 옮기는 일이 여러 번 있는데, 여기에서의 천시는 소렴(小斂)을 마치고 나서 대렴(大斂) 전에 습상(襲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신을 옮겨 놓는 것을 가리킨다.《家禮 喪禮》

103) 천시(遷尸) …… 대렴(大殮) : 원문의 '陳'은 《상례비요》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104) 혼이 …… 바란다 :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상대기〉의 "임금의 가까운 신하가 복부르되 복부르는 자는 조복을 입으니, 임금에게는 곤룡포를 사용하고 부인에게는 궐적(屈狄)을 사용하고 대부에게는 현정(玄槙)을 사용하고 세부(世婦)에게는 전의(禫衣)를 사용하고 사(士)에게는 작변복(爵弁服)을 사용하고 사의 처에게는 단의(稅衣)를 사용한다. 모두 동쪽 추녀로 올라가서 지붕 한 가운데의 높은 곳을 밟고서 북쪽을 향하여 세 번 부르고, 옷을 거두어서 앞으로 던져서 사복(司服 길흉의 의복을 맡은 관원)이 이것을 받으면 서북쪽 추녀로 내려온다.[小臣復, 復者朝服. 君以卷, 夫人以屈狄, 大夫以玄

무슨 의미입니까? 고례(古禮)는 서북쪽 추녀[榮]에서 내려오면서 차마 헛되이 돌아오지 못하였는데《가례》에서는 이 절차를 뺀 것은 어째서입니까? 오늘날 복부를 때에는 시자(侍子)를 쓰되 남자에게 관직이 없으면 '아무개 생원'이라고 부르고 부인은 '아무개 말루하(秣樓下)[105]'라고 부르니, 이는 평상시의 호칭을 따르는 의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정재규-

復, 左執領, 右執要, 何義? 〈喪大記〉有"冀魂自天地四方之間而來"之文, 必北面, 何義? 古禮降自西北榮, 不忍虛反. 而《家禮》闕之, 何也? 今世復, 用侍者, 而男子無官, 則稱"某生員", 婦人稱"某秣樓下". 此不爽於隨常時之義耶? 【鄭載圭】

[답] 왼손으로 옷깃을 잡는 것은 양(陽)을 높이는 의미이다. 북쪽을 향해 부르는 것은 음(陰)에서 구하는 의미이다.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가례》가 간략함을 따랐다. 고례(古禮)는 복부를 때 성명을 부르고 우리나라 습속은 살아생전에 부르던 호칭을 따르는데, 고례가 옳은 듯하다.

左領, 尊陽也. 北面招, 求諸陰之義. 降自西北,《家禮》從約. 古禮復, 呼姓名, 東俗隨生時所稱. 恐古禮爲得.

[문] 〈상대기〉에 "남자는 이름을 부르고 부인은 자(字)를 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례는 부인의 경우 이미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격몽요결(擊蒙要訣)》[106]

嶺, 世婦以襢衣, 士以爵弁, 士妻以稅衣. 皆升自東榮, 中屋履危, 北面三號, 捲衣, 投于前, 司服受之, 降自西北榮.]"라는 구절의 주석에 "세 번 부르는 것은 한 번은 위로 불러 혼이 하늘에서 돌아오기를 바람이며, 한 번은 아래로 불러 혼이 땅에서 돌아오기를 바람이며, 한 번은 가운데로 불러 혼이 천지 사방 사이에서 돌아오기를 바람이다.[三號者, 一號於上, 冀魂自天而來, 一號於下, 冀魂自地而來, 一號於中, 冀魂自天地四方之間而來.]"라고 하였다.

105) 말루하(秣樓下) : 마누라의 차음(借音)이다. '秣'은 '抹'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106) 격몽요결(擊蒙要訣) : 1577년(선조10)에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편찬한 책이다.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 사친(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거가(居家), 접인(接人), 처세(處世)의 10장으로 나누고, 사당도(祠堂圖), 시제도(時祭圖), 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 참례의(參禮儀), 천헌의(薦獻儀), 고사의(告事儀), 시제의(時祭儀), 기제의(忌祭儀),

에서 “부인의 경우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107]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서의(書儀)》[108]에는 “혹은 관직의 명칭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평소 부르던 호칭대로 부르기도 한다.”[109]라고 하고, 《가례》에는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 있을 때 부르던 호칭을 따른 것이다.”[110]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복부를 때 평상시의 호칭을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만 그러할 뿐만이 아닙니다. 또 남자는 고례를 따라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풍속에 부인은 자가 없으니, 만약 자가 없다고 하여 부인에게도 이름을 부른다면 고례를 어기고 풍속을 따르는 격입니다. 한 쪽은 고례를 따르고 한 쪽은 풍속을 따르는 것은 잡스럽지 않습니까? 이에 감히 다시 여쭙습니다.
-정재규-
〈喪大記〉曰: “男子稱名, 婦人稱字.” 古禮婦人已不呼名, 《要訣》所謂“婦人尤不宜呼名”, 以此也. 《書儀》曰: “或稱官封, 或依常時所稱.” 《家禮》曰: “呼某人者, 從生時之號.” 然則復呼常稱, 非但東俗爲然. 且男子從古禮呼名, 今俗婦人無字. 若以無字而亦呼名, 則違古隨俗, 則一古一俗, 無乃斑駁乎? 玆敢更稟.【鄭載圭】

[답] 우리나라 풍속에서 평상시에 부르는 호칭은 대부분 비루하여 들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고례가 옳은 듯하다고 한 것이지, 나의 의견을 세워서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東俗常稱, 多陋不可聞, 故曩有云云, 非欲立定己見也.

묘제의(墓祭儀), 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을 첨부하였다.

107) 부인의 …… 된다 : 《격몽요결》 〈상제 장(喪制章)〉에 보인다.

108) 서의(書儀) : 북송 대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책으로, 고금(古今)의 예 가운데 당시에 행할 만한 것을 참작하여 만들었다. 표주(表奏) 공문(公文) 사서(私書) 가서(家書)의 서식(書式) 1권, 관의(冠儀) 1권, 혼의(婚儀) 2권, 상의(喪儀) 6권 등 도합 10권이다.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의 형식과 내용에 많이 반영되었다.

109) 혹은 …… 한다 : 《서의》 권5 〈상의(喪儀) 복(復)〉에 보인다.

110) 아무개라고 …… 것이다 : 《가례》 권4 〈상례 초종〉에 보인다.

[문] 복부르기를 마친 뒤에는 곡을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데, 복부를 때는 곡을 그치는 이유는 혼기(魂氣)가 육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입니까? -김한기-
復畢哭擗. 復時輟哭, 冀其魂氣還復形體歟?【金漢驥】

[답] 그렇다.
然.

[문] 객지에서 죽으면 자질(子姪)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복부릅니까? -이최선-[111]
死於客地, 則待子姪之來而始皐復耶?【李最善】

[답] 수레에서 죽었으면 마땅히 식(軾)에 올라가 불러야 하니, 자질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死於車中, 則當登軾而呼, 不係子姪之有無也.

[문] 설치(楔齒)[112]할 때는 젓가락[筯]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희원-
揳齒以筯, 而今多不用.【鄭禧源】

[답] 설치할 때 지금 사람 또한 어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버드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揳齒, 今人亦豈不用? 以柳木爲筯而用之者有矣.

---

111) 이최선(李最善) : 1825~1883.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 아버지는 이규형(李奎亨)이며 어머니는 상산김씨(商山金氏)로 김문기(金文基)의 딸이다. 기정진(奇正鎭)의 제자이다. 주리설에 바탕해 척사위정을 실천한 문인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의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석전집(石田集)》4권 2책이 있다.

112) 설치(楔齒) : 반함(飯含)을 할 적에 죽은 사람의 입이 닫히지 않도록 쐐기를 물리는 것이다.

[문] “설치할 때는 각사(角柶 뿔로 만든 숟가락)를 사용한다.[楔齒用角柶.]”[113]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이최선-
“揳齒用角柶”云云.【李最善】

[답] 각사는 수저 종류인 듯하다. 옛날에는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후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는 젓가락으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각사는 평상시에 입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물건이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쇠젓가락으로 하지 않고 각사를 사용하는 것은 구부리고 펼 수 있는 점을 취한 듯하다. 죽은 사람의 입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반함(飯含)[114]하는 절차를 두고, 장차 반함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절차를 두었다. 이것이 바른 뜻이니, 부수적인 뜻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도리어 바른 뜻을 가린다.
角柶蓋匙筯之類. 古有此物, 而後世則無矣. 是以《儀節》代以筯. 角柶, 常時出入口中之物, 故用以揳齒. 不以鐵筯而用角柶者, 似取其可屈伸. 不忍其口之虛, 故有飯含, 將飯含, 故有揳齒, 此是正意. 以傍意揷入其間, 反晦正意.

[문] 설치는 장차 반함하려 할 때 입이 다물어지는 것 때문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모름지기 속광(屬纊)[115]할 때 죽은 사람의 입이 다물어졌는지 다물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서 입이 다물어졌으면 고례와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따라 설치하고, 다물어지지 않았다면 풍속과 《가례(家禮)》를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재규-
揳齒爲將含而閉口也. 須於屬纊之時, 審其口之閉與不閉, 閉則從古從《備要》揳之, 否則從俗從《家禮》不揳, 何如?【鄭載圭】

---

113) 설치할 …… 사용한다 : 《예기》 〈상대기〉에 보인다.

114) 반함(飯含) : 시체를 염(殮)할 때 구슬 또는 돈으로 입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선비나 서인인 경우 쌀로 채우기도 한다.

115) 속광(屬纊) : 광(纊)은 햇솜으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코나 입에 햇솜을 대어 호흡 여부로 죽음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답] 반함할 때 쌀이나 자개를 사용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속이 비어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이니, 그렇다면 옛날에 쌀이나 자개로 반함한 것은 죽은 사람의 입속을 채우기 위함이다. 지금 사람은 예를 따라 반함을 거행하는 것이 입술 사이에 물려놓는 데에 불과하니, 설치를 할 것이 없다.
含以米貝, 不忍其口之虛也. 然則古之含以米貝, 實其口也. 今人依禮擧行, 不過唇吻之間, 無所事楔矣.

[문] "철족(綴足)할 때는 반드시 연궤(燕几)를 사용한다.[綴足必用几.]"[116] 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이최선-
"綴足必用几"云云.【李最善】

[답] 연궤도 몸에 바싹 붙여서 사용하는 물건이니, 연궤를 사용하여 철족하는 것은 바로 설치할 때 각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几亦近身之物, 用以綴足, 正似揳齒之用柶.

[문] 지금 풍속에 철견(綴肩)[117]하는 절차 하나가 있는데 예에는 상고할 곳이 없습니다. 철견하는 것은 또한 장차 입관(入棺)하려고 할 때 양쪽 어깨가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에 3일 째에 시신을 염(殮)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장차 다시 살아날 것처럼 여겨서 기다리는 것이니,[118] 만약 막

116) 철족은 …… 사용한다 : 《예기》 〈상대기〉에 보이는데, 여기에는 '綴足用燕几'로 되어있다. 철족은 발이 비틀어져서 신발을 신기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연궤에다 발을 잡아매는 것이다. 연궤는 평소에 몸을 기대던 궤를 말한다.

117) 철견(綴肩) :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근거하면 어깨가 비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깨를 단단히 매어 두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118) 3일 …… 것입니다 : 《예기》 〈문상(問喪)〉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죽은 지 사흘 이후에 염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물음에 "효자는 어버이가 죽으면 슬프고 애통하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면서 곡하며 장차 다시 살아날 것처럼 여기니, 어찌 그 심정을 무시하고 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3일이 지난 뒤에 염하는 것은 살아나기를 기다림이다.[孝子親死, 悲哀志懣. 故匍匐而哭之, 若將復生然, 安可得奪而斂之也? 故曰三日而後斂者, 以俟其生也.]"라고 답하였다.

죽었을 때 철견한다면 비록 입관하기에는 편하더라도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차마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정재규-
今俗有綴肩一節, 而於禮未有所考. 蓋亦爲將入棺而兩肩辟戾也. 然禮三日而斂, 若將復生而俟之也, 若於始死而綴肩, 則雖便於入棺, 而於俟生之心, 有所不忍爲也.【鄭載圭】

[답] 철견 또한 없앨 수 없는 절차이다.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기필코 차마 철견할 수 없다면, 설치하고 철족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綴肩亦不可廢者. 必以俟生之心, 有所不忍爲, 則其揲齒綴足, 何耶?

[문] "궤전(饋奠)을 받든다.[奉饋奠.]"[119]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이는 온공(溫公)[120]의 "자손이 집상(執喪)하고 아버지나 조부가 빈객에게 절한다."[121]라는 설로 인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무릇 상은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궤전 역시 아버지나 조부가 주관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하물며 장사를 지낼 때의 여러 전(奠) 및 제사에 축사(祝辭)가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정재규-
"奉饋奠"云云. 此因溫公"子孫執喪而父祖拜賓"之說而云然耶? 凡喪, 父在, 父爲主. 其饋奠亦似當父祖主之. 况葬時諸奠及祭有祝辭者耶?【鄭載圭】

---

119) 궤전(饋奠)을 받든다 : 《가례》 권4 〈상례 초종〉의 '상주를 세운다[立喪主]' 조목에 "주인은 장자를 말한다.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궤전을 받든다. 빈객과 더불어 예를 행하는 것은 같이 사는 자들 중에 친하고 항렬이 높은 자가 주관한다.[凡主人, 謂長子. 無則長孫用重, 以奉饋奠. 其與賓客爲禮, 則同居之親且尊者主之.]"라고 하였다. 궤전은 염습 때부터 장사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신위 앞에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물을 갖추어 제사지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120) 온공(溫公) :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사마광이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온공이라 한다. 혹은 성(姓)을 붙여 사마온공이라고도 한다.

121) 자손이 …… 절한다 : 《서의(書儀)》 권5 〈상의(喪儀) 복(復)〉에 "죽은 자에 대한 일을 행하고 상주를 세운다.[行死事, 立喪主.]"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만약 자손의 상이 있으면 조부나 아버지가 주관하되, 자손이 상을 집행하고, 조부나 아버지가 빈객에게 절한다.[若子孫有喪, 而祖父主之, 子孫執喪, 祖父拜賓.]"라고 하였다.

[답] 하실(下室)에 음식을 올리는 것은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행해야 한다. 만약 이름이 있는 은전(殷奠)[122]이라면 항렬이 높은 사람이 주관하게 해야 할 듯하다.
下室之饋, 卑幼者當行之, 若有名殷奠, 似當尊者主之.

[문] "주부(主婦)를 세운다."[123]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만약 연로하여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김한기-
"立主婦"云云. 主喪者若年老無妻, 何以處之?【金漢驥】

[답] 연로하여 아내가 없다면 어찌 주부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옛날의 대종자(大宗子)는 연로했더라도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다.
年老無妻, 豈有主婦? 是以古之大宗子, 年老亦再娶.

[문] 종손(宗孫)으로는 오직 5대손과 6대손만 있고 차손(次孫)으로는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이 있다면, 이때 조부의 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비록 차손이라도 이미 대수(代數)가 다하지 않은 증손과 현손이 있다."라고 한다면[124] 대수가 다하지 않은 증손과 현손이 주관해야 할 듯합니다. -김석귀-
宗孫惟有五代六代孫, 次孫有曾玄孫, 則於是, 祖之喪, 誰爲主之? 曰"雖次孫, 旣有曾玄孫之代未盡者", 則恐當主之.【金錫龜】

---

122) 은전(殷奠) : 은(殷)은 성대하다는 뜻으로, 성찬을 차린 큰 제사를 말한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평소보다 성대하게 제수(祭需)를 갖추어서 제사를 올린다.

123) 주부(主婦)를 세운다 : 《가례》 권4 〈상례 초종〉의 '상주와 주부를 세운다[立喪主主婦]'는 조목을 가리킨다.

124) 비록 …… 한다면 : 원문의 '曰雖次孫 旣有曾玄孫之代未盡者'는 문맥을 살펴보면, '曰雖次孫'은 '雖曰次孫'의 잘못으로 보이는데, 원문대로 번역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만약 '雖曰次孫'으로 고쳐 번역하면 "비록 차손이라 하더라도 대수가 다하지 않은 증손과 현손이 있는 이상"이다.

[답] 이 일은 문구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5대손과 6대손이 조부가 살아있을 때 이미 봉양하였다면 어찌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주를 바꿀 수 있겠는가.
此事不可句斷. 五代六代孫, 生時旣奉養, 則安可以一朝身歿而卒然易主也?

[문] 고자매(姑姊妹 고모)의 상에 부당(夫黨)이 없으면 본당(本黨)의 조카와 형제가 상을 주관합니까? -김석귀-
姑姊妹喪, 無夫黨, 本黨姪與兄弟主之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적자(嫡子)와 적손(嫡孫)이 모두 후사 없이 죽어서 후사를 세우지 못했는데 조부가 죽었으면 상을 주관하는 사람은 차자(次子)로 합니까, 차손(次孫)으로 합니까? 차자로 상을 주관하게 한다면 전중(傳重)[125]하는 계통은 이미 손자에게 있고 차손으로 상을 주관하게 하면 참최복(斬衰服)을 입는 아들과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손자는 상복의 경중에 차등이 있습니다. 고례(古禮)의 "어버이가 같으면 연장자가 주관하고 다르면 가까운 사람이 주관한다.[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126]라는 설을 참고해 살펴보면 차자로 상을 주관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오계수-
嫡子嫡孫, 俱死無嗣, 不得立後, 而其祖死則主喪以次子乎? 以次孫乎? 以次子則傳重之統, 已在於孫, 以次孫則服斬之子與服期之孫, 服之輕重有差,

---

125) 전중(傳重) : 상제(喪祭) 및 종묘(宗廟)의 중책을 손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종법(宗法)에는 적서(嫡庶)의 구별이 엄격하여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서자(庶子)가 있어도 손자가 조부의 대를 이었으므로, 조부의 처지에서 말하면 '전중'이라고 하고, 손자의 처지에서 말하면 '승중(承重)'이라고 한다.

126) 어버이가 …… 주관한다 : 《예기》 〈분상(奔喪)〉에 보인다.

以古禮“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之說旁照, 則似當以次子矣.【吳繼洙】

[답] 곁가지가 뻗어나가 줄기가 되는[127] 뜻으로 차자에게 종통(宗統)을 옮겼으니, 장자의 차자가 승중(承重)[128]하는 것이 옳다.
以旁枝達爲正幹之義, 移宗於次子, 則長子之次子承重, 可也.

[문] 부인이 과부가 되어 이미 아들에게 전중(傳重)하였는데 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었다면 상을 주관하는 사람은 망자(亡者)의 어머니로 정합니까, 망자의 아내로 정합니까? -오계수-
婦人寡居, 已傳重於子, 而其子死無子, 則主喪以亡者之母耶? 亡者之妻耶? 【吳繼洙】

[답]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연로하여 이미 전중하였다면 도로 다시 수중(受重 승중)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망자의 아내로 상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舅沒姑老, 已爲傳重, 則還復受重, 不可, 當以亡者之妻主喪.

[문]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됩니다.[129] 그런데 만약 지자(支

127) 곁가지가 …… 되는 : 정이(程頤)의 “종자의 법을 세우는 것 또한 천리이다. 비유하자면 나무에는 반드시 뿌리에서 곧바로 올라간 하나의 줄기가 있고 반드시 곁가지도 있는 것과 같으며, 또 물이 비록 멀리 흘러가더라도 반드시 바른 근원이 있고 반드시 갈라진 물줄기도 있는 것과 같으니, 이는 절로 그렇게 되는 형세인 것이다. 그러나 곁가지가 뻗어서 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 천자가 나라를 세워 주면 제후가 종(宗)을 빼앗는다.’라고 한 것이다.[立宗子法, 亦是天理. 譬如木必有從根直上一榦, 亦必有旁枝, 又如水雖遠必有正源, 亦必有分派處, 自然之勢也. 然而又有旁枝達而爲榦者, 故曰“古者天子建國, 諸侯奪宗”云.]”라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二程遺書 卷18》

128) 승중(承重) : 상사(喪事)·제사나 종묘(宗廟)의 중임(重任)을 자손이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상의 입장에서는 전중(傳重)이다.

129) 아버지가 …… 됩니다 : 《예기》 〈분상〉에 “모든 상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子)의 아내의 상이라면 누가 상주가 됩니까? -정오현-
父在, 父爲主. 若支子妻喪, 則誰爲主耶?【鄭五鉉】

[답] 지자는 각기 거처하니, 마땅히 각자 아내의 상을 주관해야 한다.
支子各居, 當自主其妻喪.

[문] 중국에 영향을 끼친 오랑캐의 풍속이 많은데 유독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被髮]만은 취하였습니다. -이최선-
蠻俗之染於中國者多, 而獨取被髮云云.【李最善】

[답]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진실로 오랑캐의 풍속이지만 이를 인습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또 사람은 본래 머리카락을 묶은 채로 태어나는 일이 없으니, 장식을 없애고 또 없애면 머리를 풀어 헤치는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혹여 하나의 방도일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유독 취하였다[獨取]'는 두 글자는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被髮固蠻俗, 而承襲已久. 且人本無束髮而生者, 去飾又去飾, 則至於被髮矣. 謂是或一道則可, "獨取"二字, 恐不穩當.

[문] 위 옷섶을 허리에 끼고, 맨발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김한기-
扱上衽, 徒跣, 何義? 而不及於婦人歟?【金漢驥】

[답] 위 옷섶을 허리에 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맨발을 하는 것은 변고가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부인은 외설스러운 혐의가 있으니, 어찌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扱上衽, 防顚躓, 徒跣, 示變. 婦人嫌於褻, 豈可同於男子?

된다.[凡喪, 父在, 父爲主.]"라고 하였다.

[문] 상복을 입는 자가 관을 벗고 망건(網巾)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의(威儀)가 없습니다. 또 《개원례(開元禮)》[130]가 편찬되기 이전에는 비록 부모상이라도 관만 벗었을 뿐이니, 만약 관을 벗는다면 이는 옛날의 삼년복을 입는 예(禮)와 차이가 없습니다. -정희원-
有服者去冠不網, 甚無儀. 且《開元禮》以前, 雖父母喪, 只去冠而已. 若去冠則是與古之服三年者無異.【鄭禧源】

[답] 관을 쓰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不冠恐不當.

[문] 수암(遂菴)[131]이 말하기를, "흑포립(黑布笠)은 화려한 복색이 아니니, 비록 조부상과 아내의 상이라도 벗을 필요가 없다."[132]라고 하였는데 과연

---

130) 개원례(開元禮) :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연간(713~741)에 서견(徐堅), 소숭(蕭崇) 등이 칙명을 받아 150권으로 편찬한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말한다. 길례(吉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흉례(凶禮)로 분류되었으며, 《신당서(新唐書)》와 《구당서(舊唐書)》 〈예문지(藝文志)〉의 바탕이 되었다.

131) 수암(遂菴) :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치도(致道)이며, 다른 호는 한수재(寒水齋)이다.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로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다.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인 호락논변(湖洛論辨)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단하(李端夏), 박세채(朴世采), 김창협(金昌協) 등과 교유하였다.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된 뒤 은거하여 학문을 닦았다. 송시열이 사약을 받게 되었을 때는 달려가서 임종을 지키고 유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1703년(숙종29)부터 1717년까지 해마다 대사헌, 이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에 임명되었다. 1715년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윤선거(尹宣擧)와 유계(兪棨)의 후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 서문에서 유계의 저술임을 밝혀 소론의 영수 윤증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송시열이 화를 당한 것은 윤증이 윤휴(尹鑴)의 무리와 함께 조작한 것이라고 송시열의 비문에 기록하여 유생 유규(柳奎) 등 800여 명과 대사간 이관명(李觀命), 수찬 어유귀(魚有龜) 등 소론측으로부터 비문을 수정하라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1721년(경종1)에는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청풍의 황강서원(黃岡書院) 등 10여 곳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저서에 《한수재집(寒水齋集)》, 《삼서집의(三書輯疑)》 등이 있다.

132) 흑포립(黑布笠)은 …… 없다 :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한수재집(寒水齋集)》 권16 〈답채조응(答蔡祖應)〉에 보이는데, 편지에 "추포흑립은 조부모 상이나 처상에도 착용하니, 어찌 화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麤布黑笠, 雖祖父母與妻喪, 亦著之, 何可謂華飾乎?]"라고 하였다.

벗을 필요가 없습니까? -김석귀-
遂庵曰: "黑布笠非華盛, 雖祖與妻喪, 不須去." 果不須去耶?【金錫龜】

[답] 흑포립은 본래 예에 없는 물건인데 지금에는 이미 늘 착용하는 물건이 되었다. 효자가 변복(變服)[133]하기 전에는 머리에 착용할 것이 없으니, 흑포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黑笠本是無於禮之物, 而在今旣爲常著之物. 孝子變服之前, 頭無所著, 不得不冠之.

[문] "옛날에는 벽(椑)이라는 관(棺)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옻칠을 하였다."[134]라고 하였는데 부주(附註)에서 인용하였으니,[135] 그렇다면 흉사(凶事)를 미리 행한다[136]는 비난은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어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규-

---

133) 변복(變服) : 일정한 상기(喪期)가 지나면 그때마다 상복을 바꿔 입는 것을 말한다.

134) 옛날에는 …… 하였다 : 《예기》〈단궁 상(檀弓上)〉의 "군주가 즉위하면 벽이라는 관을 만들어 매년 한 번 옻칠을 하여 물건을 담아 둔다.[君卽位而爲椑, 歲一漆之, 藏焉.]"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135) 부주(附註)에서 인용하였으니 : 《가례》 권4 〈상례 초종〉 '관을 만든다[治棺]' 조목의 주석에 있는 유장(劉璋, 1429~1511)의 말을 가리키는 듯하다. 해당 내용은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도리에는 오직 관과 곽이 몸에 닿는 물건이므로 효자는 마땅히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상을 당한 날 나무를 택해 관을 만들면, 아마도 창졸간에 나무를 얻지 못할 것이고 회칠도 견고하고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혹여 여름철을 만나면 시신을 오랫동안 두기도 어렵다. 옛날에 국군(國君)은 즉위하면 벽(椑)이라는 관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옻칠을 하였다. 지금 사람 중에도 살아있을 때에 스스로 관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도리를 행하는 것이지 흉사(凶事)를 미리 행하는 것이 아니다…….[凡送死之道, 唯棺與▩, 爲親身之物, 孝子所宜盡之. 初喪之日, 擇木爲棺, 恐倉卒未得其木, 灰漆亦未能堅完, 或値暑月, 尸難久留. 古者國君卽位而爲椑, 歲一漆之, 今人亦有生時, 自爲壽器者, 此乃猶行其道, 非豫凶事也.……]"이다. 유장의 자는 정신(廷信)이고 호는 매파(梅坡)이며, 복건(福建) 남평(南平) 사람이다. 공부 우시랑(工部右侍郎), 태자소보(太子少保)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매파집(梅坡集)》, 《가례보주(家禮補註)》 등이 있다.

136) 흉사(凶事)를 미리 행한다 : 주(周)나라 평왕(平王)이 죽은 노(魯)나라 혜공(惠公)의 부의를 보내면서 아직 죽지도 않은 혜공의 부인 중자(仲子)의 부의까지 함께 보냈다. 이에 대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전문(傳文)에서 흉사를 미리 행한 것은 예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

"古者爲椑, 歲一漆之", 附註引之, 則豫凶事之譏, 不足恤. 而恐或傷親之心. 何如?【鄭載圭】

[답] 만약 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관을 갖추었다면 흉사를 미리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뜻을 거슬러 관을 미리 갖추어서는 안 된다.
若當人自爲之, 則豫凶事, 何傷也? 不然則不可咈其意.

[문] 모든 상에는 가묘(家廟)에 고하는 것을 친척과 동료, 벗에게 부고(訃告)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석귀-
凡喪, 告家廟, 當先於訃親戚僚友? 未知何如?【金錫龜】

[답] 가묘에 먼저 고해야 한다.
先告于家廟.

[문] 단령(團領), 답호(褡護), 포(袍), 오(襖)는 모두 무슨 제도입니까? -소필기-
團領褡褡護袍襖, 俱是何制?【蘇弼基】

[답] 단령은 직령(直領)과 같은데 옷깃이 둥근 것이다. 답호와 포, 오는 모두 밑받침으로 입는 긴 옷인데 지금 사람이 늘 착용하는 복색이다. 포와 오는 솜이 있는 것이다.
團領, 如直領而領團者. 褡護袍襖, 俱是裏長衣, 今人常著之物. 袍襖, 有絮者.

[문] 저번에 포는 솜이 있는 긴 옷이고, 오는 솜이 있는 짧은 옷이라고 하셨는데, 《가례》의 뜻을 얻은 듯합니다. 《가례》에는 고(袴 바지)가 있는데 상체에 입는 솜옷이 없기 때문에 오가 솜이 있는 짧은 옷임을 알고, 심의(深

衣)는 상의(上衣)인데 상의에 받쳐 입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가 솜이 있는 긴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지 않다고 답하셨으니, 진실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다시 살펴보니,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는 "포는 반드시 겉옷이 있고 홑옷으로 입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소(疏)에는 "단의(褖衣)가 상의와 치마가 이어져 있는 것은 포의 겉옷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니, 포는 상의와 치마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명의(明衣)는 셈에 넣지 않는다[明衣不在算]'[137]의 소에 "단의는 비록 홑옷이지만 포와 함께 겉에 입는다.[褖衣雖禪, 與袍爲表.]"[138]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포는 솜이 있는 긴 옷으로 심의에 받쳐 입는 복색임이 분명합니다. 번번이 다시 여쭙습니다. -정재규-

向謂"袍, 有絮長衣, 襖, 有絮短衣", 恐得《家禮》之意者. 《家禮》有袴而無上體絮衣, 故知襖之爲有絮短衣也. 深衣爲上衣而無承上衣者, 故知袍之爲有絮長衣也. 而答以未詳, 則固難質言. 然近更考之, 〈喪大記〉曰: "袍必有表, 不褖." 〈士喪禮〉疏曰: "褖衣連衣裳者, 用以表袍, 袍連衣裳故也." "明衣不在算"疏曰: "褖衣雖褖, 與袍爲表." 以此言之, 袍之爲有絮長衣而以承深衣, 明矣. 輒復仰稟.【鄭載圭】

[답] 긴 옷과 짧은 옷에 관한 설은 옳은 듯하나 나는 잡복(雜服)에 관한 학문에는 매우 엉성해서 감히 단정을 지어 말하지 못하겠다.

長短衣之說似然. 而吾於雜服之學甚疎, 不敢質言.

[문] 정환주(鄭煥周)[139]가 "근래에 상례가 크게 무너졌다. 《상례비요》

---

137) 명의(明衣)는 …… 않는다 : 《의례》 〈사상례〉에 보인다.

138) 단의는 …… 입는다 :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는 "단의는 비록 홑옷이지만 포를 안쪽에 입는다.[褖衣雖褖, 以袍爲裏.]"라고 되어있다.

139) 정환주(鄭煥周) : 1833 1899. 본관은 하남(河南)이고, 자는 명신(命新), 호는 미산(薇山)이다. 임헌회(任憲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8년 기정진(奇正鎭)을 찾아 칠정(七情)에 대해

에 치포관(緇布冠)에 관한 그림이 있으니 필시 착용할 곳이 있을 터인데, 문구가 결락되어 상고하지 못하니 식자(識者)가 살펴 바로잡을 곳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민기용-
鄭煥周曰: "近者喪禮大壞.《備要》緇布冠有圖, 必有用處, 而文缺無考, 恨無識者考正." 此說如何?【閔璣容】

[답] 치포관은 관례(冠禮)를 치를 때 처음 쓰는 관이니, 초상(初喪) 때는 과연 착용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쓰지 않고 비녀를 꽂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한 문구가 있으니, 염습(斂襲)할 때 착용하는 관이 아님이 분명하다. 아마 《가례》의 사례(四禮)에 관한 전도(全圖)[140]로 인하여 같이 딸려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또 상례(喪禮)가 훼손되고 훼손되지 않는 것이 어찌 치포관을 착용하는지 착용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겠는가. 아무개의 논의는 매우 고집스럽다.
緇布冠是冠禮始加之冠, 初喪果未見用. 人死, 不冠不笄, 旣有明文, 其非襲斂之用, 明矣. 或者因《家禮》四全圖而連累在此耶? 又喪禮之壞不壞, 豈係於緇冠之用不用? 某人之論, 甚是執滯.

[문] "찬장에 남겨 둔 음식으로 전(奠)을 올린다.[餘閣之奠.]"[141]라는 말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최선-
"餘閣之奠"云云.【李最善】

[답] 찬장에 남겨 둔 음식이란 별도로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니, 병중에

논변하였다.《소학》,《중용》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기설(理氣說)과 사칠논변(四七論辨)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미산유고(薇山遺稿)》가 있다.

140) 사례(四禮)에 관한 전도(全圖) : 〈가례도(家禮圖)〉를 가리킨다.

141) 찬장에 …… 올린다 :《예기》〈단궁 상〉에 "사람이 막 죽었을 때 올리는 전(奠)은 각(閣)에 남아 있는 음식으로 한다.[始死之奠, 其餘閣也與.]"라는 증자(曾子)의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주(註)에 "각은 기각(庋閣), 즉 찬장으로, 찬장에 둔 음식을 말한다.[閣, 庋, 藏食物.]"라고 하였고, 소(疏)에 "살았을 때 기각에 남겨 둔 포해로 전을 올리는 것이다.[以生時庋閣所餘脯醢爲奠也.]"라고 하였다.

사용하고 남은 음식이다. 모용(茅容)이 닭을 잡아 어머니를 봉양하고서 나머지 반은 찬장에 두었으니,[142] 이것이 바로 찬장에 남겨 둔 음식이다. 사람이 막 죽었을 때 올리는 전(奠)은 이것으로 지내니, 장사를 지내기 전까지 올리는 조석전(朝夕奠)[143]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항상 거처하는 곳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대질(大耋)[144]조차도 그러한데,[145] 하물며 이미 흩어진 혼기가 음식에 의지하여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이겠는가.

餘閣者, 謂不別具也, 蓋病中所用之餘物. 茅容殺鷄奉母, 餘半庋置, 此卽餘閣也. 始死之奠, 以此爲之, 非葬前朝夕奠之謂也. 飮食不違寢, 大耋猶然, 况已散之魂氣, 欲其依泊而停聚者乎?

[문] '자리를 정한다'[146] 조목에서, 자리를 정해 앉을 때 동서남북의 방향과 상석(上席)으로 두는 곳이 다른 것[147]에 대하여 묻습니다. -김한기-

---

142) 모용(茅容)이 …… 두었으니 : 모용은 후한(後漢) 진류(陳留) 사람으로 자는 계위(季偉)이다. 40세에 들에서 밭을 갈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였는데, 모용만 단정히 앉아 있었다. 당시의 명사였던 곽태(郭泰)가 이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아침에 모용이 닭을 잡아 반찬을 만들었는데, 곽태는 자신을 위해 닭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모용이 닭고기의 반을 나누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남은 것은 찬장에 두고는 자신은 소채를 가지고 곽태와 함께 먹었다.《資治通鑑 漢紀 孝桓皇帝中》

143) 조석전(朝夕奠) : 장사에 앞서 이른 아침과 저녁마다 영전에 지내는 제사 의식을 말한다.

144) 대질(大耋) : 해가 기울듯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기를 이르는 말로, 흔히 80세를 이른다.《주역》〈이괘(離卦) 구삼(九三)〉에 "서산에 해가 기우는 형상이니, 질장구 치고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이는 노년을 한탄함이니, 흉하도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45) 음식이 …… 그러한데 :《예기》〈내칙(內則)〉의 "90세가 되면 음식이 항상 거처하는 곳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九十, 飮食不違寢.]"라는 문구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146) 자리를 정한다 :《가례》 권4 〈상례 목욕습전위위반함(沐浴襲奠爲位飯含)〉의 '주인 이하는 자리를 정해 곡한다[主人以下, 爲位而哭.]' 조목을 가리킨다.

147) 동서남북으로 …… 것 : 주인은 상의 동쪽, 전(奠)의 북쪽에 앉는다. 삼년복을 입는 여러 남자들은 그 아래에 앉는데, 모두 짚을 깐다. 동성(同姓)으로 기년복(朞年服)과 대공복(大功服), 소공복(小功服) 이하를 입는 사람은 각각 복의 차례대로 그 뒤에 앉아서 모두 서향하는데 남쪽이 상석이다. 손위 항렬은 장유(長幼)의 순서대로 상 동쪽의 북쪽 벽 아래에 앉아서 남향하는데, 서쪽을 상석으로 삼아 자리를 깔고 앉는다. 주부(主婦)와 여러 부녀자는 상의 서쪽에 앉는데 짚을 깐다. 동성의 부녀자는 복의 차례대로 그 뒤에 앉아서 모두 동향하는데 남쪽이 상석이다. 손위 항렬은 장유의

爲位條, 東西南北向上不同.【金漢驥】

[답] 앉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향하는 방향은 시상(尸牀)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상석으로 삼는 것은 시상에 가까운 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坐處不同故也. 其向也, 向尸牀所在之方也, 其上也, 以近尸牀邊爲上也.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을 당하면 복차(服次)[148]를 기준으로 앉습니까, 형제의 차례를 기준으로 앉습니까? 상기(喪期)가 지나 복이 다한 뒤에는 평상복을 착용하고서 제사에 참여만 하고 곡은 하지 않습니까? -여봉섭-
爲人後者本生喪, 以服次爲坐耶? 兄弟之次爲坐耶? 過期服盡後, 以常服參祭而不哭耶?【呂鳳燮】

[답] 마땅히 복차를 기준으로 앉아야 한다. 상기가 지나도 심상(心喪)이 있으니, 어찌 평상복을 입었다고 하여 곡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當以服次爲坐. 過期亦有心喪, 豈可曰常服不哭?

[문] 반함(飯含)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함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밥[飯]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슬[珠]이나 돈[錢], 쌀[米]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기-
飯含何義? 曰飯含, 則當用飯, 而用珠錢米, 何?【金漢驥】

순서대로 상 서쪽의 북쪽 벽 아래에 앉아서 남향하는데, 동쪽을 상석으로 삼아 자리를 깔고 앉는다. 첩과 여자종은 부녀자의 뒤에 선다. 별도로 휘장을 쳐서 안과 밖을 가린다. 이성(異姓)의 친척 가운데 남자는 휘장 밖의 동쪽에 앉아 북향하는데 서쪽을 상석으로 삼고 부인은 휘장 밖의 서쪽에 앉아 북향하는데 동쪽을 상석으로 삼아 모두 자리를 깐다. 복으로 줄을 만들며, 복이 없는 사람은 뒤에 앉는다.《家禮 卷4 喪禮 沐浴襲奠爲位飯含》

148) 복차(服次) : 상복의 경중에 따라 정한 서열을 말한다.

[답] 반함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속이 비어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밥을 사용하면 죽은 자를 보내면서 완전히 산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이어서 지혜롭지 못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149]
不忍其口之虛. 用飯則之死而致生之, 不知, 而不可爲也.

[문] 구슬이나 자개로 반함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소필기-
含以珠貝, 其義何取?【蘇弼基】

[답] 구슬과 자개는 향이 나고 깨끗한 물건이니, 이 점을 취한 것이다.
珠貝, 芳潔之物.

[문] 왼쪽 소매를 벗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하기에 편한 것으로 말하면 오른쪽 소매를 벗어야 할 듯합니다. -김한기-
左袒何義? 以便於事言之, 則似恐右袒矣.【金漢驥】

[답] 오른쪽은 예를 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매를 벗지 않는다. 왼쪽을 벗는 이유는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右所以行禮, 故不袒, 袒其左者, 所以補右手之不及.

[문] 반함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은 지금 풍속에서는 버드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김한기-
飯含匙, 今俗用柳, 何義?【金漢驥】

---

149) 죽은 …… 된다 : 《예기》 〈단궁 상〉에 "죽은 자를 보내면서 완전히 죽은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불인(不仁)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를 보내면서 완전히 산 자에 대한 예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之死而致死之, 不仁, 而不可爲也. 之死而致生之, 不知, 而不可爲也.]"라는 말을 인용하여 답한 것이다.

[답] 반함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버드나무를 써서 만드는 것은 예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혹여 지팡이를 만들 때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한 번 변한 것인 듯하다.
匙用柳, 於禮無文. 或是因杖之用柳而一轉歟?

[문] 혼백(魂帛)[150]은 속백(束帛)[151]인데 세속에서는 가주(假主)를 사용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정희원-
魂帛是束帛, 而俗用假主, 何所據耶?【鄭禧源】

[답] 가주는 잘못된 예이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다.
假主, 謬禮, 不用恐當.

[문] 명정(銘旌)은 6품 이하의 경우 7자입니다.[152] 관직이 없는 사람은 몇 자를 적용합니까? -정희원-
銘旌, 六品以下, 七尺. 無官者用幾尺耶?【鄭禧源】

[답] 적용할 예가 마땅하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9품이 유인(孺人)이니, 사(士)의 아내도 유인이다.
禮窮則無去處. 九品孺人, 而士妻亦孺人.

[문] 생원(生員)이나 진사(進仕)의 아내를 세속에서 대부분 '의인(宜人)'

---

150) 혼백(魂帛) : 흰 명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신위(神位)이다.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신주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151) 속백(束帛) : 흰색의 명주를 묶어서 만든 혼백을 말한다.

152) 명정(銘旌)은 …… 7자입니다 : 《가례》 권4 〈상례 영좌혼백명정(靈座魂帛銘旌)〉의 '명정을 세운다.[立銘旌.]' 조목에 "붉은색 비단으로 명정을 만든다. 너비는 온 폭으로 하되 3품 이상은 9자, 5품 이상은 8자, 6품 이하는 7자이다.[以絳帛爲銘旌. 廣終幅, 三品以上, 九尺, 五品以上, 八尺, 六品以下, 七尺.]"라는 말이 보인다.

이라고 적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김한기-
生進妻, 世俗多以"宜人"書之者, 何據也?【金漢驥】

[답] 의인에 대해서는 출처를 듣지 못하였다.
宜人, 未聞出處.

[문] 소렴(小斂)할 때는 옷을 전(顚)하거나 도(倒)합니다.[153] 전과 도는 뜻이 같은데 중첩해서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희원-
小斂或顚或倒. 顚倒一意, 而疊言之, 何義?【鄭禧源】

[답] 전은 위아래를 바꾸지 않는 것이고, 도는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만드는 것이다.
顚則上下不換, 倒則上爲下, 下爲上.

[문] 시자(侍者)가 시신을 들면 남녀가 함께 부축하여 돕습니다. 남녀는 주인 남녀이고 시자는 비복(婢僕)의 부류이니, 비록 애통하고 다급할 때지만 함께 뒤섞여서 피하지 않는 것은 또한 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정희원-
侍者擧尸, 男女共扶助之. 男女, 主人男女, 侍者, 婢僕之類, 雖哀遽之際, 滾同不避, 不亦不安耶?【鄭禧源】

[답] 역시 의심스럽다.
亦可疑也.

---

153) 소렴할 …… 합니다 : 《가례》 권4 〈상례 영좌혼백명정〉의 '소렴상을 차리고 효금과 옷을 편다.[設小斂牀, 布絞衾衣.]' 조목에 "소렴상을 차리고 자리와 요를 서쪽 계단의 서쪽에 깐다.…… 옷은 뒤집거나 거꾸로 하되 다만 사방을 바르게 하고, 윗옷은 거꾸로 하지 않는다.[設小斂牀, 施薦席褥于西階之西. …… 衣或顚或倒, 但取正方, 唯上衣不倒.]"라는 말이 보인다.

[문] '유(紐)'와 '효로 묶는 것[結絞]'은 글자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원-
紐與結絞, 字義何如?【鄭禧源】

[답] 유는 접어서 두 가닥[兩股]을 만들어 풀기 쉽게 하는 것이고, 효는 둥글게 묶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紐是屈作兩股, 使其易解. 絞是團束之總名.

[문] "아직 효로 묶지 못하고 얼굴을 덮지 못하는 것은 때로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154]라고 하였는데, 이는 죽은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이최선-
"未結絞, 未掩面, 欲時見其面", 以不得更見耶?【李最善】

[답] 사람은 진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 한갓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人固有死而回生者, 非徒以不得更見也.

[문] 정치(精緻)하고 청결한 물건으로는 마땅히 치저(絺苧)만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필기-
物之精潔者, 宜莫如絺苧, 而不用, 何義?【蘇弼基】

[답] 치저(絺苧)와 낙저(絡苧)는 차가운 물건이기 때문이다.
絺絡苧, 寒凉之物.

---

154) 아직 …… 때문이다 : 《가례》 권4 〈상례 영좌혼백명정〉의 '드디어 소렴을 한다.[遂小斂.]' 조목에 "아직 효로 묶지 않고 그 얼굴을 덮지도 않으니, 효자는 여전히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면서 때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未結以絞, 未掩其面, 蓋孝子猶俟其復生, 欲時見其面故也.]"라고 하였다.

[문] 《가례(家禮)》에는 환질(環絰)[155]이 없는데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환질을 기록하고, 《가례》에는 질대(絰帶)[156]가 성복(成服) 조(條)에 있는데 《상례비요》에는 소렴(小殮) 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기-
《家禮》無環絰, 而《備要》書之, 《家禮》絰帶在成服條, 而《備要》則在小斂條, 何也?【金漢驥】

[답] 《가례》는 온공(溫公)의 《서의(書儀)》[157]를 인습하였는데 그중 복제(服制)는 당시 임금의 제도를 따랐다. 《상례비요》는 옛 경문(經文) 및 주자의 정론(定論)에 근거해 참작하여 정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많다.
《家禮》因溫公《書儀》, 其中服制, 遵時王之制. 《備要》据古經及朱子定論而酌定. 故多所不同.

[문] '질(絰)' 자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소필기-
"絰"字之義, 何如?【蘇弼基】

[답] 질은 진실함[實]이니, 효자에게 충실(忠實)한 마음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絰, 實也. 明孝子有忠實之心.

[문] 예에 대머리인 사람은 최건(縗巾)[158]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絰)을 씁니다.

---

155) 환질(環絰) : 소렴(小斂) 때 상제가 쓰는 사각건에 덧씌우는 삼으로 꼰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예기》 〈잡기 상(雜記上)〉에 "소렴에는 환질을 한다.[小斂環絰]"라고 하였다.

156) 질대(絰帶)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와 허리에 두르는 삼으로 된 띠이다.

157) 서의(書儀) :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고례(古禮)에 근본하고 당시의 행할 만한 것을 참작하여 만든 것인데, 표주(表奏)·공문(公文)·사서(私書)·가서(家書)의 서식(書式) 1권, 관의(冠儀) 1권, 혼의(婚儀) 2권, 상의(喪儀) 6권 등 도합 10권이다.

158) 최건(縗巾) : 원문의 '纕巾'은 《통전(通典)》 권139 〈예(禮) 제효종구거서(諸孝從柩車序)〉의 소주(小註)와 《상례비요》 〈성복(成服)〉에 모두 '縗巾'으로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면 원문의 '纕'은 글자가 비슷해서 생긴 오류로, '纕'을 '縗'로 보고 번역하였다.

《상례비요》에는 “우리나라 풍속에는 으레 상관(喪冠) 밑에 효건(孝巾)을 쓴다. 이는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풍속을 따르더라도 무방하다.”[159]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날이 무더울 때 더러 효건에 풀칠을 하고 양쪽을 뚫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차라리 상관만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필기-
禮禿者纕巾加絰, 《備要》“國俗例於喪冠下施孝巾, 雖非禮意, 從俗無妨”. 然則今人當暑, 或糊其巾, 穿兩傍, 似甚未穩, 寧不如單著喪冠之爲愈.【蘇弼基】

[답] 그런 듯하다.
似然.

[문] 효대(絞帶)에 대해 《사례편람(四禮便覽)》[160]에서 “눈을 따라 서로 꼰다.” 라고 하였는데 혹자는 “눈을 반대로 꼬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석귀-
絞帶, 《便覽》云“順目相糾”, 或云“反目爲是”.【金錫龜】

[답] 세 겹에 네 가닥이 되려면[161] 눈을 반대로 꼬는 것이 옳다.
三重四股, 反目爲是.

---

159) 우리나라 …… 무방하다 : 《상례비요》〈성복〉에 보이는 말이다.

160) 사례편람(四禮便覽) : 이재(李縡, 1680~1746)가 편술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를 종합한 예서(禮書)로, 8권 4책이다. 《가례》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었다. 상례는 《상례비요》를 주로 참고하되 통용되고 있는 관행을 인정해서 참작한 곳이 많다. 제례 역시 시속(時俗)의 예제(禮制)를 도외시하지 않았으나, 관례와 혼례는 마땅한 준칙이 별로 없어서 《가례》의 고례(古禮)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보충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찾고 시비를 판별하였다. 이재의 증손 이광정(李光正)이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있을 때인 1844년(헌종10)에 간행되었다.

161) 세 …… 되려면 : 효대를 설명하면서 “참최에는 길이 18, 9자의 삼끈 한 가닥을 사용하는데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을 만들어 각각 한 자 남짓으로 묶어 고리를 만든 뒤에 그 나머지를 한데 합해서 각각 눈을 따라 서로 꼬면 네 가닥이 서로 겹쳐지니, 곧 세 겹에 네 가닥이다.[斬衰用麻繩一條長十八九尺, 中屈之爲兩股脚一尺餘, 結合爲彊子, 然後合其餘, 順目相糾, 四脚積而相重, 卽三重四股.]” 라고 하였다. 《四禮便覽 喪禮2 成服》

[문] "손님에게 절을 할 때는 벗었던 소매를 입고 질(絰)을 한다."의 주(註)에 "염(斂)을 도우려고 온 손님과 벗에게는 사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풍속에서는 손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원-
"拜賓襲絰"註"賓友來助斂者, 不可不謝". 今俗未見拜賓者, 如何?【鄭禧源】

[답] 항렬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절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尊者之來, 拜之恐當.

[문] 영연(靈筵)을 설치하기 전에 곡을 하는 경우 절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분명한 문구가 없습니다. -김석귀-
不待設靈筵而哭者, 當拜與否, 未有明文.【金錫龜】

[답] 아직 영연을 설치하기 전에 들어가서 곡을 하는 경우는 절을 하지 않아야 할 듯하다.
未設靈筵入哭者, 似當不拜.

[문] 〈사상기(士喪記)〉에 "전(奠)을 올릴 때는 소기(素器)를 사용한다.[奠以素器.]"[162]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소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필기-
〈士喪記〉"奠以素器". 必用素器, 何義?【蘇弼基】

[답] 상중에 지내는 제사는 꾸밈이 없으니, 애통하여 꾸밈이 없다[163]는 뜻일 것이다.

---

162) 전(奠)을 …… 사용한다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전(奠)을 올릴 때 소기를 사용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애통하여 꾸미지 못하는[哀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奠以素器, 以生者有哀素之心也.]"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애소는 애통하여 꾸밈이 없다는 말이다. 모든 물건에 꾸밈이 없는 것을 소(素)라고 한다.[哀素, 言哀痛無飾也. 凡物無飾曰素.]"라고 하였다. 〈사상기〉라고 한 것은 소필기의 착각인 듯하다.

163) 애통하여 꾸밈이 없다 : 위의 주 참조.

喪祭無文, 當是哀素之意.

[문]《상례비요》에서《가례의절(家禮儀節)》의 "효자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한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더러 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의례문해(疑禮問解)》[164]에는 동춘당(同春堂)[165]이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재배(再拜)합니다. 주인도 절을 합니까?"라고 묻자, "효자가 그 안에 포함된 듯하다."라고 답하고,[166] 이외암(李巍巖)[167] 역시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주인 이하를 가리킨다."[168]라고 하였으니, 전(奠)을 올릴 때 효자가 절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김석귀-
《備要》引"孝子不拜"一節, 因此或有不拜者. 然《問解》同春問"卑幼再拜, 主人亦拜耶?", 答"孝子似在其中". 李嵬巖亦曰: "卑幼指主人以下." 蓋奠而孝子不拜, 似不當.【金錫龜】

[답]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모두 재배한다는 것은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 옳은 듯하다. 다만《가례의절》에서 말한 "효자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

164) 의례문해(疑禮問解) : 김장생(金長生)이 문인과 친우들의 예(禮)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아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과 제자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 윤선거(尹宣擧) 등이 교정하여 종류별로 엮은 책이다. 관혼상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례(喪禮)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다.

165) 동춘당(同春堂)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호이다.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다. 20세 때 김장생의 제자로 들어갔다. 누차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대부분 거절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숭현서원(崇賢書院) 등 여러 서원과 문묘(文廟)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저서에《어록해(語錄解)》,《동춘당집(同春堂集)》등이 있다.

166) 항렬이 …… 답하고 :《의례문해》〈상례 소렴(小殮)〉에 송준길이 "《가례》에 소렴의 제전(祭奠)에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는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절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를 말한 이상 효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구준의《가례의절》에 효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고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라고 답한 말이 보인다.

167) 이외암(李巍巖) : 이간(李柬, 1677~1727)으로, 외암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공거(公擧)이며, 다른 호는 추월헌(秋月軒)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인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저서에《외암유고(巍巖遺稿)》가 있다.

168) 항렬이 …… 가리킨다 :《외암유고》권11 〈답이인배(答李仁培)〉에 보인다.

글귀 또한 필시 상세한 곡절이 있을 터인데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부분이다.
卑幼皆再拜, 來說似然, 而但《儀節》所云"孝子不拜", 亦必有委折, 而不能曉得, 可鬱處.

[문] 혹자가 "빈궁(殯宮)은 어두움을 숭상하니, 초[燭]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을 거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홍연-
"殯宮尙幽, 不可設燭"云. 行事時, 當如何?【奇弘衍】

[답] 초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어두움을 숭상한다는 말은 잘못이다.
設燭恐無不可. 尙幽之說過矣.

[문] 성복(成服)하면 반드시 조곡(朝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속에서는 반드시 은전(殷奠)을 설행하니, 이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김한기-
成服必於朝哭, 而今俗必設殷奠, 何所據乎?【金漢驥】

[답] 이는 속례(俗禮)이다. 그러나 무방할 듯하다.
此俗禮也. 然恐無妨.

[문] 《상례비요》의 〈습(襲)〉과 〈소렴(小殮)〉·〈대렴(大殮)〉에는 전(奠)이 있는데, 〈성복(成服)〉에서는 전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재철-[169]
〈襲〉〈斂〉有奠, 而〈成服〉不言奠, 何也?【愼在哲】

---

169) 신재철(愼在哲) : 1803~1872.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명오(明吾), 호는 송암(松菴)이다. 강원감사 신희남(愼喜男, 1517~1591)의 9세손으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였고, 만년에는 금곡(錦谷) 송내희(宋來熙, 1791~1867)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장헌주(張憲周) 기우만(奇宇萬) 등과 교류하였다. 신재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영암군에서는 송암 정사(松菴精舍)를 지어 주었다.

[답] 습과 염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복은 살아 있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풍속을 따라 전을 설행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襲斂, 有事於死者, 故不可無奠, 而成服, 生者事, 故不言奠. 然從俗設奠, 恐亦無妨.

[문]《통전(通典)》[170]에 "아버지가 죽고 아직 입렴(入斂)하여 빈소를 차리지 못했는데 조부가 죽었으면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父死未殯而祖死, 服祖以周.]"[171]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를 차마 죽은 사람으로 여기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조부가 죽었으니, 어찌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예를 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석귀-
《通典》"父死未殯而祖死, 服祖以周", 蓋不忍死其父也. 然父已死而祖死, 豈可不制祖服斬衰也.【金錫龜】

[답]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服祖以周]'는 네 글자는 예가(禮家)의 일설을 갖춘 것이지, 반드시 이것으로 준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服祖以周"四字, 以備禮家之一說, 非欲必以此遵行也.

[문] 아들이 부친상 중에 죽은 경우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한다."라고도 하고, "승중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정희원-
子在父喪而亡, 或曰"適孫承重", 或曰"不承重".【鄭禧源】

---

170) 통전(通典) : 당(唐)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현종(玄宗) 때 유질(劉秩)이 편찬한 《정전(政典)》을 근간으로 삼아 편찬한 책으로, 전장제도(典章制度)에 관한 통사(通史)이다. 모두 200권이다. 시기로는 당우(唐虞)의 전설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이며, 분야로는 식화(食貨), 선거(選擧), 직관(職官), 예(禮), 악(樂),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 등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후대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합쳐 삼통(三通)이라 한다.

171) 아버지가 …… 입는다 : 《통전》 권97 〈예(禮) 부미빈이조망복의(父未殯而祖亡服議)〉에 보인다.

[답] “조부를 승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조부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이다. 지금은 행해서는 안 될 듯하다.
“不承祖重”云者, 是服祖以周之說也. 今恐不可行.

[문] 조부를 아직 장사 지내기 전에 부친상을 당했으면 장손(長孫)이 3년 동안 추복(追服)[172]합니까? 소상(小祥)[173] 전후에도 추복을 합니까? -정희원-
祖父未葬前父喪, 則長孫追服三年耶? 小祥前後亦追服歟?【鄭禧源】

[답] 이는 승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을 주관하는 것일 뿐이니, 남은 달수만큼 복상(服喪)해야 할 듯하다.
此非承重也, 代父主喪耳. 似當服其殘月.

[문] 아들이 부친상 중에 죽은 경우 적손이 승중한다는 설은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물어서 분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례증해(家禮增解)》를 보니, 여러 설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승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경우 우복(愚伏)[174]은 “예에 모든 복(服)은 모두 처음 입는 것으로 결정하고 중간에 복을 고치는 의리는 없으니, 《통전》의 ‘기년복을 입는다[服周]’는 말이 옳다. 소상 전에는 본복(本服)으로 제사를 행하고 소상이 지난 뒤에는 소복(素服)으로 행하면

---

172) 추복(追服) : 상례 의식의 하나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려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상복을 입는 것이다.

173)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로, 초상(初喪) 때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13개월 만에 지낸다.

174) 우복(愚伏) :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호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경임(景任)이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으로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는데, 경전에 밝고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1586년(선조19) 알성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수찬, 장령, 부교리, 좌승지 등을 거쳐 1600년(선조33)에 영해 부사(寧海府使), 1610년(광해군2)에 전라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대사헌, 도승지, 우참찬, 예조 판서, 이조 판서, 대제학 등을 지냈다.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등에 배향되었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저서에 《우복집(愚伏集)》, 《상례참고(喪禮參考)》, 《주문작해(朱文酌海)》가 있다.

잘못된 일이 되지는 않는다." 하였고, 이씨(李氏)[175]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조부의 후사가 된 자가 참최복(斬衰服)을 입는 법이니, 조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도로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고, 또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 아버지의 중임[重][176]을 계승하고서 죽은 이상 다만 아버지가 전한 중임을 계승해야 할 뿐이니, 어찌 갑자기 아버지가 이미 계승한 중임을 빼앗아 한 대(代)를 줄여 버리고 조부의 중임을 뛰어넘어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비록 조부의 중임을 계승하고자 하더라도 조부가 이미 아버지에게 중임을 전하였으니, 계승할 만한 어떠한 중임이 다시 있겠는가." 하고, 또 "상은 두 상주가 없는 것이 예이다. 지금 효복(孝服)[177]을 영상(靈牀)에 진설하면 이는 아버지가 여전히 복상하고 있는 것인데, 아들이 또 복상하면 하나의 상중(喪中)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상주(喪主)가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통전》에서 한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말이 반드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복을 처음 입은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기년복을 입는 것은 본복(本服)이고 다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가 입는 복을 대신해서 입는 것이니 의의가 다릅니다. 어찌 중간에 복을 고친 것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씨가 인용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조부의 후사가 된 자가 참최복을 입는다."[178]라는 말은, 대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손자가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어 주는 의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문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

175) 이씨(李氏) : 이의조(李宜朝, 1727~1805)를 가리킨다.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맹종(孟宗)이며, 호는 경호(鏡湖)이다. 이재(李縡), 송능상(宋能相)의 문인으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가례증해(家禮增解)》가 있다.

176) 중임 : 상사(喪事)·제사나 종묘(宗廟)의 중임을 말한다.

177) 효복(孝服) : 상중에 입는 상복(喪服)을 말하기도 하고, 존장(尊長)의 상중에 거상(居喪)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뜻이다.

178) 아버지가 …… 입는다 : 《의례》 〈상복(喪服)〉 부장기장(不杖朞章)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朞)는 임금의 부모(父母)와 조부모(祖父母)를 위하여 입는 것이다.[爲君之父母祖父母.]"라는 구절에 대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에 보인다.

그러니 어찌 여기에서 도리어 지엽적인 말을 만들어 "조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이 도로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어 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중임을 빼앗아 한 대를 줄여 조부의 중임을 뛰어넘어 계승한다."라는 설로 말하면 거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비록 그 아버지의 중임을 계승했더라도 미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중임을 계승하여 효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선조를 계승하는 것 가운데에 큰일이니, 어찌 "중임을 빼앗아 한 대를 줄여 조부의 중임을 뛰어넘어 계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의 효복은 영상에 진설했다가 장례를 마친 뒤에 치우고 그 아들이 복을 대신해서 입으니, 어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상을 주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여전히 복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은 사리로 살펴보면 정리에 가깝겠습니까. 이는 모두 정도에 맞지 않는 망설(妄說)이니, 깊이 변론할 거리도 안 됩니다.

'승중해야 한다'는 말의 경우 송민구(宋敏求)[179]는 "아버지의 장사를 인하여 다시 참최복 3년을 입는다." 하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아직 조부를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부친상을 당한 경우 아버지의 복을 대신해서 입는 의절은 조부의 장사를 인하여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 하고,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은 "부득이 아버지를 이어 남은 일수만큼 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자(嫡子)가 상을 마치기 전에 죽은 경우 적손은 송민구의 말대로 아버지의 장사를 인하여 다시 참최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 조부를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부친상을 당한 경우는 우암의 말대로 조부의 장사를 인하여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어야 합니다. 복상하는 기간은 수암의 말대로 아버지를 이어서 남은 일수만큼만 입어야 합니다.

---

179) 송민구(宋敏求) : 1019~1079. 송(宋)나라 월주(越州) 평극(平棘) 사람으로, 자는 차도(次道)이다. 《신당서(新唐書)》의 수찬에 참여하고, 《인종실록(仁宗實錄)》을 편수하였다. 조정의 전고(典故)에 익숙하였으며,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를 지냈다. 저서에 《춘명퇴조록(春明退朝錄)》, 《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 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씨는 또 "적손이 승중하고서 죽었는데 그 아내가 후사를 세웠으면 후사가 된 자는 다만 자신을 후사로 삼은 아버지를 위해 상복을 입고, 다시 증조를 위해 참최복을 대신 입어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신을 후사로 삼은 아버지의 장사를 인하여 증조에 대한 참최복을 받아서 남은 일수만큼 복을 입어야 합니다. -김석귀-

"子在父喪亡, 而嫡孫承重"之說, 前此已累度問辨. 而今觀《增解》, 諸說不一. 其"不當承重"云者, 愚伏曰: "禮凡服, 皆以始制爲斷, 無中間改服之義, 《通典》'服周'者得之. 小祥前以本服行祭, 祥後以素服行之, 未爲闕事." 李氏曰: "父卒然後, 爲祖後者服斬, 未聞祖卒然後, 爲父後者反服祖以斬." 又曰: "其父已爲父後, 承父重而死, 則只當承其父所傳之重而已, 豈宜遽奪其父已承之重, 縮一代而棄之, 越承祖重耶? 雖欲承祖重, 祖已傳於其父, 更有何重可承耶?" 又曰: "喪不二主, 禮也. 今以孝服陳於靈牀, 則是父尙持服矣. 子又持服, 則一喪之中, 父子共之." 竊詳《通典》云云, 不可謂無據. 然未知言之其必得中也. 凡服之不以始制爲斷者, 不一而足, 似不可以此爲斷也. 且服期者, 本服也, 再制斬者, 代父服也. 意義不同, 豈可以中間改服論也? 若李氏所引"父卒然後, 爲祖後者服斬", 蓋其父存, 則孫無爲祖服斬之理, 故立文如此, 豈宜於此反生枝節, 以爲"未聞祖卒然後, 爲父後者反服祖以斬"也? 至其"奪重縮代越承"之說, 殆涉駭然. 其父雖承其父之重, 未終事而亡, 故其子代父承重, 順其孝心. 此乃繼志述事之大者, 豈可謂之"奪重縮代越承"也? 且亡者之孝服, 陳於靈牀, 旣葬而撤, 其子代服, 則豈可謂"父子共主"也? 且"父尙持服"之說, 求諸理, 近於情乎? 此都是不經之妄說, 不足深辨也. 其"當承重"云者, 宋敏求曰: "因父葬而再制斬衰三年." 尤庵曰: "祖未葬而遭父喪者, 其代服之節, 當因祖葬而制斬衰矣." 遂庵曰: "只得繼父服其餘日."小子則以爲嫡子未終喪而亡者, 嫡孫當如宋敏求之言, 因父葬而再制斬衰也. 若祖未葬而遭父喪者, 則當如尤庵之言, 因祖葬而制祖斬也. 其持服則當如遂庵之言, 繼父服其餘日而已. 未知何如? 李氏又謂: "嫡孫承重而亡, 而其妻立後, 則其爲后者, 只服其所後喪, 不當又代服其曾祖斬矣." 此亦因其所後父葬, 而受曾祖斬, 服其餘日矣.【金錫龜】

[답] 조부상에 이미 성복(成服)하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경우는 예경(禮經)에는 해당하는 문구가 없으니, 지금 감히 고례(古禮)가 어떠하였는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상에는 상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 주소(註疏)에 "아버지에게 위독한 병이 있으면 장자(長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상(執喪)한다."[180]라는 설이 있다. 위독한 병이 있을 때도 오히려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상하는데 하물며 부친상을 당한 경우이겠는가. 주소의 이 말을 참고하여 행해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송민구의 의론이 이미 정확하고 합당하니, 다시 무슨 의론을 할 것이 있겠는가.

복을 받는 일한(日限)으로 말하면 저번에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는 내 부족한 견해로 "조부상은 이미 성복하고 부친상은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다시 다른 복을 받는 것은 또한 겨를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가벼운 장사[181]를 마치고 다음번에 치르는 장사 때 계빈(啓殯)[182]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 뒤 여러 학자의 논의를 보았는데 한결같지가 않았으니, 요컨대 당사자가 선택하여 행할 문제이다.

근래 예가(禮家)의 뛰어넘어 승중한다는 설로 말하면 진실로 놀랍다. 승중은 승중이고 중복(重服)은 중복이니,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상하는 데에 어찌 수중(受重 승중)하기를 기다려 비로소 행하겠는가. 이는 예가가 누속(陋俗)에 익숙해져 승중을 중복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니,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

남은 일수만큼 복을 입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합당한 듯하다. 증조에 대한 참최복을 받는 것도 옳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후사가 된 의리를 표하겠는가. 이씨가 승중 두 글자에 얽매여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

180) 아버지에게 …… 집상(執喪)한다 : 《독례통고(讀禮通考)》 권6 〈목록(目錄)〉의 '부재위조(父在爲祖)' 조항의 주에 "아버지에게 위독한 병이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상함을 말한다.[謂父有篤疾, 子代父執喪.]"라고 한 말을 가리키는 듯하다.

181) 가벼운 장사 : 조부의 장례를 가리킨다.

182) 계빈(啓殯) : 발인하기 하루 전에 관(棺)을 꺼내는 일, 혹은 발인할 때에 관을 꺼내기 위하여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한다.

다소 안타깝다.
祖喪已成服而父亡, 此是禮經闕文, 今不敢質言古禮之如何, 而喪不可無主. 註疏中有"父有篤疾, 長子代父執喪"之說. 篤疾猶然, 况於父喪乎? 似當以此傍照行之, 則宋敏求之議已是的當, 更有何議論乎? 若其受服之日限, 則曩有人遭此者. 其時淺見以爲"祖喪業已成服, 而父喪未葬, 更受他服, 亦涉不遑, 故先輕葬畢, 後葬啓殯受服似穩"云矣. 其後見諸家之論不一, 要在當人擇而行之. 若其近世禮家越承之論, 眞是可駭. 承重自承重, 重服自重服. 孫之代父執喪, 豈待受重而始行乎? 此蓋禮家狃於陋俗, 誤認承重爲重服之名, 故然耳. 勿論可也. 餘日之論似當. 受曾祖斬亦然, 不如是, 何以表爲後之義也? 李氏爲承重二字所縛, 出脫一步不得, 多少可憫.

[문] 복을 대신해서 입는 적손이 다시 참최복을 입으면 수복(受服)은 졸곡(卒哭) 이후에 합니까? -김석귀-
適孫代服者, 再制斬衰, 則受服在卒哭後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상중에 죽은 사람의 상복은 영상에 진설했다가 장사를 마친 뒤에 치웁니다. 장사를 치르기 전에 복이 이미 다한 경우는 반드시 장사를 마친 뒤에 치웁니까?-김석귀-
喪中死者喪服, 陳於靈牀, 旣葬而撤. 服已盡於葬前者, 必旣葬而撤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혹자가 "아들이 부친상 중에 죽으면 중복(重服)을 입을 적손은 반드시 아버지의 장사를 기다려야 하니, 이렇다면 중간에 끊어지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제가 "이는 지극한 정과 정밀한 의리로 깊이 생각해야 할 곳이다. 아직 장사를 치르기 전까지는 어버이의 죽음을 어찌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장사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이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 중간에 끊어지는 혐의가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김석귀-
或曰: "子在父喪而亡, 嫡孫服重者, 必待父葬, 則不無間斷之嫌耶?" 曰: "此至情精義所當深思處也. 未葬之前, 焉得以死其親? 旣葬則反而亡焉, 於是不得已代父服重也. 間斷之嫌, 何有於此?"【金錫龜】

[답] 그대의 논의가 옳다.
子之論, 是.

[문] 조부상을 치르는 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조부에 대한 복(服)은 어느 때에 입습니까? 조부의 신주(神主)에 방제(旁題)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상제(祥祭)[183]와 담제(禫祭)[184]의 축문(祝文)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신재철-
祖喪中父死, 祖服服於何時? 祖主旁題, 旣以父名, 而祥禫祝題以己名, 不爲未安耶?【愼在哲】

[답] 조부상을 치르는 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위해 복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마친 뒤에는 조부를 위해 복을 입는

183) 상제(祥祭) :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말하는데, 초상(初喪) 후 1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가 소상이고,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두 번 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가 대상이다.

184) 담제(禫祭) :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 한 달을 건너서 지내는 제사로, 초상부터 윤달을 따지지 않고 27개월이 되는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담제를 지내는 달을 담월(禫月)이라고 하고, 그때 입는 옷을 담복(禫服)이라고 한다. 대상은 죽은 뒤 2년, 정확하게는 2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것이 옳을 듯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방제하고 손자의 이름으로 축문을 쓰는 데에 무슨 온당하지 않은 점이 있는가. 이미 제주(祭主)가 된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祖喪父死, 父葬前當服父服, 而葬後服祖服, 恐宜. 父名旁題, 孫名題祝, 有何未安耶? 旣爲祭主, 不得不然.

[문] 혹자는 "아버지에게 비록 폐질(廢疾)이 있더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어찌 차마 대번에 승중복(承重服)을 입을 수 있겠는가. 본복(本服)으로 일을 섭행해야 한다."[185]라고 하고, 혹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승중하는 것은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이때에 어버이의 마음을 따라 조부의 복제(服制)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변수(變數)에 대처하는 의리를 극진히 하는 방도가 아니다."[186]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설 가운데 누가 옳습니까? -여봉섭-
或曰: "父雖有廢疾, 尙生存, 則何忍遽服承重? 以本服攝事." 或曰: "父存承重, 雖未安, 不於此時, 順親之心, 代祖之服, 非所以盡處變之義." 兩說誰得? 【呂鳳燮】

[답]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승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청련(靑蓮)[187], 미암(眉巖)[188], 우암이 모두 허락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말썽이 있었다.

---

185) 아버지에게 …… 있겠는가 : 송준길(宋浚吉)이 민정중(閔鼎重)에게 답한 편지에 보이는 말이다. 《同春堂別集 卷5 答閔大受》

186) 아버지가 …… 아니다 : 박세채(朴世采)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에 보이는 말이다. 《南溪集 卷25 與宋尤齋別紙》

187) 청련(靑蓮) :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을 가리키는 듯하다. 청련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계진(季眞)이다. 1555년(명종10) 문과에 급제하였다. 인성왕후(仁聖王后)가 죽자 삼년상을 주장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후 평안도 관찰사·이조 판서·호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저서에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188) 미암(眉巖) :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호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자는 인중(仁仲)이다. 경전에 널리 통했고 제자(諸子)와 역사에도 밝았다. 《대학》의 언해 작업을 마치고, 《논어》의 언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담양의 의암서원(義巖書院), 무장의 충현사(忠賢祠), 종성의 종산서원(鍾山書院)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저서에 《주자어류전해(朱子語類箋解)》,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하면 끝내 의심스러우니, 옛날의 주소(註疏)에 이미 이러한 설이 있다.
父生承重, 我東靑蓮眉巖尤庵皆許之, 因有脣舌. 以愚見言之, 則終是可疑. 古註疏已有此說.

[문] 종자(宗子)가 아들을 두었는데 출가(出家)하여 승려가 되었다면 종자의 아들이 조부상을 당했을 때 승중합니까? -김영숙-
宗子有子, 而出家爲僧, 其子於祖喪承重否?【金永璹】

[답] 아버지가 폐질(廢疾) 때문에 복을 입지 못하면 아들이 복을 대신해서 입는 것은 옛날에 행한 일이 있으니, 하물며 출가한 경우이겠는가.
其父以廢疾不能持服, 其子代服, 古有行之者, 况出家乎?

[문] 《통고(通考)》[189]에서 혹자가 "조부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죽었는데 증조가 아직 살아 있으면 손자가 승중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만사대(萬斯大)[190]가 "중(重)은 선조를 제사지내는 중임(重任)이니, 증조가 살아있다면 중은 증조에게 있다. 손자가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가 되는 것이지 승중과 무관하니, 승중이라는 명칭은 상을 주관하는 데에서 연유하였다." 하니, 혹자가 "선조를 제사 지내는 중임은 비록 증조에게 있으나 증손을 기준으로 말하면 조부의 제사도 중임이니,

---

《미암집(眉巖集)》 등이 있다.

189) 통고(通考) : 《황조문헌통고(皇朝文獻通考)》이다. 청(淸)나라 개국(1616)부터 건륭 50년(1785)까지의 전장제도를 기록하였다. 청 고종(淸高宗) 건륭(乾隆) 32년(1767)에 혜황(嵇璜) 등이 칙명을 받고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중 청조(淸朝) 부분을 분리하여 다시 편찬한 뒤, 기윤(紀昀) 등이 교정하여 건륭 52년(1787)에 완성되었다.

190) 만사대(萬斯大) : 1633~1683. 청나라의 경학자로 자는 충종(充宗)이며 호는 파옹(跛翁) 또는 갈부선생(褐夫先生)이다. 황종희(黃宗羲)에게 사사하였는데, 특히 춘추학과 예학을 깊이 배웠다. 저서에 《학춘추수필(學春秋隨筆)》, 《학례질의(學禮質疑)》, 《주관변비(周官辨非)》 등이 있다.

승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증조가 아직 살아 있으면 조부와 아버지는 사당이 없이 다만 부식(祔食)[191]만 할 뿐이니, 어찌 대번에 승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호(李鏡湖)[192]가 "만약 고조 이하가 모두 살아있는데 현손(玄孫)의 아버지 이상이 차례를 거슬러 서로 잇달아 죽는다면 현손이 진실로 그 아버지의 참최복을 입어야 하되, 조부가 죽었을 때는 고조가 '적자(嫡子)가 있으면 적손(嫡孫)은 없다'[193]는 의리로 다만 중손(衆孫)을 위한 복을 입어야 한다. 현손은 비록 만씨(萬氏)의 설을 근거하여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최복을 입어도, 만약 그 증조가 또 죽는다면 고조는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결코 감히 승중해서 참최복을 입지 못하고 또한 장차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하는가? 기년복을 입는다면 이미 승중하는 의리가 아니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을 주관하는 예도 아니니, 상을 주관하면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조에게 이미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을 주관한다'는 만씨의 설 역시 미루어 갈 수 없다. 대개 조부와 증조는 모두 고조가 상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다만 본복(本服)을 입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만씨의 설이 이미 저러한데 이경호의 설이 또 이러하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기용-

《通考》, 問: "祖亡於父後, 而曾祖尙存, 孫當承重乎?" 萬斯大曰: "重爲先祖祭祀之重. 曾祖在, 重在曾祖. 孫爲祖服斬, 乃代父爲喪主, 非關承重. 承重之稱, 由乎主祭." 曰: "先祀之重, 雖在曾祖, 就曾孫言, 祖父之祭亦重也, 得不謂之承重乎?" 曰: "曾祖尙存, 則祖禰無廟, 止得祔食, 安得遽稱承重乎?" 李鏡湖曰: "設若高祖以下皆存, 而玄孫之父以上, 逆次相繼而沒, 則玄孫固當服其父斬, 而至其祖沒, 則其高祖當以有嫡子無嫡孫之義, 只服衆孫服. 玄孫雖據萬氏說, 代父服斬, 而若其曾祖又沒, 則高祖尙在, 決不敢承重服斬, 亦將代父服期耶? 服期則旣非承重之義, 又非代父主喪之禮, 蓋主喪

191) 부식(祔食) : 이미 있는 신위에 다른 신위를 붙여 모시는 것이다.

192) 이경호(李鏡湖) : 이의조(李宜朝)를 가리킨다. 경호는 그의 호이다.

193) 적자(嫡子)가 …… 없다 : 《의례주소(儀禮注疏)》 〈상복(喪服)〉 부위장자조(父爲長子條)의 소(疏)에 보인다.

則當斬故也. 於曾祖旣然, 則萬氏'代父主喪'之說, 亦推不去. 蓋祖與曾祖, 皆高祖主其喪, 故己則只服本服而已." 萬氏之說旣如彼, 而鏡湖之說又如此, 未知如何?【閔璣容】

[답] 조부가 죽었을 때 위로 증조가 있으면 아버지가 비록 먼저 죽었더라도 중복(重服)을 입어서는 안 되니, 이는 중(重)이 증조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직 승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조가 있을 때의 증조의 상도 그렇다. 명(明)나라 유자(儒者) 가운데 이미 이런 말을 한 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래 예가(禮家)가 또 이것을 조술(祖述)하되, 지론(持論)을 더 엄준하게 하여 책을 저술하여 세상에 유행되었다. 이는 고조나 증조는 손자가 있는데 증조나 조부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장차 조천(祧遷)하게 되는 중(重)을 중으로 삼고 자기에게 매우 가까운 중은 귀속하는 곳을 알 수 없으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 설이 마침내 유행한다면 윤리(倫理)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작지 않을 듯하니,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승중이란 후사가 되었다[爲後]는 것의 다른 이름이니,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을 승중이라 하고, 세대를 따라서 내려간 것을 후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둘은 모두 통서(統緖)가 지극히 중하다는 명칭이니, 그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승중했다고 말할 때는 후사가 되었다고 거듭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승중이라는 말 안에 후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후사가 되었다고 말할 때는 승중했는지 다시 묻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후사가 되었다는 말 안에 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상(喪)이 자신에게는 전중(傳重)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은 이 상에 유독 후사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후사가 되었으면서 자신을 후사로 삼은 사람에게 중복(重服)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에 이를 언급한 글귀가 있는가?

승중이라는 글자는 경(經) 가운데에 보이지 않으나 전문(傳文)[194]에서 말한 '중을 받는다[受重]'는 것이 바로 후세의 승중이라는 글자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중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 남의 후사가 된

194) 전문(傳文) : 《의례》 〈상복(喪服)〉의 경문에 대한 자하(子夏)의 전(傳)을 말한다.

자가 자신을 후사로 삼은 사람에게 본래 중복을 입는 친족이 아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에서 중복을 입는 근본적인 이유를 궁구해 말하여 '중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손자가 조부를 위해 중복을 입는다고 말할 때는 다만 "아버지가 죽은 뒤에 조부의 후사가 된 자가 참최복을 입는다."라고만 말했지, 중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상복소기(喪服小記)〉의 경우에도 "조부가 죽은 뒤 조모의 후사가 된 사람이 삼년복을 입는다." 하고, 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

대개 세적(世適)[195]으로서 후사가 된 자는 중을 받기 전에 은혜와 의리가 모두 융숭하므로,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중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융숭함이 더해진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글을 지을 때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나는 예가(禮家)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후사가 되는 것의 의미를 망각하여 그런 것인지 후사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조부와 증조는 아버지로 하여금 참최복을 입게 하는 몸이니 죽어서 후사가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은 적자끼리 서로 계승하니 진실로 폐질(廢疾) 및 다른 허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부의 후사가 되는 것은 천륜(天倫)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예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고조나 증조의 후사는 되지만 증조나 조부의 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욱 해괴하다. 자신이 조부의 후사가 되는 까닭은 자신이 아버지의 적자이기 때문이고, 고조나 증조의 후사가 되는 까닭은 자신이 조부의 적손이기 때문이니, 어찌 가까운 쪽에서 친속 관계를 끊고 먼 쪽에서 통서를 잇는 일이 있단 말인가. 아들이나 손자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조부가 그 사이에서 경중의 차이를 두니, 적자와 적손이 있고 서자(庶子)와 서손(庶孫)이 있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자신의 조부가 되는 사람은 대마다 각각 한 사람뿐인데 그 한 사람의 몸에 무게를 재어서 "중이 있다, 중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 곰방메와 호미로 은덕을 베푸는 듯한 기색을 짓는[196] 속인도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으니, 이를 사람의 도리라고

---

195) 세적(世適) : 대를 이을 맏아들이란 뜻이다.

196) 곰방메와 …… 짓는 :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진(秦)나라 사람들이 집이 부유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분가하여 내보내고, 집이 가난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데릴사위로 내보내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사람의 손자가 되어서 이런 상을 당하면 다만 마땅히 안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이 과연 후사가 된 손자라면 자신을 후사로 삼은 사람을 위해 중복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중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중복을 입으나 중복을 입는 사람이 어찌 모두 중을 받아서 중복을 입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중을 받는 것과 중복을 입는 것은 본래 두 가지 일인데, 예가가 듣고 본 것에 익숙해서 중을 받는 것과 중복을 입는 것을 하나의 일로 뒤섞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승중하지 않았으면 중복을 입지 않는다는 설이 있게 되었으니, 윤리와 차례가 지극히 중함을 망각한 것이 개탄스럽다.

중복을 입는 것이 중을 받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자는 전할 만한 중이 없으나 적장손(嫡長孫)이 그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은 전중한 조부에게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처음 봉해진 임금이 조부에게 중을 받은 경우가 아닌데도 그 조부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이 두 번째이고, 아버지에게 폐질이 있으면 그 아들이 일찍이 중을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최복을 입는 것이 세 번째이고, 장자는 중이 아버지에게 있으니, 중을 받은 것을 논할 만한 것이 없으나 장자가 죽으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이 네 번째이다. 만약 중(重)을 받은 것과 중복(重服)을 입는 것을 한 가지 일로 뒤섞는다면 위의 중복을 입는 네 개의 항목은 모두 폐기해야 하는가.

또 승중(承重)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비록 중을 받는다는 말에 근본을 두고 있으나 승중의 주된 뜻은 중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받았다[受]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이니, 전하고 받음에 다른 곡절이 없는 것이 중을 받는 것이다. 승(承)은 잇고 접한다[承接]는 뜻으로, 장차 끊어지려 하는 것을 잇는다는 명칭이다. 이 때문에 한 대(代)를 건너뛰어서 후사가 됨을 승중이라고 하니, 주된 뜻은 '승' 자에 있다. 그러므로 비록 미래의 중(重)이더라도 승중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치는 이러하나

곰방메와 호미를 빌려주면서도 은덕을 베푸는 듯한 기색이 있다."라고 진나라의 풍속을 비판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漢書 賈誼傳》

승중이라고 이름하는 데에는 혐의를 말해 보자면 있으니, 고조나 증조가 살아 있지 않다는 혐의이다. 따라서 전례(典禮)를 훤히 꿰뚫으면 '후사가 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승중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복은 상호관계가 있는 법이다. 가령 자신에게 증조가 있는데 자신이 조부보다 먼저 죽는다면 조부는 필시 적손에 대한 복으로 복상(服喪)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조부상을 당했는데 적손이 조부에 대해 복상한다면 또한 상호관계가 서로 걸맞지 않은 격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증조가 아직 살아 있고 조부가 증조의 적자가 되었으면 적자가 있는 사람에게 적손은 없으니, 조부가 나를 적손으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있는 아버지에게 나를 압강(壓降)해서이다. 가령 오늘 자신이 죽으면 증조는 반드시 적증손(嫡曾孫)에 대한 복으로 복상할 것이다. 증조가 이미 나를 적증손으로 여긴다면 자신이 어찌 감히 적손으로 조부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복상하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복상하든 한결같이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아버지가 감히 복을 입어 줄 수 없는 분에게 아들 또한 감히 복을 입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복을 입어 주어야 하는 분에게 아들 또한 감히 복을 입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역시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였다.

祖喪, 上有曾祖, 則父雖先卒, 不宜爲重服, 重在曾祖, 己未承重故也. 有高祖之曾祖喪亦然. 明儒已有爲此說者, 而東方近世禮家, 又祖述之, 其持論加峻, 著爲成書而行于世. 是高曾有孫, 而曾若祖無後, 將祧之重爲重, 而切己之重, 不知下落, 有是理乎? 此說遂行, 恐其禍倫理非細, 不容無辨. 承重者, 爲後之異名, 溯而上曰承重, 沿而下曰爲後, 皆統緖至重之名, 非有輕重於其間也. 是以說承重時, 不待申言爲後, 而後在其中矣, 說爲後時, 不容更問承重, 而重在其中矣. 此喪之於己身, 藉曰非傳重, 己身之於此喪, 獨非爲後歟? 爲後而不重服於所後, 禮有其文歟? 承重字, 經中不見, 傳文所言"受重", 乃後世承重字所本也. 受重之云, 曷爲而發? 因爲人後者之於所後, 本非服重之親, 是故傳文究言其服重之根由而曰"受重". 及其言"孫爲祖重服", 則但言"父卒然後, 爲祖後者服斬", 未嘗言受重. 以至於〈喪服小

記〉, 言"祖沒而後, 爲祖母後者三年", 未嘗言受重. 蓋世適之爲後者, 受重以前, 恩義俱隆, 非爲人後者, 因受重而加隆之比, 其立文宜如此也. 吾未知禮家之爲此說, 忘却爲後之義而然歟? 抑不許其爲後歟? 祖與曾是使父服斬之身, 不容死而無後, 己身是適適相承, 苟非有廢疾及他痕咎, 則後於其祖, 天屬所定, 非禮家所能奪也. 若曰"後於高曾, 而非爲後於曾若祖", 則尤可駭. 己之所以後於祖, 以其爲父之適也, 所以後於高曾, 以其爲祖之適也, 豈有絶其屬於近, 而紹其統於遠者乎? 子若孫非一人, 故父與祖輕重於其間, 有適子適孫, 有庶子庶孫, 固其所也. 祖於己身者, 代各一人而已, 乃於一人身, 上下斤兩曰"重在, 重不在", 耨鋤德色之俗, 亦不至此, 是可曰人理乎? 是故爲人孫而遭此喪, 但當內顧其身, 其身果爲後之孫乎? 則爲所後重服, 走不得避不得, 更無他說話矣. 受重者固重服, 而重服者豈皆受重而然耶? 然則受重與重服, 自是兩件事. 禮家狃於聞見, 以受重與重服, 混爲一事. 故遂有"不承重不重服"之說, 忘其倫序之至重, 可慨也. 重服之非由於受重者, 不一其事. 庶子無可傳之重, 而其冢孫之爲之服也, 則必不殊於傳重之祖, 一也. 始封之君, 非受重於祖, 而猶爲其祖斬, 二也. 父有廢疾, 其子何嘗受重, 而代父服斬, 三也. 長子重在其父, 有何受重之可論, 而父爲之服斬, 四也. 若以受重重服, 混爲一事, 則右四項重服皆可廢耶? 又按承重字, 雖本於受重, 而其主意與受重不同. 受者, 已然之辭, 有傳有受, 無他委曲者, 是受重也. 承者, 承接之意, 紹其將絶之名. 是以惟間代爲後, 名曰承重, 主意專在承字上. 故雖將然之重, 不害其爲承重, 其理則然, 而名以承重, 語嫌則有之, 疑於高曾不在也. 會通典禮, 當言"爲後", 不當言"承重". 或曰: "服有去來. 假令己有曾祖, 己身先其祖而不幸, 則祖必不以適孫服服之. 今遇祖喪, 乃以適孫之所以服其祖者服之, 不亦來去不相當乎?" 曰: "曾祖尙在, 而祖爲之適子, 則有適子者無適孫, 祖之不適孫我者, 壓於父在也. 假令今日, 己身不幸, 則曾祖必以適曾孫之服服之. 曾祖旣以我爲適曾孫, 則己身安敢不以適孫事其祖乎? 蓋自上服下, 自下服上, 一是以父爲主. 父所不敢服, 子亦不敢服者, 固以父爲主也, 父所當服, 子亦不敢不服者, 亦以父爲主也."

[문] 일찍이 5대조나 6대조의 상을 주관하면서 자최(齊衰) 3개월복을 입어야 하는지 여쭈었는데, “그런 듯하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종손이 승중하고 참최복을 입는다’[197]는 수암(遂菴)의 설을 보았는데, 정재규가 “이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암(陶菴)도 ‘자최 3개월복을 입는다.’[198]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 의심하다가 ‘살아서 5대조를 섬겼으면 자최 3개월복을 입어야 한다’[199]는 주자(朱子)의 설이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보였습니다. 이에 주제넘게도 상을 주관하는 자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여겼으니, 이는 주자의 설로 인하여 얻은 견해입니다. 자최 3개월복은 본래 고조(高祖)에 대한 정복(正服)인데 살아서 5대조를 섬겼을 때도 똑같이 자최 3개월복을 입는 까닭은 정존(正尊)[200]에 대한 복은 더 이상 감쇄(減殺)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섬겼다고 말했다면 필시 아버지나 조부 가운데 상을 주관하여 후사가 된 자가 있을 것이니, 자신은 다만 살아서 섬긴 손자로 복상할 뿐입니다. 지금 후사가 되어 상을 주관하면서 살아서 섬긴 다른 손자들과 똑같이 하고 만다면 이는 주자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 자최 3개월복을 입어 주는 친족으로서 후사가 된다면 삼년복을 입는 것은 고조와 5대조에게 차이가 없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귀-

嘗稟主五代六代祖喪, 當服齊衰三月. 則下答曰: “似然”. 而後看遂庵說有“宗孫承重斬衰”之語, 鄭載圭云“此當更思. 陶庵亦云‘齊衰三月’”. 而愚尋常疑之, “逮事五代祖, 當服齊衰三月”朱子說, 見《語類》, 妄竊以爲主其喪者, 當服三年. 蓋因朱子說而得之. 齊衰三月, 本高祖正服, 而逮事五代祖亦同者, 以其正尊之服, 無可以復殺也. 言逮事則是必有父祖主喪而爲後者也,

---

197) 종손이 …… 입는다 : 《한수재집(寒水齋集)》 권17 〈답박심보(答朴心甫)〉의 “5대조의 상에는 종손이 승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듯하다.

198) 자최 3개월복을 입는다 : 《도암집(陶菴集)》 권20 〈답최숙고(答崔叔固)〉에 보인다.

199) 살아서 …… 한다 : 《주자어류》 권85 〈예기(禮記) 의례(儀禮)〉 상복경전(喪服經傳)에 보이는 말로 원문은 “4세(世) 이상에 대해서는, 살아 계실 때에 섬겼다면 모두 자최 3개월복을 입는다.[自四世以上, 凡逮事, 皆當爲齊衰三月]”이다.

200) 정존(正尊) : 자신에게 직계이면서 항렬이 높은 어른을 말한다.

己卽但以逮事而服也. 今爲其後主其喪, 而同諸孫之逮事而已, 則恐非朱子之意, 以齊衰三月之親而爲後, 則服三年, 恐無間於高祖與五代祖. 未知如何?【金錫龜】

[답] 그대의 이 설이 매우 합당하다.
此說甚當.

[문] 동유(東儒)가 "5대조는 예에 따라 사당을 철거해야 하고, 신주(神主)는 체천(遞遷)하여 최장방(最長房)의 집에서 모셔야 한다. 이때 생존하신 선조는 고(考)이건 비(妣)이건 또한 함께 친속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손의 집으로 옮겨 봉양을 받게 하고, 타고난 수명이 다하도록 봉양한 뒤에 종자(宗子)와 중자(衆子)가 모두 자최 3개월복을 입는다."[201]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주자어류》의 "4세 이상의 선조에 대해 살아서 섬긴 자손의 경우 또한 자최 3개월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삼가 '살아서 섬겼다[逮事]'는 두 글자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는 세상 사람들이 5세(世)를 위해 입는 복이 없다는 이유로 혹여 장차 복상하지 않으려 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에, 조부와 증조와 고조의 상에

---

201) 5대조는 …… 입는다 :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말이다.《도암집》권20 〈답최숙고〉에 실린 전문은 "5대조는 예(禮)에 의거하면 사당을 헐어야 하니, 사당을 이미 헐어버리면 비록 적자끼리 서로 계승한 종자(宗子)라 할지라도 다시는 근거하여 종(宗)으로 삼을 만한 의리가 없어 중자(衆子)와 다름이 없으니, 갑자기 승중하여 삼년복을 입어서는 안 될 듯하다. 나는 생각건대, 사람의 집에 선조의 수명이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내외가 함께 살아있는 경우는 더욱 어렵다. 혹 고(考)나 비(妣)가 만약 먼저 돌아가시면 신주는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천(遞遷)해야 한다. 이때 생존하신 선조도 친속 중에 조금 가까운 자손에게 옮겨 함께 봉양을 받게 하고, 타고난 수명이 다하도록 봉양을 마친 뒤에는 종자와 중자(衆子)는 모두 자최 3개월을 입는다. 그 상은 최장방이 그대로 주관하여 3년을 마치고, 그 복은 다만 본복만을 입어야 한다. 만약 다른 장방이 없고 종자(宗子)만 있으면 또한 자최 3개월을 입어야 하고, 신주는 삼년상을 마친 뒤에 받들어서 매안(埋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五代祖, 禮當毁廟. 廟旣當毁, 則雖嫡嫡相承之宗子, 無復據而可宗之義, 只與衆子無異, 恐不可遽承其重而服喪三年也. 吾意則人家祖先之壽考如是者, 勢必甚鮮, 而其內外俱存爲尤難. 或考或妣若先沒, 則其神主當遞奉於最長房. 伊時其生存祖先, 亦同移養於親屬差近之子孫, 於情理, 似無所礙. 及其以天年終養之後, 宗子衆子皆服齊衰三月, 而其喪則最長房仍主之, 以終三年, 而其服則只當服本服而已. 設或無他長房, 而只有宗子, 則亦當齊衰三月. 主喪三年而後, 奉而埋安. 未知如何?]"이다.

증손과 현손과 손자가 승중하니, 5세의 종손이 5세조를 위해 삼년상을 마치는 것이 의(義)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생존한 조비(祖妣)를 장방의 집에 옮겨 봉양한다는 설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한다[202]는 글귀는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 섬기기를 죽은 사람처럼 하는 예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5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장방의 집으로 옮긴다면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로 살아 있는 조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천리입니까, 인정입니까? -정시림-
東儒有曰: "五代祖, 禮當毁廟, 神主當遞奉於最長房. 伊時生存祖先, 或考或妣, 亦同移養於親屬最近之子孫, 天年終養之後, 宗子衆子, 皆服齊衰三月." 蓋以《語類》"四世以上, 若逮事者, 亦當齊衰三月"而然也. 竊詳"逮事"二字, 則恐世人以五世無服, 而或將不服故云爾. 禮, 祖曾高之喪, 爲曾玄孫者爲之承重, 則五世之宗孫爲五世祖終喪三年, 於義何害? 生存祖妣遷于長房之說, 又有可疑. 有事死如生之文, 而事生如死之禮, 則未之見也. 以五世之故, 一朝遷于長房, 則其非以死者之道待生存之祖耶? 此果天理耶? 人情耶?【鄭時林】

[답] 그대가 논한 말이 대의(大義)에 정당하다.
所論, 於大義正當.

[문] 장자(長子)를 위해 삼년복을 입으려면 반드시 4세를 계승한 자여야 합니까? 비록 당대(當代)라 할지라도 삼년복을 입습니까? -김홍택-[203]
爲長子三年, 必繼四世者耶? 雖當代, 亦然耶?【金洪澤】

---

202) 죽은 …… 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9장에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듯이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다.[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라는 말이 보인다.

203) 김홍택(金洪澤) : 생몰연대 미상.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화순군 이서면 갑동마을로 이거하여 한문서당을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답]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는 말에 대해 마융(馬融)[204]이 "4세를 계승한 장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205]은 "4세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기(禮記)》에 명확한 문구 두 단락이 있으니, 하나는 "서자(庶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조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서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다.[206] 후세에 해설하는 자가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조부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이 조부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말하면 무릇 자신이 아버지를 계승한 소종(小宗)이면 모두 자신의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 복을 제정한 본래 의도는 자신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중복을 입어 주지 않는 것이니, 보내온 편지에서 당대라 할지라도 삼년복을 입느냐는 설은 잘못이다. 예에 따르면 적자가 있으면 적손은 없으니,[207] 여러 대를 계승한 장자라도 조부가 만약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

長子三年, 馬融以爲"繼四世長子", 而鄭玄則以爲"不待四世". 然而《禮記》有兩段明文: 其一曰"庶子不爲長子三年, 不繼祖也", 其一曰"庶子不爲長子

---

204) 마융(馬融) : 79~166. 자는 계장(季長)이다. 후한(後漢)의 경학가로, 훈고학(訓詁學)의 비조로 칭해진다. 경서를 주해할 적에 고문의 경설을 위주로 하되 금문의 경설도 아울러 취하였다. 정현(鄭玄), 노식(盧植)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삼례(三禮), 《논어》, 《주역》, 《노자(老子)》 등에 주석을 달았으나 일부만 전한다.

205) 정현(鄭玄) : 127~200. 자는 강성(康成)이다. 후한 말기 경학과 훈고학의 대가이다. 환제(桓帝) 때 당고(黨錮)의 화로 금고(禁錮)를 당한 이후 연구와 교육에 진력하여 천여 명의 제자를 길렀다. 고문의 경설을 위주로 하되 금문의 경설도 받아들여 여러 경서에 주석을 달아 한대의 경학을 집대성하였다. 《모시전(毛詩箋)》과 《주례》, 《의례》, 《예기》에 대한 주해만이 전한다.

206) 예기에 …… 이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서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조부와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이다.[庶子不爲長子斬, 不繼祖與禰故也.]"라는 구절을 변형하여 인용한 듯하다.

207) 적자가 …… 없으니 : 《의례》 〈상복〉 부장기(不杖期) 적손조(適孫條)에 "적자가 있으면 적손은 없다.[有適子, 無適孫.]"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주나라의 도는 적자가 죽으면 적손을 세웠다. 그런데 이 적손은 장차 위로 조부의 후사가 될 자이지만, 장자가 있으면 모두 서손일 따름이다.[周之道, 適子死, 立適孫. 是適孫, 將上爲祖後者也, 長子在, 則皆爲庶孫耳.]"라고 하였다.

三年, 不繼禰也". 後世說者曰: "不繼禰者, 言己身不繼禰也, 不繼祖者, 言子身不繼祖也." 以此言之, 則凡己身繼父之小宗, 皆可爲長子三年矣. 制服之本意, 不以繼己身而爲之重服. 來書當代亦服三年之說, 誤矣. 禮"有適子則無適孫", 雖屢世長子, 其祖父若生存, 則父不得爲之三年矣.

[문] 적장자(嫡長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것은 반드시 적자끼리 서로 계승하여 4대가 된 뒤에야 가능합니까? -박정현-
爲長子三年, 必嫡嫡相承, 四世然後可耶?【朴鼎鉉】

[답] 적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것에 대해 전문(傳文)에는 다만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正體於上]'는 네 글자만 있으니,[208] 정(正)이 되지 않고 체(體)가 되지 않으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을 볼 수 있다. 《예기》에 보이는 곳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서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이다.[庶子不爲長子三年, 不繼禰也.]"이고, 다른 하나는 "조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이다.[不繼祖也.]"이다. 《의례(儀禮)》와 《예기》를 합쳐서 보면 적자끼리 서로 계승한다는 설이 전혀 없으니,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이 바로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 마융과 정현이 혼란스럽게 하여 마침내 온갖 말들이 있게 되었다.
爲長子三年, 傳文但有"正體於上"四字, 可見不正不體, 則不可三年之意. 見於《戴記》者二處: 一則曰"庶子不爲長子三年, 不繼禰也". 一則曰"不繼祖也". 合《儀禮》《戴記》觀之, 頓無嫡嫡相承之說, 爲父後者, 便可爲長子三年矣. 馬鄭亂之, 遂有多般說話.

---

208) 장자를 …… 있으니 : 《의례》 〈상복〉 참최장(斬衰章)에 "적장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적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복을 입는다.[父爲長子.]"라고 하였고, 그 전문(傳文)에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적장자는 윗대에 대하여 정(正)과 체(體)가 되고, 또 장차 중(重)을 전해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라고 하였다. 위는 윗대이고, 정은 적통(嫡統)을, 체는 친자식을 의미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자신의 적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압존(壓尊)에 혐의가 있어서입니까? -이태로-[209]
父在, 不爲長子三年, 嫌於壓尊耶?【李泰魯】

[답] 적자가 있으면 적손은 없는 법이니, 압강(壓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장자가 아직 적손(嫡孫)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有適子則無適孫, 非壓降也, 以其長子姑未爲適孫也.

[문] 적장자를 위해 참최 삼년복을 입으니, 그렇다면 계자(繼子)의 경우에도 삼년복을 입습니까? -정희원-
爲長子服衰三年, 則繼子亦然否?【鄭禧源】

[답] 계자와 계자의 상을 위해 입는 복은 전문(傳文)에 정(正)과 체(體)에 관한 설이 있다.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삼년복을 입어서는 안 될 듯한데 우리나라 중엽의 선유(先儒)는 대부분 계자도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가려서 행하는 것이 옳다.
繼子與爲其繼子喪服, 傳文有正體之說. 愚見或不當三年, 而我東中葉先儒, 多以爲亦當三年, 擇而行之, 可也.

[문] 계후(繼後)한 아들의 복제(服制)에 관하여 묻습니다. -윤종의(尹宗儀)[210]-
繼后子服制.【尹宗儀】

---

209) 이태로(李泰魯) : 1846~1879. 본관은 풍산(豐山),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최익현(崔益鉉)의 문집《면암집(勉菴集)》에 〈이씨 삼세 효부전(李氏三世孝婦傳)〉에 〈이태로 처 홍씨(李泰魯妻洪氏)〉가 실려 있다.

210) 윤종의(尹宗儀) : 1805~188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사연(士淵), 호는 연재(淵齋)이다. 1862년(철종13) 삼남에 민란이 일어나자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을 아뢰었고, 1875년(고종12)에 공조 참의, 돈녕부 도정 등을 거쳤다. 1882년 파광군(坡光君)에 습봉(襲封)되었다. 경전에 밝았고 예학(禮學)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방례고증(邦禮考證)》,《예기사문록(禮記思問錄)》,《상례분류(喪禮分類)》 등이 있다.

[답]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적장자는 윗대에 대해 정(正)과 체(體)가 되고, 또 장차 중(重)을 전해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례》 〈상복〉의 전문(傳文)입니다. 성인이 복제(服制)를 제정한 뜻은 헤아리기 쉽지 않으니, 후세 사람이 따르고 믿어야 할 것은 전문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이 전문은 다른 조목들과 달리 매우 정중하니, “적장자는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말은 적장자의 몸으로부터 미루어 올라간 것이고, “중을 전해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자기의 몸으로부터 미루어 내려간 것입니다. 미루어 올라가는 것과 미루어 내려가는 것에 한 점도 어렵게 생각하거나 삼갈 것이 없은 뒤에야 삼년복이 가볍지 않다는 뜻에 합치될 것입니다. 삼년복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이제 다만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된다.”[211]라는 한 구절을 근거로 삼아 계후한 아들의 상에 삼년복을 입는다고 한다면, 전문의 뜻과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삼년복을 입는다면 그는 본래 내 아들인데, 승중(承重)한 서자에게는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어 주지 않습니까. 거듭 생각해 보아도 끝내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엽의 유현(儒賢)들의 예론에 석연찮은 점이 있게 된 까닭입니다.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此〈喪服〉傳文. 聖人制服之意, 未易窺測, 後人之所當遵信者, 非傳文乎? 竊意此傳文, 不與他條等, 極其鄭重. 其曰“正體於上”者, 自子之身而逆推之也, 其曰“又乃將所傳重”, 自己之身而順推之也. 逆推順推, 無一點難愼而後, 合於三年制服之不輕, 於三年也, 如此, 今也但據“爲人後者爲之子”一句, 服繼後子三年, 無乃與傳文之意不相當乎? 若以爲之子而服之三年, 則彼本是己子, 而承重之庶子, 曷爲而不三年也? 反覆思惟, 終不安穩. 此所以於我東中葉諸儒賢之禮論, 有不釋然者也.

---

211) 남의 …… 된다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성공(成公) 15년조(條) 경문에 “3월에 중영제(仲嬰齊)가 졸(卒)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 “공손영제(公孫嬰齊)를 어찌하여 중영제라고 하였는가? 형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형의 후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중영제라고 하였는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爲人後者, 爲之子也.]”라고 한 구절을 가리키는 듯하다.

[문] 다시 물음.
再問.

[답]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養子)로 들이면 삼년복을 입지 않는데, 이에 대해 권수암(權遂菴 권상하(權尙夏))이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인다는 것은 다른 성씨를 길러 아들을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늘 이 말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가충(賈充)은 외손(外孫)을 후사로 삼았다가 황공(荒公)이라는 시호를 얻었는데[212] 하물며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후사로 삼는 경우이겠습니까. 이는 왕법(王法)으로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니, 어찌 3년 여부를 논하겠습니까. 이동호(李桐湖)[213]도 "후사로 삼은 아들을 위해 마땅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선배들의 의론은 대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를 깊이 신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이불체(正而不體)의 아들[214]을 위해서도 삼년복을 입어 준다면 체이부정(體而不正)의 서자(庶子)[215]를 위해서는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시 상세히 살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212) 가충(賈充)은 …… 얻었는데 : 가충(217~282)은 진(晋)나라 때의 재상으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가충의 시호를 의논할 적에 진수(秦秀)가 "가충은 아들 가여민(賈黎民)이 요절한 뒤에 종족을 제쳐 놓고 외손(外孫)인 한밀(韓謐)을 가여민의 후사(後嗣)로 삼았으니, 이는 예법을 위배하고 사정(私情)에만 치우친 처사이다."라고 하면서 '법도를 혼란시키는 것이 황(荒)이다.'라고 한 시호법을 따라 시호를 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무제(武帝)는 무(武)라는 시호를 내렸다. 《晋書 卷40 賈充列傳》

213) 이동호(李桐湖) : 동호는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의 호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군보(君輔), 다른 호는 구천(龜川)이다.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며, 송시열과 박세채의 제자로 예학에 밝았다. 1674년(현종15) 효종(孝宗)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어 2차 예송(禮訟)이 일어났을 때, 송시열이 남인의 탄핵을 받아 삭직되자 신원(伸寃)하는 상소를 올려 영광(靈光)에 유배되었다. 1678년(숙종4) 귀양에서 풀려난 뒤 학행으로 천거되어 창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로 서인이 다시 집권한 뒤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등용되었고, 사복시 정, 한성부 우윤, 공조 참판, 형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만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예설(禮說)을 두루 연구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에 《답문의례(答問疑禮)》, 《왕조례(王朝禮)》, 《동호예설(桐湖禮說)》 등이 있다.

214) 정이불체(正而不體)의 아들 : 정(正)은 적장(嫡長)을, 체(體)는 그 몸이 아버지를 계승한 것, 즉 친아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이불체의 아들이란 적장이면서 친아들이 아닌 아들, 즉 적손(嫡孫)을 가리킨다. 《儀禮注疏 喪服》

215) 체이부정(體而不正)의 서자(庶子) : 친아들[體]이면서 적장이 아닌[不正] 서자를 말한다. 여기서 서자는 적장자 이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養他子, 不三年, 權遂庵謂: “養他子者, 養他姓爲子也.” 尋常致疑於此. 賈充以外孫爲後, 得荒公之諡. 况以他人之子爲後? 此王法之所必不許也, 何論三年與否乎? 李桐湖亦謂: “繼後子, 當三年.” 先輩議論, 大槩如此. 而迂愚不敢深信, 正而不體之子, 亦爲之三年, 則體而不正之庶子, 胡爲而不三年也? 更詳之如何?

[문] 자신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경우는 자신의 적장자의 상에 참최복을 입습니까, 기년복을 입습니까? -기문현-[216]
己爲人後者, 於長子喪, 服斬? 服期?【奇文鉉】

[답] 복제(服制)에 대해서 나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은 소(疏)에서 한 말을 근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현들이 논한 것을 보면 소의 말을 그르다고 하는 학자가 한둘이 아니니, 그 학자들은 모두 “계후(繼後)한 사람 또한 자신의 적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부분이니,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나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끝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의 말은 이미 유현(儒賢)들에게 공박을 당했으니, 우선 논하지는 않겠고 다만 전문(傳文)의 본래 의미를 보는 것이 옳다.

전문에 “적장자를 위해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 적장자는 윗대에 대하여 정(正)과 체(體)가 되고, 또 장차 중을 전해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將所傳重也.]”라고 하였는데, ‘정체’ 두 글자를 만약 다만 자신의 몸만을 가지고 말했다면 “자신에게 정과 체가 된다.[正體於己]”라고 하는 것이 옳고, 혹은 다만 정과 체만 말했더라도 역시 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굳이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라고 말한 까닭은 아마 아버지와 조부를 이어서 그 정과 체가 됨을 가지고 말해서가 아니겠는가.

---

216) 기문현(奇文鉉) : 1811~1861.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우용(羽用), 호는 송대(松臺)이다. 1844년(헌종10)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충청 도사(忠淸都事), 홍문관 부수찬, 사간원 헌납, 은산현감(殷山縣監),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송대유고(松臺遺稿)》가 있다.

그렇다면 소의 말은 대번에 공박해서는 안 될 듯하다. 다만 소에서 적자로서의 계승을 굳이 3세(世)로 한정한 것은 어떠한 내력이 없으니, 이것이 유현들의 의심을 자아낸 까닭이다.

우리나라 유현들의 여러 설은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나오는데, 그중 남계(南溪)[217]의 설이 기년을 주장하는 논의인 듯하다.[218] 이동호(李桐湖)가 전문의 문의(文義)를 논한 것이 지극히 상세한데, 이른바 "적장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와 자신에게 정과 체가 된다."[219]라는 말 또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계후한 사람의 적장자가 자신에게는 진실로 정과 체가 되겠으나 조부에게도 정과 체이겠는가. 이곳에는 한 꺼풀 석연치 않은 곳이 있는 듯하다. 또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 자는 아들이고 적장자가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이니, 그렇다면 이른바 위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자신은 말하지 않은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조부[祖]와 아버지[父]와 자신[己] 세 글자를 일괄적으로 연이어 말한 것이 의논할 만한 점이 있을 듯하다.

---

217) 남계(南溪) :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화숙(和叔), 다른 호는 현석(玄石)이다.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과 학문적 교유 관계를 가졌다. 1683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으며,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소론이 정권을 잡은 뒤 좌의정에 올랐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저서에 《육례의집(六禮疑輯)》, 《사례변절(四禮變節)》, 《남계예설(南溪禮說)》, 《남계집(南溪集)》 등이 있다.

218) 기년을 …… 듯하다 : 《가례증해》 '부위적자당위후자야(父爲適子當爲後者也)' 조항에 보이는데, 박세채의 직접적인 언사는 인용하지 않고 다만 "현석(玄石)이 가공언 소의 '적자끼리 서로 계승한다'는 말을 근거로 삼았다고 들었다.[聞玄石以賈疏適適相承之說爲據云.]"라고 한 김창협(金昌協)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박세채가 근거로 삼은 적자끼리 서로 계승한다는 가공언의 설은 "아버지와 조부가 윗대에 대하여 적자끼리 서로 계승하였고, 자기 또한 뒤에서 적자로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라고 하였고, '또 장차 중을 전해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以其父祖適適相承於上, 己又適承於後. 故云'正體於上'云, '又乃將所傳重也'. 有此二事, 乃得爲長子三年也.]"라는 말을 가리키는 듯하다.

219) 장자는 …… 자이다 : 《가례증해》 '부위적자당위후자야' 조항에서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은 반드시 3대가 모두 정과 체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 관한 학자들의 논설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 "전문(傳文)에서 말한 '정체(正體)'의 '정(正)'은 경문(經文)에서 말한 '장자(長子)'의 '장(長)'에 상응하고, '정체(正體)'의 '체(體)'는 경문에서 말한 '장자(長子)'의 '자(子)'에 상응하니, 장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와 자신에게 정과 체가 된다는 말이지 아버지와 조부와 자신이 저마다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傳文正體之正, 應經文長子之長, 正體之體, 應經文長子之子, 謂長子爲正體於父祖己, 非謂父祖己自爲正體於上也.]"라고 한 이세필의 말이 보인다.

服制, 吾以爲當期者据疏說也, 今見東儒所論, 以疏說爲非者不一. 其家皆以爲"繼後者亦當爲其長子服衰". 此甚惶悚處也, 奈何? 奈何? 然而吾之愚見, 則終覺不然. 疏說旣爲諸儒所攻, 則姑勿論, 但觀傳文本意, 可矣. 傳文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將所傳重也." '正體'二字, 若但以己身言之, 則曰"正體於己", 可也, 或但言正體, 亦無不可. 必曰"正體於上"者, 豈非以繼父與祖而爲其正體言耶? 然則疏說恐不可遽攻也. 但疏中嫡承之必以三世爲限者, 無甚來歷, 此所以開諸儒之疑也. 東儒諸說, 出於《家禮增解》. 其中南溪說, 似主期年之論矣. 李桐湖所論傳文文義, 極其剖析, 所云"長子爲正體於父祖己"者, 亦非不是. 而但繼後者長子, 於己固正體矣, 於祖父亦正體乎? 此處恐有一膜隔子. 且正體於上者, 子也, 謂長子爲正體於上者, 己也, 則所謂上者, 自己而指其上, 而己在不言中矣. 今以祖父己三字一例連說, 恐有可議.

복제에 관한 설을 덧붙임[220]

服制說附

출계(出繼)한 사람이 장자를 위해 입어 주는 복제에 관해, 나는 제현(諸賢)의 논의가 있음을 일찌감치 알았으니, 내가 들은 것을 일러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게 하는 것이 옳고, 절대로 감히 소의 말을 경솔하게 근거로 삼아 기년복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견문이 이에 죄스럽다. 그러나 시험삼아 제현의 논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전문(傳文)의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正體於上]"라는 네 글자에 끝내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아마 선입견이 주가 되어 사사로운 뜻이 가리고 막아서 그러할 것이니, 이 점이 매우 두렵다.

대개 윗대에 대하여 정(正)과 체(體)가 되는 자는 누구인가? 아들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들이 윗대에 대하여 정과 체가 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른바 '윗대[上]'가 만약

220) 복제에 …… 덧붙임 : 이 내용은 《노사집》 〈복제에 관한 설을 재종제 우용에게 부침.[服制說寄再從弟羽用]〉에 보인다. 우용은 기문현(奇文鉉)의 자이다.

오로지 자신만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면, 자신을 말하는데 자신을 윗대라고 하여 명백하고 직접적인 '자신[己]' 자를 놓아두고 모호한 '상(上)' 자를 사용한 것은 문맥과 어세로 참고하면 결단코 옳지 않을 듯하다. 이 때문에 망령된 생각으로는 '상' 한 글자는 자신으로부터 그 위를 가리키는 것이니, 그 위를 가리키면 자신은 말하지 않은 가운데에 포함된 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남의 후사를 잇는 사람의 아들은 진실로 복을 입는 자의 이상의 친척에게 정과 체가 될 수 없으니, 이것이 아까 말한 석연치 못한 점이다.

일찍이 듣건대 복을 입는 것은 기년(期年)으로 다하니, 부모상 3년은 융숭한 예(禮)를 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적장자의 상에도 융숭한 예를 더하는 복을 입는 이유는 자신에게 정과 체가 되어서도 아니고, 장차 적장자가 자신의 제사를 받들어서도 아니다. 자신의 정과 체여서 융숭한 예를 더할 수 있다면 서자(庶子)도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있다. 자신의 제사를 받들기 때문에 융숭한 예를 더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들을 수양(收養)하여 후사로 삼은 자도 수양한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어 줄 수 있다.

지금 자신이 삼년복을 입어 주는 이 적장자는 자신에게 정과 체가 되는 자이니, 바로 돌아가신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가 서로 전한 정과 체이며, 적장자가 장차 자신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가 받든 종사(宗祀)의 중임이다. 이 참최복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적자를 위한 참최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신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를 위해 그들의 적손(嫡孫)을 위한 참최복을 입는 것이다.

평소에 본 것이 이러하여 주제넘게 종통(宗統)을 계승한 서자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종통을 계승한 자는 모두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지금 선유(先儒)들의 논의를 보면 크게 서로 차이가 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라는 한 글귀를 인용하여 "소후부(所後父) 또한 계후한 아들을 위해 참최복을 입어 주어야 한다."라고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자신의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은 바로 결안(決案)이 성립된 뒤의 일이니, 두렵고 부끄럽다. 이전의 소견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한으로 여겨 마침내 이와 같이 기록한다.

出繼人長子服制, 正鎭也早知有諸賢之論, 則陳其所聞, 而使當人自擇, 可也, 必不敢輕據疏說, 而以期爲斷. 聞見孤寡, 於斯爲罪. 然試以諸賢之論思之, 其於傳文"正體於上"四字, 終有不能釋然者, 豈先入爲主, 私意蔽錮而然耶? 是甚可懼. 蓋正體於上者, 誰也? 非指子之身耶? 謂子爲正體於上者, 誰也? 非子之父耶? 所謂上者, 若專指己身而言也, 則己方有言, 而謂己爲上, 舍白直之己字, 而用糢糊之上字, 參以文脈語勢, 決恐不然. 是以妄意上之一字, 自己而指其上也, 指其上而己在不言中矣. 以此言之, 則繼後者之子, 固不得正體於制服者之以上親也, 此所謂不能釋然者也. 嘗聞制服窮於期, 父母之喪三年, 加隆也. 長子之喪, 亦爲加隆之服者, 非以正體於己也, 非以將奉己之祀也. 己之正體而可以加隆, 則庶子亦可以爲爲長子三年矣. 奉己之祀而可以加隆, 則養他子爲後者, 亦可以三年矣. 今此三年之長子, 則正體於己者, 乃先祖父相傳之正體也. 其將奉己之祀者, 乃先祖父宗祀之重也. 是斬也非爲己而斬其嫡子也, 乃爲先祖父而斬其嫡孫也. 尋常看得如此, 妄意以爲庶子之承宗者, 爲人後而承宗者, 皆不在爲長子三年之科. 今看先儒之所論, 大相逕庭. 至引"爲人後者爲之子"一句, 謂"所後父亦當爲繼後子服斬". 然則爲人後者爲其長子服斬, 乃是決案後事也, 惶恐羞愧. 自恨其前見之左, 遂記之如此.

[문] 먼저 부친상을 당하고 이어서 조모상을 당한 경우 성복(成服)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조부를 위해 입는 복은 무엇으로 합니까? 평상시에 입는 상복은 무엇을 입습니까? -박태혁-
先喪父, 繼喪祖母, 成服當何先? 服祖何以? 常服何持?【朴泰赫】

[답] 이미 먼저 부친상을 당했다면 성복하는 의절(儀節)은 먼저 참최복(斬衰服)으로 성복하고 나중에 자최복(齊衰服)으로 성복하는 것이 옳다. 고례(古禮)에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에 조부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승중복(承重服)[221]을 3년 동안 입는다고 한다. 평상시에 입는 상복으로 말하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성복한 그대로 자최복을 입고, 아버지의 장사에 계빈(啓殯)한 뒤에는 참최복을 입고 종사하며 자최복을 입고 조모의 장사를 행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旣先遭父喪, 則成服之節, 先成斬衰, 而後成齊衰, 可也. 古禮父未葬而祖卒, 則因服周. 而今則不然, 皆承重三年云矣. 若其常持之服, 則葬前因成服而持齊衰, 父葬啓殯後, 以斬衰從事, 以齊衰行祖母葬似可.

[문] 제 종질(從姪)이 부친상 중에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기년복을 입습니까, 승중복을 입습니까? 그 아버지의 소상(小祥)이 조모를 장사 지내기 전에 있습니다. 제사를 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정재학-[222]
在鶴從姪, 父喪中遭祖母喪, 服期耶? 服重耶? 其父小祥在葬前, 行祭當否何居?【鄭在鶴】

[답] 그대 조카의 복제에 관한 문제는 마땅히 승중복으로 행해야 할 듯하나 조모를 장사 지내기 전에는 행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부친의 소상은

---

221) 승중복(承重服) : 아버지를 여읜 장자가 조부모의 상을 당하여 입는 복이다. 조부상에는 참최삼년복을 입고, 조모상에는 자최삼년복을 입는다.

222) 정재학(鄭在學) : 1823~?.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사국(士國), 호는 팔광(八狂)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고 기정진의 문인이다.

장사를 지낸 뒤에 날을 골라서 행하는 것이 옳다.
令堂姪服制事, 似當行重服, 而祖母葬前不可行. 亡父小祥, 葬後卜日行之, 可也.

[문] 사계(沙溪)가 "'아버지가 죽고 조부는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는 구절은 아마도 '조부가 살아있는 경우 조모를 위해서 입는다'는 구절 뒤에 덧붙어야 할 듯하니, 다시 상세히 살펴야 한다."[223]라고 하였습니다. 우암(尤庵)은 "'할아버지는 손자를 압강(壓降)하지 못한다'[224]는 글귀가 있으니, 그렇다면 대뜸 강복(降服)하는 예를 따르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선사(先師 김장생)께서도 일찍이 이를 의심하셨다. 근래에 이런 일을 당한 사대부를 보건대 모두 삼년복을 입으니, '예는 의심스러우면 후한 쪽을 따른다.'[225]라는 글귀에 합당한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226] 동춘(同春)은 "적손이 만약 그 어머니를 위하여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대상(大祥)을 지내는데 다른 형제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면 궤연(几筵)의 설치와 철거, 축사(祝辭)의 칭호에 모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27] 세 선생의 말을 살펴보면 모두 일정한 논의가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상세하게 가르침을 내려 주소서. -민기용-
沙溪曰: "'父卒祖在爲母', 疑亦蒙'祖在爲祖母', 更詳之." 尤庵曰: "有'祖不

---

223) 아버지가 …… 한다 : 김장생(金長生)이 복제(服制) 자최장기(齊衰杖朞)를 설명하면서, 《가례》의 "아버지가 죽고 조부는 살아있는 경우 적손이 할머니를 위하여 입는다.[嫡孫父卒祖在爲祖母.]"라는 구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것이다. 《喪禮備要 成服 服制》

224) 조부는 …… 않는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대부는 서자에 대해 상복을 낮추지만 그 손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상복을 낮추지 않는다.[大夫降其庶子, 其孫不降其父.]"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석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압강하지 못한다. 대부는 서자를 위하여 대공복을 입는다.[祖不壓孫也. 大夫爲庶子大功]."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에서는 압강이 해당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살아있더라도 손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상복을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225) 예는 …… 따른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9 〈예(禮) 6 관혼상(冠昏喪)〉의 상(喪)에 보이는 말이다.

226) 우암(尤庵)은 …… 하였습니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14 〈답이성유(答李聖兪)〉에 보인다.

227) 동춘(同春)은 …… 하였습니다 : 《동춘당별집(同春堂別集)》 권4 〈답강월당(答姜月塘)〉에 보인다.

壓孫'之文, 則遽從降服例, 有所不敢. 故先師亦嘗疑之. 而比見士大夫家遭此者, 皆行三年, 恐於'禮疑從厚'之文爲得." 同春曰: "嫡孫若爲其母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其他兄弟, 當服三年, 則几筵設撤, 祝辭稱屬, 皆有可疑." 按三先生之說, 俱無定論, 伏乞詳細下示.【閔璣容】

[답] 예(禮)는 혐의를 분별하는 것[別嫌]이 가장 중대하다. 부모를 위해 입어 주는 정복(正服)은 본래 똑같이 3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 것은 높은 분을 둘로 삼는 혐의를 피하기 위함이다. 조부와 어머니에 대한 기년복과 삼년복은 정복이 원래 달라서 애초에 혐의가 없으니, 무슨 압존하여 강등할 것이 있겠는가. 조부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 주는 설은 본래 의심스러운 점에 속하였다.

복제에 관한 설은 비록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으나 조부가 살아 있으면 조모를 압존하여 강등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섬기는 예로 조모를 섬기는 것이다.[228] 고조가 있는 증조모 이하를 강등하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는 손자를 압존하여 강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내 생각은 이러하나 나는 평소 예학에 생소하니, 이것을 화제로 삼아 근거 없이 함부로 예를 말한다는 비방[229]을 부르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禮大於別嫌. 父母正服, 本同三年. 故父在爲母期, 避二尊之嫌也. 祖與母之期三年, 正服元自不同, 初無所嫌, 何壓降之有? 祖在爲母期之說, 本屬可疑.

服制說, 雖不敢輕易議到, 祖在而降祖母者, 以父之所以事父者事祖母也. 不降其有高祖之曾祖母以下者, 祖無壓孫故也. 愚意如此, 而吾素疎禮學, 勿以此作話頭, 以速汰哉之誚, 如何?

---

228) 조모를 섬기는 것이다 : 원문의 '事祖母也'는 《노사집》 권9 〈답민중호(答閔仲浩)〉에 '母'가 '父'로 되어 있는데,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229) 근거 …… 비방 : 사사분(司士賁)이라는 사람이 자유(子游)에게 "염습할 때 평상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 자유가 "좋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현자(縣子)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나치구나, 자유여. 예를 제 마음대로 남에게 허락하는구나.[汰哉叔氏! 專以禮許人.]"라고 말한 데에서 온 말이다. 《禮記 檀弓上》

[문] 첩(妾)의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첩의 아들의 아들은 조모의 상에 다만 본복(本服)을 입고 승중복을 입어서는 안 되니, 이는 중(重)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석귀-
妾之子先其母死, 則妾子之子, 於其祖母之喪, 只服本服, 不當服重, 此無所傳重也.【金錫龜】

[답] 이러한 듯하다.
似如是.

[문] 부친상을 치르는 중에 어머니가 죽으면 고례(古禮)에는 모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예로 대처하여 기년복을 입었으니, 어떻습니까? 제주(題主) 및 축문(祝文)에는 무슨 이름으로 주관한다고 적습니까? -박정현-
父喪中母死, 則古禮皆以父在處之而服期, 何如? 題主及祝文, 以何名主之耶?【朴鼎鉉】

[답] 부친상을 치르는 중에 모친상을 당한 경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예를 따르는 것은 옛 예가(禮家)의 추론이 너무 지나친 듯하니, 지금은 진실로 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억견(臆見)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성복(成服)한 뒤에 죽으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복을 바꿔 입을 수 없음은 진실로 옳다. 만약 아직 성복하기 전에 죽었다면 상기를 단축하는 것은 끝내 온당하지 않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복을 입는 것은 아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주와 축문에 주관하는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한 의문으로 말하면 마땅히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하니, 어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이치가 있겠는가.
父喪中母喪, 依父生時短喪, 恐是古禮家推之太過, 在今實有難行者. 以臆見言之, 則父旣成服而亡, 則不可以父亡改制其服, 固也. 而若未成服而亡, 則短喪終是未安, 何也? 制服在子故也. 若題主與祝文主名之疑, 則當以未亡人爲之, 豈有用亡者名之理也?

[문]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데, 만약 해상(偕喪)[230]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친상을 치르는 중에 어머니가 죽거나 모친상을 치르는 중에 아버지가 죽은 경우 모두 삼년복을 입지 못합니까? -정희원-
父在母喪, 不服三年. 若偕喪則何? 父喪中母死, 母喪中父死, 俱不得三年之服歟?【鄭禧源】

[답] 비록 하루 간격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면 삼년복을 입으니, 이는 경문(經文)에 구애되지 않는 경우인 듯하다.
雖一日之間, 父先亡則三年, 恐不礙於經文.

[문] 부모의 해상에 상기(喪期)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김홍택(金洪澤)의 물음에 모두 3년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정희원-
金洪澤父母偕喪之問, 俱爲三年之敎, 有諸?【鄭禧源】

[답] 비록 하루 간격이라도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면 상기를 단축하지 않을 수 없다.
雖一日之間, 母先亡則不得不短喪.

[문] 도암(陶菴)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父卒則爲母.]'[231]라는 문구가 본래 명백하니, 한결같이 경문(經文)을 따르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뒤에 죽은 경우는 비록 하루 간격이라도 3년을 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32] 이 설이 옳습니까? -정석-

---

230) 해상(偕喪) : 같은 달이나 같은 날 한꺼번에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친족의 상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231) 아버지가 …… 입는다 : 《의례》〈상복〉 자최삼년장(齋衰三年章)에 보이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자최삼년복을 입는다는 말이다.

232) 도암(陶菴)이 …… 하였습니다 : 《사례편람(四禮便覽)》 권4 〈상례(喪禮)2 성복(成服)〉에 보인다.

陶庵曰: "'父卒則爲母'之文, 本自明白, 一依經文, 則父先卒母後死, 雖一日之間, 亦可伸三年." 此說當否?【鄭澔】

[답] 한꺼번에 상이 있을 때의 복제(服制)에 대해, 천견(淺見)은 평소 도암의 설과 같다. 그러나 전고(前古)의 예가(禮家)의 뜻은 혹 그렇지 않은 듯하니, 어떤지 모르겠다. 나의 모친상이 부친상에서 2일 뒤였는데 그때는 예에 더욱 몽매하여 삼년상을 병행하였다. 이는 억견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예이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並有喪服制, 淺見常如陶菴說. 然而前古禮家之意, 或不然, 未知如何耳? 鄙人內艱後二日, 而其時尤蒙昧, 幷行三年. 此臆見自作, 何足說?

[문] 수암(遂菴)은 "대상(大祥) 후 담제(禫祭) 전에 후사가 된 자는 복이 없어야 할 듯하다."[23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으로는 3년 동안 추복(追服)[234]해야 할 듯합니다. -김석귀-

遂庵曰: "祥後禫前立後者, 似當無服." 然小子之意, 似當追服三年.【金錫龜】

[답] 본복(本服)은 기년이고 융숭한 예를 더하는 복은 2년으로 그친다. 두 번의

전문은 "부친상 중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그 복에 대한 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에 《의례》 및 선유(先儒)의 설 몇 조항을 여기에 붙여서 참고에 대비한다. 대개 《의례》의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라는 글귀는 본래 명백한데, 가공언이 '즉(則)' 한 글자를 잘못 해석하여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라야 3년의 상기를 다 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계와 우암 두 선생이 이미 이를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 의심스러운 소(疏)의 설에 얽매이기보다는 차라리 곧장 경문(經文)을 따르는 것이 허물이 적을 것이다. 한결같이 경문을 따르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뒤에 죽은 경우는 비록 하루 간격이라도 3년을 펼 수 있으니, 과연 어떨지 모르겠다.[父喪中母死者, 其服最爲可疑. 玆附《儀禮》及先儒說數條於此, 以備參考. 蓋《儀禮》"父卒則爲母"之文, 本自明白. 而賈氏因一"則"字, 曲爲解釋, 以爲父服除而母卒, 然後乃申三年. 沙溪尤庵兩先生, 旣以爲可疑. 與其泥滯於可疑之疏說, 無寧直依經文之爲寡過. 若一依經文, 則父先卒而母後死者, 雖一日之間, 亦可以申三年, 未知果如何也?]"이다.

233) 대상(大祥) …… 듯하다 : 《한수재집(寒水齋集)》 권15 〈답성중거(答成仲擧)〉에 보인다.

234) 추복(追服) : 상례(喪禮) 의식의 하나로, 부모가 돌아갔을 때 나이가 어렸거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상복(喪服)을 입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상복을 입는 일을 말한다.

상제(祥祭)를 지내면 2년이 이미 지났으니, 다시 중복(重服)을 입는 것은 예에는 지나친 듯하다.
服本期年, 加隆之服, 止於再朞. 二祥則再期已過, 更制重服, 於禮似過.

[문] 출가(出嫁)한 딸이 돌아와서 집에 있으면 아버지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데, 이는 남편과 자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김석귀-
出嫁女返在室, 爲父斬衰, 是無夫與子者歟?【金錫龜】

[답] 남편에게 소박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爲夫所出者.

[문] 손자며느리는 시조부(媤祖父)와 시조모(媤祖母)에 대해 시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남편의 복을 따르지 않습니까? 남편의 복을 따른다면 피발(被髮)[235]도 합니까? -오준선-[236]
孫婦於祖舅姑, 姑在則不從夫服耶? 從服則亦被髮耶?【吳駿善】

[답] 손자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있는 경우, 고례에 따르면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야 하나 지금은 한결같이 남편의 복을 따르니, 남편을 따르는 이상 피발도 그 안에 포함될 듯하다.
孫婦有姑, 古禮當爲大功, 而今則一從夫服, 旣是從夫, 則被髮似在其中矣.

---

235) 피발(被髮) : 상을 당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을 말한다. 《가례》 〈상례(喪禮)〉 초종조(初終條)에 "마침내 복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乃易服不食]"라고 하였고, 그 주석에 "처와 딸과 며느리, 첩이 모두 관(冠)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다.[妻子婦妾 皆去冠及上服 被髮]"라고 하였다.

236) 오준선(吳駿善) : 1851~1931.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덕행(德行), 호는 후석(後石)이다. 전라남도 광산(光山) 출신으로 기정진의 문인이다. 저서에 《후석집(後石集)》이 있다.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서자(庶子)는 그 어머니를 위해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데, 다른 아들이 없어서 어머니의 후사가 되었다면 복이 다하는 날에 영연(靈筵)을 치우고 1주기에 곧바로 기제(忌祭)를 행합니까? -김석귀-
庶子爲父後者, 爲其母服緦, 而無他子爲母後, 則撤靈筵於服盡之日, 於初期, 直行忌祀耶?【金錫龜】

[답] 그렇다.
然.

[문] 서조모(庶祖母)께는 저를 길러준 은혜가 있습니다. 서조모가 살아 있을 때는 출입할 적에 배알하고 사후(死後)에는 '하늘처럼 끝이 없다[昊天罔極]'는 말을 축문(祝文)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기홍연-
庶祖母有乳養之恩, 生時, 出入拜之, 死後, 祝用"昊天罔極"之語云云.【奇弘衍】

[답] 서조모에 대한 것은, 한창려(韓昌黎 한유(韓愈))[237]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형수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형수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 주었다. 지금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데 서조모를 "하늘처럼 끝이 없다."라고 일컫는 것은 과중한 듯하다. 만약 서조모가 자신을 길러주고 키워준 은혜에 감사하다면 마땅히 서조모를 봉양하고 뜻을 받들어 따르는 예절에 갑절 힘을 다하여야 한다. 드나들 때 배알하는 것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또한 서모(庶母)에게 배알하였으니, 배알하는 것은 안 될 것이 없다. 상을 당한 후에 입는 복에 대해서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의론할 수 없다. 너의 말은 후한 듯하나 합당함을 잃었으니,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庶祖母云云, 韓昌黎幼失母, 而鞠於兄嫂, 故服嫂以期. 今父母俱存, 而稱庶

237) 한창려(韓昌黎) : 768~824. 회주(懷州) 수무현(修武縣) 사람으로, 자는 퇴지(退之), 호는 창려(昌黎),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사람으로 고사를 많이 인용하고 까다로운 격식을 지켜야 하는 변려문을 배척하고, 동시대의 언어로 쉽고 평이하게 글을 쓰자는 고문(古文)운동을 창도했다. 유학을 존중하고 도교, 불교를 배격하였으며, 후에 송학(宋學)의 선구자로 추앙받았다.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이 있다.

祖母以“昊天罔極”, 恐是過重. 若感其乳養字育之恩, 則當於奉養承順之節, 一倍致力. 出入之拜, 栗谷亦拜其庶母, 拜之無不可. 喪後之服, 不可擬議非倫也. 汝之言似厚, 而失於稱停, 過猶不及, 此之謂也.

[문] 어떤 사인(士人)이 당숙의 차양자(次養子)가 되어 참최복을 입으니,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고광선-[238]
有一士人, 爲其堂叔次養服斬衰, 似無據.【高光善】

[답] 참최복을 입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大不可.

[문] 본생모(本生母)를 위해 입는 본복은 기년복인데, 본생부(本生父)가 살아 있으면 재차 강복(降服)합니까? -박성우-[239]
本生母服本期年, 而本生父在, 則再降否?【朴性愚】

[답] 부재모상(父在母喪)에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은 본래 장기(杖朞)이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본생 부모상은 부장기(不杖朞)[240]이다. 상장(喪杖)

---

238) 고광선(高光善) : 1855~193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장택(長澤). 자는 원여(元汝), 호는 현와(弦窩). 복헌(復軒) 고정헌(高廷憲)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고제열(高濟說)이고, 아버지는 호은(湖隱) 고박주(高璞柱)이다. 어머니는 행주기씨(幸州奇氏) 기우진(奇禹鎭)의 딸이다. 1864년(고종 1)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덕암(德巖) 나도규(羅燾圭) 문인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를 널리 익혔다. 이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천인성명(天人性命)의 뜻과 예법의 본질을 배웠다. 그와 교유한 인물로는 설진영(薛鎭永)을 들 수 있다. 학문에 전념하고 벼슬하지 않다가 1905년(광무 9)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숨어 지내면서 1906년(광무 10) 엄이재(掩耳齋)를 세웠다. 저서로는 《현와유고(弦窩遺稿)》가 있다.

239) 박성우(朴性愚) : 본관은 음성(陰城), 자는 덕문, 호는 견암(狷庵)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에는 자가 치민(致敏)으로 되어있다.

240) 부장기(不杖朞) : 오복(五服)의 한 가지로, 상장(喪杖)은 짚지 않고 자최만 1년 동안 입는 복이다. 상례(喪禮)에 자최(齊衰) 기년복(朞年服)에 지팡이를 짚느냐 짚지 않느냐의 구별이 있다.

을 짚으면 담제(禫祭)가 있고 상장을 짚지 않으면 담제가 없으니, 이것이 차이이다. 무릇 소생(所生)에 관련된 상은 압존하여 강복(降服)만 하고 심상(心喪)을 지내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동일하게 심상을 지내는 것을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본생부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본생모를 위한 복을 강등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것으로 말하면 이런 이치는 없는 듯하다. 대개 적용할 예가 마땅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이다.
父在母喪, 其服本是杖期, 爲人後者本生喪, 是不杖期, 杖則有禫, 不杖則無禫, 此其別也. 凡係所生, 未有降屈而不行心喪者, 心喪之同, 何足疑也? 若以本生父在而降母爲大功, 則恐無是理. 蓋禮窮則同也.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의 부재모상에 1년이 지나 복을 벗은 뒤 치립(緇笠)과 치대(緇帶)를 착용하는 것은 집에 있는 형제와 구별이 없습니까? -김석귀-
爲人後者, 於本生父在母喪, 期而除服後緇笠帶, 與在家兄弟無別歟?【金錫龜】

[답] 모두 심상을 치르니, 분별이 없을 듯하다.
皆是心喪, 恐無分別.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자신을 후사로 삼은 분의 상중에 본생친(本生親)의 상을 당했는데 자신을 후사로 삼은 분의 상을 마친 뒤에도 본생친의 상기가 여전히 다하지 않았다면 본생친을 위한 복상(服喪)은 대상 후입니까, 담제 후입니까? -김석귀-
爲人後者, 所後喪中, 遭本生喪, 而所後喪畢, 本生期猶未盡, 則持本親服, 在祥後耶? 禫後耶?【金錫龜】

[답] 담제 후일 듯하다.
似在禫後.

[문] 심상(心喪) 중에 중복(重服)을 입어 주어야 하는 상을 당하면 평상시에 입는 상복은 중복으로 합니까, 심제(心制)로 합니까? -박해량-[241]
心喪中遭重服, 則常服以重服耶? 以心制耶?【朴海量】

[답] 심상 중인 사람이 중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평상시에 중복을 입어야 할 듯하다. 치대(緇帶)는 복이 없는 사람의 복이니 중복에 압존 되어 굽히지 않을 수 없다.
心喪人重服, 似當以重服常持. 蓋緇帶是無服之服, 不得不屈於重服.

[문] 담복(禫服)을 입고 있는 도중에 기년복이나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상을 당한 경우 해당하는 상을 당했을 때의 상복을 착용하는지, 담복을 착용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김영숙(金永璹)-
禫服中遭期大功, 著所遭服, 著禫服.【金永璹】

[답] 담복을 평상시에 입어야 할 듯하나 기년복에서 강등한 복은 담제를 행한 뒤에 착용해야 한다.
似當以禫服常持, 而期降之服, 行禫後用之.

[문] 어떤 사람이 이미 먼저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간 뒤 본생부가 다시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간 경우, 생부를 후사로 삼은 분의 상에 입어 주는 복이 없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민주현-[242]

---

241) 박해량(朴海量) : 1850~1886.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도겸(道謙), 호는 율수(聿修)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장수리)이 거주지이다. 고산 임헌회, 중암 김평묵, 면암 최익현, 노사 기정진 등에게서 학문을 터득했으나 3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업적을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탐라(耽羅), 흑산(黑山) 등지에 유배 생활을 한 1874~1876년간의 기록으로 귀양 중인 면암 최익현과 함께하면서 경서에 대한 토론과 시국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다. 저서로 《율수재집(聿修齋集)》이 있다.

242) 민주현(閔胄顯) : 1808~1882.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치교(穉敎), 호는 사애(沙厓)이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44세에 경과 정시(慶科庭試)에 급제하고 성균관 전적, 사간원 정언, 형조

有人已先出后後, 本生父又出后, 於生父所後喪, 無服云云.【閔胄顯】

[답] 아버지의 소후가(所後家)가 바로 후사로 나간 아들의 본생가(本生家)이니, 조부의 상에 한 등급의 복을 내려야 한다.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가? 아들이 먼저 후사로 나가고 아버지가 나중에 후사로 나가서 조부와 손자 사이에 정리(情理)가 소원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후사로 나간 것에 비록 선후가 있더라도 복제는 애초에 차이가 없다. 무릇 '본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바가 아버지에게 있는가, 조부에게 있는가? 사람이 부모 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법이니,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버지로 섬긴 분을 아들이 어찌 조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아버지가 나중에 후사로 나갔다는 이유로 마침내 본생가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다만 소후가만 있고 본생가는 없는 것인가? 만약 아버지의 생가를 아들의 생가로 삼는다면 이는 아들의 본생가에는 조부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 격이니, 아버지가 없는 본생가도 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후사로 나간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이미 후사로 나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파계(罷繼)하고 본가로 돌아오게 하는 셈이니, 세간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기른 은혜가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는 점은 같으나 계통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복제를 제정할 때 분명하게 차이와 등급을 두었는데 지금 도리어 아버지가 후사로 나간 아버지를 재가한 어머니의 시아버지에 견주니, '윤리(倫理)에 가깝지 않다'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말들이다. 부디 자세히 헤아려 보길 바란다. 그러면 저절로 변별될 것이다.

父之所後家, 卽出后子之本生家也. 於其祖之喪, 當降一等之服, 何故有此紛紜耶? 無乃子之出後在先, 父之出後在後, 祖孫之間, 情地疎薄而云爾耶?

좌랑,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집의, 봉상시 정, 병조 정랑 등을 거쳤다. 64세 때 경연특진관, 병조 참판, 67세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 국방과 교화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였고, 만년에는 학문을 강론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사애집(沙厓集)》이 있다.

愚見則出後雖有先後, 服制初無間隔也. 凡曰"本生"云者, 所重在父耶? 在祖耶? 人非生於空桑, 必生於父, 則父之所父, 子安得不以爲祖乎? 若以父之出後在後, 而遂不謂本生家, 則此子但有所後家, 無本生家乎? 若以父之生家爲子之生家, 則是子之本生家, 有祖而無父, 無父之本生家, 亦可謂之本生乎? 嫌其若此, 而欲因父其出後之父, 則父已出後, 而子乃使父罷繼歸宗也, 世間寧有此理乎? 父與母生我鞠我, 昊天罔極則同, 而統系則出於父而非出於母. 故聖人制服, 顯有間級, 今乃以父之出後父比擬於嫁母之舅父, 所謂"不近倫理"者, 此等語也. 幸細商之, 自當辨晳.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또 후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후사로 세웠는데 본생부모의 상을 당했다면 소후자(所後子)[243]는 입어야 하는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면 무슨 복을 입어야 합니까? -정시림-
爲人後者, 又無嗣立后, 而當本生父母喪, 則所后子有服耶? 有服則當何服耶?【鄭時林】

[답] 이미 후사가 된 자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본생에 대해 어찌 입어주는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旣爲之子, 則父之本生, 豈有無服之理?

[문] 아들은 후사로 나가고 딸은 출가(出嫁)한 경우 본종(本宗)의 조부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은 차이가 없는 듯한데, 아들은 강복(降服)하고 딸은 강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정현-
男出后, 女出嫁, 爲本宗祖, 似無異同, 而男則降, 而女則不降, 何也?【朴鼎鉉】

[답] 시집을 간 딸은 비록 본종에는 강복하지만 정통(正統)인 관계는 강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정통인 관계에 마땅히 먼저

243) 소후자(所後子) : 후사를 잇기 위해 들인 양자를 말한다.

강복해야 하니,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는가.
出嫁女雖降本宗, 正統則不降, 爲人後者, 正統當先降, 何可同也?

[문] 시집을 간 딸은 부모에게는 강복하는데 조부모에게는 강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섭-[244]
出嫁女於父母降, 而於祖父母不降, 何也?【金漢燮】

[답] 시집을 간 딸이 부모에게 강복하는 이유는 이천(移天)[245]했기 때문이고, 조부모는 혐의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강복하지 않는 것이다. 고례(古禮)에서 부모에게 강복한 것 또한 시부모에게 혐의스러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出嫁女降其父母, 移天故也, 而祖父母則不嫌, 故不降矣. 古禮之降其父母, 亦非嫌於舅姑而然也.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친(本親)에게는 또 한 등급을 강등해야 할 듯한데, 《상례비요(喪禮備要)》〈복제(服制)〉에서 이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 본생가의 시부모를 위해 대공복을 입는다면 이하의 본친은 비록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한기-
爲人後者之妻, 於夫本親, 似又降一等, 而《備要》〈服制〉闕之者, 何也? 爲本生舅姑服大功, 則以下本親, 雖不言, 而自在其中乎?【金漢驥】

[답] 그렇다.
然.

---

244) 김한섭(金漢燮) : 1838~1894.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치용(致容), 호는 오남(吾南)이다. 이항로, 김평묵의 문인이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으며, 김노현(金魯鉉)의 아들이다. 이항로, 임헌회, 기정진에게 차례로 배웠다. 고향인 장흥과 금릉 대명동에 서당을 열고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변을 당해 사망했다. 저서로 《오남집(吾南集)》이 있다.

245) 이천(移天) : 하늘로 삼는 대상을 옮긴다는 뜻인데,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하늘로 삼고 시집을 가면 남편을 하늘로 삼는다는 데에서 온 말이다.

[문] 처상(妻喪)을 당한 경우 《가례(家禮)》에서는 아버지의 생사를 논하지 않고 통틀어 장기(杖朞)라고 말했으니, 《가례》를 정도(正道)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유(先儒)의 말은 대부분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상장(喪杖)을 짚지 않는다."[246]라는 글귀에서 나왔으니,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이태로-
妻喪, 《家禮》不論父在父歿, 通稱杖期, 當以《家禮》爲正. 先儒之言, 多出於"父在不杖", 當何從?【李泰魯】

[답]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상장을 짚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예인 듯하다.
父在不杖, 似是經禮.

[문] 동자(童子)도 착용하는 수질(首絰)[247]이 있습니까? -정희원-
童子亦有首絰乎?【鄭禧源】

[답] 동자는 관(冠)이 없으니, 어찌 수질이 있겠는가.
童子無冠, 豈有首絰?

[문] 고조부모나 증조부모를 위해 자최(齊衰) 3개월복이나 5개월복을 입는다면 이는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는 격인데 도리어 9개월복인 대공복(大功服) 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48] -박계만-
高曾祖父母, 服三月五月, 則是緦小功, 而反在大功九月之上, 何也?【朴契晩】

---

246) 아버지가 …… 않는다 : 《예기》 〈잡기(雜記)〉의 "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상장(喪杖)을 짚지 않는다.[爲妻, 父在不杖.]"라는 문구를 가리키는 듯하다.

247) 수질(首絰)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새끼줄에 삼 껍질을 감아 만든 것이다. 남자는 두건(頭巾), 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소공(小功) 이하에는 수질을 쓰지 않으며, 참최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든다.

248) 고조부모나 …… 무엇입니까 : 《가례》 권4 〈상례 성복(成服)〉에서 복제(服制)의 종류를 설명할 때 자최 5개월, 자최 3개월, 대공 9개월, 소공 5개월, 시마 3개월의 순서로 배치한 것을 두고 물은 것이다.

[답] 오복(五服)[249]은 입는 베의 거칠고 고운 것에 대한 명칭이다. 자최 5개월복 또한 자최복을 입는 것이지 소공복을 입는 것이 아니며, 자최 3개월복 또한 자최복을 입는 것이지 시마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五服, 服布麤細之名也. 齊衰五月, 亦齊衰也, 非小功也, 齊衰三月, 亦齊衰也, 非緦服也.

[문]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은 5개월과 3개월이니, 그렇다면 증손과 현손도 5개월과 3개월을 입어야 할 듯한데 《가례》에서는 모두 3개월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한기-
曾高祖父母之服, 五月三月, 則曾玄孫似亦當五月三月, 而《家禮》皆三月, 何義?【金漢驥】

[답] 증조와 고조에게는 본래 모두 자최 3개월복을 입는데, 후세에 증조에 대한 기간을 5개월로 늘렸다.
曾高祖本皆齊衰三月, 而後世加曾祖爲五月.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사람에게 전모(前母)와 후모(後母)가 있다면 자신을 기른 어머니의 아버지를 외조부로 삼아야 하는데 전모와 후모가 모두 자신을 길러 준 은혜가 있거나 모두 자신을 길러 준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봉섭-
爲人後者, 有前後母, 當以養己者之父爲外祖, 而前後皆有養己之恩, 俱無養己之恩, 則如何?【呂鳳燮】

[답] 전모와 후모가 모두 자신을 길러 준 은혜가 있다면 전외조(前外祖)라고 적어야 할 듯하다. 전모와 후모가 모두 은혜가 없는 경우도 그렇다.
前後皆有養己之恩, 則似當書前外祖, 前後俱無恩, 亦然也.

249) 오복(五服) : 참최복, 자최복, 대공복, 소공복, 시마복을 말한다.

[문] 계모(繼母)의 아버지에게 이미 입어 줄 복제(服制)가 없다면 호칭 역시 외조(外祖)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마땅히 집사장(執事丈)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가-[250]
繼母之父, 旣無服, 則稱號亦不以外祖耶? 或曰: "當稱執事丈." 何如?【趙性家】

[답]《주서(朱書)》에 실린 하숙경(何叔京)에 대한 묘표(墓表)[251]에, 하숙경은 유씨(劉氏) 소생이고 계모는 등씨(鄧氏)라고 하였는데[252] 묘표 가운데 '등구(鄧舅)'[253]라는 말이 있다. 계모의 형제를 '구(舅 외삼촌)'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계모의 부모 역시 외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개 호칭은 복제와 다르다. 입어 주는 복제가 없는 계부(繼父)에게도 계부라고 부르니, 이것이 또한 하나의 증거이다.
《朱書》〈何叔京墓表〉, 何是劉之自出, 而繼母, 鄧氏也, 表中有"鄧舅"之語. 繼母兄弟可稱舅, 則其父母亦可稱外祖矣. 蓋稱號與服制不同, 無服之繼父, 亦稱繼父, 此亦一證也.

[문] 외당(外黨)을 위해 입는 복 가운데 외조부모에게는 소공복을 입고

---

250) 조성가(趙性家) : 1824~1904.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직교, 호는 월고(月皐)이다. 경남 진주(晉州) 출신으로 기정진의 문인이다. 1883년(고종20) 선공감 감역에 제수되었고, 1902년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성리학적 처지에서 기정진의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을 적극 지지하여 질문하자 기정진이 이에 대한 답설(答說)로 〈외필(猥筆)〉을 지었다. 이로 인하여 그 뒤 간재학파(艮齋學派)와 연재학파(淵齋學派)로부터 성리학의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최익현(崔益鉉)·정재규(鄭載圭)·기우만(奇宇萬) 등과 교유하였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지리산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고, 유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였다. 저서로《월고문집(月皐文集)》이 있다.

251) 주서(朱書) …… 묘표(墓表) :《주서》는《주자대전(朱子大全)》을 가리킨다. 하숙경(何叔京, 1128~1175)은 주희(朱熹)의 제자인 하호(何鎬)로, 숙경은 그의 자이다. 호는 대계(臺溪)이다. 묘표는 〈하숙경묘갈명(何叔京墓碣銘)〉을 가리킨다.

252) 하숙경은 …… 하였는데 : 묘갈명에는 "하호의 부친 하태(何兌)에 이르러서 처음 벼슬하여 좌조봉랑(左朝奉郎) 진주 통판(辰州通判)이 되었다. 진씨(陳氏), 유씨(劉氏), 임씨(林氏), 등씨(鄧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모두 안인(安人)에 봉해졌고, 하호는 유씨의 소생이다.[至君皇考諱見始仕, 爲左朝奉郎通判辰州事. 娶陳氏劉氏林氏鄧氏, 皆封安人, 而君劉出也.]"라고 하였다.

253) 등구(鄧舅) : 하호의 계모 등씨의 오빠인 등조(鄧祚)라는 인물이다.

외손에게는 시마복을 입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한기-
外黨服, 外祖父母小功, 而外孫緦麻者, 何義?【金漢驥】

[답] 외친(外親)에게는 본래 모두 시마복을 입는데, 외조부모는 존가(尊加)[254]하므로 5개월복을 입고, 외손은 존가함이 있지 않으니, 3개월복을 입는 데에 어찌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外親本皆緦服, 外祖父母, 以尊加而爲五月, 外孫非有尊加, 則三月何須疑乎?

[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이 사친(私親)을 위해 한 등급을 강복(降服)하는데 외친(外親)에게는 강복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한기-
女適人者, 爲私親降一等, 而外親不降者, 何義?【金漢驥】

[답] 외친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 전에 본래 외친이었기 때문이다.
外親, 適人之前, 本是外親.

[문] 수숙(嫂叔) 간에 입는 복제의 유무에 대해 묻습니다. -서기풍-
嫂叔服有無.【徐基豐】

[답] 고례(古禮)에는 수숙을 위해 입는 복제가 없었는데 당(唐)나라 정관(貞觀)[255] 연간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징(魏徵)과 영호덕분(令狐德棻)의 주청(奏請)으로 수숙 간에 입는 복제를 정립하였다.[256]
古禮嫂叔無服. 至唐貞觀年間, 始以魏徵令狐德棻奏請, 立嫂叔之服.

---

254) 존가(尊加) : 외조부모는 존귀하므로 존중하여 복제의 등급을 더 높인다는 말이다.

255) 정관(貞觀) : 당나라 2대 황제인 태종(太宗) 때의 연호로, 627년부터 649년까지 사용되었다

256) 수숙 …… 정립하였다 : 소공 5개월복을 입는 것으로 정하였다.《舊唐書 卷27 禮儀志》

[문] 이부동모(異父同母)인 형제에게는 소공복을 입는 것은 동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소필기-
異父同母兄弟小功者, 指同居者耶?【蘇弼基】

[답] 이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此恐不然.

[문] 계자(繼子)와 양자(養子)에 대해 묻습니다. '계' 자는 후사로 삼은 것을 가리키고, '양' 자는 수양(收養)한 것을 가리킵니까? -소필기-
繼子養子. "繼"字指所後, "養"字指收養歟?【蘇弼基】

[답] 그렇다.
然.

[문] 《상례비요》의 '금제(今制)', '보복(補服)', '국제(國制)'[257]에 대해 묻습니다. 금제는 본국(本國)의 제도이고, 보복은 선유(先儒)가 더한 것이고, 국제는《대명(大明)》[258]을 가리킵니까? -소필기-
《備要》"今制""補服""國制". 今制爲本國之制, 補服, 先儒之所增, 而國制指大明耶?【蘇弼基】

[답] '금'과 '국' 두 글자는 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259] 보복은 그런 듯하다.

---

257) 상례비요의 …… 국제(國制) : 《상례비요》〈성복(成服) 복제(服制)〉에서 오복의 복제 규정을 설명할 때 각 복제마다 가장 먼저 누가 누구를 위해 입는 상복인지에 대한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하에 금제, 보복, 국제 등 원칙과 다르거나 원칙에 없는 항목을 각각 덧붙였다.

258) 《대명(大明)》 : 《대명집례(大明集禮)》를 가리키는 듯하다. 명나라 태조 때의 학자 서일기(徐一夔) 등이 칙명을 받고 1369년에서 1370년 사이에 만들었다. 당시까지의 모든 예전(禮典)을 집대성한 책으로 현재 53권이 전한다.

259) 금과 …… 한다 : 국제가 본국의 제도, 즉 우리나라의 제도이고, 금제가《대명》이라는 말이다.

“今”“國”二字, 當互換說. 補服似然.

[문]《상례비요》의 금제 주(註)의 여러 조항은 모두 모친상을 위한 것인데[260] 참최복에 달아 놓은 것은 어째서입니까?[261] -소필기-
《備要》今制註諸條, 皆爲內艱, 而係於斬衰, 何?【蘇弼基】

[답] 어머니를 위해서도 참최복을 입는 것은 금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爲母亦斬, 今制爲然.

[문]《상례비요》 팔모도(八母圖)[262]의 양모(養母) 주(註)의 ‘본조부저(本條不著)’에 대해 묻습니다. 본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소필기-
《備要》八母圖養母註“本條不著”, 本條指何?【蘇弼基】

[답] 〈상복(喪服)〉의 ‘자최삼년(齊衰三年)’ 조항이다. 〈상복〉은 《의례》 본문에 있는 자하(子夏)의 전(傳)이다.
〈喪服〉 “齊衰三年”條. 〈喪服〉者, 《儀禮》本文子夏傳也.

---

260) 금제 …… 것인데 :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제에는 대부분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참최 삼년의 금제에는 “남자가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 “계모를 위해 입는다”, “부인이 남편의 어머니를 위해 입는다”는 식이다.

261) 참최복에 …… 어째서입니까 : 원래의 예대로라면 어머니에게는 참최복을 입지 않고 자최복을 입도록 되어 있다.

262) 팔모도(八母圖) : 〈삼부와 팔모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한 도표[三父八母服圖]〉이다. 삼부는 함께 사는 계부(繼父), 함께 살지 않는 계부, 계모(繼母)를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이고, 팔모는 첩의 자식이 아버지의 정실(正室)을 지칭하는 적모(嫡母), 계모, 동종(同宗) 또는 3세 이전에 버려진 자기를 길러준 양모(養母), 어려서 젖을 먹여준 유모(乳母),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첩인 서모(庶母), 어머니가 없는 서자인 자기를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다른 첩에게 기르도록 명하여 자기를 길러준 자모(慈母),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재가한 가모(嫁母), 아버지에게 쫓겨난 출모(出母)이다.

[문] 수암(遂菴)은 "상복(殤服)은 장상(長殤), 중상(中殤), 하상(下殤)에 따라 각각 한 등급을 강복(降服)한다. 그러므로 요절한 자는 생전에 연장자에게 역시 세 등급에 따라 각각 한 등급을 강복한다. 예를 들면, 8세인 어린아이는 숙부(叔父)의 상(喪)에 5개월복을 입어야 한다."[263]라고 하고, 남계(南溪)는 "예에는 상하와 존비의 체계가 있으니, 항렬이 높은 자가 비록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그 복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항렬이 낮은 자는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연장자에 대한 복을 줄여서는 안 된다."[264]라고 하였는데, 남계의 말을 따라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귀-
遂庵曰: "殤服以上中下各降一等. 故殤者於長者, 亦以三等各降一等. 如八歲童子, 於叔父喪, 當服五月." 南溪曰: "禮有上下尊卑之體. 尊者雖以童子減服, 卑者不當以童子減長者之服." 恐當從南溪, 何如?【金錫龜】

[답] 남계의 논의를 따라야 한다.
當從南溪議.

[문] 국휼(國恤) 중에는 시를 지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김훈-
國恤中, 恐不可作詩.【金勳】

[답] 시는 말을 길게 읊조리는 것이니 상중에 지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슬픈 마음을 말하는 작품이라면 혹 괜찮을 듯하다.
詩是永言, 非哀中所可作, 而若是述哀之作則或可.

---

263) 상복(殤服)은 …… 한다 : 《한수재집》 권12 〈답윤서응(答尹瑞膺)〉에 보인다. 상복(殤服)은 8세에서 19세 사이에 요절한 자녀를 위해 입는 복제이다. 16세~19세는 장상(長殤) 혹은 상상(上殤)이라 하여 대공복을 입고, 12세~15세는 중상(中殤)이라 하여 소공복을 입고, 8세~12세는 하상(下殤)이라 하여 시마복을 입는다. 7세 이하는 입어 주는 복이 없다.

264) 예에는 …… 된다 : 《남계집(南溪集)》 속집 권14 〈답권빈지문(答權賓之問)〉에 보인다.

[문] 벼슬하는 사람은 임금의 상을 당한 경우 사가(私家)의 상복을 감히 착용하지 못하고, 거상(居喪) 중인 자는 상장(喪杖)을 짚지 못하고 질(絰)을 착용하지 못합니까? -이장선-[265]
從仕者, 君服不敢著私服, 居喪者, 不得杖而絰耶?【李章銑】

[답] "임금의 상을 당한 경우 사가의 상복을 감히 착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대의 말은 진실로 바른 예로 〈증자문(曾子問)〉에 보이니,[266] 이는 자최복 이하를 입는 상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이미 이를 행하지 못하고 자최복과 참최복은 여전한데, 유독 상장 및 질에 대해서는 따지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또 인산(因山) 뒤에는 국전(國典)이 이미 사가의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행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는 사가의 상복을 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고금의 일로 참작해 보면 인산 전에는 감히 사가의 상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예에 부합할 것이다.
所示"君服不敢著私服", 固是正禮也. 而見於〈曾子問〉, 此則兼齊衰以下而言也. 然而今人旣不能行, 齊斬依舊, 獨於杖及絰生計較, 未知如何? 且於因山後, 國典旣許行大小祥, 則此不廢私服之明驗也. 酌以古今, 因山前不敢著私服, 爲合於禮耶?

[문] 국휼 중에 기년복(朞年服)과 대공복(大功服) 이하를 입는 경우, 거처하고 출입할 때는 비록 임금을 위한 상복을 착용하더라도 영좌(靈座)에 들어가 곡할 때는 각각 해당하는 상복을 입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연우-
國恤中, 期功以下, 則居處出入, 雖著君服, 於靈座入哭, 各服其服, 何如?【李淵宇】

---

265) 이장선(李章銑) : 1808~?.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관서(寬瑞), 호는 삼괴(三愧)이다.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266) 증자문(曾子問)에 …… 보이니 : 사(士)나 대부(大夫)가 집안의 상을 당한 뒤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는데 임금의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자(曾子)가 공자에게 묻자, 공자가 "임금의 상을 당해 임금을 위한 상복을 입으면 감히 사가의 상복을 입지 못한다.[有君喪服於身, 不敢私服.]"라고 하였다. 《禮記 曾子問》

[답] 그대의 말이 옳다.
然.

[문] 성인이 스승을 위해 입는 복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계만-
聖人不制師服, 何也?【朴契晩】

[답] 스승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무엇보다도 가지각색이다. 그러므로 복제를 제정할 수 없다.
師之輕重淺深, 最多般樣. 故不可制服.

[문] 우리나라의 베[布]는 폭(幅)이 좁고 소매[袂]는 이어 붙인 폭이 있는데 지금 사람은 이은 폭의 솔기를 모두 안으로 향하게 하면서 "이는 윗옷의 기운 솔기의 도수(度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필기-
東國布幅狹, 袂有屬幅, 而今人以連幅之縫, 皆令向內曰"此不在衣縫之數". 未知如何?【蘇弼基】

[답] 옛 제도를 보존하면서 시속의 제도를 변통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다.
存古而通今, 恐無妨.

[문]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저최(苴衰)[267]를 기워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기워 입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한기-
〈喪服四制〉曰: "苴衰不補." 不補者何義?【金漢驥】

[답] 기워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본래 꾸밈을 지극히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

267) 저최(苴衰) : 저마(苴麻)로 만든 최복이다.

기워 입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이다.
補完本是致飾之事, 故有不補之文.

[문] 수질(首絰)의 마본(麻本 삼의 밑동)은 머리의 좌우상하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하는지 묻습니다. -정석-
首絰之麻本, 左右上下.【鄭奭】

[답] 수질의 방향은 비록 소상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모양새는 모두 음양양단(兩端)에서 생겼다. 왼쪽은 양방(陽方)이므로 마본을 왼쪽으로 하는 것은 왼쪽으로 도는 장본(張本)이 되며, 오른쪽은 음방(陰方)이므로 마본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도는 장본이 된다. 양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본이 아래에 있고, 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본이 위쪽에 있다. 이는 억견이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首絰之左右上下, 雖未消詳, 大抵法象, 皆起於陰陽兩端. 左陽方而本左, 爲左旋之張本, 右陰方而本右, 爲右旋之張本. 陽必自下而升, 故本在下, 陰必自上而降, 故本在上. 此是臆見, 不可示人.

[문] 참최복(斬衰服)에 짚는 상장(喪杖)은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저장(苴杖)'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苴)는 유자마(有子麻 씨가 있는 삼)이니, 그렇다면 옛날에는 저를 사용하였고 지금은 비록 대나무를 사용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은 것입니까? -김한기-
斬杖用竹, 而曰"苴杖", 何義? 苴是有子麻, 則古用苴, 而今雖用竹, 名仍存耶?【金漢驥】

[답] 본경(本經)에 "저질(苴絰), 저장(苴杖), 효대(絞帶)를 착용한다."라고

하였는데,[268] 전문(傳文)에 "저장은 대나무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장은 본래 대나무로 만든 것이지, 변해서 대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저장이라고 한 것은 빛깔이 나쁜 점을 취한 것이다.
本經曰: "苴絰杖, 絞帶." 傳曰: "苴杖, 竹也." 然則苴杖本是竹也, 非變而用竹也. 其曰苴杖者, 取其色之苴惡.

[문]《가례》와《상례비요》는 상인(喪人)이 출입할 때 짚는 상장을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풍속에서는 으레 소장(小杖)을 짚고 출입합니다. 그렇다면 성묘(省墓)하면서 곡읍(哭泣)할 때는 상장을 짚습니까, 짚지 않습니까? -김한기-
《家禮》《備要》, 不別言喪人出入之杖. 而今俗例以小杖出入, 則省墓哭泣時, 杖乎? 否乎?【金漢驥】

[답] 상인(喪人)이 출입하면서 묵최(墨縗)를 착용할 때는 절대 상장을 짚지 않는다. 성묘하면서 곡읍할 때는 엎드려서 곡을 해야 하니, 상장의 유무는 논할 필요가 없다.
喪人出入, 用墨縗時, 必無杖矣. 省墓哭泣時, 當伏哭, 杖之有無, 不須論也.

[문] 아내를 위해 상장을 짚을 때 상장은 오동나무로 만듭니까? -김석귀-
爲妻杖之, 杖以桐爲之歟?【金錫龜】

[답] 그렇다.
然.

---

268) 본경(本經)에 …… 하였는데 : 본경은《의례》를 가리킨다. 해당 내용은 〈상복(喪服)〉에 보인다.

[문] 아내를 위해 상장을 짚고 있는 경우, 출입할 때 상장을 짚을 수 있습니까? -여봉섭-
爲妻杖, 出入可杖耶?【呂鳳燮】

[답] 상장은 출입하는 것 때문에 마련한 상구(喪具)가 아니다.
非爲出入而設也.

[문] 출입할 때는 효대(絞帶)를 착용합니까, 복대(服帶)를 착용합니까? 대의 크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정오현-
出入時, 用絞帶耶? 服帶耶? 帶大小當何如?【鄭五鉉】

[답] 복상(服喪)할 때의 효대는 본래 최복(衰服)에 착용하는 띠이고, 지금 말한 복대가 바로 출입할 때 착용하는 복색이니, 본래 너무 클 필요는 없다.
制服時絞帶, 本是帶於衰服者, 今之所謂服帶, 乃是出入之服, 本不必太大.

[문]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고 있는 경우 상복(常服)은 묵립(墨笠)에 포영(布纓)과 직령(直領)으로 합니까? -박계만-
長子斬衰, 常服以墨笠布纓直領耶?【朴契晩】

[답] 평량자(平凉子 패랭이)도 불가하지 않다.
平凉子未爲不可.

[문] 종형(從兄)이 이번에 장자의 상을 당했는데, 평소 착용하는 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최선-
從兄今喪長子, 常著服當如何?【李最善】

[답] 참최복은 예대로 착용하되, 평소 착용하는 복은 예에 분명한 문구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는 형태가 한결같지 않다. 마면(麻綿)에 생포(生布)와 주의(周衣)를 착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衰服如禮, 常著禮無明文, 故行之者不一. 用麻綿生布周衣, 似可矣.

[문] 중복(重服)의 건대(巾帶)에 연포(練布)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상에 혹 칠립(漆笠)을 착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의행-
重服巾帶, 用練何如? 長子喪, 或著漆笠, 何如?【閔誼行】

[답] 지금 생포가 없으니, 오복(五服)은 거칠고 고운 것을 절도로 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건대는 비록 최복(衰服)은 아니지만 연포를 사용하면 보는 사람의 눈을 놀랍게 할 듯하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연포를 사용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장자의 상에는 칠립을 착용해서는 안 되나 관직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 학자의 말을 널리 상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今無生布, 五服以麤細爲節可矣. 而巾帶雖非衰服, 用練則恐駭眼, 葬後則用練, 恐無不可. 長子喪, 不當漆笠, 而未知不解官者若之何? 廣攷諸家言, 如何?

[문] 최복 안에 입는 중의(中衣)는 어떠한 옷입니까? -박계만-
衰服內中衣, 何樣衣也?【朴契晩】

[답] 중의는 바로 지금의 중단의(中單衣)이다. 예복(禮服)을 입을 때는 반드시 중의를 안에 받쳐 입는다.
卽今之中單衣. 禮服必有中衣以承之.

[문] 지금 풍속에서 최복을 입을 때는 더러 치마를 착용하지 않으니, 이는

옳지 않은 듯합니다. -박동양-[269]
今俗衰服, 或不著下裳, 似不可.【朴東陽】

[답] 어린아이가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頗似小兒之露下體.

[문] 참최복을 입는 상중(喪中)에, 직령(直領)에 더러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서기풍-
斬衰喪中, 直領或有不緝邊者, 未知如何?【徐基豊】

[답] 자(齊)와 참(斬)은 최복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니,[270] 비록 참최의 직령이라도 가장자리를 꿰매야 한다. 중단의는 꿰매지 않아도 무방하다.
齊斬主於衰服而言也, 雖斬衰直領, 當緝邊. 中單不緝, 亦無妨.

[문] 상인(喪人)이 출입할 때의 복색은 옛날에는 묵최(墨縗)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령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오준선-
喪人出入服, 古有墨縗, 今用直領云云.【吳駿善】

[답] 만약 원칙적인 예를 말한다면 상인은 본래 출입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는 행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후세에서는 묵최를 입고 외출하였다. 이미 바른 예가 아닌 이상 시속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듯하다.
若言經禮, 則喪人本無出入. 然而有行不得處, 故後世墨縗出焉. 已非正禮, 從俗之外, 恐無他道矣.

---

269) 박동양(朴東陽) : 1820~?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윤평(允平)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진사] 헌종(憲宗) 1년(1835) 을미(乙未)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23위(53/100)이다.

270) 자(齊)와 …… 것이니 : 자최복은 최복의 끝단을 꿰맨 것이고 참최복은 꿰매지 않은 것이다.

[문] 효자(孝子)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방립(方笠)을 벗고 효건(孝巾)만 착용하고서 주인을 만나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필기-
孝子入人家, 脫方笠, 只以孝巾見主人, 何耶?【蘇弼基】

[답] 방립의 제도는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니, 다른 사람과 예를 행하면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례(俗禮)가 이러한 것이다. 다만 양립(凉笠)의 제도는 본래 해를 가리려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마침내 원복(元服 관(冠))으로 만들어 지붕 아래에서 예를 행할 때에도 모두 착용하니, 이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方笠之制, 所以掩面, 與人爲禮則不著, 故俗禮如是矣. 但凉笠之制, 本自蔽日, 而今人遂成元服, 屋下行禮, 皆用之, 此最不可曉者.

[문] 문목은 위와 같다. -여봉섭-
問目同上.【呂鳳燮】

[답] 방립은 본래 해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지붕 아래에서는 벗는다. 그러나 벗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이겠는가.
方笠本以蔽天日, 故屋下則脫之. 然而不脫, 亦何妨也?

[문]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조부모를 위해 기년복을 입고 있으면 과거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관직은 그만두지 않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준선-
程子曰: “祖父母期服, 不當赴擧.” 旣不解官, 而不赴擧, 何也?【吳駿善】

[답] 종사(從仕)는 윗사람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자기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從仕出於上令, 赴擧斷自己意, 所以不同.

[문]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술과 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채소와 과일 또한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이최선-
不食菜果. 酒肉可廢, 菜果亦何不食?【李最善】

[답] 나도 어린아이였을 때 이 말을 의심했는데 나이가 든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이 물고기와 고기에 못지않다는 것을 알았다.
吾亦兒時疑此, 晩後始知菜果不下魚肉.

[문] "조전(朝奠)은 해가 뜰 때 올리고 석전(夕奠)은 해가 지기 전에 올린다."[271]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이최선-
"朝奠日出, 夕奠逮日"云云.【李最善】

[답] 예를 제정한 것을 보건대 혼기(魂氣)가 잠시라도 떠날까 염려한 것이다. 혼명(昏明)이 나뉘는 큰 경계는 해가 뜨고 지는 것만 한 것이 없다.
見制禮者, 恐魂氣暫離. 昏明之大界限, 莫如日出入.

[문] 상식(上食)과 전(奠)을 설행할 때 참신(參神)과 강신(降神)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궤연(几筵)을 모시기 때문인데 어떻게 분향(焚香)하고 재배(再拜)합니까? -정희원-
上食與奠, 不參降, 以常侍, 而何焚香再拜?【鄭禧源】

[답] 제수(祭需)를 올릴 때 절을 한다.
薦時有拜.

---

271) 조전(朝奠)은 …… 올린다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보인다.

[문] 〈상복(喪服)〉 전문(傳文)에 "의려(倚廬)[272]에 거처함은 부모가 밖에 계심을 슬퍼해서이고 거적자리에서 자고 흙덩이를 베는 것은 부모가 땅속에 계심을 슬퍼해서이다."[273]라고 하였습니다. 집안에 빈소(殯所)를 차리는데 '밖'이라고 하고 '땅속'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기-
〈喪服〉傳"居倚廬, 哀親之在外, 寢苫枕塊, 哀親之在草土也". 殯於家內, 而曰"外"曰"草土", 何也?【金漢驥】

[답] 옛날에는 빈소가 동계(東階)와 서계(西階) 및 양영(兩楹) 사이에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밖에 있다는 것이다.
古者殯在東西階及兩楹之間, 此所謂在外也.

[문] 지금 풍속에서는 영좌(靈座)에 서책과 연죽(煙竹)을 놓아두는데, 서책(書冊)은 괜찮지만 연죽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김훈-
今俗靈座, 置書冊烟竹. 書冊可, 烟竹似不可.【金勳】

[답] 연죽은 비록 굴도(屈到)의 마름과 같은 격이지만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274]
烟竹雖是屈到之芰, 象生時何害也?

---

272) 의려(倚廬) : 부모의 상중(喪中)에 상주(喪主)가 거처하는 초가 여막(草家廬幕)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두는 궤연(几筵) 옆이나 무덤 가까이에 만들었다.

273) 상복(喪服) …… 슬퍼해서이다 : 김한기는 《의례》 〈상복〉 의 전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예기》 〈문상(問喪)〉에 나오는 말이다. 김한기의 착오인 듯하다. 원문의 '在草土'는 《예기》에는 '在土'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 큰 차이는 없다.

274) 연죽은 …… 문제이겠는가 : 굴도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 막오(莫敖)이다. 평소 마름을 좋아하였는데 병이 위독해지자 집안의 노인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제사에 마름을 쓰라고 당부하였다. 굴도의 소상(小祥)을 지낼 때에 아들 굴건(屈建)이, "우리 아버지는 사욕(私慾)을 갖고 국법에 저촉되는 일은 일찍이 하지 않았다." 하면서, 제사상에 차려 놓은 마름을 치우게 하였다. 《國語 卷17 楚語上》 예로 볼 때는 영좌에 연죽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맞으나 망자가 생전에 좋아하던 물품이기도 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문] 상차(喪次)가 중문(中門) 밖에 있어서 효자가 빈소에 들어가는 것은 조석으로 곡하고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할 때뿐이니, 어찌 궤연(几筵)에서 항상 모신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희원-
喪次在中門外, 孝子之入殯室, 朝夕哭奠上食之時而已, 安有常侍之義耶? 【鄭禧源】

[답] 상차는 휴식할 때 및 눈을 붙일 때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니, 어찌 종일토록 외차(外次)에 거처하면서 정당(正堂)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喪次蓋爲休息之時及著睡而設, 豈有終日居外次, 不入正堂之理?

[문] 주인이 아직 상복(喪服)으로 갈아입지 않았으면 조문을 하는 사람은 길복(吉服)을 입습니다. 부자(夫子 공자(孔子))께서 염소 갖옷[羔裘]에 현관(玄冠)을 착용한 채로 조문하지 않으신 것[275]으로 말하면 이는 소렴(小斂) 후입니까?[276] 증자(曾子)는 한갓 상사(喪事)가 흉하다는 것만 알고 사람이 막 죽었을 때는 오히려 길(吉)함을 따른다는 것을 몰랐으니, 이 때문에 처음에는 자유(子游)를 그르다고 하고 끝에 가서는 좋다고 한 것입니까?[277] -정희원-
主人未變服, 弔者吉服. 若夫子羔裘玄冠, 不以弔, 是在小斂之後耶? 曾子徒

---

275) 부자(夫子)께서 …… 것 : 《논어》 〈향당(鄕黨)〉에 보이는데, 이에 대한 주(註)에 "초상에는 흰 것을 위주로 하고, 길사(吉事)에는 검은 것을 위주로 한다. 조문할 때 반드시 복장을 바꾸는 것은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276) 소렴(小斂) 후입니까 : 주인이 상복으로 갈아입었으면 조문객은 길복을 입은 채로는 조문할 수 없으니, 공자가 길복(吉服)을 입고 조문하지 않은 것은 주인이 상복으로 갈아입은 이후이기 때문이냐는 뜻이다.

277) 증자(曾子)는 …… 것입니까 : 증자는 습구(襲裘) 차림으로 조문하고 자유는 석구(裼裘) 차림으로 조문하였는데, 증자가 자유를 가리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저 사람은 예에 익숙한 자인데, 어찌하여 석구 차림으로 조문을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주인이 소렴을 마치고 나서 옷을 벗고 머리를 삼끈으로 묶자, 자유가 종종걸음으로 나와 습구 차림에 요대(腰帶)와 수질(首絰)을 하고서 들어왔다. 이에 증자가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저 사람이 옳다."라고 한 고사가 있다. 《禮記 檀弓上》 습구는 갖옷[裘] 위에 웃옷을 겹쳐 입는 것이고, 석구는 웃옷을 벗어서 갖옷의 아름다움이 밖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주인이 아직 상복을 입기 전이었으므로 길복인 석구 차림을 한 자유가 옳았기 때문에 증자가 저와 같이 말한 것이다.

知喪事爲凶, 而不知始死尙從吉, 此所以始非子游而終善之耶?【鄭禧源】

[답] 그렇다.
然.

[문] 문장(門狀)[278]의 '문' 자는 문에 나아가서 이름을 통지한다는 의미를 취한 것입니까? -소필기-
門狀"門"字, 取詣門通之之義耶?【蘇弼基】

[답] 그렇다.
然.

[문] 조문(弔問)하는 예에 반답(半答)[279]하고 무릎을 꿇은 채로 돌아가는 것[跪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계수-
弔禮半答跪還, 是何義乎?【吳繼洙】

[답] 조문하는 예에 주인이 재배(再拜)하는 것은 조문하러 온 손님에게 사례하기 위함이니 대답할 명목이 없고, 평교(平交)가 절할 때도 이유 없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답한다. 위 구절에서 주인이 절할 때 이미 몸을 옆으로 하여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에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280]

---

278) 문장(門狀) : 손님과 주인에게 모두 관직이 있을 때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지(名紙)를 사용한다.《家禮 卷4 喪禮 弔奠賻》

279) 반답(半答) : 절을 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내리고 손을 펴서 지팡이를 짚고 몸을 숙여 손님에게 답하는 것이다. 조상하는 사람이 평교(平交)인 경우에 반답을 한다.《家禮 卷4 喪禮 弔奠賻》

280) 위 …… 것이다 : 《가례》 권4 〈상례 조전부(弔奠賻)〉의 "만약 효자가 항렬이 높고 조상(弔喪)하는 사람이 낮으면 몸을 옆으로 하여 자리를 피해서 효자가 엎드리기를 기다린다. 낮은 자가 곧 무릎을 꿇은 채로 물러난다.[若孝子尊, 弔人卑, 則側身避位, 候孝子伏次, 卑則卽跪還.]"라는 구절을

弔禮主人之再拜, 謝賓之來弔也, 答之無名, 而平交之拜, 亦難空受故半答. 上文主人拜時, 旣側身回避, 故拜畢跪還本席.

[문] 죽은 자를 알면 증(贈)을 하고 살아있는 자를 알면 부(賻)를 합니다. 증과 부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정희원-
知死者, 贈, 知生者, 賻, 贈賻之義何如?【鄭禧源】

[답] 죽은 자를 아는 경우의 증은 몸에 가까이 두는 것에 사용하고 살아 있는 자를 아는 경우의 부는 잡비(雜費)에 사용한다.
知死之贈, 用於近身, 知生之賻, 用於雜費.

[문] 남의 승중손(承重孫)과 차방(次房)을 위문하는 경우 각각의 위문하는 글을 갖추어야 합니까? 또 형제가 모두 저를 아는데 만약 역려(逆旅)에서 형만 보고 아우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말을 만듭니까? -소필기-
慰人承重孫與次房, 當具各狀? 且兄弟俱知, 而若於逆旅, 見兄不見弟, 則何以措語?【蘇弼基】

[답] 승중손과 차방에게는 각각 위문한다. 형만 보고 아우를 보지 못하는 경우 또한 각각의 종이에 위문하는 글을 써야 한다. 위문하는 글 또한 본래 하나의 서신(書信)이니, 이미 만난 뒤의 서신은 이미 만났다는 형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어려운 점이 있겠는가.
承重與次房則各慰, 見兄不見弟, 亦當書慰各紙. 慰書本亦一書尺也, 旣見之後書尺, 當以旣見樣措語, 何難之有?

두고 한 말이다.

[문] 위문에 답하는 편지에서 만약 위문한 사람도 상중(喪中)이라면 답서는 으레 어떻게 말을 만듭니까? 혹자는 "답서는 격례(格例)대로 하되, 위문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함께 봉한다."라고 하였으니, 과연 합당합니까? 위문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편지로 위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친척이라면 서척(敍戚)[281]해야 합니까? -송영순-
答慰疏, 若慰者亦在喪, 則其答例何以爲辭? 或曰"答疏則依例, 而更書慰疏幷封"云, 果合宜耶? 慰問前, 偶逢於路, 後以書慰則何如? 若族戚則當叙族戚耶?【宋榮淳】

[답] 혹자의 말은 행하더라도 무방하다. 위문하기 전에 이미 위문을 받을 사람을 만났다면 편지에 마땅히 "미처 위문하지 못했는데 중도에 서로 만났으니, 예수(禮數)에 빠짐이 있었다."라는 뜻을 언급해야 한다. 친척에게 어찌 스스로 친척임을 말하지 않는단 말인가.
或說行之無妨. 慰問前, 旣逢著則書中當言"未及致慰, 中路相逢, 禮數有闕"之意. 族戚豈不自言族戚耶?

[문] 갑(甲)과 을(乙)이 모두 상중인데 갑이 편지로 을에게 위문하면 을은 마땅히 답서도 쓰고 위문도 해야 합니다. 답서를 통해 위문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편지를 별도로 작성합니까? -소필기-
甲與乙俱在喪, 而甲以書慰於乙, 則乙當答且慰, 而因其答而慰之乎? 抑別爲各幅耶?【蘇弼基】

[답] 위문하는 편지의 서식(書式)에 대해서는 나 또한 분명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다만 일의 체면으로 헤아려 보건대 위문하는 말은 앞에 두어야 하고 답하는 말은 뒤에 두어 두 가지 편지를 합해서 하나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별도의 서신을 작성한다면 성실하지 못함에 가깝다. 답서를 통해 먼저 위문하는 뜻을 표하는 것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

281) 서척(敍戚) : 멀어진 딴 성(姓)의 겨레붙이가 그 친척 관계를 서로 말하는 것이다.

慰狀之式, 此亦未見的證, 但以事面揣之, 慰語當居先, 答語居尾, 以兩狀合以爲一矣. 若修別幅, 則近於不誠. 因其答而先致慰, 何嫌之有?

[문] 부친상과 모친상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을 위문하는 편지의 서식에 대해 묻습니다. 같은 종이에 한꺼번에 위문해서는 안 됩니까? -민의행-
慰人並有父母喪狀式, 未可同幅並問耶?【閔誼行】

[답] 만약 같은 종이에 위문하는 말을 적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금의 서식 외에 별도로 말을 만든 뒤에야 옳다. 다만 상을 한꺼번에 당했어도 반드시 선후가 있을 것이고, 부고(訃告)를 들은 때도 반드시 조만(早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지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또 정리(情理)에 가깝다.
若欲同狀修慰, 則必於今狀式之外, 別有措語而後爲可耳. 但幷喪必有先後, 聞訃必有早晩, 故各狀爲省事且近情.

[문] 상중에 쓰는 편지에는 자신을 '고애자(孤哀子)'라고 일컫는데 더러 '죄인(罪人)', '죄생(罪生)'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존비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조의곤-
喪中書疏, 自稱曰"孤哀子", 或稱"罪人""罪生", 抑有尊卑之別乎?【曺毅坤】

[답] '고애자'나 '애자(哀子)'는 예서(禮書)의 서식이고, '죄인'이나 '죄생'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격례이니, 어찌 존비의 구별이 있겠는가.
"孤哀子""哀子", 禮書之式也, "罪人""罪生", 恒茶飯常用之例也, 豈有尊卑之別也?

[문] 부재모상(父在母喪)을 당해 심상(心喪)을 치르는 자의 편지에는 '계상(稽顙)'과 '죄인(罪人)'과 '정신이 없어 글에 조리가 없습니다[荒迷不次]' 등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정희원-
父在母喪, 持心喪者書疏, "稽顙"與"罪人", "荒迷不次"等語, 似不當用. 【鄭禧源】

[답] '계상'과 '죄인' 등의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듯하다.
"稽顙""罪人"等字, 不用似是.

[문] 출계(出繼)한 아들이 본생부모(本生父母)에게 '세부모(世父母)'라고 부르거나 '사친(私親)'이라고 부르거나 '본생부모'라고 부르니, 무엇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세(世)'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준선-
出繼子於所生, 或稱"世父母", 或稱"私親", 或稱"本生父母", 未知何者爲當? 世字是何義?【吳駿善】

[답] '세부모'는 백부모(伯父母)에 대한 호칭이니, 《이아(爾雅)》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282] '사친'이라는 말은 비록 근세에 나왔으나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본생' 자가 온당한 것만 못하다.
"世父母"者, 伯父母之稱, 考《爾雅》可見矣. "私親"之云, 雖出於近世, 而其意思則無妨. 然而不如"本生"字之穩.

[문] 본생의 상을 당한 사람을 위문할 때 편지에 '애(哀)' 자와 '소(疏)' 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부재모상(父在母喪)을 당한 경우는 먼저 '모신다[侍]'

---

282) 세부모는 …… 있다 : 《이아》 〈석친(釋親)〉에 "아버지의 형제로서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세부'라고 한다.[父之昆弟, 先生爲世父.]"라고 하고, 또 "아버지의 형의 아내를 '세모'라고 한다.[父之兄妻爲世母.]"라고 하였는데, 세(世) 자에 대한 주에 "대대로 적(嫡)이 된 자가 있어 세통(世統)을 잇기 때문이다.[世有爲嫡者, 嗣世統故也.]"라고 하였다.

고 말한 뒤에 ‘슬프다[哀]’고 말해야 합니까? 조부모가 비록 살아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죽었다면 ‘중시(重侍)’[283]라고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필기-
慰人本生喪, “哀”字“疏”字, 不當用耶? 父在母喪者, 當先言“侍”而後言“哀”耶? 祖父母雖在, 父母俱沒, 則似不當稱以“重侍”, 未知如何?【蘇弼基】

[답] 본생의 상중에 ‘애’ 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하고, ‘소’ 자는 ‘장(狀)’ 자로 대신 사용하는 것이 옳다. 부재모상이라면 상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체후[哀中侍履]를 묻는 것이니, ‘애’ 자를 먼저 쓰는 것이 옳은 듯하다. 다만 어찌 두 글자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글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 ‘중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는 일찍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갑작스럽게 대답해 주지 못하겠으나, 단독으로 ‘시(侍)’라고 부르는 방법이 혹 무방할 듯하다.
本生憂中, “哀”字恐無妨, “疏”字替以“狀”字爲可. 哀中侍履, 似是先“哀”爲當, 但何必相連爲句耶? 父母俱沒, “重侍”果似未安. 此曾未思到者, 不能倉卒置對, 單稱“侍”案, 或無妨耶?

[문] 스승을 위해 입는 복을 심상(心喪)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암(陶菴)은 “어버이에게 혐의스럽다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녹문(鹿門)[284]은 “마땅히 심제인(心制人)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喪)과 제(制)는 의미는 비록 같으나 조금 다르니, 녹문의 말을 따르는

283) 중시(重侍) : 중시하(重侍下)와 같다.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함께 모신다는 뜻이다.

284) 녹문(鹿門) :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호이다.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자는 중사(仲思)이다.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1733년(영조9)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750년 세자익위사 세마가 되고 시직에 승진하였으나 곧 사직하고, 1758년 공주의 녹문에 은거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뒤에 동궁을 보도(輔導)하고 지방관을 지내다가 녹문에 은거하여 학문 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초년에는 스승인 이재의 학설을 따라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으나, 중년에 이르러 낙론(洛論)과 호론(湖論)을 모두 비판하고,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을 계승, 발전시켜 기일분수설(氣一分殊說)을 주장하여 자신의 학설을 수립하였다. 저서에 《녹문집(鹿門集)》이 있다.

것이 어떻습니까? -김훈-
師服稱心喪, 陶庵謂"嫌於親, 不必書", 鹿門謂"當稱心制人". 喪與制, 義雖同而差別, 從鹿門何如?【金勳】

[답] 합당한 듯하다.
似當.

[문] 제자(弟子)가 스승의 모친상에 들어가 곡하는 것은 의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석귀-
弟子於師母喪入哭, 無害於義否?【金錫龜】

[답] 사부인(師夫人)은 스승과 차이가 있으니, 만약 평소에 당(堂)에 올라가 사부인을 뵌 것이 아니라면 들어가 곡해서는 안 된다.
師夫人與師有異, 若非平日升堂者, 不當入哭.

[문] 외부에 나가 있을 때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들으면 피발(被髮)한 채로 가서는 안 됩니까? -정희원-
出外而聞父母之喪, 則不可以被髮行之耶?【鄭禧源】

[답] 분상(奔喪)할 때는 사각건(四角巾)을 착용하니, 어찌 피발한 채로 길을 가서야 되겠는가.
奔喪有四脚巾, 道路豈可被髮而行乎?

[문] 상중에 남의 후사가 되었다면 추복(追服)하는 의절(儀節)은 분상하는 예(禮)대로 해야 합니까? 탈복(脫服)하는 날은 후사로 나간 날이어야 합니까? -정희원-
喪中立后, 則追服之節, 當如奔喪之禮乎? 脫服之日, 當在出後之日耶?【鄭禧源】

[답] 편지에서 한 말이 옳은 듯하다.
來說似當.

《답문류편》
答問類編

권13 卷之十三

상례 5-4 하[喪禮五之四下]

상례 5-4 하

喪禮五之四下

[문] 풍수가(風水家)가 지리의 길흉을 말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윤종의-[285]
形家言地之吉凶.【尹宗儀】

[답] 풍수가의 말은 요컨대 주자(朱子)의 〈산릉의장(山陵議狀)〉[286]을 종지(宗旨)로 삼아야 합니다. 주자는 또 "무슨 산이니 무슨 물이니 하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287]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술객(術客)의 말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으니, 남에게 반드시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자는 또 "땅은 다함이 있으나 사람이 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288]라고 하였으니,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드시 길지(吉地)를 구한다는 이치는 없습니다.
形家言, 要當以朱子〈山陵議狀〉爲宗旨. 朱子又謂: "不用某山某水之說." 此與今日術客之言大相逕庭. 只在信得及如何, 不可强人以必從, 奈何? 朱子又曰: "地有盡而人之求無已." 求之則可, 必求無是理也.

---

285) 윤종의(尹宗儀) : 1805~188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사연(士淵), 호는 연재(淵齋),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생원시를 거쳐 1852년(철종3) 개성부도사·청풍 부사 등을 지냈다. 파광군(坡光君)에 봉해지고, 공조 판서에 올랐다. 제자백가에 정통하고, 병법·농사·천문·예학(禮學) 등에 밝았다. 저서로 《예기사문록(禮記思問錄)》, 《사서의의(四書疑義)》, 《상례분류(喪禮分類)》, 《유사소의연재집(游史小義淵齋集)》 등이 있다.

286) 산릉의장(山陵議狀) : 주희(朱熹)가 송 효종(宋孝宗)의 산릉(山陵)을 모시는 일에 관해 광종(光宗)에게 올린 주의(奏議)로, 풍수의 대강을 밝히고 있다. 풍수지리에 관한 지침서가 되어 조선의 조정에서 풍수를 논할 때마다 언급되었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15에 실려 있다.

287) 무슨 …… 한다 : 《주자대전》 권63 〈답호백량(答胡伯量)〉에 보인다.

288) 땅은 …… 없다 : 《주자대전》 권54 〈답석응지(答石應之)〉에 보인다. 여기에는 '地有盡而求者無已'로 되어있다.

[문]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음탕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것이 하늘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葬地)를 마련하고 집을 짓는 자는 길흉과 화복을 한결같이 지리(地理)로 판단하고 결정하니, 어김없이 실현되는 천리가 지리만 못한 셈입니다. -여봉섭-
福善禍淫, 天之正理, 而今營葬築室者, 吉凶禍福, 一以地理斷決, 天理之信, 不如地理也.【呂鳳燮】

[답] 지리에 따른 화복이 만약 있더라도 이 또한 천리가 유행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의 단서이다. 이 때문에 지가(地家)의 말에 "길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힘써 덕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地理禍福, 設若有之, 則此亦天理流行中一端也. 是故地家之言曰: "欲求吉地, 勤種德."

〈**신천록**(新阡錄)〉[289]**을 간략히 덧붙임**.-선생이 서석(瑞石)으로 선고비(先考妣)를 이장(移葬)하면서 〈신천록〉을 지었으니, 모두 수천 글자였는데 곧바로 불태웠다. 불타고 남은 것에서 이를 얻었으므로 덧붙인다.-
〈新阡錄〉略附.【先生遷葬瑞石而著是錄, 總數千言, 旋又火之. 得此於斷爛之中, 故附之.】

산을 정하고 혈(穴)을 구하는 방법이라면 있지만 사심(私心)과 천견(淺見)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은 많고 길지(吉地)는 적은 것을 어찌하겠는가. 다함이 있는 땅으로 그침이 없는 구함에 맞추는 것은 절대로 없는 이치이니, 그렇다면 사람들이 술사(術士)에게 속는 것은 술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일 뿐이다.

임진년(1832, 순조32)에 차질(蹉跌)을 빚고부터[290] 비로소 이런 이치에

289) 신천록(新阡錄) : 1841년(헌종7) 기정진이 44세일 때 지었다.《蘆沙集 附錄 年譜》

290) 임진년에 차질(蹉跌)을 빚고부터 : 1832년에 기정진이 강릉 참봉(康陵參奉)에 제수되어 서울에 올라갔는데, 전조(銓曹)의 주의(注擬)에 숙조(叔祖)인 기대승(奇大升)을 현조(顯祖)라고 기록하고

훤해져서 다시는 이런 무리들과 어울릴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마음을 잊지 못하면 때때로 친척이나 붕우 한두 사람과 가까운 곳의 산수(山水)를 왕래하였는데, 여기에서 산을 유람하고서 좋은 곳을 찾으면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였으나 감히 이를 단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 일은 가장 애매하여 마치 남격암(南格庵)[291]이 신통하다고 일컬어졌는데도 부모를 열 번 안장하면서 매번 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과 같다고 늘 생각하였다. 근래에 이목(耳目)이 미치는 곳은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의 덕이 있는 어른들이 혹 길지라고 자신함이 지나쳐 끝내 아무런 효험이 없었으니, 지금 나의 소견 또한 예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밝은 식견을 채택하여 증거로 삼고자 하니, 술사의 말을 버려두고 친척과 붕우에게 구하는 것은 진실로 가려진 마음이 천기(天機)만 못하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묘역(墓域)을 고르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으나 이미 오환(五患)[292]을 삼가라고 하였으니, 우려가 심원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 반드시 점을 쳐야 한다면 점을 치는 방법은 반드시 사람의 모의(謀議)가 정해진 뒤에 귀신의 모의를 참고하는 법이니, 점을 치기 이전에 옛사람이 장지로 정할 묘역을 모의하는 한 가지의 일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필경 어떠한 것인가?

경문(經文)에는 "올라가 산마루에 있고 다시 내려와 언덕에 있다."라는 말이 있고,[293] 전(傳)에는 "하수(河水)를 돌아보고 낙수(洛水)와 이수(伊水)

기정진의 정(正) 자를 정(廷) 자로 잘못 쓴 것을 보고는 숙배(肅拜)하지 않고 귀향한 일을 말하는 듯하다. 《蘆沙集 附錄 年譜》

291) 남격암(南格庵) : 격암은 남사고(南師古, 1509~1571)의 호이다. 본관은 영양(英陽)이여 자는 경초(景初)이다. 역학(易學) 참위(讖緯) 천문(天文) 관상(觀相) 복서(卜筮) 등의 학문에 두루 통달하였다. 특히 풍수학(風水學)에 조예가 깊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1709년(숙종35) 울진(蔚珍)의 향사(鄕祠)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남사고비결(南師古祕訣)》, 《남격암십승지론(南格庵十勝地論)》 등이 있다.

292) 오환(五患) : 묘지를 쓸 때 피해야 할 다섯 가지 경우이다. 정이(程頤)는 뒷날 도로가 될 곳, 성곽이 될 곳, 도랑이나 못이 될 곳, 세력가에게 빼앗기게 될 곳, 농지가 될 곳을 오환으로 지적하였다. 《二程全書 葬說》

293) 경문(經文)에는 …… 있고 : 《시경》 〈대아(大雅) 공류(公劉)〉의 "후덕하신 공류께서 이 언덕을

를 건너본다."라는 말이 있다.[294] 이것이 집터를 살피는 방법이니, 그렇다면 무덤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대개 산마루에 올라가고 다시 언덕에 내려온 것은 지형의 좋고 나쁨을 살핀 것이고, 하수를 돌아보고 낙수와 이수를 건너본 것은 지세의 허실(虛實)을 분별한 것이다.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와 무엇이 좋고 나쁜지가 마음속에서 결정되었다면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상지법(相地法)[295]에서 길하게 여기는 곳이다.

대박(大朴)[296]이 흩어진 뒤 천기(天機)가 날로 어두워지니, 지금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옛사람의 공정함과 같지는 않지만 본래 있던 밝음 역시 일찍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았다. 안장할 일이 있을 때 진실로 사사로운 뜻을 깨끗하게 없애고 부정한 말을 물리쳐 오로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마지못해 술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기(新奇)한 것을 버리고 평범한 것 따를 것이니, 이는 조화가 비록 깊으나 또한 인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인(世人)이 왕왕 이렇게 할 줄은 모르고 좋은 묏자리와 진혈(眞穴)이 인정에 가깝지 않은 곳이나 놀랍고 허탄한 가운데에 숨어 있다고 항상 의심하고 다시 화복에 관한 말에 취(醉)해서 만석(萬石)과 분양(汾陽)[297],

---

살펴보시니 거주하는 자들이 많으며 편안하여 거처가 두루 퍼져 있어 길이 탄식함이 없도다. 올라가서는 산마루에 계시며 다시 내려와서는 언덕에 계시네.[篤公劉, 于胥斯原. 既庶既繁, 既順迺宣, 而無永嘆. 陟則在巘, 復降在原.]"라는 말을 원용한 것이다. 공류가 빈(豳) 땅에 와서 백성이 편안하게 거처할 곳을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보았다는 내용이다.

294) 전(傳)에는 …… 있다 : 주 무왕(周武王)이 "내 남쪽으로 삼도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악비를 바라보며 하수를 돌아보고 낙수와 이수를 건너 보았으니, 도읍을 정하되 이곳에서 멀리하지 말라.[我南望三塗, 北望嶽鄙, 顧詹有河, 粵詹洛伊. 無遠天室.]"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書經集傳 召誥》《史記 周本紀》

295) 상지법(相地法) : 땅의 형세와 기운을 풍수지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살피는 방법을 말한다.

296) 대박(大朴) : 원시(原始)의 질박한 대도(大道)를 말한다.

297) 만석(萬石)과 분양(汾陽) : 만석은 전한(前漢)의 석분(石奮)을 말한다. 고조(高祖), 문제(文帝), 경제(景帝)를 섬겼으며, 경제 때에는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다. 석분의 아들 석건(石建), 석갑(石甲), 석을(石乙), 석경(石慶)이 모두 2000섬의 녹을 받는 관직에 올랐는데, 경제가 이를 두고 석분과 네 아들의 녹이 모두 합쳐 1만 섬이라 하여 석분을 만석군(萬石君)이라고 불렀다.《史記 萬石列傳》 분양은 당(唐)나라 곽자의(郭子儀)를 말한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많은 공로를 세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으므로 이렇게 불렸다. 살아 있을 때 온갖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자손이 번성하였다.《唐書 郭子儀傳》

김장(金張)과 왕사(王射)[298]를 억지로 찾고 힘써 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여기니, 이에 불량한 술사가 거짓말을 하고 간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명산결(名山訣)》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유포되어 불량한 술사와 함께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한다. 아, 저 《명산결》이라는 것을 지은 자는 누구인가? 만약 망령된 사람이라면 그 말은 진실로 믿을 것이 없고 옛날의 진선(眞仙)이라면 절대 오묘한 천기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전안(田案)이나 호적처럼 산마다 기록을 쓰고 고을마다 읍지(邑誌)를 써서 책을 만들었을 리가 있겠는가. 이 책이 거의 흉악한 말이나 흉악한 사람의 손에서 나와 미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마치 옛날의 이른바 "오랑캐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다."[299]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버이의 안장을 위해 계책을 내는 사대부는 매번 그 사이에서 요행을 바라니, 슬프다. 위태롭구나! 사대부를 위해 헤아려 보건대 일체 이와 반대로 하여 차라리 느긋하고 담박함으로 인한 잘못이 있을지언정 조급하고 망령된 잘못은 없어야 하며, 차라리 공평하고 바름으로 인한 잘못이 있을지언정 고원하고 기묘한 잘못은 없어야 한다.

무릇 풍기(風氣)가 평화롭고 토맥(土脈)이 견실(堅實)하며 마구 부딪치는 악수(惡水)와 난사(亂砂)[300]가 없는 곳은 모두 옥(玉)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 사이에 만약 내세(來勢)[301] 한 마디[節][302]의 좌처(坐處) 한

---

298) 김장(金張)과 왕사(王射) : 김장은 전한의 김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를 가리킨다. 두 집안은 7대 동안 임금을 가까이 모셔 부귀영화를 누린 명문가였다. 왕사는 진(晉)나라 왕도(王導)와 사안(謝安)을 가리킨다. 모두 오의항(烏衣巷)에 살면서 부귀를 누렸으며, 후손들도 훌륭한 이가 많았고 번성하였다.

299) 오랑캐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 오랑캐는 중국 주변의 이민족을 말한다. 오랑캐 민족에 걸출한 인물이 나와 중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풍수지리서에 명당은 나쁜 자리로, 나쁜 자리는 명당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또 이런 풍수지리서를 《멸만경(滅蠻經)》, 즉 '오랑캐를 멸망시키는 경전'이라고 한다.

300) 악수(惡水)와 난사(亂砂) : 수(水)와 사(砂)는 혈의 전후좌우에 있는 물과 산을 말한다. 악수와 난사는 범범하게 풍수상 흉(凶)한 물과 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301) 내세(來勢) : 풍수학의 용어로 내룡(來龍)을 가리키는 듯하다. 용은 풍수학에서 산의 능선을 가리키는 말로 내룡은 무덤을 쓴 자리[穴]의 주산(主山)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산줄기를 지칭한다.

302) 마디 : 산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마디는 한 해 동안에 자랄 싹이 트는 곳으로 용맥이 일기일복

조각이 깨끗하고 하수(下手)[303] 한 팔이 포근하게 감싸 주는 곳을 얻으면 이곳이 지가(地家)가 말하는 길지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험한 일을 익히 겪은 하나의 소득이니, 친척과 붕우와 자손은 이렇게 하고 술사에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깊이 바란다.

옛날 순경(荀卿 순자(荀子))이 논설을 지으면서 관상(觀相)을 비판하였는데,[304] 의론하는 자가 "존엄한 오도(吾道)를 굽혀 복사(卜師)와 변론하였으니, 이는 하나의 이단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논한 것 또한 자못 이단에 가까우나 이는 사람들에게 늘 있는 일이라 이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음을 보았고 나 또한 일찍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므로 갖추어 말한다.

定山求穴, 其法則有之, 然非私心淺見之所可窺也. 設有知者, 其如人多而吉地寡何哉? 以有盡之地應無已之求, 此必無之理也, 然則人之爲術士所欺者, 非術士欺人, 人自見欺耳. 自壬辰蹉跌, 始灼然於此理, 無復與此輩周旋之心, 猶不能忘情於此事, 則時與親戚朋友一二人, 陟降於近地山水, 此地遊山而得之, 中心喜之, 而未敢質也. 常念此事最茫昧, 如南格庵稱通靈, 而不免十葬値凶. 近時耳目之所及, 同異姓諸長德, 或自信過當, 而其終也歸於烏有, 今吾所見, 亦安知非昔時塗轍乎? 是以欲採他人眼光, 以爲證左. 捨術士而親戚朋友是求者, 誠以有蔽之心, 不如天機也. 古人之擇塋域, 其法之詳, 不可得而聞, 然旣言謹五患, 則其憂慮深遠, 可推矣. 又必加之卜筮, 則卜筮之法, 必人謀旣定而後, 參以鬼謀, 是卜筮以前, 古人謀域, 已有一段事矣. 然則其法畢竟何如哉? 於經有之, 曰: "陟巘復原." 於傳有之, 曰: "顧詹越詹." 此其相宅之法, 則其於幽宅也, 亦宜無異法矣. 蓋陟巘復原, 則形之好醜審矣, 顧詹越詹, 則勢之虛實辨矣. 取捨得失, 決於心目之間, 心目

(一起一伏)하거나 좌굴우곡(左屈右曲)하면서 가지를 분출하여 새싹이 돋는 부위에 해당한다. 《유종근 최영주, 한국 風水의 원리, 동학사, 2009》

303) 하수(下手) : 하수사(下手砂)의 준말로, 혈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산줄기를 말한다.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감싸 주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비사(下臂砂)라고도 한다.

304) 관상(觀相)을 비판하였는데 : 《순자(荀子)》에 〈비상(非相)〉 편이 있는데, 사람의 외모로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여 비판하고 내실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所安, 卽地法之所吉也. 大朴旣散, 天機日晦, 今人之心目, 固非古人之公正. 其本有之明, 亦未嘗全息也, 方其有事於窀穸也, 苟能澄汰私意, 屛去邪說, 專以本來心目爲準, 不得已而聽術士, 則必棄新巧而從平常, 蓋造化雖深, 亦近於人情故也. 世之人往往不知出此, 而常疑其有大地眞穴, 藏於人情不近之地, 駭愕荒忽之中, 又爲禍福之說所醉, 謂萬石汾陽, 金張王謝, 可以强探力索而得. 於是, 術士之無良者, 乃得以騁其詐而售其奸焉. 又有所謂《名山訣》者, 流布於世, 與無良術士相爲脣齒, 以誑耀焉. 噫! 彼《山訣》者作之者, 誰歟? 若其妄人也, 則其言固不足信, 若其古之眞仙也, 則玄機必不妄洩, 焉有山山而傳之, 邑邑而譜之, 著爲成書, 如田張籍版乎? 此殆出於凶吻凶手, 以餌饞夫, 如古所謂"滅蠻之爲"者. 而士大夫之爲親安厝計者, 每每覬幸於其間, 悲夫, 殆哉! 爲士大夫計者, 一切反是, 寧失之恬淡, 無失之躁妄, 寧失之平正, 無失之高妙. 凡風氣之寬平, 土脈之堅實, 無惡水亂砂之橫衝者, 皆藏玉之所也. 其間若得來勢一節, 坐處一片之瑩淨, 下手一臂之穩抱, 則是地家所謂吉地者也. 此皆飽經艱險之一得, 深願親戚若朋友若子孫之爲此而不爲彼也. 昔, 荀卿著論以非相, 議者以爲: "屈吾道之尊, 而與卜師辨, 是生一異端也." 今此所論, 亦頗近之. 然此是人家恒有之事, 見人之以此覆敗者多矣, 己身亦未嘗不自坑塹中來, 故備言之.

[문] 산지(山地)[305]를 처음 점쳤는데 근심스럽고 두려워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조의곤-
山地初占, 憂懼莫決云云.【曺毅坤】

[답] 산지에 관한 말은 만약 노쇠하고 정신이 흐릿한 자에게 물었다면 이는 진실로 망발이다. 이 일은 산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직접 찾아가서 천 번 생각하고 헤아려도 분명히 정하기 어려울까 근심스러운데 하물며 집안에 앉아 있는 경우이겠는가. 사람의 자식이 어버이를 위해 하는 큰일에

305) 산지(山地) : 묏자리에 알맞은 땅을 말한다.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사람은 각각 마음이 있는데 이를 영대(靈臺)라고 하니, 안으로 자신의 마음에 결정하라. 만약 끝내 안으로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점을 쳐 보는 것이 혹여 한 가지 방도일 것이다. 지금 사람은 점을 믿지 않는데, 복희씨(伏羲氏) 이래로 성인은 모두 점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사람은 무슨 별다른 지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이 외에는 다른 좋은 방책이 없으니, 시험 삼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山地之說, 若問於老昏, 此眞妄發. 此事目與足俱到, 千回思量, 猶患難明, 况坐在屋裏? 左右於人子爲親大事, 豈是事理? 人各有方寸, 謂之靈臺, 內決於自家方寸. 如曰終無以內決, 則問之卜筮, 是或一道耶? 今人不信卜筮, 而宓羲氏以來, 聖人皆用之. 今人有何別般知覺而然? 此外無他好策, 試深思之, 如何?

[문] 선산(先山)의 산기슭에 부장(祔葬 합장(合葬))할 때 각 위(位)에 두루 고합니까, 최존위(最尊位)에만 고합니까? -김석귀-
祔葬先麓, 徧告各位耶? 只告最尊位耶?【金錫龜】

[답] 모든 위(位)의 분묘(墳墓)가 새 장지(葬地)와 매우 가깝다면 각각 고해야 할 듯하고 조금 멀면 최존위에만 고해야 할 듯하니, 그때가 되면 알맞게 처리하라.
諸位墳墓, 密近新葬地, 則似當各告, 稍遠則似只告最尊位, 臨時權之.

[문]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높이는데 지금 사람은 부장(祔葬)할 때 더러 지세(地勢)를 가지고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안장합니다. -여봉섭-
地道尊右, 而今人祔葬, 或以地勢, 男左女右.【呂鳳燮】

[답] 지도는 진실로 오른쪽을 높이는데 만약 지면에 장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을 높이는 예(禮)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地道固尊右, 而若地面有礙, 則不得已而有不能用尊右之禮.

[문] 먼저 돌아가신 분을 선영(先塋) 아래에 안장했는데 지금 다시 부장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및 먼저 안장된 분에 대한 고사(告辭)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주상-[306]
前喪葬先塋下, 今又祔葬, 先塋及先葬告辭云云.【李周相】

[답] 선영에 대한 고사는 종자(宗子)가 주관하게 해야 할 듯하고 먼저 안장된 분에 대한 고사는 가까운 친족이 주관하게 해야 한다. 고사는 말을 만들어서 하라.
先塋告辭, 似當宗子主之, 先葬告辭, 當近親主之, 告辭, 措辭爲之.

[문] 아버지의 장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모친상을 당한 경우 또한 가벼운 것을 먼저 하고 무거운 것을 나중에 하는 의리에 따라 날을 물려 어머니의 장사 후에 행합니까? -정재필-
父葬方近, 而遭母喪, 亦以先輕後重之義, 退行於葬母後歟?【鄭在弼】

[답] 부모상이 한꺼번에 있으면 가벼운 것을 먼저하고 무거운 것을 나중에 한다는 말은 대개 조금 먼저 하고 조금 나중에 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해 말한 것이다. 만약 선후의 차이가 서로 현격하여 일의 형편상 애로가 있으면 이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竝有喪先後輕重之說, 蓋爲差先差後, 可以進退者言. 若先後相懸, 事勢有碍, 則恐難膠柱.

---

306) 이주상(李周相) : 1840~1890. 본관은 용인(龍仁), 호는 운계(雲溪),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개항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이다. 김평묵 이건창 등과 함께 개화정책을 비난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렸으며 기우만(奇宇萬)과 교류하였다.

[문] 외관은 성인(聖人)이 제정한 제도인데 《가례(家禮)》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한기-
槨是聖人之制, 而《家禮》無之, 何?【金漢驥】

[답] 외관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흙이 피부에 닿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필경에는 다만 땅속에 공간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用槨, 雖曰無使土親膚, 畢竟祇令地中多空虛, 故然矣.

[문] 영거(靈車)는 속례(俗禮)에 별도로 한 사람을 써서 배행(陪行)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현-
靈車俗禮, 別用一人陪行, 何如?【鄭五鉉】

[답] 영거에 별도로 배행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듣지 못했으나 있어도 문제되는 것은 없을 듯하다.
靈車別有陪行, 未聞, 而有之似無所妨.

[문] 혹자가 "계빈(啓殯)[307]한 뒤부터 우제(虞祭)[308]를 지낼 때까지 절차마다 축문(祝文)이 있고, 하관(下棺)하는 절차에만 축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 항상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근래의 예설(禮說)을 보니, 하관할 때의 축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제 영구를 옮겨 무덤으로 나아가니, 감히 고하여 아룁니다.[今遷柩就壙, 敢告曰.]"입니다. 《가례》에는 하관할 때의 축문이 없으니, 이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장사[葬]는 자식이 매우

307) 계빈(啓殯) : 발인하기 하루 전에 관(棺)을 꺼내는 일, 혹은 발인할 때에 관을 꺼내기 위하여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한다.

308) 우제(虞祭) : 장사를 지내고 곧이어 지내는 제사로서 방황하는 혼(魂)을 위하여 지내는 위안제이다. 장사 지내고 반혼(返魂)하는 당일에 지내는 제사를 초우(初虞)라 하고, 다음 유일(柔日)에 지내는 제사를 재우(再虞)라 하고, 다음 강일(剛日)에 지내는 제사를 삼우(三虞)라 한다. 반혼은 장사를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절차로,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인데 하관은 슬픔이 가장 망극한 절차입니다. 이때에는 마음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니, 이때 만약 축문으로 고한다면 슬픔이 공경을 이기는 뜻이 없어서 큰 변고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이는 주자가 차마 말하지 못한 곳이고, 사옹(沙翁 김장생(金長生))이 감히 보충하지 못한 곳입니다. -김석귀-

或曰: "自啓殯至虞, 節節有祝, 惟下棺無祝." 此常有疑. 今觀近世禮說, 有下棺祝文, 曰"今遷柩就壙, 敢告曰". 《家禮》無下棺祝, 蓋有深義存焉. 葬是人子甚不得已之事, 而下棺是第一罔極處. 當是之時, 心肝分裂, 氣脈抑塞, 於此若用祝告, 恐無哀勝敬之意, 非所以處大變也. 此蓋朱子所不忍言也, 沙翁之所不敢補也.【金錫龜】

[답] 그대가 논한 말이 옳은 듯하다.

子之論似然.

[문] 도식(圖式)에 나타난 주척(周尺)의 장단이 다른 것에 대해 묻습니다.[309] -조의곤-

周尺著於圖式者, 長短不同云云.【曺毅坤】

[답] 주척은 〈상례도(喪禮圖)〉로 기준해 보면 그야말로 단주척(短周尺)이니, 그대가 말한 장척(長尺)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해 보면 이는 음률을 고정(考定)하는 것이 아니면 장단은 깊이 헤아릴 필요는 없고 다만 사당에 있는 전대(前代)의 신주를 기준으로 삼아서 길이가 나란하지 않은 문제가 없게만 하면 괜찮을 것이다.

周尺以〈喪禮圖〉準之, 恰是短周尺, 不知所示長尺, 出於何處. 第以愚見言之, 此非攷定鍾律, 則長短不必深計, 但以廟中前代神主爲準, 使無長短不

309) 도식(圖式) …… 묻습니다 : 도식은 《사례편람(四禮便覽)》 권5에 실려 있는 〈상도(喪圖)〉를 가리키는 듯하다. 여기에는 주척(周尺), 조례기척(造禮器尺), 영조척(營造尺), 포백척(布帛尺)의 그림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齊之患, 則可矣.

[문] 〈기석례(旣夕禮)〉에 "판자에 부의한 사람과 물품[310]을 적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책을 종이로 대신합니까? -김훈-
〈旣夕禮〉"書冒於方板", 今則代以紙耶?【金勳】

[답] 종이로 대신해야 할 듯하다.
恐當代以紙.

[문] "부의한 사람과 물품[311]을 적되 9행이나 7행이나 5행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홀수[奇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훈-
"書冒, 若九若七若五" 必用奇數, 何?【金勳】

[답] 양수(陽數)를 취했을 뿐인 듯하다.
恐秖取陽數.

[문] 조조(朝祖)[312]할 때 남자가 오른쪽을 경유하고, 반곡(反哭)[313]할 때 주인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모두 무슨 의미입니까? -소필기-
朝祖, 男子由右, 反哭, 主人升自西階, 俱何義?【蘇弼基】

---

310) 부의한 사람과 물품 : 원문의 '冒'는 《의례》 〈기석례(旣夕禮)〉에 근거하여 '賵'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11) 부의한 사람과 물품 : 원문의 '冒'는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근거하여 '賵'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12) 조조(朝祖) :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에 영구(靈柩)를 모시고 사당으로 가서 조상을 뵙는 의식이다.

313) 반곡(反哭) : 장지(葬地)에서 집에 돌아와 신주(神主)와 혼백 상자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곡하는 것으로, 장례 의식의 한 가지 절차이다.

[답] 오른쪽을 경유하는 것은 동위(東位)로 나아가기 위함이고,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차마 아버지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조항은 각각 일설이지 통일된 의미가 아니다.
由右者, 所以趨東位也, 升自西階者, 未忍代父也. 兩項各是一說, 非一義也.

[문] 장례나 상제(祥祭) 때 세속에서는 술과 안주로 조문객을 대접하는 일이 많으니, 이는 예에 맞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여봉섭-
葬祥時, 世俗多以酒肴待弔客, 恐非禮意【呂鳳燮】

[답] 이천(伊川)의 집에서 장사를 지낼 때 마침 술을 마시고 싶은 손님이 있었는데 이천이 말하기를, "예가 아닌 데에 사람을 빠뜨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伊川家葬時, 會客有欲酒者, 伊川曰: "無陷人於非禮."

[문] 신주식(神主式)에서 '몇 째[第幾]' 자는 친형제에게만 행차(行次)를 논한 것입니까? -소필기-
主式"第幾"字, 但於親兄弟, 而論其行次耶?【蘇弼基】

[답] 옛사람이 '몇 째'를 일컬은 것은 복(服)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듯하다.
古人稱第幾, 似指有服而言.

[문] 부인의 함중(陷中)에는 '휘 아무개[諱某]'라고 적는데 우리나라는 부인에게 세상에 통행하는 이름이 없으니, 아명(兒名)으로 적습니까? 아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휘 아무개' 부분을 비워 둡니까? -여봉섭-
婦人陷中書"諱某", 而我國婦人, 無行世之名, 以幼名書之否? 未記幼名, 則空"諱某"處耶?【呂鳳燮】

[답] 부인의 함중에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명으로 적었는데 지금 풍속에서는 쓰지 않는다. 굳이 비워 둘 필요는 없다.
婦人陷中, 古者我東以兒名書之, 今俗則廢, 不必空也.

[문] 예에는 '아무개 관향[某貫]'을 적지 않는데 지금 풍속에서는 적고, '몇 째[第幾]'가 있는데 지금은 적지 않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조의곤-
禮無"某貫", 而今俗書之, 有第幾, 而今則不書.【曺毅坤】

[답] 함중에 적는 관향은 문제가 없는 속례(俗禮)이다. '몇 째'는 종족 내 항렬의 차례이니 지금 풍속에서는 없는 것이므로 논할 필요 없다.
陷中貫鄕, 俗禮之無妨者也. 第幾, 其族中行第, 今俗所無, 不必論.

[문] 신주식의 '현(顯)' 자는 예스럽지 않으니, 차라리 '황(皇)' 자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황' 자와 '현' 자는 의미가 다릅니까? '현' 자를 사용한 것은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습니까? -정희원-
主式"顯"字非古, 寧用"皇"字. "皇""顯"義異耶? 用"顯"始何代耶?【鄭禧源】

[답] 신주식에 '황' 자를 쓰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오늘날의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간다."[314]라는 격이니, 어찌 옳겠는가. '황' 자와 '현' 자는 의미를 말하면 그다지 차이는 없는데 후세에 피혐(避嫌)이 점점 치밀해졌기 때문에 회피하여 '황' 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황' 자를 일컫는 것은 송(宋)나라 때에도 여전했는데 원(元)나라 때 비로소 금지하고 명(明)나라 조정에서 인습하여 따랐을 뿐이다.
主式欲用"皇"字, 所謂"生乎今而反古之道", 奚可哉? "皇""顯", 言其義則無甚異同, 而後世避嫌漸密, 故回避不用"皇"字. 其稱"皇"字, 宋時猶然, 而元時始禁之, 明朝因遵耳.

---

314) 오늘날에 …… 돌아간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8장에 보인다.

[문] 증손은 증조의 '증' 자를 사용하는데 현손(玄孫)은 '고(高)'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김한기-
曾孫用曾祖之"曾", 而玄孫不以"高"字.【金漢驥】

[답] 증은 '첩(疊 중첩)' 자의 뜻이므로 손자에게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자는 지극히 높다는 말이니, 그렇다면 손자인데 높다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
曾是"疊"字之義, 故可通於孫. "高"乃尊極之謂, 則孫而可稱乎?

[문] 현벽(顯辟)[315]의 신주에는 방제(旁題)를 무엇이라 합니까? -김홍택-
顯辟神主, 旁題云何?【金洪澤】

[답] 현벽의 방제는 이전에 들은 바가 없으나 남편은 아내의 상에 방제가 없다. 만약 대등한 사람의 의미로 방제가 없다면 혹 심한 문제는 없을 듯하니, 널리 물어보고 행하라.
顯辟旁題, 前此未有所聞, 而夫於妻喪, 無旁題. 若以適體之義無旁題, 或無甚妨. 廣詢而行之.

[문] 2월에 태어난 아버지가 우연히 다른 곳으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조모가 이 해 5월에 돌아가셔서 성복(成服)한 뒤 즉시 아버지의 소재를 찾았으나 끝내 소식이 없습니다. 누구는 "승중(承重)해야 한다."라고 하고 누구는 "확실한 소식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 승중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장차 어떻게 변고에 대처해야겠습니까?-민재호-[316]
二月生之父, 偶然出他未還, 祖母以是年五月棄世, 成服後, 卽訪父所在, 終無消息. 或云"當承重", 或云"未得實音, 承重不可", 將何以處變?【閔在鎬】

---

315) 현벽(顯辟) : 신주나 축문(祝文)에서 아내가 죽은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316) 민재호(閔在鎬) : 1851~1918. 본관은 여흥(驪興). 자(字)는 호일(浩一), 호는 태암(台菴), 화순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무과에 등과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를 지냈다.

[답] 아버지가 외지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이가 이미 중수(中壽)[317]를 넘겼다면 발상(發喪)하고 복상(服喪)하는데, 그런 뒤에 조부상이나 조모상을 당했다면 승중하는 것이 옳다. 지금 아버지가 나간 지 아직 1,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생사를 모르면서 대번에 승중복을 입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전혀 옳지 않다.
父出不還, 則當平生求之, 求之不得, 而父年已過中壽, 則發喪制服, 然後遇祖若祖母喪, 則承重可也. 今父出未滿一二年, 存歿不知, 而遽行承重服, 是豈成說乎? 萬萬不可.

[문] 아버지가 도망간 상황에서 모친상을 당하면 모친을 장사 지낼 때의 제주(題主)는 아들이 우선 임시로 섭행(攝行)합니까? -김훈-
父亡去而遭母喪, 母葬題主, 子姑爲權攝耶?【金勳】

[답] 물어 본 내용은 진실로 변례(變禮)의 의문거리이다. 비록 조부모의 상이라도 아버지가 집상(執喪)하지 못한다면 적장손(嫡長孫)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상하는 법이 있으니,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는 임시로 상주(喪主)가 되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거든 개제(改題)해야 할 듯하다. 본령(本領)이 이미 잘못된 이상 만사가 모두 순탄한 이치는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俯詢眞變禮疑案. 雖祖父母喪, 父不能執喪, 則冢孫有代父執喪之法, 父未回前, 或當權爲喪主, 而待父回改題耶? 本領旣差, 無萬事皆順之理, 奈何?

[문] 정축년(1817, 순조17) 흉년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이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생존했을 가망이 없으니, 그 아들이 발상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이용헌-[318]

---

317) 중수(中壽) :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로 나눌 때, 80세가 된 나이를 말한다. 일설에는 90세 이상, 또는 60·70세로 보기도 한다.

318) 이용헌(李龍憲) : 1851~1895.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운오(雲五), 호는 오산(梧山)이다. 조선시대

丁丑大無流亡人, 已過三年不還, 則生全無望, 其子發喪, 當在何時?【李龍憲】

[답] '아버지의 나이 100세를 계산하여 발상(發喪)한다'[319]는 말이 있고 '3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나서야 복을 입는다'[320]는 말이 있다. 그러나 100년은 너무 먼 듯하고 3년은 또 너무 가깝다. 다만 정축년에 도망간 사람은 사정이 더욱 특별하니, 절대 찾지 못할 것임을 안다면 발상하고 복을 입는 것은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될 듯하다.
有言"計父百年發喪", 有言"三年求乃制服". 而百年恐太遠, 三年又太近矣. 但丁丑亡去人, 則事情又別. 知其必不求, 則發喪制服, 恐不可延待時月.

[문] 도망간 아버지에 대한 발상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우암(尤庵)은 "아버지의 나이 100세를 계산하여 발상한다."[321]라고 하였고, 《통전(通典)》에는 "3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나서야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는데, 100년은 너무 멀고 3년은 너무 가까운 듯합니다. 도암(陶菴)이 "3년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3년을 더 찾은 다음 발상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정축년 흉년에 도망가서 살아 있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도암의 말도 그대로 따라 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널리 아버지를 찾되, 내년에 아버지가 도망간 달에 이르면 그 달로 날을 골라서 발상하고 영구히 기일(忌日)로 정한다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초혼(招魂)하고서 장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예가 아니고 장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만드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김훈-

---

경학자(經學者)이다. 조부는 취헌(醉軒) 이만엽(李萬燁)이다. 경학(經學)을 깊이 공부했으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을 스승으로 섬겼다.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십회잠(十懷箴)〉·〈척사부정설(斥邪扶正說)〉 등을 썼다.

319) 아버지의 …… 발상(發喪)한다 : 두우(杜佑)가 지은 《통전(通典)》의 〈군부괴리부지사망복의(君父乖離不知死亡服議)〉에 보인다.

320) 3년 …… 입는다 : 《통전》 〈부모괴리지사망급부지사망복의(父母乖離知死亡及不知死亡服議)〉에 보인다.

321) 아버지의 …… 발상한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63 〈답민지숙(答閔持叔)〉에 보이는데, 송시열 역시 《통전》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

亡去父發喪有難處. 尤庵說"計父年百歲發喪", 《通典》"三年求乃制服", 恐百年太遠, 三年太近. 陶庵曰"求三年不得, 更求三年發喪", 而此人丁丑大歉亡去, 生存無望, 而今已三年, 則陶說亦難準行. 自今博訪, 至明年亡去月, 以其月擇日發喪, 永定爲忌, 恐不爲無據. 招魂而葬旣非禮, 不葬而作主是無據. 何以處之?【金勳】

[답] 100년은 너무 멀다는 말은 합당한 듯하다. 도암의 말은 완곡하여 정이 있으나 자식 된 자의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 만약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데 감정을 숨기고 인내하면서 3년이 지난 뒤에 3년을 더 찾는다면 이 또한 인정이 아닌 듯하니, 《통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정축년에 도망간 사람은 사정이 더욱 특별하니, 그대의 말이 옳은 듯하다. 신주가 불에 탄 경우에도 다시 만드니, 신주를 만드는 일이 어찌 근거가 없다고 하겠는가.
百年太遠之說恐當. 陶庵說, 宛曲有情, 而決於爲子者之心, 可矣. 苟有必不可求之心, 而隱情含忍, 以過三年後三年, 亦似非情. 從《通典》說爲可耶? 丁丑亡去人, 則事情又別, 尊諭似可. 火焚其神主, 亦改造, 作主豈云無據?

[문] 재변(災變)을 만난 정축년(1817)에 남의 집안에 여러 세대를 이은 종손(宗孫)이 객지를 전전하다가 죽어 혈속(血屬)이 없는 탓에 문중(門中)에서 후사를 세웠습니다. 죽은 날은 집을 나간 달로 날을 골라 정해야 할 듯한데, 묘소는 장차 초혼을 하고서 봉축(封築)합니까? -오계수-
丁丑變年, 人家數世宗孫, 轉客身死無血屬, 自門中立後. 亡日似當以出去月卜日爲定, 而墓所其將招魂而封築歟?【吳繼洙】

[답] 집을 나간 달 안에서 날을 고르는 것이 옳은 듯하고, 초혼장(招魂葬)이 예가 아님은 옛사람이 이미 누누이 말했다.
出去月內卜日似當, 而招魂葬非禮, 古人已累累言之.

[문]《가례증해(家禮增解)》에 "부모의 해상(偕喪)을 당한 경우 비록 하루라도 어머니가 먼저 죽었으면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朞年服)을 입고, 제주(題主)할 때는 '현비(顯妣)'라고 제주하고 방주(旁註)에 '아들 아무개가 제사를 섭행합니다.[子某攝祀.]'라고 한다. 또 아버지와 조부모의 해상에 조부모는 '조고비(祖考妣)'라고 제주하고 방주에 '손자 아무개가 제사를 섭행합니다.[孫某攝祀.]'라고 하였다가 상을 마치면 '효손이 제사를 받듭니다.[孝孫奉祀.]'라고 고친다." 하였는데, 이는 옳지 않은 듯합니다.

'현비'라고 제주하면 아들이 상주라는 말이고, '조고비'라고 제주하면 손자가 상주라는 말입니다. 이미 '현비'라고 일컬은 이상, 방주에는 곧바로 '효자(孝子)'라고 적고, 조고비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말이 순하고 이치가 곧아서 더 이상 복잡한 것이 없으니, 어찌 이렇게 많은 번잡한 절차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의 예를 차마 바꾸지 못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3년 동안 고치는 일이 없다."[322]라는 말이 이렇게 자질구레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김석귀-

《增解》"父母偕喪, 雖一日, 母先亡, 則服母以期, 題主則題以顯妣, 而旁註云'子某攝祀'. 又於父與祖父母偕喪, 祖父母題以祖考妣, 而旁註稱'孫某攝祀', 喪畢, 改以'孝孫奉祀'云." 此恐不可. 題以顯妣, 子爲主之稱也, 題以祖考妣, 孫爲主之稱也. 旣稱顯妣, 則旁註直書孝子, 於祖考妣亦然. 然後言順理直, 無復回互, 豈宜如此多少支節也? 此固出於不忍變在之意, 然所謂"三年無改"者, 恐不若是之拘拘.【金錫龜】

[답] 제주는 오늘날의 제전(祭奠)을 위해 제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목(昭穆)의 서열을 잇는 것이니, 평소의 생각으로는 '효' 자로 제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섭(攝)은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데 임시로 변통하여 돕는다는 말이니, 상중에 있는 아들을 상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또 살아 있는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일을 섭행하는 것이 예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가? 내가 식견이 부족하여 이런 문구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만약

322) 3년 …… 없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친이 해 오던 일을 3년 동안 고치는 일이 없어야 효라고 말할 수 있다.[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는 《논어》 〈학이(學而)〉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오늘날의 제전을 위한 것이라면 상제(喪祭)에서는 '효'라고 일컫지 않을 것이니, 장사를 지낼 때 효자(孝子)라고 제주하는 것 또한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題主非爲今日祭奠而題, 乃昭穆繼序, 平生之計, "孝"字之題, 烏得免乎? 攝是非其主而權宜夾助之稱, 喪中之子, 謂非其主則不可. 且生子攝死父, 禮有其文歟? 恨吾寡陋而未之見也. 若爲今日祭奠, 則喪祭不稱"孝", 葬時孝子之題, 亦未安矣.

[문] 제주할 때 형수에게 고하여 '현수모봉모씨(顯嫂某封某氏)'라고 하는데, 제수(弟嫂)도 똑같습니까? -김석귀-
題主告嫂云"顯嫂某封某氏", 弟嫂同歟?【金錫龜】

[답] 제수는 제부(弟婦)라고 칭한다.
弟妻稱弟婦.

[문] 예(禮)는 서인(庶人)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으니,[323] 서인은 본래 신주가 없고, 가난한 사족(士族)은 대부분 신주를 만들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할 때의 축문은 어떻게 말을 만듭니까? -위성조-
禮不下於庶人, 庶人固無主, 而士族貧窶者, 類多未遑造主, 題主祝, 何以措辭?【魏成祚】

[답] 장사 지낼 때 미처 신주를 만들지 못한 경우, 축문식(祝文式)은 비록 예에는 없으나 선배들 중에 말을 만들어 변통해서 적용한 사람이 제법 있다.

323) 예(禮)는 …… 않으니 :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예는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서인은 비천(卑賤)하고 빈부(貧富)가 다르기 때문에 경전(經典)에 서인의 예는 말하지 않았으며, 옛사람이 예를 제정할 적에도 모두 사(士)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선유(先儒)들은 '서인들은 일이 있을 경우 사(士)의 예를 빌려 행한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전에 진실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억견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지방(紙牓)을 두었다면 그 의사는 신주를 만든 것과 차이가 없으니, "신주를 미처 만들지 못해 임시로 지방으로 행합니다.[造主未及, 權行紙牓.]"라는 여덟 글자로 "신주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神主旣成.]"라는 네 글자를 대신해서 적기만 하면 축식의 상하 문구는 구애될 것이 없을 듯하다.
窃岑時未及造主, 其祝式雖無於禮, 前輩頗有措語, 變通而用之者. 前此固嘗聞之, 而今不能記得矣. 以臆見思之, 則旣有紙牓, 其意思與造主無異. 但以"造主未及, 權行紙牓"八字, 替"神主旣成"四字, 則祝式上下文, 似無所礙矣.

[문] 제주(題主)를 하고 다 읽은 축문(祝文)을 품 안에 넣었다가 우제(虞祭)[324]에 이르러 우제의 축문과 함께 태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정희원-
題主, 祝讀畢懷之, 至虞祭, 竝虞祝焚之, 何也?【鄭禧源】

[답] 축문을 태워야 하지만 우선 품 안에 넣어 두는 것은 신(神)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다.
祝當焚, 而姑懷之, 安神爲急.

[문] 처음 상석(牀石)을 갖추어 전면에 글을 새길 것인데 김씨(金氏)의 비석을 예로 삼겠습니다. -이최선-
始備牀石, 刻其前面, 以金氏碑爲例云云.【李最善】

[답] 김씨의 석각(石刻)에 "휘 공[諱公]" 두 글자를 쓰지 않고 또 남편이나 자식의 관향(貫鄕)을 쓰지 않은 것은 곡절이 있는 듯하다. 대개 석물(石物)

---

324) 우제(虞祭) :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의 총칭이다. 곧 장사를 끝내고서 이어 지내는 제사가 초우제(初虞祭), 첫 유일(柔日) 즉 일진에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가 드는 날에 지내는 제사가 재우제, 첫 강일(剛日) 즉 일진에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이 드는 날에 지내는 제사가 삼우제이다.

은 비록 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지만 문자(文子)는 공적인 체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비석의 면에 새겨 표시하는 일을 반드시 남의 손을 빌렸던 것이니 "휘 공" 두 글자를 쓰지 않은 것은 공적인 체모를 지킨 것이다. 그리고 부인(婦人)의 봉작이 정부인(貞夫人)에 이르렀다면 남편이나 자식이 필시 현달한 자일 것이므로 관향을 쓰지 않더라도 현양하는 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석에 글을 새기는 일은 본디 간단히 하려는 데에서 나왔으니 이는 자손이 사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또 명위(名位)가 반드시 현달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전적으로 김씨 석각을 예로 삼아서는 안 될 듯하니, "학생(學生)"을 쓰고 "관(貫)"을 쓰고, "공 휘[公諱]"를 쓰되, "지처(之妻)" 두 글자에서 "지(之)" 자는 산삭하고 "유인 모관 모씨(孺人某貫某氏)"의 "유인" 두 글자는 산삭해야 한다. "유인"을 산삭하는 이유는 남편이 이미 학생이라고 한다면 봉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金氏石刻, 不用"諱公"二字, 又不用夫子貫鄕, 似有曲折. 蓋石物雖私備, 文字是公體. 故古之表石面者, 必倩手於人, 不用"諱公"字, 存公體也. 婦人之封, 至於貞夫人, 則其夫子必顯者, 故不書貫鄕, 而無損其顯也. 牀石之刻, 本出苟簡, 是子孫私標. 又名位不必顯, 恐不可專以金氏刻爲例. 當書學生書貫書公諱, "之妻"二字, "之"字可刪. 孺人某貫某氏, "孺人"二字可刪, 其所以刪孺人者, 夫旣學生, 無封可知云爾.

[문] 비위(妣位)에 관향(貫鄕)을 쓰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정종택-[325]
妣位, 書貫鄕云云.【鄭鍾澤】

[답] 비위에 단지 모씨(某氏)라고 쓰기만 하고 향관(鄕貫)을 쓰지 않으니 이는 명정(銘旌)[326], 신주(神主), 지석(誌石), 갈(碣), 비(碑)부터 모두 그러하다.

---

325) 정종택(鄭鍾澤) : 1836~1899.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태일(兌一), 호는 송담(松潭)이다. 전라북도 고창(高敞) 출신으로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326) 명정(銘旌) : 붉은색의 비단에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를 말한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영좌의 오른쪽에 기대어 세우는데, 대렴을 마친 뒤에는 구(柩)의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정론이 이미 있지만 본조에서는 동성(同姓)에게 장가드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향을 써서 구별한 것이다.
妣位, 秖書某氏, 不書鄕貫, 自銘旌神主誌石碣碑, 皆然, 旣有尤翁定論, 然而本朝多娶同姓, 故書鄕貫以別之.

[문] 선묘(先墓)의 비석을 다시 세우고, 옛날 비석은 갈아서 새기는 방법으로 자손의 묘에 사용하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김영숙-
先墓碑改立, 舊碑磨刻, 用子孫墓, 似未安.【金永璹】

[답] 인혐해서는 안 된다.
不當引嫌.

[문] 사계(沙溪)가 말하기를 "반혼(返魂)[327]할 때에 묘소에서 곡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신주(神主)에 오로지 뜻을 두기 때문이니 세상 사람들이 묘소에서 곡하고 절하는 것은 예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라고 하였고, 남계(南溪)가 말하기를 "예에서 비록 말하지는 않았으나 인정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 도암(陶菴)이 말하기를 "반혼할 때에 묘소에서 곡하고 인사하지 않으니 사옹(沙翁 김장생(金長生))의 말이 예의 본뜻을 깊이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설이 어떠합니까? -김한기-
沙溪曰: "返魂時, 不哭拜於墓者, 專意於神主故也, 世人哭拜於墓, 恐非禮意.", 南溪曰: "禮雖未言, 人情之所不得不然.", 陶庵曰: "返魂時, 不哭辭於墓, 沙翁之論, 深得禮意.", 三說何如?【金漢驥】

[답] 사옹의 논의가 과연 깊다.
沙翁之論, 果深.

세웠다가 빈(殯)을 마치고는 관을 파묻을 구덩이 동쪽에 놓는다.

327) 반혼(返魂) : 망자의 체백(體魄)을 묻고 그 정령을 맞이하여 곡하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례 절차이다.

[문] 장사를 치른 후에 여묘(廬墓)[328]를 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박민수-
葬後, 廬墓云云.【朴玟洙】

[답] 옛사람 중에 여묘를 행한 자가 있다. 하지만 예로써 말하자면 장사를 치른 후에 신(神)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미쳐 분묘(墳墓)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혼(返魂)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묘차(墓次)에 머문다면 이는 체백(體魄)을 우선시하고 혼령을 뒤로하는 것이니 예를 제정한 본뜻이 아니다.
廬墓, 古之人有行之者. 而以禮言之, 則葬後神返室堂爲急, 故未及竣墳墓之成. 而返魂而歸, 若因留墓次, 則是先其體魄而後其魂靈也, 非制禮之本意.

[문] 초우(初虞)와 재우(再虞)는 도중(途中)에서 행하더라도 삼우(三虞)는 반드시 집에 도착하여 행하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329] -김한기-
初再虞, 途中行之, 而三虞, 必至家行之, 何義?【金漢驥】

[답] 일을 끝마쳤다는 뜻이다.
成事之義.

[문] 초우(初虞)를 만약 관사(館舍)에서 지낸다면 혹 단헌(單獻)[330]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初虞, 若行於所館, 則或有單獻者, 何如?【朴鼎鉉】

---

328) 여묘(廬墓) : 무덤 옆에서 움막살이를 하는 것이다.

329) 초우(初虞)를……뜻입니까 : 이 이하 8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治葬'이라는 소제목의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치장(治葬)'이란 장지(葬地)에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례의 절차이다.

330) 단헌(單獻) : 제사 지낼 적에 삼헌(三獻)을 하지 않고 술을 한 차례만 올리는 것을 말한다.

[답]초우에 단헌을 한다는 설이 어느 책에 보이는가? 내 견해로는 우제는 신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의 제사이므로 대강대강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모든 일은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폐할 수 없는 법인데 유독 삼헌(三獻)[331]의 예를 폐하겠는가.
初虞單獻之說, 見於何書? 愚見則虞是安神之第一祭. 不容草率, 百事不以蒼黃而廢, 獨廢三獻耶.

[문] 축문(祝文)에 "협(祫)"이라고 하고 "우(虞)"라고 하고 "성(成)"이라고 하고 "상(常)"이라고 하고 "담(禫)"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슨 뜻입니까? -김영식-
祝文曰祫, 曰虞, 曰成, 曰常, 曰禫, 何義?【金永植】

[답] "협", "우", "성" 세 글자에 대해서는 〈사우례(士虞禮)〉[332] 정현(鄭玄) 주를 보면 "우"와 "성" 자는 별도로 풀이하지 않았으니 대개 굳이 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협" 자의 뜻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신주는 선주와 합하는 것이 편안하다.[主合於先祖爲安]"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혼기(魂氣)는 날아다니므로 선조와 합하여 편안하게 하는 것을 급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우(初虞)를 "협사(祫事)[333]"라고 하는 것이다.
"상(祥)"은 길례로 바뀜을 이름이니 "소상(小祥)"은 단지 길례로 바뀌는 것으로는 작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서로운 일[祥事]"이라고는 못하여 "상사(常事)"[334]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상(大祥)"과 "담(禫)"은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

331) 삼헌(三獻) : 제사에서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으로 세 번 술을 부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332) 〈사우례(士虞禮)〉 : 《의례》의 편명으로, 선비가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낸 후에 혼백(魂魄)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빈소에 모시고 제사 지내는 절차를 기록한 글이다. 우(虞)는 부모의 혼령을 편케 한다는 뜻이다.

333) 협사(祫事) : 협(祫)은 합한다[合]는 뜻으로, 죽은 자의 뜻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혼령과 선조(先祖)의 신령이 합하게 하는 것이므로 협사라고 하는 것이다.

334) 상사(常事) : 《의례(儀禮)》〈사우례(士虞禮)〉에 "이 상사를 올린다.[薦此常事.]"라고 한 곳의 주(注)에서는 "'상'이라고 말한 것은 1년 만에 제사하는 것이 예이기 때문이다. 고문(古文)에 '상(常)'

"祫虞成"三字, 見《士虞禮》鄭註, 虞與成字無別釋, 蓋不必釋也. 惟祫字之義難知, 故釋曰"主合於先祖爲安也". 蓋魂氣飄揚, 急於合先祖爲安, 故初虞曰"祫事". 祥是變吉之謂, 小祥特變之小者, 故未可曰祥事, 故曰常事. 大祥與禫, 無可疑.

[문] 아내가 남편의 축문을 고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의 축문을 고하는 것과 같습니까? -정희원-
妻告夫祝, 與子告父母祝, 同耶?【鄭禧源】

[답] 아내는 남편에 대해 하늘로 여기는 법이라서 고하는 말이 혹 부모의 축문을 고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듯하니 다시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옳다.
妻之於夫所天也, 其告辭, 或無異同於告父母, 更詳思之可也.

[문] 우제에서 종헌(終獻)을 친척이나 손님[賓]이 행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김한기-
終獻, 親賓爲之, 何歟?【金漢驥】

[답] 우제에서 손님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치 "은나라 선비 중에 아름답고 민첩한 자들이 주나라 서울에서 강신제를 돕는다.[殷士膚敏, 祼將于京.]"[335] 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대개 제례(祭禮)는 손님을 성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虞賓在位, 殷士膚敏, 祼將于京, 蓋祭禮以賓爲盛.

은 '상(祥)'이다.[言常者, 期而祭, 禮也. 古文常爲祥.]"라고 하였으니, 노사가 답문에서 설명하는 '상(常)' 자의 의미와는 같지는 않다.

335) 은나라……돕는다 : 《시경》 〈문왕(文王)〉에 나오는 글귀로 여기서는 단순히 우제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인 듯하다.

[문] 시제(時祭)의 유식(侑食)[336]에는 주인(主人)이 주전자[注]를 잡고 술을 따르며 재배하는데, 우제와 졸곡(卒哭), 부제(祔祭), 상제(祥祭), 담제(禫祭)에는 집사가 주전자를 잡고 첨주(添酒)하고는 절하지 않으니 이는 길흉(吉凶)이 나뉨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김한기-
時祭侑食, 主人執注, 斟酒再拜, 虞卒哭祔祥禫, 執事, 執注添酒而不拜, 有吉凶之分而然歟?【金漢驥】

[답] 그런 듯하다.
似然.

[문] 장사(葬事)는 가벼운 상(喪)을 먼저 하고 무거운 상을 뒤에 하며, 전(奠)은 무거운 상을 먼저 하고 가벼운 상을 뒤에 하는 것인데, 장사하는 날이 열흘이나 보름 간격으로 생겼다면 앞의 장사에 대한 우제(虞祭) 또한 뒤의 장사를 마치기를 기다려 지냅니까?-정재필-
葬則先輕後重, 奠則先重後輕, 葬日間以旬望, 先葬之虞, 亦待後葬之畢歟?【鄭在弼】

[답] "장(葬)" 자 가운데에는 "우(虞)" 자의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는 듯하니 뒤의 장사를 택일하는 데에 어찌 앞의 장사에 대한 우제를 헤아리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葬字中, 虞字蓋已含蓄, 後葬擇日, 豈可不計先葬之虞而爲之耶?

[문] 인산(因山) 전에 사상(私喪)[337]의 장사를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유경선-
因山前, 私葬不可行云云.【柳景善】

---

336) 유식(侑食) : 영위(靈位)에게 음식을 권하는 의식인데, 주전자를 잡고 첨작하는 것과 메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이다.

337) 사상(私喪) : 국상(國喪), 즉 임금의 상에 대하여 내 사친(私親)의 상을 말한다.

[답] 인산 전에 사상의 장사를 어찌 행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장사 후에 제주(題主)부터 삼우제(三虞祭)까지는 또한 차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졸곡(卒哭)부터 이하의 제사는 마땅히 물려서 행해야 할 대상에 들어가야 할 듯하다. 대개 오례(五禮) 가운데에서 상례(喪禮)는 흉례이고 제례(祭禮)는 길례인데, 길례와 흉례는 서로 피하기 때문에 제사를 정지하는 예가 있는 것이지 신주를 꺼내는 것을 곤란하게 여겨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포의(布衣), 백의(白衣)와 참최복(斬衰服)에는 등급과 구분이 있다. 다례(茶禮) 등은 모두 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소략하게 진설하여 길례를 변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혹 괜찮을 듯하다.
因山前私葬, 豈有不行之理? 葬後題主及三虞, 亦不得不以次擧行, 而卒哭以下, 似當在退行之科矣. 蓋五禮中, 喪凶而祭吉, 吉凶相避, 所以有停祭之禮, 非以出主爲難而然也. 布衣白衣, 與斬衰服有等分. 茶禮等似難盡廢, 但略設以示變焉, 其或可也.

[문] 졸곡(卒哭)[338]의 뜻에 대해 묻습니다.[339] -김한기-
卒哭之義.【金漢驥】

[답] 수시로 곡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止其無時之哭.

[문] 현주(玄酒)[340]는 근본을 잊지 않는 뜻이 있는데 유독 졸곡(卒哭)에서만

338) 졸곡(卒哭) :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를 지내면 수시로 하던 곡(哭)을 멈추고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만 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339) 졸곡(卒哭)……묻습니다 : 이 이하 5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卒哭'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졸곡(卒哭)'이란 '수시로 하던 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곡을 행한다. 졸곡제는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택하여 지낸다.

340) 현주(玄酒) : 고대(古代) 제사에 사용하던 청수(淸水)를 말한다.《예기(禮記)》〈예운(禮運)〉의 "현주는 실에 있고 예잔은 호에 있다.[玄酒在室, 醴醆在戶.]"는 대목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疏)

진설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김한기-
玄酒, 不忘本之義, 而特於卒哭設之者, 何也?【金漢驥】

[답] 졸곡에 처음 길제(吉祭)[341]의 예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卒哭, 始用吉祭之禮.

[문] 졸곡 후의 축사(祝辭)에서 "효(孝)"를 칭하는지 "고애(孤哀)"를 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김봉현-[342]
卒哭後祝辭, 稱孝稱孤哀【金鳳鉉】

[답] 졸곡 이후에 "효"라고 칭하는 것은 고례(古禮)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3년 안에는 그대로 "고애"라고 칭하는 것 또한 예를 행할 때는 후한 쪽을 따른다는 뜻을 해치지 않으니, 우리 동방의 선유의 설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卒哭以後稱孝, 古禮則然, 而三年內, 仍稱孤哀, 亦不害爲禮從厚之意, 我東先儒之說, 從之恐當.

에 "현주는 물이다. 빛이 검기 때문에 현이라 하는데, 태곳적에는 술이 없어 물로 술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현주라 한다.[玄酒謂水也. 以其色黑謂之玄, 而大古無酒, 此水當酒所用, 故謂之玄酒.]" 하였다.

341) 길제(吉祭) : 담제(禫祭)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踰月吉祭]를 말한다. 《예기》 〈잡기(雜記)〉의 "상제(祥祭)에 상주가 복을 벗을 때 전날 저녁에 다음 날의 제사를 고하되 조복을 입고 한다. 상제에는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는다.[祥 主人之除也 於夕爲期 朝服 祥因其故服]"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영달의 소(疏)에 "담제를 지낸 뒤에는 담복을 입는데 조복에 침관 차림을 하고,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현단을 입고 거처하여 평상시로 돌아온다.[旣祭 乃服禫服 朝服縓冠 踰月吉祭 乃玄冠朝服 旣祭 玄端而居 復平常也]"라고 하였다.

342) 김봉현(金鳳鉉) : 1817~1881.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덕휘(德輝), 호는 우헌(憂軒)이다. 일명 순구(舜九).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안성에서 이유석 등이 계획한 3, 1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문] 우제에서는 축관(祝官)이 진찬(進饌 음식을 올림)을 하고 졸곡에서는 주인(主人)과 주부(主婦)가 진찬을 하니 이는 점차 길례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한기-
虞則祝進饌, 卒哭, 主人主婦進饌, 漸用吉禮歟?【金漢驥】

[답] 그렇다.
然.

[문] 우제에서는 주인의 오른쪽에서 축문을 읽고 졸곡에서는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희원-
虞祭, 讀祝於主人之右, 卒哭, 讀祝於左, 何義?【鄭禧源】

[답] 상제(喪祭)에는 오른쪽을 숭상하고 길제(吉祭)에는 왼쪽을 숭상하는 법인데, 졸곡에 비로소 길제의 예를 쓰기 때문에 축관이 주인의 왼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喪祭尙右, 吉祭尙左, 卒哭, 始用吉祭之禮, 故祝出主人之左.

[문] 부제(祔祭)에 단지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 인사하고 부위(祔位 곁들여 모셔진 신주)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343] -기홍연-
祔祭, 只參祖考妣, 不言參祔位, 何也?【奇弘衍】

---

343) 부제(祔祭)에……어째서입니까 : 여기 이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祔'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부(祔)'란 '부제(祔祭)'를 말하는 것으로, 졸곡 이후에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으로 모시고 가서 조고(祖考)의 신주와 함께 모셔 놓고서 합사(合祀)하는 의식을 말한다. 합사한 다음 새로 죽은 이의 신주는 다시 모셔 내어 궤연에 돌아왔다가 대상 뒤에 사당으로 옮기는데, 만약 부제사를 졸곡 때 지내지 않고 대상 이후에 행하게 되면 이때가 곧장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여 모시는 제사가 된다. 참고로 초우제부터 부제사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보면 장례식 날 초우제, 그 다음번 유일(柔日)에 재우제, 재우제 다음 날 강일(剛日)에 삼우제, 삼우제 후 이틀 뒤에 졸곡, 졸곡 다음 날이 부제사가 된다.

[답] 3년을 항상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위에 인사함이 없는 것이다.
三年常侍, 故無參於祔位.

[문] 부재모상(父在母喪)에, 11개월에 연제(練祭)[344]를 지내는데 연제를 지내는 달이 윤달에 해당한다면 윤달에 행하는 것입니까?[345] -정희원-
父在母喪, 十一月而練, 練月値閏, 則行閏月乎?【鄭禧源】

[답] 바른 달[正月]을 써야 한다.
宜用正月.

[문] 최복(衰服)은 누이지 않는데 혹자는 누이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기용-
衰服不練, 或云練之, 亦可未知何如?【閔璣容】

[답] 주소(註疏)에 관(冠)으로 수복(受服)[346]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관을 따라 옷이 바뀌는 것이다. 대개 참최와 자최는 본래 모두 생포(生布)인데, 수복(受服)한 뒤에는 숙포(熟布)로 한다.
註疏, 以冠爲受服, 則隨冠而變. 蓋斬齊衰, 本皆生布, 受服後則熟布矣.

---

344) 연제(練祭) :사람이 죽은 지 한 돌 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小祥)을 말한다. 소상 후 담제(禫祭) 전까지 연사(練絲)로 만든 상복인 연복(練服)을 입는데 연사는 생사(生絲)에 상대되는 말로, 무명과 모시 등의 생사를 잿물에 담갔다가 삶은 뒤에 물에 빨아 말려서 희고 광택이 나게 만든 실을 말한다. 이 때문에 소상을 연제라고도 한다.

345) 부재모상(父在母喪)에……것입니까 : 이 이하 15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小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소상(小祥)'이란 사망자의 영혼을 안정시키는 제사로, 사후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만 1년 만인 13개월에 지내는 첫 제사를 말한다.

346) 수복(受服) : 가벼운 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복으로 슬픔을 표시하기 때문에 성복(成服)할 때에 참최의 경우 삼승포(三升布)로 지은 최복을 입고 육승포(六升布)로 지은 상관(喪冠)을 쓰지만, 우제와 졸곡제를 지낸 뒤에는 슬픔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복도 점점 가벼워져서 육승포로 지은 최복과 칠승포로 만든 상관으로 바꾸어 쓴다.

[문] 《가례(家禮)》에는 효대(絞帶)[347]를 바꾼다는 글이 없는데 참최(斬衰)의 효대를 선유는 모두 포(布)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상례비요(喪禮備要)》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암(尤庵)은 말하기를 "포를 쓰든지 마(麻)를 쓰든지 모두 불가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도암(陶菴)이 말하기를 "포와 숙마(熟麻) 모두 의리에 무방하다."라고 하였는데 응당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김한기-

《家禮》, 無變絞帶之文, 而斬衰絞帶, 先儒皆謂當用布, 《備要》, 亦然. 而惟尤庵曰: "用布用麻, 俱無不可.", 陶庵曰: "布與熟麻, 俱無害義.", 當何從? 【金漢驥】

[답] 고례(古禮)에 수복(受服)이 이와 같은 것은 수복이 없는 것이 가벼운 상복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헤아려 보건대 한결같이 고례를 따른다면 수복을 하는 것이 무슨 의심이 드는 일이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시속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듯하다.

古禮, 受服如此. 蓋無受者, 輕服也. 自度一遵古禮, 則受服何疑. 如或未然, 則從俗似當.

[문] 참최(斬衰)의 효대(絞帶)에 포(布)를 씁니다. 하지만 포를 쓴다면 자최(齊衰)와 같게 되니 자최는 어떻게 합니까? -우기주-

斬衰絞帶, 用布, 然而用布, 則同齊衰, 齊衰何以?【禹琪疇】

[답] 고례에 상복에는 반드시 변제(變除)[348]를 두었으니 만약 갑자기 흉복에서 길복으로 옮아간다면 일의 체모가 매우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

347) 효대(絞帶) : 삼으로 만든 허리에 두르는 띠이다. 《의례(儀禮)》 전(傳)에는 "효대는 승대(繩帶)이다." 하였고, 소(疏)에는 "저마(苴麻)로 효대를 만든다."라고 하였다.

348) 변제(變除) :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변복제상(變服除喪)'의 준말이다. '변복'은 소상(小祥) 때에 전에 입던 상복을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여자는 요질(腰絰)을 제거하며, 담제(禫祭) 때에 연복과 상장(喪杖)을 버리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제상'은 상기(喪紀)를 마치고 복을 벗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구(講究)하여 행하여야지 경솔하게 시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참최에 포대(布帶)를 하였다면 자최에는 낮추어서 대공포(大功布)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古禮, 服必有變除, 若猝然自凶卽吉, 事體甚逕庭故也. 宜講求而行之, 不可草率從俗. 若布帶則齊衰降而用大功布, 何難之有?

[문]《가례(家禮)》에는 요질(腰絰)[349]을 바꾼다는 글이 없으나《상례비요(喪禮備要)》와《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모두 갈질(葛絰)을 언급하고 있으니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그리고 갈질의 고[弧子]는 효대(絞帶)와 같습니까? -김한기-
《家禮》, 無變腰絰之文, 而《備要》《便覽》, 皆以葛絰言之, 當何從? 葛絰弧子, 與絞帶同乎?【金漢驥】

[답] 갈질로 수복하는 것은 고례이므로 예를 좋아하는 선비라면 응당 행하는 것이지만 고[弧子]가 있게 되면 이는 대(帶)이지 질(絰)이 아니다.
受葛古禮, 好禮之士, 自當行之. 若有弧子則是帶也, 非絰也.

[문] "조심조심 두려워한다.[小心畏忌]" 운운한 것의《가례(家禮)》주에서는 이 이후로 같다고 하였으니 대상(大祥) 또한 마땅히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상례비요(喪禮備要)》의 주석에 "소상(小祥)에서는[小祥則]"이라고 한 곳의 "즉(則)" 자로 살펴보자면 대상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광례요람(廣禮要覽)》[350]에는 담사(禫祀)[351]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도암은 말하기를

---

349) 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것으로, 짚과 삼으로 동아줄처럼 굵게 만든 띠이다.

350) 광례요람(廣禮要覽) : 조선 말기에 필사본으로 전해진《광례람(廣禮覽)》을 가리킨다. 이 책은 사례(四禮) 가운데 긴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만든 작품으로, 엮은이로 보이는 수산(綏山 호라고 추정됨)의 서문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0. 9. 8.》

351) 담사(禫祀) : 담제(禫祭)라고도 하는데,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 한 달을 건너서 지내는 제사이다.

“우리 집에서는 감히 쓰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정시림-
‘小心畏忌’云云,《家禮》註, 自此以後同, 大祥亦當用, 以《備要》註, ‘小祥則’則字, 看之, 大祥不可用. 而《廣禮要覽》, 禫祀亦用, 陶庵曰: “鄙家不敢用”, 何如?【鄭時林】

[답] 이 여덟 글자[352]는 실로 내가 평소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중첩되기 때문이다.
此八字, 亦鄙素所不愛, 以其疊也.

[문] 사계(沙溪)가 말하기를 “아이 이름으로 섭주(攝主)가 고할 경우에 ‘숙흥야처(夙興夜處)’ 등의 말은 고쳐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는데 남계(南溪)는 말하기를 “곧바로 ‘청작서수(淸酌庶羞)[353]’로 이어도 무방한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남계의 설을 따라야 합니까? -김석귀-
沙溪曰: “兒名主告, ‘夙興夜處’等語, 改用不妨”, 南溪曰: “直繼以淸酌庶羞恐不妨”, 當從南溪耶?【金錫龜】

[답] 축사(祝辭)를 “청작(淸酌)…….”으로 잇는 것은 아마도 흠사(欠事)는 아닌 듯하다.
祝辭, 繼以‘淸酌云云’, 恐無闕事.

즉 대상을 치른 뒤의 다음다음 달[中月]로, 초상부터 윤달을 따지지 않고 27개월이 되는 달의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담제를 지내는 달을 담월(禫月)이라고 하고, 그때 입는 옷을 담복(禫服)이라고 한다. 대상은 죽은 뒤 2년, 정확히는 2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참고로 소상(小祥)은 죽은 뒤 1년, 정확히는 1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연복(練服)을 입기 때문에 연제(練祭)라고도 한다.

352) 이 여덟 글자 : 소상(小祥)의 축문식(祝文式)에 쓸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있는 “小心畏忌, 不惰其身”을 가리킨다.

353) 청작서수(淸酌庶羞) : 청작(淸酌)은 제사에 쓰는 맑은 술을 말하고, 서수(庶羞)는 제사에 쓰는 온갖 찬수(饌羞)를 말한다.

[문] 일전에 섭사(攝祀)의 축사에 관해 묻기를 "'효자(孝子) 모(某)가 어려서 아직 일을 맡을 수 없으므로 모(某)가 감히 고합니다.'라고 운운하고 '시킨다[使]'라는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섭사(攝事)는 으레 자연히 이와 같다."라고 답을 주셨고 종손(宗孫)이 어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여쭌 데 대해 답해주신 것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주자(朱子)의 말을 살펴보건대 "섭주(攝主)는 단지 그 일을 주관하고 이름은 종자(宗子)가 주관한다."라고 하니 일전에 물음에 답하신 것이 주자의 말과 서로 어긋납니다. 주자의 말대로라면 전혀 말을 만들어 쓰지 않으면서 곧장 종자의 이름으로 고하고 섭행하는 자는 그 일을 대신 행할 뿐입니다. -김석귀-
前者問攝祀祝辭曰: "'孝子某幼, 未卽事, 某敢告'云云, 而不用使字", 答攝事例自如此, 又答宗孫幼穉之問, 亦然. 今觀朱子之言, 曰: "攝主, 但主其事, 名則宗子主之.", 前者答問, 皆與朱子之言相左. 如朱子之言, 都不用措語, 直以宗子名, 告之, 攝者, 代行其事而已.【金錫龜】

[답] 섭주 또한 여러 가지로 많으니 주인(主人)이 멀리 밖에 있어서 섭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인이 어려서 섭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사를 이을 상주(喪主)를 아직 세우지 못하여 임시로 제주(祭主)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주가 된 자는 마땅히 제주(題主 신주를 씀)하며 섭사(攝祀)를 해야 하니 속칭(屬稱)[354]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효자 모가 개자 모로 하여금 밝게 고합니다.[孝子某, 使介子某, 昭告.]"라고 하여야 할 것이니 속칭은 마땅히 주인이 일컫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효자가 갓난 애기라면 "모(某)로 하여금" 운운하는 것은 거짓인 듯하였으므로 저번에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지금 주자의 의론이 이러하다고 말해 주었으니 그저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대저 이는 모름지기 각각의 항목을 구별하여 말해야만 비로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번에 물었던 것이 애매모호하여 답한 것 또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이렇게 너무도

354) 속칭(屬稱) : 《주자가례(朱子家禮)》 권4 〈상례(喪禮)〉에, 이에 대한 주자의 언급이 보이니 "'속(屬)'은 고조 증조 조 고를 말하고, '칭(稱)'은 벼슬 또는 호칭이나 항렬을 말하니, 예컨대 처사 수재, 몇째 랑, 몇째 공 따위와 같다.[屬謂高曾祖考, 稱謂官或號行, 如處士秀才幾郎幾公之類]."라고 하였다.

허황됨을 이루게 되었다.
攝主亦多般樣, 有主人在遠外而攝者, 有主人幼弱而攝者, 有主後未立而權爲主祭者. 爲祭主者, 當題主攝祀, 屬稱不言可知. 其外當云: '孝子某, 使介子某, 昭告', 屬稱, 當依主人所稱. 但孝子在襁褓, 則使某云者似僞, 故曩時云云矣. 今朱子之論云云, 只當從之, 更有何說乎? 大抵此須各項分別言之, 方分曉, 曩時問者髣突, 答者亦不甚著眼, 成此大脫空.

[문] 효자(孝子)가 역병에 걸렸을 때 소상(小祥)을 당하여서는 남에게 시켜 섭행하게 합니까, 아니면 물려서 행합니까? -여봉섭-
孝子患癘時, 當小祥, 使人攝行耶, 抑退行耶?【呂鳳燮】

[답] 소상은 복을 바꾸는 제사인데 상주(喪主)가 역병에 걸렸다면 복을 바꾸는 것은 논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려서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小祥, 是變服之祭, 主喪患癘, 變服非可論. 退行恐當.

[문]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을 당하였다면 모두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禮)에 이르기를 "오랫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직 상(喪)을 주관하는 자는 상복을 벗지 않는다.[久而未葬者, 惟主喪者不除.]"[355]라고 하였습니다. -정희원-
未葬而當小祥或大祥, 皆不祭耶? 禮云: '久而未葬者, 惟主喪者不除'.【鄭禧源】

[답] 상(喪)에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어찌 상복을 벗는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자평(何子平)이 항상 단괄(袒括)[356]했을 때처럼 한 것[357]이

355) 오랫동안……않는다 : 《예기》〈상복소기(喪服小記)〉에 보인다.

356) 단괄(袒括) : 단문 괄발(袒免括髮)의 준말이다. 시마(緦麻) 이하의 복(服)에서 두루마기 등 웃옷의 오른쪽 소매를 드러내는 것을 '단(袒)'이라 하고 관(冠)을 벗고 괄발(括髮 삼으로 머리털을 묶는 예)하여 머리에 사각건(四角巾)을 쓰는 것을 '문(免)'이라 하는데, 이는 동고조(同高祖) 종형제에게는 복(服)이 없으므로 단문을 하여 애도하는 뜻을 표하는 상례(喪禮)이다.

357) 하자평(何子平)……것 : 하자평은 남조(南朝)의 송(宋)나라 사람인데, 모친상을 당하여 기근과

바로 이 일이다.
喪未葬, 豈可行除服之事? 何子平, 常如袒括之日, 卽斯事也.

[문] 인산(因山)이 열흘 안에 있을 경우 열흘 뒤에 사상(私喪)의 연제(練祭 소상(小祥))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헌-
因山在旬內, 以旬後行練, 何如?【李穎憲】

[답] 인산이 열흘 안에 있다 해도 보름 전에 사상의 연제를 행한다면 인산의 우제(虞祭)를 범할 듯하니 인산의 우제 이전은 혹 온당치 않을 듯하다. 다시 자세히 살피는 것이 어떠한가?
因山旬內, 而望前行練, 似犯虞祭前, 或未安耶? 更詳之如何?

[문] 《예기》〈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제부(諸父)와 곤제(昆弟)의 상을 부모의 상중에 당했을 경우 제부와 곤제의 상을 벗을 때 모두 상을 벗는 복장(대상제의 복장)을 입었다가, 대상제가 끝나면 다시 부모의 상복을 입는다.[如當父母之喪, 其除諸父昆弟之喪也, 皆服其除喪之服, 卒事, 反喪服.]"라고 하였고, 《통전(通典)》에서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비록 부모의 상이 있더라도 기년상(朞年喪)과 대공상(大功喪)의 복을 벗을 때에 각각 그 상을 벗는 복장을 입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부모의 상중에 기년상과 대공상의 복을 벗는 경우 대상제를 지낼 때의 길복을 착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계(沙溪)는 말하기를 "그 상복을 입고 들어가 곡하고 상차(喪次)로 나와서 대상제의 옷으로 갈아입는데, 대상제를 지낼 때의 길복을 입어서는 안 되고 다만 두건과 포의를 착용할 뿐이다."라고 하였고, 신독재(愼獨齋)[358]는 말하기를 "심의(深衣)와 효건

전란으로 8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항상 단괄했을 때처럼 지냈다고 한다. 《南史 卷73 何子平列傳》

358) 신독재(愼獨齋) : 김집(金集, 1574~1656)을 말한다.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孝巾)을 쓰고 대상제를 지낸다."라고 하였고, 남계(南溪)는 말하기를 "백포립(白布笠), 백포망건(白布網巾), 백포의(白布衣)를 착용하니, 단지 백색인 의관(衣冠)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포의와 두건이 백색의 의관이라면 이미 친상(親喪)의 복장이 아니고 또 상을 벗는 복장도 아니므로 하다가 마는 격인 듯합니다.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 상복을 입고 가서 임곡(臨哭)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제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상복을 입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친상 중에 출입할 때의 복장을 입고 패랭이[平凉子]를 착용한 채로 대상제를 마치는 것이 피차에 유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의의가 있는 듯하니 그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김석귀-

〈雜記〉曰: "當父母之喪, 其除諸父昆弟之喪也, 皆服其喪之服, 卒事反喪服.", 《通典》賀循曰: "雖有父母之喪, 爲期大功喪除, 各服其除喪之服.", 據此, 則親喪中, 除期大功喪者, 行祀時, 著吉服無疑. 而沙溪曰: "服其服入哭, 而祭時, 不可著吉服, 只著頭巾與布衣而已." 愼獨齋曰: "行之以深衣孝巾." 南溪曰: "白布笠, 白布網巾, 白布衣, 只借白色衣冠.", 蓋布衣頭巾, 白色衣冠, 旣非親喪之服, 又非除喪之服, 似乎半上落下. 當從古禮, 未祭前服其服臨哭, 行祀時服吉服, 祭畢反喪服, 未知如何? 或曰: "以親喪中出入服, 著平凉子卒事, 於彼此無憾.", 此言似有意義, 當從之耶?【金錫龜】

[답] 심의와 백포의로부터 화려하고 성대한 옷에 이르기까지 모두 길복(吉服)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상복을 벗을 때의 길복은 필시 화려하고 성대한 옷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부모상(父母喪)을 당한 경우이겠는가. 그렇다면 심의나 포의는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 듯하다. 편지의 끝에 있는 혹자의 설 또한 상정(常情)에는 흡족할 것이지만 고례를 헤아렸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아버지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다. 벼슬길에 나서기보다는 초야에 묻혀 경전연구와 수양에 힘썼다. 이이(李珥)의 학문과 송익필(宋翼弼)의 예학(禮學), 그리고 아버지 김장생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며, 그 학문을 송시열에게 전해주어 기호학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서로는 《신독재집(愼獨齋集)》이 있고, 편저로는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이 있다.

自深衣白布衣, 以至華盛之服, 皆可名吉服, 除服之吉服, 必非華盛之服, 况身在大故乎! 然則深衣布衣, 恐非可疑. 紙末或說, 亦陋常情, 而謂之稽古, 則未也.

[문] 국휼(國恤)의 인산(因山) 전에 본생부모[本生親]의 소기(小期 소상(小祥))에 복을 벗는 절차를 당하였습니다. 백립(白笠)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길사(吉事)로 나아가는 뜻이 없고 흑립(黑笠)으로 하려고 하면 임금을 위한 복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재필-
國恤因山前, 當本生親小期, 除服之節. 欲以白笠行祭, 則無卽吉之義, 墨笠, 則君服在身, 奈何?【鄭在弼】

[답]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집이 이미 소상을 지내 길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출계(出繼)한 아들이 먼저 길사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치 않은 듯하다. 더구나 "길사로 나아간다[卽吉]" 두 글자는 인산의 전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상주(喪主)가 연제(練祭 소상(小祥))를 행하기를 기다려서 함께 복을 벗는 것이 옳을 듯하다.
本生家, 旣不能小祥就吉, 則出繼子, 先爲卽吉, 恐未安. 况卽吉二字, 非可用於因山前, 待其喪主之行練, 同爲脫服, 似可.

[문] 출계한 아들이 인산 전에 사상(私喪)의 복을 벗지 못하고 물려서 연제(練祭)를 지내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공(期功)의 복에 모두 정해진 달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재필-
出繼子, 因山內, 不能除服, 而退待行練, 則其於期功之服, 皆有月數, 何哉?【鄭在弼】

[답] 출계한 아들이 국상 중에 사상의 복을 벗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익숙히 강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억견으로 답변한

것이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이렇게 논란한 것 또한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대개 흉복(凶服)을 변경하여 길복(吉服)으로 바꿔 입는 것은, 후상이 무거운 복이라면 후상의 장사 전에는 결코 행할 수 있는 이치란 없다. 국상 중에 입는 복을 논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출계한 자식이 본생부모의 상에 아직 복을 벗기 전에 소후(所後 후사로 삼아준 사람)의 상을 당하였다면[359] 어찌 소후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본생부모의 복을 벗을 수 있겠는가. 형제는 똑같이 나라의 백성이니 마소(麻素)[360]의 복식이 똑같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형은 인산 전이기 때문에 흉복을 변경하여 길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아우는 도리어 혼자 길례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기공(期功)의 복에 모두 달수가 있는 것은 예의 떳떳함이고 더러 별도로 상을 당해서 제복(除服)할 수 없는 것은 변례(變禮)이니 어찌 나란히 두고 똑같이 논하겠는가.

出繼子, 國恤內除服, 吾非宿講, 頃奉時以臆見奉答, 未必得當. 而今此發難, 亦未爲爬著癢處. 蓋變凶卽吉, 後喪重服, 葬前決無可行之理. 未論國服, 今有出繼子本生喪未除服, 而遭其所後喪, 則豈可於葬前除服乎? 兄弟同爲國民, 麻素之服一同, 而其兄以因山前, 未能變凶就吉, 而其弟乃獨先就吉可乎? 朞功皆有月數者, 禮之常也; 其或別有所遭而不得除服者, 變禮也, 豈可比而同之哉?

---

359) 출계한……당하였다면 : 여기서 본생부모의 상은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 소후(所後)의 상은 참최삼년(斬衰三年)의 상이다.

360) 마소(麻素) : '마(麻)'는 초상 때 입는 삼으로 만든 상복을, '소(素)'는 대상제 때 입는 소복(素服)을 가리키는 듯하다. '소'와 관련하여, 《禮記》〈喪服小記〉의 "성인(成人)의 상을 벗는 경우에는 제사할 적에 조복을 입고 호관을 쓴다.[除成喪者, 其祭也, 朝服縞冠.]"라고 한 부분의 진호(陳澔) 주에, "만약 성인의 상을 벗을 경우에는 대상제 때에는 조복과 호관을 착용한다. 조복은 현관에 치의(緇衣)와 소상(素裳)을 입으나 이때에는 현관을 쓰지 않고 호관을 쓰는데, 이것은 완전한 길제의 제복은 아니다.[若除成人之喪, 則祥祭用朝服縞冠. 朝服, 玄冠緇衣素裳, 今不用玄冠而用縞冠, 是未純吉之祭服也.]"라고 한 말이 보인다.

[문] 재문
再問

[답] 가벼운 복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무거운 복을 벗을 수 없는 이치란 없지만 똑같이 무겁다면 후상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전상의 복을 벗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복을 벗으면 반드시 길복으로 나아가는 절차가 있으므로 후상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국상 때 입는 복에 관한 논의를 정지하고 소후가(所後家)의 장사 전에 본생(本生) 집에 대한 복을 벗어야 하는지를 먼저 논해 보자. 만약 의심할 것 없이 벗어야 한다고 하면 내 어찌 다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국상은 사상(私喪)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 또한 어찌할 수 없다. 대개 복에는 겉으로는 이미 벗었으나 안으로는 벗지 않는 것이 있으니 각 항(項)의 심상(心喪)[361]이 이것이다. 만약 후상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 전상의 복을 벗지 않는다면 이는 안으로는 이미 복을 벗었지만 밖으로는 구애되어 미처 그 복을 벗는 절차를 거행하지 못한 것이니 복을 비록 오래 입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輕服葬前, 重服無不可除之理. 同爲重服, 則葬前難於除服. 蓋除服, 則必有卽吉之節次, 葬前不可爲也. 姑停國服之論, 先論所後家未葬前生家服當除否. 若曰當除無疑, 則吾安能復有他說?若曰國服異於私喪, 則吾亦未如之何. 蓋服有外已除而內未除者, 各項心喪是也. 若葬前未除服, 是內已除而外有拘礙, 未及擧行其節也. 服雖久何害?

[문] 참최복을 입는 자가 말총 망건[駿網巾]을 착용하는 것은 언제입니까?[362]
-우택희-[363]

---

361) 심상(心喪) : 상복(喪服)을 입지는 않으나, 마음속으로 슬퍼하면서 상인(喪人)처럼 근신하는 것을 말한다.

362) 참최복을……언제입니까 : 이 이하 8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大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대상(大祥)'이란 초상부터 여기까지 윤달은 세지 않고 만 2년인 25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363) 우택희 : 생몰년 미상.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사영(士永)이다. 함양(咸陽)에 거주하였으며,

服斬者, 著駿網巾, 在何時?【禹宅禧】

[답] 이러한 일은 토속(土俗)을 따르는 것이 무방하니,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일이 의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시속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364]라고 하였다.
此等事, 從土俗, 無妨. 程子曰: "事之無害於義者, 從俗可也."

[문] 부재모상(父在母喪)에 재기(再期)를 지났음에도 여전히 묵립(墨笠)과 묵대(墨帶)를 착용하는데, 이는 차마 대번에 길사로 할 수 없어서입니까? -정희원-
父在母喪, 過再期, 猶著墨笠帶, 不忍遽吉歟?【鄭禧源】

[답] 심제(心制 심상(心喪))를 하는 사람이 묵립과 묵대를 하는 것은 대개 이미 복을 벗었지만 차마 대번에 완전한 길복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니, 재기에 이른 뒤에 복을 벗으려 한다면 복은 이미 벗은 상태이고, 완전한 길복을 입고자 한다면 차마할 수 없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 복장 그대로 27개월의 상기(喪期)를 지내니 내가 들은 바가 이러하다.
心制人之墨笠帶, 蓋已脫服, 而不忍遽純吉之服也, 及再朞之後, 欲脫服則服已脫矣, 欲純吉則不忍猶在也. 是故因以此服過二七之期, 吾之所聞如是耳.

[문]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대상(大祥) 뒤 담제(禫祭) 전에 백대(白帶)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백포대(白布帶)입니까? -정희원-
夫爲妻, 祥後禫前, 當著白帶, 是白布帶歟?【鄭禧源】

기정진의 문인이다.

364) 일이……괜찮다 : 《정씨경설(程氏經說)》 권7 〈논어설(論語)〉에 이 말이 보인다.

[답] 백포(白布)는 아마 연포(練布)인 듯하다.
白布, 似是練布.

[문] 우환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아 마침내 딸 하나를 잃었는데 상기(祥期)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상식(上食)[365]과 상사(祥祀)를 마땅히 정지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복환-
憂患彌留, 竟損一女, 祥期此近. 或謂: '上食與祥祀當停行.'云, 未知如何? 【金福煥】

[답] 곡(哭)하고 전(奠)하는 일을 흉사(凶事) 때문에 정지하는 것은 본래 시속의 예(例)이지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상식은 본래 행하지 못할 이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아침저녁으로 나아가는 것과 상사(祥祀)를 지내는 경우이겠는가.
哭奠之以凶事而停, 本是俗例, 於古未聞. 上食本無不可行之理, 況朝暮臨與祥祀乎!

[문]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이 밖에 있다가 부고를 들었다면 한 사람이 부고를 추후에 들었다는 이유로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물려서 행할 수 없겠지만 다만 복을 벗는 것은 부고를 들은 달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정의림-[366]
父亡, 而其子在外聞訃, 則不可以一人聞訃之在後, 退行其小大祥, 但除服, 則計其聞訃月耶?【鄭義林】

---

365) 상식(上食) : 산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식사하기 전에 신위(神位) 앞에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을 말한다.

366) 정의림(鄭義林) : 1845~1910. 조선 말기의 유학자로, 자는 계방(季方)이고, 호는 일신(日新)이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노사 기정진(奇正鎭)에게 유학을 배웠다. 스승인 노사(蘆沙)의 문집 간행에 관여하였으며 스승의 학설을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저서로 『일신재집(日新齋集)』이 있다.

[답] 대상과 소상에는 복을 벗는 것을 연기하여 기다려서는 안 된다.
大小祥, 不當延待脫服.

[문] 일찍이 아들이 밖에 있다가 부고를 뒤늦게 들었다면 한 사람의 연고로 대상과 소상을 물려서 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여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대소상에는 탈복(脫服)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재규(鄭載圭)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니, 선생님은 일찍이 대소상(大小祥)의 예(禮)는 성복(成服)[367]한 일월(日月)의 실제 수를 계산하여 절도로 삼는다는 주자의 편지글을 거론하여 대답해 주셨다."라고 하므로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여쭙니다. -정의림-
嘗以子在外聞訃後時, 則其大小祥, 不可以一人而退行之意仰稟. 先生曰云云. 而今鄭載圭言: "此與吾前所聞異, 先生嘗擧朱書練祥之禮, 却當計成服日月實數爲節之文, 以答."云, 故敢此煩稟.【鄭義林】

[답] 이전에 후윤(厚允 정재규)에게 답한 것은 '종자(宗子)'의 처지에서 말해 준 것이고 뒤에서 계방(季方 정의림)에게 답한 것은 중자(衆子)를 가리켜 말해 준 것이다.
前答厚允, 以宗子而言, 後答季方, 指衆子而言.

[문] 상중(喪中)에 출후(出后)한 자는 처음 복을 입은 달수로 변제(變除)를 한다면 기일(忌日)에 궤연(几筵)[368]을 거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상(大祥)을 만약 물려서 행한다면 물려서 행한 날로부터 달을 계산하여 담제

---

367) 성복(成服) : 상례에 있어서 대렴(大斂)을 마친 다음 날 복(服)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368) 궤연(几筵) : 영좌를 말한다. 영좌는 영상(靈床)과 함께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시기 위하여 초종(初終)에 설치하는 것이다. 즉 아침이 되면 영상에서 영좌로 혼백을 모셔 놓고, 밤이 되면 다시 영좌에서 영상으로 혼백을 모신다. 다시 말해 영좌는 혼백이 거처하는 곳이고 영상은 혼백이 취침하는 곳이다.

(禫祭)를 지냅니까? -박성우-[369]
喪中出后者, 以始服月數, 變除, 則忌日撤几筵, 何如? 大祥若退行, 則自此計月行禫耶?【朴性愚】

[답] 출후자(出后子)가 이미 출후한 날을 처음 복을 입은 날로 삼았다면 궤연은 거두지 않아야 할 듯하니 다시 널리 상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담제를 행할 시일이 지나면 담제를 지내지 않는 것은 예에 분명한 글이 있으니 이 출후자 또한 담제를 지내지 않는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다시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出後子, 旣以出後日爲始服之日, 則几筵恐不當撤, 更加博考如何?'過時無禫', 禮有明文, 此子亦當在無禫之科耶?更詳之.

[문] 출가한 딸이 매우 먼 곳에 살고 있는 탓에 부모의 상을 3년이 지나고서야 들었다면 상을 들은 날로부터 자리를 설치하여 곡하고 추복(追服)[370]을 하는 것입니까? -김훈-
出嫁女, 居在絶遠, 父母喪, 過三年後始聞, 則以聞喪日, 設位哭而追服耶?【金勳】

[답] 당연히 태복(稅服)[371]을 하여야 한다.
自當稅服.

---

369) 박성우(朴性愚) : 생몰년 미상. 본관은 음성(陰城), 호는 견암(狷菴)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임술년(壬戌年) 9월에 박성우(朴性愚) 외 53인이 금당산(金堂山)에서 자생(自生)하고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伐木)을 금지한다는 취의(趣意)로써 맺은 송계 문서 《당부송계절목(當付松契節目)》이 전한다.

370) 추복(追服) :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371) 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을 말한다.

[문] 무릇 시마복(緦麻服)[372]은 한 계절[373]이고, 소공(小功)은 두 계절이고, 대공(大功)은 세 계절입니다. 삼년이 지나 담제(禫祭)가 또 한 계절을 더하는데 윤달은 바른 달[正月]이 아니라서 산입하지 않아야 할 듯함에도 산입하니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374] -김석귀-
凡服緦一時也, 小功二時也, 大功三時也. 三年後禫, 又加一時, 閏非正月, 似不當筭, 筭之可疑.【金錫龜】

[답] 담제는 한 계절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예(禮)에 "중월(中月)에 담제를 지낸다.[中月而禫]"[375]라고 한 것에 대해 왕숙(王肅)[376]은 "이 달의 가운데[是月之中]"라고 해석하였으니 지금 비록 후한 쪽으로 예(禮)를 따른다지만 주자(朱子)는 왕숙의 설을 옳다고 하였다.
禫非加一時. 禮中月而禫, 王肅解作是月之中, 今雖用從厚之禮, 而朱子是王說.

---

372) 시마복(緦麻服) : 오복(五服) 중에서 가장 짧은 석달 동안 입는 상복이다. 본종(本宗)의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과 외친(外親)의 당형제자매(堂兄弟姊妹)·처모(妻母) 등의 상사(喪事)에 입었다. 상복은 익힌 삼베로 만드는데 대공(大功) 보다는 거칠고, 소공(小功) 보다는 고운 베를 썼다.

373) 한 계절 : 3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374) 무릇……의심스럽습니다 : 이 이하 5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禫'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담(禫)'은 '담제(禫祭)'로, 대상 뒤에 중월(中月 한 달 걸러 뜀)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하니 바로 대상 후 두 달 만에 지내는 의식이다. 위의 '중월'의 의미는《의례》〈사우례(士虞禮)〉 해당 부분의 정현(鄭玄) 주에서 취한 것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375) 예(禮)에……지낸다 :《의례》〈사우례(士虞禮)〉에 "1년이 되면 소상제(小祥祭)를 지내는데 '이 상사(常事)를 올립니다.'라고 하고, 또 다시 1년이 되면 대상제(大祥祭)를 지내는데 '이 상사(祥事)를 올립니다.'라고 하며, 중월(中月)에 담제를 지낸다.[朞而小祥, 曰薦此常事. 又朞而大祥, 曰薦此祥事. 中月而禫.]"라는 구절이 보인다.

376) 왕숙(王肅) : 195?~256. 삼국시대(三國時代) 위(魏)나라의 경학자로 자는 자옹(子雍)인데, 여러 경학 관련 주석 작업을 하였고,《공자가어(孔子家語)》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가규(賈逵), 마융(馬融)의 학문에 영향을 받았으며,《성증론(聖證論)》을 지어 정현의 학설을 반박하였다고 한다.

[문] 담사(禫祀)를 지낼 때에 신주를 꺼내 고사(告辭)하는 의식이 《가례(家禮)》에는 실려 있지 않고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377]에 보이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오계수-
禫祀時, 出主告辭, 不載於家禮, 而見於丘儀.【吳繼洙】

[답] 마땅히 고사가 있어야 할 듯한데 《가례》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아마 우연히 누락된 것 같다.
似當有告辭, 而家禮不載, 或是偶然落漏.

[문] 앞 상(喪)의 담제(禫祭)를 뒤의 상중(喪中)에 지낼 수 없는 것은 사계, 우암과 같은 여러 선생께서 이미 정론(定論)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경호(李鏡湖)[378]는 이르기를 "어버이 상중에도 오히려 길복으로 기공(期功)의 가벼운 복을 벗는데, 어찌 잠깐 제담(除禫)의 옷을 입고 앞 상의 담제를 행하는 것이 불가하겠는가."라고 하니 이씨의 설 또한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김석귀-
前葬禫祭, 不可行於後葬中, 沙尤諸先生, 已有定論, 而李鏡湖謂: "親喪中, 尙以吉服, 除期功之輕服, 豈有不可暫服除禫之服, 以行前喪禫也.", 李氏說, 似亦有理.【金錫龜】

[답] "담(禫)"이라는 것은 담담(澹澹)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니 상중에 어찌 담제를 지낼 수 있겠는가.
禫者, 澹澹然平安之意也, 喪中豈可行禫祭.

---

377) 《가례의절(家禮儀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손익(損益)하여 그 당시의 제도를 매 장의 끝에 붙이고, 주석과 고증(考證)을 부기하였다. 모두 8권이다.

378) 이경호(李鏡湖) : 이의조(李宜朝, ?~?)니 '鏡湖'는 그의 호이다. 이재(李縡)의 제자로 1824년에 간행된 《가례증해(家禮增解)》를 저술하였다

[문]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그저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하여 담제(禫祭)를 지낸다."라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중자(衆子)를 위해서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장자에게 처나 아들이 있다면 처나 아들이 담제를 주관합니까? -김석귀-
〈記〉, 但言: "父爲長子禫." 則爲衆子, 無禫也. 亡者有妻子, 則其妻子主禫耶?【金錫龜】

[답] 처나 아들이 담제를 주관하다.
其妻子主禫.

[문] 부재모상(父在母喪)에 심제(心制)를 하여 담제(禫祭)를 지내는 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 달 초하루에 묘소 앞에 곡읍하고 제복(除服)하면서 대략 술과 과일로 삭참(朔參)의 의식과 같이 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문용-
父在母喪, 持心制以終禫月, 次月朔日, 墓前哭除, 略以酒果告如朔參儀, 如何?【朴汶容】

[답]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여 묘소 앞에서 곡읍하고 제복함으로써 사사로운 정을 펴는 것이 괜찮겠으나 찬(饌)을 진설하여 고유(告由)[379]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다.
父爲主祭, 墓前哭除, 以申私情, 可也, 設饌告由, 恐涉未安.

[문] 담제(禫祭)가 달의 중간에 있다면 그달 안에 길제(吉祭)를 행하지 않는 것은 대개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한 나머지 정제(正祭 정규 제사)[380]를 지내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풍속에서 시제(時祭)를 지내지 않는다면 담제

379) 고유(告由) :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명에게 고하는 것을 말한다.

380) 정제(正祭) : 시제(時祭), 즉 한 해에 네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상의 사당에 지내는 정규적인 제사를 말한다.

(禫祭)가 비록 달의 중간에 있더라도 다음 달을 기다려 길제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381] -송영순-
禫在中月, 則月內行吉祭, 蓋三年廢祭之餘, 正祭爲急也. 今俗不行時祭, 則禫雖中月, 待來月吉祭, 何如?【宋榮淳】

[답] 비록 시제를 지내지 않았더라도 시제의 뜻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 지체하여 다음 달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雖不行時祭, 時祭之意, 自在, 不可遲待來月也.

[문] 아버지가 먼저 죽은 뒤의 어머니 상에, 상을 마치고 길제(吉祭)가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기양연-
父先亡母喪, 喪畢吉祭有無.【奇亮衍】

[답]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를 "제(祭)"라고 부르니 삼년 동안 사시의 정제를 폐했다가 삼년상을 마치고 처음으로 정제를 지내고, 인하여 신주를 개제(改題 신주를 고쳐 씀)하고 체천(遞遷)[382]하니 이것을 일러 길제(吉祭)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에는 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주를 개제하고 체천하는 모든 의절이 없어서이지만, 정제의 경우에는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가난한 집안은 평소 정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길제가 없다고 이르지만 이것이 어찌 예법(禮法)이겠는가.
四時正祭謂之'祭', 三年廢四時正祭, 三年喪畢, 初行正祭, 因以改題遞遷, 此之謂'吉祭'. 故父先亡者, 無吉祭云者, 無改題遞遷凡節也, 若正祭則何可

---

381) 담제(禫祭)가……어떻겠습니까 : 이 이하 4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吉祭'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길제(吉祭)'란 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졸곡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상을 마치고서 신주를 사당으로 모셔 들일 때 사당에 있는 모든 신주를 한곳에 모셔 놓고 제사하는 협제(祫祭)를 말한다. 상을 마치고 협제를 지낸 후에는 대진(代盡)한 신주를 체천(遞遷)하는 일이 뒤따른다.

382) 체천(遞遷) : 종손(宗孫) 집 사당에서 봉사(奉祀)하는 대수(代數)가 다 되었을 때 대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손자의 집으로 신주(神主)를 옮겨 감을 말한다.

廢也. 今貧窶之家, 素不行正祭, 故謂之無吉祭. 此豈禮法乎.

[문] 신독재(愼獨齋)가 말하기를 "길제(吉祭)는 섭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우암(尤庵)은 말하기를 "조천(祧遷)[383]하는 예는 임시로 대신하는 자가 감히 감당할 바가 아닌 듯하다."라고 하였고, 도암(陶菴) 또한 말하기를 "한때 임시로 섭행하는 사람으로서 신주를 개제하고 체천한다면 이것은 곧 종자(宗子)로 자처하는 것이니 실로 너무 온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개제하는 것은 참으로 임시로 섭행하는 자가 감히 행할 바가 아니지만 체천하는 일은 바로 장방(長房)[384]의 일이니 감히 행하지 못할 것은 아닌 듯합니다. -김석귀-
愼獨齋曰: "吉祭不可攝也.", 尤庵曰: "祧遷之禮, 似非權代者, 所敢當者.", 陶庵亦曰: "以一時權宜之人, 改題遞遷, 便以宗子自居, 實是萬萬未安." 以愚見言之, 改題, 固非權攝者所敢爲, 遞遷, 乃長房之事, 似無不敢也.【金錫龜】

[답] 개제하고 체천하는 것은 한 가지의 일이므로 나누어 둘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후(主後)를 오랫동안 세우지 못하여 최장방(最長房)이 안심할 수 없다면 응당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改題遞遷, 是一項事, 不宜分而二之. 但主後久未立, 最長房不能安心, 則應須不得已, 而有權宜之道.

[문] 최장방이 죽은 뒤 체천할 신주를 옮겨 받드는 데에 삼년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일은 어떻습니까? -우기주-
長房死後, 祧主移奉, 有不待三年者, 何如?【禹琪疇】

---

383) 조천(祧遷) : 종묘(宗廟)의 본전(本殿) 안의 위패를 그 안의 다른 사당(祠堂)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던 일을 말한다.

384) 장방(長房) :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 제사를 지내야 할 항렬에 있는 사람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자를 가리킨다.

[답] 최장방이 죽은 뒤 옮겨 봉안하는 데에 삼년을 기다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정례(正禮)에 의거하자면 삼년을 기다려야 할 듯하다.
長房死後, 移奉不待三年, 世人所行多如此. 若據正禮, 則似當待三年.

[문] 예(禮)에 "거상(居喪) 중에 업을 그만 둔다.[居喪廢業]"라고 하였는데, 책을 읽는 것은 어떻겠습니까?[385] -기홍연-
禮居喪廢業, 讀書如何云云.【奇弘衍】

[답] 예에 "거상 중에 업을 그만 둔다."라는 말에 대해, 주자(朱子)는 "업(業)" 자를 "순업(簨業)"[386]의 "업"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주자의 뜻은 책을 송독하는 '업'은 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387] 소리를 높여서 크게 읽는 것은 진실로 온당하지 않지만 책을 펴서 묵묵히 읽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禮曰居喪廢業, 朱子以業字爲簨業之業, 蓋朱子之意, 以爲誦讀之業, 不可廢云爾. 高聲大讀固未安, 而披閱默念, 何不可之有.

[문] 우제(虞祭)와 부제(祔祭), 상제(祥祭)와 연제(練祭)를 지낼 때가 아니면 목욕하지 않는 법인데 지금 상중의 사람은 집에 있을 때와 출입할 때에 으레 빗질하고 두건을 하니 의당 예(禮)와 서로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단지 우제와 부제, 상제와 연제뿐만이 아니라 삭망(朔望)에

---

385) 예(禮)에……둔다 : 이 이하 4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居喪雜儀'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는 것으로, 상을 행하면서 잡다하게 제기되는 의례적(依禮的)인 의문에 대답한 것이다.

386) 순업(簨業) : 원문은 '簴業'이다. 문맥 및《주자어류》권87 〈예(禮)〉에 근거하여 '簴'를 '簨'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87) 순업(簨業)의……것이다 :《주자어류》권87 〈예(禮)〉에 "옛사람이 거상 중에 업을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업'은 바로 순(簨)과 거(虡) 위의 판자이니 '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바로 풍악을 일으키지 않음을 말하였을 뿐이다.[古人居喪廢業, '業'是簨虡上版子, '廢業'謂不作樂耳]"라는 말이 보인다.

성대하게 제사할 때에도 또한 빗질하고 두건을 해야 하고 마치면 빗질하고 두건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정재규-
非虞祔祥練, 則不沐浴, 今喪人, 居家出入時, 例爲巾櫛, 宜與夫禮不相似. 竊意不但虞祔祥練, 朔望殷薦, 亦合巾櫛, 已則不巾櫛, 似可.【鄭載圭】

[답] 삭망에 성대하게 제사할 때에 빗질하고 두건을 한다면 예를 행한 뒤에 벗는 것이 무방하다. 다만 출입할 때에 옛사람은 묵최(墨衰)[388]를 착용하였으니 묵최에 두건을 쓰지 않는 이치는 없는 듯하다.
殷薦時巾櫛, 則行禮後解之無妨. 但出入時, 古人用墨衰, 墨衰似無不巾之理.

[문] 거친 음식과 된 죽으로는 예(禮)를 따를 수 없습니다. -민재남-[389]
疏食餔粥, 不能從禮.【閔在南】

[답] 거친 음식과 된 죽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따라야 하니[390] 고례(古禮)가 어찌 일찍이 일흔 노인을 두고 만들어졌겠는가. 다만 혈기(血氣)를 짐작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 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 우리 집안에 일찍이 평소 성품이 의젓한 당숙 한 분이 계셨다. 늙어서 상을 당하자 일찍이 남과 마주하여 고기를 드시지 않았는데 "내가 채식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남과 마주하여 먹게 되면 예법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388) 묵최(墨衰) : 검은색 상복으로, 베로 된 직령(直領)에 흑립(黑笠)과 흑대(黑帶)를 착용한다. 묵최의 기원은 춘추 시대에 진 문공(晉文公)의 아들 양공(襄公)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자마자 곧바로 진(秦)나라와 싸우러 나갔는데, 상복(喪服)에다 검정 물을 들여서 입고 나간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여기서는 상중인 사람이 외출할 때 집안에서 입는 상복을 그대로 입지 않고 상중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89) 민재남(閔在南) : 1802~187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겸오, 호는 청천(聽天)·자소옹(自笑翁)·회정(晦亭) 등이다. 함양(咸陽)에서 태어났다. 외삼촌에게서 글을 배웠으나 과거에 세 번이나 낙방한 후 벼슬을 단념, 학당을 세워 후진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 1867년 천거로 헌릉 참봉(獻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였다. 저서로《회정집(晦亭集)》이 있다.

390) 거친……만들어졌겠는가 : 나이와 건강을 감안하여 상중의 식생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충고이다.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노인들이 거상(居喪)하는 하나의 준칙이라고 망녕되이 생각한 적이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疏餕之節, 跂及俯就古禮. 何嘗爲七耋人設?但斟酌血氣, 行其所可行, 在於當人, 擧以問人, 則難乎爲答. 如何如何?吾家曾有一堂叔, 素性儒雅, 老而居憂, 未嘗對人食腥曰:"吾非行素也, 但對人食, 則禮防專壞, 故不爲也." 竊嘗妄謂"此是老人居憂之一柯則." 如何如何?

[문] 거상(居喪)에 있어 제대로 예를 집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사원-
居喪, 不能執禮云云.【鄭士源】

[답] 삼년상(三年喪)은 참으로 천하에 통용되는 상이라고 이르지만 처지가 각각 같지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일이 거행되는 자가 있으며, 말이 있어야지 거행되는 자가 있으며, 분주하게 사역하는 노복을 겸비한 뒤에야 거행되는 자가 있으니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존형(尊兄)은 편친(偏親)이 매우 연로하고 슬하에 어린 자식이 없으니 예를 집행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살아 있는 이를 섬기듯, 생존해 있는 이를 섬기듯이 한다.[如事生, 如事存.]"[391]라는 여섯 글자에 그 마음을 스스로 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三年固云通喪, 而處地各有不同. 有不言而事行者, 有言而後行者, 有兼奴僕牛馬走而後行者, 何可同也?況尊偏親篤老, 膝下無兒少, 其執禮豈可徑情乎?惟當於"如事生如事存"六字上, 自盡其心可也.

[문] 《의례주소(儀禮註疏)》[392] 〈상복(喪服)〉 기(記)의 주에 "개장(改葬)은

391) 살아……한다 : 《중용장구》 제19장에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 있는 이를 섬기듯이 하고, 이미 돌아간 이를 섬기기를 생존해 있는 이를 섬기듯 하는 것이 지극한 효도이다.[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라는 말이 보인다.

392) 《의례주소(儀禮註疏)》 : 《의례》의 해설서로, 17권으로 되어 있으며, 후한(後漢) 시대의 정현(鄭

관물(棺物)이 훼손되어,[393] 장사를 치를 때처럼 고쳐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삼년 내에 개장하되 관물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394] -정재규-
〈喪服 記〉註云: "改葬者, 棺物毁則, 改設之如葬時也.", 三年內改葬, 而棺物未毁, 則不必爾耶?【鄭載圭】

[답] 관물이 훼손되었다면 고쳐 설치할 것이니,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쳐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棺物毁敗, 改設, 不毁敗, 則不改設, 在其中.

[문] 장사를 지낼 때의 명정(銘旌)이 때가 묻고 손상되었다면 고쳐 만드니, 여헌(旅軒)[395]이 말하기를 "개장할 때에 명정은 참으로 마땅히 고쳐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명정을 태우는지 묘소의 곁에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규-
葬時, 銘旌垢傷, 則改造, 旅軒有言, '改葬時, 銘旌固當改造.', 然未知舊旌焚之耶, 埋墓傍耶?【鄭載圭】

[답] 이전의 명정을 태우는 것과 묻는 것은 하나의 의리이나 묻는 것이 또

玄)이 주를 내고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이 그 주에 소를 붙였다. 삼례(三禮)는 정현을 종(宗)으로 삼는데《의례》는 특히 정현 이후로는 절학(絶學)되었으므로 의례 연구에는 이 책이 가장 먼저 꼽히며 존중되고 있다.

393) 관물(棺物)이 훼손되어 : 원문은 '棺物毁則'이다.《의례주소(儀禮註疏)》〈상복(喪服)〉 기(記)의 주에 근거하여 '則'을 '敗'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94) 의례(儀禮)……것입니까 : 이 이하 10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改葬'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개장(改葬)'이란 이미 장사 지낸 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수축하는 절차를 말한다.

395) 여헌(旅軒) :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호로,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덕회(德晦)이다. 선조 때 천거로 부임한 보은 현감을 끝으로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후에 정치에 대한 건의문을 올렸고, 병자호란 때는 근왕(勤王)의 군사를 일으켰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동락서원(東洛書院)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는《여헌집(旅軒集)》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태우는 것보다 안온하다.
舊旌焚埋一義, 而埋又安於焚.

[문] 현재 개장을 할 것인데 속기(俗忌)에서는 중상(重喪 무거운 상)[396]이 끼어 있는 월일(月日)에 천묘(遷墓)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위봉조-
今將改葬, 而俗忌, 重喪月日, 不得遷墓, 如何?【魏鳳祚】

[답] 속기를 매번 믿고 따른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흔들 수도 없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없게 하리니, 어찌 입에 올리기에 족하겠는가. 하물며 중상의 이름이 분묘를 옮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俗忌, 若每每信聽, 令人搖手不得, 喫飯無時, 何足騰諸牙頰? 況重喪之名, 何關於遷墳?

[문] 개장(改葬)하는 의식은 한결같이 초상(初喪) 때와 같이 하는데[397] 분묘를 판 뒤에 장사를 치를 날이 조금 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하원-[398]
改葬, 一依初喪, 而破墳後, 葬日稍遠云云.【鄭河源】

[답] 대저 '한결같이 초상 때와 같이 한다.[一依初喪.]'라고 한 것은 분묘를 판 뒤에 곧장 그 영구를 함께 들어 새로운 산소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만약 장사를 치를 날이 조금 여유가 있어 그 사이에 또 영구(靈柩)

---

396) 중상(重喪) : 대공(大功 9개월복) 이상의 무거운 상복을 말한다.

397) 개장(改葬)하는……하는데 : 《사례편람(四禮便覽)》 권7 〈개장(改葬)〉에 '발인하기를 맨 처음 장사 지내던 때의 의식과 같이한다.[發引如始葬之儀.]'라고 한 말이 보인다.

398) 정하원(鄭河源) : 1827~1902.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희청(希淸), 호는 소두(小蠹)이다. 무장(茂長)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저서에 《소두집(小蠹集)》이 있다.

에 임시로 흙을 덮어 두는 권례(權禮)[399]를 행하였다면 형세로 볼 때 더 이상 초상 때와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구를 받들어 집으로 오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것은 인용한 바 〈단궁(檀弓)〉의 설[400]이 옳다. 지나가느냐 유숙하느냐 하는 것은 마침 그 집에 당도했으면 교묘히 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영구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정례(正禮)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영좌(靈座)를 설치하는 한 가지 일은 또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하니 이미 권례를 써서 흙을 덮어둔다면 그 예는 영구가 지상(地上)에 있는 것과 같을 수 없다.

大凡"一依初喪"云者, 指破墳後直舁向新山者而言也. 若日期稍寬, 其間又行掩土之權禮, 則勢不得復依初喪矣. 至於奉柩就家之當否, 則所引《檀弓》之說得之. 蓋經過留宿, 適當其家, 則不當巧避, 不然則又不可以奉入于家, 爲正禮也. "設靈座"一節, 恐亦未必然. 蓋旣用權掩土, 則其禮不得與柩在地上同也.

[문] 지금 개장(改葬)하려고 하여 영구를 받들어 집으로 돌아와 빈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진실로 상사에는 나아감은 있고 물러남은 없다는 의리[401]

---

399) 영구(靈柩)에……권례(權禮) : 《상변통고(常變通攷)》 권21 〈상례(喪禮) 개장(改葬)〉의 "3년 안에 개장하면 묘소를 판 뒤에, 산막(山幕)에 빈소를 만들고 전(奠)을 진설하고 상식(上食)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三年內改葬, 則破墓後, 成殯於山幕, 設奠上食, 例也.]"라는 구절에 근거하면 개장하여 꺼낸 영구를 훗날 장례일을 잡아 새 산소에 정식으로 장사하기 전까지 임시 초빈(草殯)해 두는 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400) 단궁(檀弓)의 설 : 개장과 관련하여 어느 구절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상례(喪禮) 개장(改葬)〉에 개장 때의 조묘(朝墓)하는 문제를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기》 〈단궁(檀弓)〉의 말을 끌어대면서 "〈단궁〉에 '초상 때 조(朝 알현함)는 죽은 이의 효심을 반영한 것이다. 집을 떠나는 일이 슬프기 때문에 조고의 사당에 이르러 영결을 고하고 떠나는 것이다.[喪之朝也, 順死者之孝心也. 其哀離其室也, 故至於祖考之廟而后行.]'라고 하였으므로, 사당이 아니면 조(朝)하는 예는 없을 것 같아서 묘를 옮기려는 사실을 선영(先塋)에만 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모두 먼저 계시던 이곳을 떠나 다른 산으로 가는데 조고에 대한 하직 예(禮)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여 영구를 상여로 옮기고서 조고의 묘소에 하직을 고한 다음 견전(遣奠)을 올리고는 떠났던 것입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설문(設問)과 이에 대해 신독재가 "묘소에 하직하는 일이 예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리(情理)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대답이 보이니 참고할 만하다.《국역 신독재전서 제13권 의례문해속 상례 개장》

401) 나아감은……의리 : 《예기》 〈단궁 상(檀弓上)〉의 "자유가 말하기를 '창 아래에서 반함을 하고

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우암은 말하기를 "이미 영구를 도로 가져다가 집 안에 빈(殯)하였다면 궤연과 한 집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니, 한 집 안에서 두 곳에 궤전(饋奠)[402]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다. 차라리 궤연을 버리고 빈소에서 궤전을 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는데, 동춘당(同春堂)은 "영연(靈筵)과 영구 앞에 함께 차리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라고 하였고, 남계(南溪)의 말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를 말하자면 상식(上食)과 궤전은 마땅히 이전처럼 영연에 단설(單設)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의 의론이 이러하니 감히 억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김석귀-
今將改葬, 欲奉柩返殯於家, 固違於有進無退之義, 然尤庵曰: "旣還殯於家, 則與几筵, 同處於一家之內矣, 一家之內, 兩處饋奠, 未知如何. 母寧捨几筵, 而行於殯耶?", 同春則曰: "竝設於靈筵及柩前, 恐不可不爾.", 南溪之言, 亦然. 然以愚言之, 上食與饋奠, 似當依舊單設於靈筵, 而諸先生之論如此, 不敢强解.【金錫龜】

[답] 돌아와 빈소를 차리는 한 가지 일과 관련하여 나아감은 있고 물러남은 없다는 의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니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 어찌 구애받을 수 있겠는가. 제전(祭奠)에 관해서 제현(諸賢)의 논의가 이러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모두 의심스럽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 영구 앞에 별도로 차리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개빈(改殯)하는 날에 어찌 별도의 예수(禮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극인(棘人 상주(喪主))[403]의 말이 바로 나의 뜻이다.
返殯一節, 有進無退, 道其常也, 處變豈可拘也? 祭奠, 諸賢之論雖如此, 以愚見則皆可疑. 未葬前, 未聞柩前別設, 改殯日, 豈有別般禮數也? 然則棘人之言, 乃吾意也.

집안에서 소렴을 하며, 동쪽 계단에서 대렴을 하고 객위인 서쪽 계단에 빈소를 차리며, 뜰에서 조전(祖奠)을 행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에 관계된 일은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다.[子游曰, 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하였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다.

402) 궤전(饋奠) : 매장하기 전까지 제사 형식을 갖추지 않고 음식을 올리는 예이다.

403) 극인(棘人) : 질문을 한 김석귀를 가리킨다.

[문] 퇴계(退溪)가 말하기를 “지금 이미 영구를 보았으니 일이 초상(初喪)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좌곡(坐哭 앉아서 곡함), 자천(藉薦 거적자리를 깖), 대곡(代哭 대신 곡하게 함) 및 친빈(親賓), 치전(致奠)[404]은 그 의절이 모두 처음 장사를 지낼 때와 같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규-
退溪曰: “今見柩, 事象初喪.”, 未知其坐哭藉薦代哭 及親賓或致奠, 其儀亦皆如始葬時耶?【鄭載圭】

[답] 좌곡은 가능할 듯하니 자리는 영구에 가까이 하고, 대곡(代哭)은 대렴(大斂) 전의 일이므로 개장(改葬)에는 행할 수 없을 듯하다. 자천 및 치전은 초상을 치를 때를 본뜨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하다. 대저 초상과 같다는 것은 대렴 이후의 의절이 같을 뿐이니 어찌 고복(皐復)[405] 이후의 의절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坐哭似可, 坐則近於柩也, 代哭, 大斂前事, 恐不可行於改葬也. 藉薦及致奠, 倣初喪時, 恐無不可. 大抵象初喪者, 象大斂以後耳, 豈謂皐復之後乎.

[문] 삼년 안에 개장(改葬)을 할 때에는 시마복으로 갈아입지 않는 것은 마땅히 우암의 설을 따라야 하겠지만, 묘소를 열 때에 요질(腰絰)은 이전대로 꼬는 것입니까, 풀어서 드리웁니까? 대개 요질은 빈소를 차리면 꼬고 계빈(啓殯)[406]할 때에는 다시 흩어서 드리우니, 영구를 보고서는 복을 바꾸는 의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장하여 영구를 볼 때에 처음 장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듯합니다. -정재규-

---

404) 치전(致奠) : 사람이 죽은 때에 친척이나 또는 벗이 슬픈 뜻을 나타내는 제식(祭式)이다.

405) 고복(皐復) : 상을 당하였을 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招魂)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皐)는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를 뜻하고, 복(復)은 초혼하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지붕 위에 올라가 혼을 불러 말하기를, 아아, 아무개여 돌아오라 하고 소리친다.[升屋而號告曰 皐某復]”라고 하였다.

406) 계빈(啓殯) : 장례 절차에서 발인(發靷)을 하기 위해 빈소(殯所)를 열어 영구(靈柩)를 꺼내는 의식이다.

三年內改葬, 不改制緦, 當從尤庵說, 但未知啓墓時腰絰, 仍舊絞耶, 當散垂耶? 蓋腰絰殯而絞, 至啓殯, 復散垂, 以其見柩而不可無變服之節也, 改葬見柩, 恐與始葬無異.【鄭載圭】

[답] 개장할 때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멀어졌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복을 든 것이다. 삼년 안에 개장하는 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니 어찌 시마복으로 갈아입겠는가. 요질을 착용하되 풀어서 드리우는 것이 비록 분명한 글은 없으나 의리로 볼 때 합당한 듯하다.
改葬之緦緬也, 故擧下. 三年內改, 非緬何緦? 腰絰散垂, 雖無明文, 於義似當.

[문] 분묘를 팠다가 오랫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해 복상할 달수를 계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장사를 지낸 뒤에야 벗습니까? -박계만-
破墳, 久未葬, 服不可計月, 必葬而後, 除之耶?【朴契晩】

[답] 옛날에 시마복으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낸 뒤에 벗었다. 시마(緦麻)라는 것은 상복 베의 거칠고 가는 것의 명칭이니 반드시 3개월 만에 벗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사를 치른 뒤로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
古者, 用緦服葬, 葬而除之. 緦者, 服布麤細之名, 非謂其必三月而除之, 當從葬後計三月.

[문] 묘소에서 우제(虞祭)를 지내는 것이 경산(瓊山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상례비요(喪禮備要)》도 그것을 따라서 지금 시속에서는 그것을 준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은 사당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그 말을 고찰해 보면 또한 의의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자(朱子)의 "어찌 다시 우제를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는 다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재규-

行虞於墓, 自瓊山《儀節》, 已有, 而《備要》仍之, 今俗遵用, 已久, 而南塘以爲'當行于廟.', 今考其言, 似亦有意義. 而異於朱子'何得復虞'之說, 未知何如?【鄭載圭】

[답] 사당에서 우제를 행하는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애존(哀尊 정재규를 지칭함)이 이미 선유(先儒)의 설을 널리 상고하였으니 그중에서 마음에 편안한 것을 택하여 지내는 것이 절로 허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行虞於廟未詳, 哀尊旣博攷先儒說, 就其中擇其安於心者而行之, 自可寡過矣.

[문] 개장(改葬)하는 예는 어느 시대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정종택-
改葬之禮, 昉於何代?【鄭鍾澤】

[답] 대개 장사(葬事)의 "장(葬)"은 "감춘다[藏]"는 뜻이니 개장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장에 관한 설명은 옛날에 한두 가지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 옛날 주(周)나라 왕을 장사지냈는데 난수(灤水)가 넘쳐 그 묘를 침식하여 관의 앞부분이 드러나므로[407] 이에 개장을 하였고, 노(魯)나라 임금이 나라에 큰일이 생긴 것을 계기로 예(禮)가 갖추어지지 않아 또한 개장을 하였으니[408] 면례(緬禮 이장(移葬))가 진실로 이에서 연유하였다. 중고(中古)로 점점 내려와서는 풍수설(風水說)을 지독히 신봉하여 장사를 지내면 개장하게 되었다.
蓋葬者, 藏也, 則未知改葬之爲可, 然而改葬之說, 於古有一二可據者. 昔周王之葬, 灤水齧其左, 見其和, 乃改之, 魯王因國之有事, 禮未備, 亦改之, 緬之禮, 職由於此, 漸迄中古, 酷信風水說, 葬則改之.

---

407) 주(周)나라……드러나므로 : 《여씨춘추(呂氏春秋)》〈개춘(開春)〉에 "옛날 주나라의 왕 계력(季歷)을 초산의 끝에 장사지냈는데, 난수가 그 묘를 침식하여 관의 앞부분이 드러났다.[昔王季歷葬于楚山之尾, 欒水齧其基, 見棺之前和]"라는 말이 보인다.

408) 노(魯)나라……하였으니 : 춘추 시대 때 노(魯)나라 혜공(惠公)이 죽었을 때 마침 송(宋)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고, 태자인 환공(桓公)이 어려서 장례의 의식이 불충분한 점이 있어 다시 개장(改葬)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春秋左傳 隱公 1年》

《신천록》[409]을 간략히 덧붙임

新阡錄略附

후세에는 지자(知者)와 우자(愚者), 현자(賢者)와 불초자(不肖者) 모두가 개장(改葬)을 행하는데도 옆의 사람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으니 돌아보건대 여기에 유독 심히 두려운 바가 있다. 대개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체백(體魄)이 토정(土正)으로 돌아가니 그 도가 그윽하고 고요하여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시초에는 비록 흙으로 하여금 사자(死者)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고 한 것이지만 그 말단의 일에 대해서는 성인(聖人)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학자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는 천리(天理)에 있어서 도망할 수 없고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성인이나 효자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이 망녕되이 무덤가의 한줌 흙을 취한다면 자손은 필시 크게 놀라서 경동(驚動)할 것인데 지금 이에 땅을 뒤흔들고 발굴하여 바람과 햇볕을 닿게 하니 이 어찌 인사(人事)의 큰 변고이자 천지의 바른 이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에 개장하는 일에 관해 상고시대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주(周)나라 이후로 비로소 겨우 경전(經傳)의 기록에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반드시 아주 부득이한 연고가 있었던 것이고 쓸데없이 개장을 한 것이 아니다. 후세에 빈번하게 개장을 하는 것은 풍수와 길흉의 설로 인한 것인데, 지금 인정(人情)과 사세(事勢)로 참작해 보면 이 또한 완전히 배척할 수만은 없다.

대개 사람이 겪는 처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서 혹 어린 나이에 재앙과 변고를 당하여 장사를 치를 때에 땅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 창졸간에 실수를 저질렀다가 끝에 가서야 잘못인 줄을 크게 깨닫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더러 개장할 수 있는 이치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앞서 절박하여

---

409) 신천록(新阡錄) : 《노사집》 연보에 따르면 노사 나이 44세에 광주 서석산(瑞石山 무등산(無等山))에 부모를 이장하고 이 작품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또한 이장한 전말을 일일이 서술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린 것은 세세한 사정은 산삭하고 대의만 뽑은 듯하다. 《蘆沙集 附錄 卷1 年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주장하는 바람에 한번 착오가 있었다면 어찌 재차 그릇됨을 용납하겠는가. 반드시 자세히 살피고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요망한 무당과 허탄한 풍수사의 거짓말과 꾐을 믿고서 길지(吉地)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자신의 눈에서 도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도모하여 경솔히 이장하고 빈번히 개장하니, 만에 하나라도 요행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 인륜(人倫)을 어긴 죄인인 것이다.

後世改葬, 知愚賢不肖, 共行之, 傍人莫以爲怪, 顧於此獨深有所恐懼. 蓋人之終也, 體魄之歸于土正也, 其爲道幽靜, 而不可以動搖. 其始也, 雖曰無使土親膚, 而其末梢事, 聖人有難言者, 學者有不忍言者. 此天之所不可逃, 而理所不能免, 聖人孝子, 亦無如之何矣. 設有人妄取墳上一抔土, 則子孫必大駭而爲驚動, 今乃震撼發掘, 犯觸風陽, 玆豈非人事之大變, 而虧損天地之正理者耶? 是以改葬之事, 上世未聞, 自周以降, 始厪厪見於經傳記, 然皆必有甚不得已之故, 非徒然而爲之也. 後世改葬之繁, 大抵因風水吉凶之說, 今以人情事勢參之, 此亦未可全然揮斥. 蓋人之所遭, 不一, 或穉年禍故, 營葬不能卜地, 或倉卒失著, 末來大覺其謬, 若是者, 容有可改之理. 然先有迫不得已之意, 爲之主張而一錯, 豈容再誤? 必審必愼, 勿之有悔, 則斯可也已, 若乃信妖巫誕師誑誘, 以爲吉地必可求, 不謀於自家眼眶, 而謀於他人口吻, 輕遷數改, 僥倖其萬一之得者, 皆人倫之罪人也.

《답문류편》
答問類編

권14 卷之十四

제례 5-5[祭禮五之五]

제례 5-5

祭禮五之五

[문] 시제(時祭)는 바로 정제(正祭 정규 제사)이지만 지금 사람 중에 그것을 거행하는 자가 드뭅니다.[410] -김한기-
時祭乃正祭, 今人鮮有行之者.【金漢驥】

[답] 속절(俗節)[411]을 성대히 지내므로 시제를 지내지 않으니 예를 좋아하는 선비라면 마땅히 고례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은 채소와 과일로 시제를 지냈고, 사계(沙溪)는 건석어(乾石魚) 한 마리로 시제를 지냈다.
俗節盛而時祭廢, 好禮之士, 自當復古, 何須問也? 趙重峯以蔬果行時祭, 沙溪以乾石魚一尾行之.

[문] 시제를 지낼 날을 택하는 의식에 "조고(祖考 조상님)께 마땅한지를 여쭙니다. 부디 흠향하십시오[適其祖考, 尙饗]."라고 하였습니다. 차린 제물이 없는데 맛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훈-
卜日儀, '適其祖考, 尙饗.', 無具饌, 所饗何物耶?【金勳】

[답] 여기서 "부디 흠향하십시오."라는 것은 배교(环珓)[412]의 신(神)을 가리켜

410) 시제(時祭)……드뭅니다 : 이 이하 22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時祭'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시제(時祭)'란 '사시제(四時祭 사철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계절의 가운데 달에 거행하되, 거행하는 달의 열흘 전에 날을 가려 택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411) 속절(俗節) : 설, 대보름, 답청(踏靑), 청명, 한식, 단오, 유두(流頭), 칠석, 추석, 중양(重陽), 동지, 납일(臘日) 등과 같이 세속에서 제삿날 이외에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제철 음식을 올리는 날을 이른다.

412) 배교(环珓) : 점을 치는 도구로 옥이나 대나무 등을 사용하여 조개껍질 모양을 만든 것인데,

말한 것이 아닌 듯하다. 점치는 의식에는 본래 찬을 갖추지 않으니 어찌 흠향하시라는 말이 있겠는가.
此'尙饗', 恐非指环珓之神而言. 筮儀, 本無具饌, 有何尙饗耶?

[문] 치재(致齋 극진히 재계함)[413]의 뜻에 대해 묻습니다. -조용-
致齊之義.【曺鎔】

[답] "재(齊 재계)"라는 것은 가지런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런히 하여 순일(純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대강(大綱)을 말해 보자면 예경(禮經)에서 말한바 돌아가신 분이 거처(居處)하시고 담소하시던 모습을 생각한다[414]는 따위가 바로 그 일이고, 정치함을 다하여 말해 보자면 정자(程子)가 말한바 "'재(齊)'는 사려가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사려가 있게 되면 '재'가 아니다."[415]라는 것이 남김없이 설명했다고 이를 만하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요동치는 마음으로 정자의 말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갑자기 도달하기 어려울 듯하니 마땅히 《대기(戴記)》의 말[416]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齊者, 齊其不齊之思慮, 欲其純一也. 言其大槩, 則禮經所言, '思其居處笑

땅바닥에 던져서 그 엎어지고 젖혀지는 것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

413) 치재(致齋) : 재계는 기간을 두어 정도를 달리하는데, 극진하고 집중적으로 몸가짐을 정결하게 행할 때의 재계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치재에 들기 전, 술을 먹지 않거나 음악을 듣지 않는 등 산만한 것을 정제(整齊)하는 느슨한 재계인 산재(散齋)와 구별된다. '齋'는 '齊'로도 쓴다.

414) 예경(禮經)에서……생각한다 : 《예기》〈제의(祭義)〉에 "그 거처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담소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뜻하던 바를 생각하고, 그 좋아하던 바를 생각하고, 그 즐기던 바를 생각한다.[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耆.]"라고 하였다.

415) 정자(程子)가……아니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8 〈유원승수편(劉元承手編)〉에 "재계하는 날, 그 거처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담소하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효자가 평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재계하는 것은 아니다. 재계는 사려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려가 있게 되면 재계가 아니다.[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此孝子平日思親之心, 非齊也. 齊不容有思 有思則非齊.]"라고 한 말이 보인다.

416) 대기(戴記)의 말 : 《대기》는 곧 《예기(禮記)》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거처하시고 담소하시던 모습 운운한 경문의 말을 가리킨다.

語'之類, 卽其事也, 而極其精而言之, 則程子所言, '齊不容有思, 思則非齊.'者, 可謂說到十分盡頭矣. 然以衆人搖漾之方寸, 欲行程子之言, 恐其猝難湊泊行之, 當自戴記所言始.

[문] 옛날에는 제사(祭祀)[417]에 개[犬]를 썼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쓰지 않습니까? 복숭아 또한 과일인데 쓰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오계수-
祭記古用犬, 而今何不用? 桃亦果而不用, 何?【吳繼洙】

[답] 개는 옛사람이 썼으니 지금 비록 쓰더라도 잘못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숭아는 과일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니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인다.[418]
犬是古人用之, 今雖用之, 未有所失, 而桃則果之最賤者, 故祭祀不用, 見於家語.

[문] 제사에 평소에 드시지 않는 음식을 쓰는 것은 그 좋아하신 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여봉섭-
祭用其平日不食之物, 恐非思其所嗜.【呂鳳燮】

[답]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니 비록 드시지 않았던 음식을 쓰더라도 안 될 것은 없다.
以神事之, 雖用其不食之物, 未爲不可.

---

417) 제사(祭祀) : 원문은 '祭記'이다. 문맥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근거하여 '記'를 '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18) 복숭아는……보인다 : 《공자가어(孔子家語)》 권5 〈자로초견(子路初見)〉에, "과실의 종류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복숭아가 가장 낮으므로 제사에 쓰지 않고 교제와 종묘의 제사에도 올리지 않습니다.[菓屬有六, 而桃爲下, 祭祀不用, 不登郊廟.]"라고 한 말이 보인다.

[문] ‘어육(魚肉)’을 율곡(栗谷)은 날것을 쓴다고 하였고 사계(沙溪)는 어육을 넣은 탕(湯)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례》〈제례(祭禮) 사시제(四時祭)〉의 제물을 차리는 조항을 살펴보면 ‘어육만두(魚肉饅頭)’ 각각 한 소반이라고 하였는데, 진설하는 제구(諸具 준비물)에 있어서는 모두 이름을 가리켜 진설하지만 만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육은 만두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여봉섭-

‘魚肉’, 栗谷則用生, 沙溪則以爲‘魚肉湯,’, 觀〈時祭〉具饌條, 魚肉饅頭各一盤云, 至於陳設凡具, 皆指名陳設, 而饅頭無之, 然則魚肉, 似指饅頭.【呂鳳燮】

[답] 어육에 관한 사계의 이러한 논의가 필시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다. 〈시제(時祭)〉의 제물을 차리는 조항에서 “만두(饅頭)” 두 글자는 “어육(魚肉)”의 아래에 있지만 실은 아래 글자 “떡[糕]”과 서로 이어지니 바로 제물을 올릴 때의 이른바 면식(麵食 밀가루 음식)이라는 것이다. 그대가 한 말은 잘못인 듯하다.

魚肉, 沙溪之論如此, 必非無據, 今當從之. 若〈時祭〉具饌條, 饅頭二字, 雖在魚肉字之下, 而實與下文糕字相連, 卽進饌時所謂麵食者也, 來說恐誤.

[문] 미식(米食)은 떡[餠]입니까? 형갱(鉶羹)[419]과 대갱(大羹)[420]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박계만-

米食餠歟? 鉶羹大羹, 何別?【朴契晩】

---

419) 형갱(鉶羹) : 채소를 넣고 오미(五味)로 조미한 고깃국으로, 형(鉶)에 담아 제사에 올리므로 형갱이라고 했다. 형은 정(鼎)의 일종으로, 그릇을 위주로 하여 말할 때에는 형갱을 형정(鉶鼎)이라고 불렀다. 《周禮述註 卷3》

420) 대갱(大羹) :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육즙(肉汁)을 말한다. 《예기》〈악기(樂記)〉에, “성대한 제향의 예에서는 현주를 높이 치고, 제기에 생선(生鮮)을 바치며, 태갱은 조미를 하지 않으니, 다하지 않은 맛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大饗之禮 尙玄酒而俎腥魚 大羹不和 有遺味者矣]”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주석에 “태갱은 육즙으로, 소금이나 채소로 조미를 하지 않는다.[大羹 肉湆 不調以鹽菜]”라고 하였다.

[답] 미식은 떡이다. “형(鉶)”은 솥으로, 형갱은 곧 고깃국에 채소를 곁들인 것이니 오미(五味)를 갖춘 국이고, 대갱은 태고(太古) 때의 국으로 고깃국에 조미하지 않은 것이다.
米食餠也. 鉶鼎也, 鉶羹, 卽肉湆以菜者, 五味羹也, 大羹, 太古羹, 肉湆不和者也.

[문] 제수를 진설한 그림[設饌圖]과 관련하여 《가례(家禮)》와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과일이 여섯 가지인데,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다섯 가지이고 《사례편람(四禮便覽)》[421]에는 네 가지인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한기-
設饌圖, 《家禮》《備要》果六品, 《擊蒙要訣》五品, 《四禮便覽》四品, 何義?【金漢燮】

[답] 혹 여섯 가지, 혹 다섯 가지, 혹 네 가지인 것은 대개 모두 음양과 기우(奇偶)의 뜻으로, 천산(天産)을 지산(地産)으로 대비해 보면 과일 또한 음에 속하지만 채소를 과일과 대비해 보면 과일이 도리어 양이 된다. 취한 뜻이 각각 다르니 구태여 깊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
或六或五或四, 蓋皆陰陽奇偶之義, 以天産對地産, 則果亦屬陰, 以菜對果, 則果反爲陽. 取義各異, 不必深疑也.

[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이 왼쪽에 있는데, 제사에 차릴 때에는 밥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김석귀-
人之飮食, 飯居左, 祭之設饌, 飯居西, 何也?【金錫龜】

[답] 인도(人道)는 양을 숭상하기 때문에 밥이 왼쪽에 있고 신도(神道)는

421) 《사례편람(四禮便覽)》 : 이재(李縡, 1680~1746)가 관혼상제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모아 엮은 책이다.

음을 숭상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人道尙陽, 故飯居左, 神道尙陰, 故居西.

[문]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계명(鷄鳴)의 전이나 후 가운데 언제로 합니까? -조용-
行祀, 雞鳴前後, 何居?【曺鎔】

[답] 제사 지내는 것은 본래 질명(質明 날이 밝으려 할 무렵)에 하는 것인데 주자(朱子)는 질명에 제사를 이미 마쳤으니[422] 이는 대개 조금 늦어져서 인사를 범할까 염려해서이다. 하지만 계명 전후에 지낸다는 것은 시속의 말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行祭, 本質明也, 而朱子, 質明行事已畢, 蓋慮稍晏之犯人事也. 雞鳴前後, 野說無據.

[문] 질명(質明)과 궐명(厥明)[423]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휘원-
質明厥明, 有異否?【鄭禧源】

[답] 질명은 사물을 보고 질문할 만한 때를 말한 것이고, 궐명은 명일(明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오늘로부터 내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質明, 可視物而質問之謂, 厥明, 猶言其明日也, 自今日而指來日之辭.

---

422) 제사지내는……마쳤으니 : 《가례》〈제례(祭禮) 사시제(四時祭)〉에서는 "질명(質明)에 신주를 받들어 자리로 모신다.[質明, 奉主就位.]"라고 한 반면에, 《어찬주자전서(御纂朱子全書)》 권39에 나오는 주자의 행적을 기록한 곳에서는 "무릇 사중(四仲)의 시제를 만나서는 하루 전날에 의자와 탁자를 씻고 엄히 장만하여 다음날 동틀 무렵에 제사를 이미 마쳤다.[凡遇四仲時祭, 隔日滌椅桌, 嚴辦. 次日侵晨, 已行事畢.]"라는 말이 보이는 바 주희 자신이 편찬한 《가례》의 내용과 실제 모습이 부합하지 않음을 언급한 것이다.

423) 궐명(厥明) : 질명(質明)과 대칭되는 말로, 궐명은 다음날 새벽을 이르며, 질명은 그보다 조금 뒤인 날이 밝을 무렵을 이른다.

[문] 5경(更)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관해 장자(張子 장재(張載))는 예가 아니라고 하였고 정이천(程伊川 정이(程頤)) 집안에서는 5경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질명과 5경 중에 어느 것이 마땅합니까? -여봉섭-
五更行祭, 張子謂非禮, 程伊川家, 五更行祭. 質明與五更, 何者爲得?【呂鳳燮】

[답] 주자(朱子)는 질명에 제사를 이미 마쳤다. 이는 대개 질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정례(正禮)지만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옛날 현인은 매번 조금 일찍 지내는 것을 따랐다.
朱子質明, 行祀已畢. 蓋質明雖是正禮, 而嫌其與人事相混, 故昔賢每從其稍早耳.

[문] 제사를 지낼 때에 신주 몸체를 독(櫝) 바깥에 꺼내는 것입니까, 단지 독을 열어둘 뿐입니까? -정희원-
行祭時, 出主身於櫝外, 只開櫝而已耶?【鄭禧源】

[답] 신주를 꺼내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하지만 집안에 전부터 행하던 예(例)가 있다면 더러는 그대로 따르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
當以出主爲正, 而家有前行之例, 則或因仍未改.

[문] 강신(降神)을 할 때에 별도로 잔반(盞盤 술잔과 잔 받침)을 준비하는데 더러 신위(神位) 앞의 잔반을 사용하더라도 그다지 예(禮)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까? -여봉섭-
降神, 別具盞盤, 或用神位前盞盤, 不甚違禮?【呂鳳燮】

[답] 잔반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좋다. 별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盞盤別具則善, 不能別具者, 蓋草率也.

[문] 《주례(周禮)》〈천관(天官)〉 "제사에 소모(蕭茅)를 바친다.[祭祀供蕭茅]"라고 한 곳의 주에 "띠풀을 묶어 세워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위로 술을 붓는다. 술이 아래로 스며들어 내려감이 마치 신(神)이 마시는 것 같다."라고 하고, "반드시 띠풀을 사용하는 것은 띠풀은 몸이 유순하고 결이 곧으며 부드럽고 깨끗하니 제사를 받드는 덕이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자(小子)의 뜻은 "혼(魂)"은 양(陽)에 해당하는데 "향(香)"은 양에 속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신(神)을 구하는 데에 반드시 향을 사르고, "백(魄)"은 음(陰)에 해당하는데 "띠풀"은 음에 속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귀(鬼)"를 구하는 데에 묶은 띠풀을 사용하는데 몸이 유순하고 결이 곧은 뜻이 또한 그 가운데에 있는 듯합니다. -김석귀-

〈天官〉'祭祀供蕭茅'註, '束茅立之, 祭前沃酒其上, 酒滲下去, 若神飮之.', '必用茅者, 謂其體順理直柔而潔白, 承祭祀之德, 當如此.'. 小子之意, 魂陽而香是陽物, 故求神必焚香, 魄陰而茅是陰物, 故求鬼用束茅, 而體順理直之義, 似亦在其中.【金錫龜】

[답] 관중(管仲)이 초(楚)나라를 책망하여 말하기를[424] "포모(包茅)를 바치지 않은 탓에 술을 거를 수 없다.[茅包不入, 無以酋酒.]"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옛날에 체[篩]가 없어서 띠풀로 술을 거른 것이다. 강신하는 술은 애초에 거르지 않음이 없었으나 모래 위에 띠를 묶어 거른 것은 정미함을 더욱 다한 것이다. 내가 평소에 아는 것은 이러할 뿐이고 주소(註疏)의 여러 설에 대해서는 널리 상고하여 뜻을 다 살피지 못하였다.

管仲之責楚, 曰: "茅包不入, 無以酋酒", 蓋古者, 無篩以茅酋酒. 降神之酒, 初非不酋, 而束茅於沙上者, 益致其精也. 吾之平日所知, 如此而已, 註疏諸說, 未及博攷致意.

---

424) 관중(管仲)이……말하기를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에, 제 환공(齊桓公)이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초(楚)나라를 토벌하자 초나라에서 제나라 군중(軍中)으로 사자를 보내어 무엇 때문에 침략했는지를 물은 데 대해 제나라의 관중이 "초나라에서 포모를 바치지 않은 탓에 술을 거를 수 없어서 천왕(天王)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과인은 이 죄를 묻노라.[爾貢包茅不入, 王祭不供, 無以縮酒, 寡人是徵.]"라고 책망한 기록이 보인다.

[문] 문을 닫고 문의 동쪽에 서서 서면(西面)하는 것이 "염(厭)"인데 "염"은 무슨 뜻입니까? -박계만-
闔門立於東西, 厭也, 厭何意?【朴契晩】

[답] "염"은 시간을 끌면서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厭, 遲滯以俟厭飫也.

[문] 초반(抄飯 밥을 맒)하는 한 가지 의절에 관해 우암(尤庵)은 "《가례(家禮)》에 없는 것이니 《가례》를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암(陶菴) 집안에서는 삼년 동안에는 상생(象生)하는 의리[425]로 행하다가 삼년이 지나면 행하지 않았으니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김훈-
抄飯一節, 尤庵謂"家禮無之, 當以家禮爲正.", 陶庵家則三年內, 象生行之, 三年後不行, 當何從?【金勳】

[답] 초반은 하지 않는 것 또한 괜찮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의절은 가가례(家家禮)를 따르더라도 또한 큰 잘못이 아니다.
抄飯不行亦可, 而此等小節, 從家家禮, 亦非大失.

[문] "이성(利成)"을 고한다[426]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계만-
"告利成", 何義?【朴契晩】

[답] "이(利)"는 "기름[養]"과 같으니 공양(供養)하는 예(禮)가 이미 이루어 졌음을

425) 상생(象生)하는 의리 : 살아 있을 적의 일을 본떠서 한다는 뜻으로, 죽은 자를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여겨서 모든 의식 절차를 이에 준하여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426) 이성(利成)을 고한다 : 《의례(儀禮)》 〈사우례(士虞禮)〉에, 제사를 마치고 나면 "축은 호를 나가서 서쪽을 바라보고 이성을 고한다.[祝出戶, 西面告利成.]"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이는 양과 같고, 성은 필이다.[利猶養也, 成畢也.]"라고 하였다.

말한다. 옛날에는 제사에 시동이 있어 시동을 섬기는 예가 끝나면 "이성"을 고하는데 비록 주인에게 고하지만 기실은 시동으로 하여금 듣고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利猶養也, 謂供養之禮已成也. 古者祭有尸, 事尸禮畢則告利成, 雖告主人, 而其實欲令尸聞而起也.

[문] 이성(利成)을 고할 때에 축관과 주인이 더러 서로 읍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이영헌-
告利成時, 祝與主人, 或有相揖.【李穎憲】

[답] 이성을 고할 때에 축관과 주인이 서로 읍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告利成時, 祝與主人, 相揖未聞.

[문] 남의 후처(後妻)가 된 자가 전처를 질투하여 미워하는 데다 전처에게 아들이 없다면 제사 또한 억지로 막을 것입니다. 후처의 아들이 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제사를 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봉섭-
爲人後妻者, 媢疾前妻, 前妻無子, 則祭祀亦抑遏. 其子, 以母命不可拂, 廢祭可乎?【呂鳳燮】

[답] 이치로 깨우치고 읍(泣)하여 간함으로써 기어코 미혹됨을 되돌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혹됨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는 자식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理喩泣諫, 期於回惑可也. 若不能回惑, 則是子職未盡也, 祭不祭何論?

[문] 만약 계실(繼室)이 제사를 주관하면 남편의 첫 배필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택희-
若繼室主祭, 夫之初配, 當何稱?【禹宅禧】

[답] "남편의 전실[夫前室]"이라고 불러야 한다.
當云"夫前室."

[문] 혹자가 말하기를 "예(禮)에 '첩모(妾母)는 대를 이어 제사 지내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첩의 아들의 아들은 조모(祖母)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여 말하기를 "살았을 때 이미 봉양을 하였다면 죽어서도 마땅히 종신토록 제사지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석귀-
或曰: "'禮, 妾母不世祭.', 妾子之子, 爲祖母, 不祭耶?", 曰: "生旣奉養, 死當終其身祭之."【金錫龜】

[답] 아마 이와 같이 하는 듯하다.
或恐如是.

[문] "선조의 제사를 지낼 적에는 선조가 계신 듯이 한다."[427]라는 것은 지내실 때의 소리를 듣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 조상의 평소 용색(容色)과 소리를 무엇으로써 생각해 내어서 계신 듯이 하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428] -조용-[429]

---

427) 제사를……한다 : 《논어》〈팔일(八佾)〉에 "선조의 제사를 지내실 적에는 선조가 계신 듯이 하셨으며,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이 계신 듯이 하셨다.[祭如在, 祭神如神在.]"라는 말이 보인다.

428) 제사를……이르겠습니까 : 이 이하 3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初祖 先祖 禰'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429) 조용(曺鎔) : 1837~1903.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중소(仲昭), 호는 성계(惺溪), 또는 우연(偶然)이다. 남명 조식의 후손이고, 조연의 아버지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다.

'祭如在'者, 如聞其容聲, 遠祖平日容色聲音, 何由想得而致如在?【曺鎔】

[답]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이 있는 듯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바깥의 신이 무슨 소리와 모습이 있어서 있는 듯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원친(遠親)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祭神如神在', 外神有何聲容而能如在, 遠親可知.

[문] 《가례(家禮)》에 애제(禰祭)[430]가 있는데 《격몽요결(擊蒙要訣)》과 《상례비요(喪禮備要)》에는 모두 빠진 것은 어째서입니까? 혹 풍녜(豐昵)[431]를 일삼는다는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김한기-
家禮有禰祭, 而《擊蒙要訣》《喪禮備要》, 皆闕之, 何也? 或有豐昵之嫌而然歟?【金漢驥】

[답] 예제는 본래 정자(程子)가 의리로 일으킨 것으로 고례(古禮)가 아닌 까닭에 그런 듯하다.
禰祭本是程子義起, 非古禮故然耶.

[문] 아버지가 지내던 예제를 아버지가 사망하여 마침내 그만둔다면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는 의리가 아닌 듯합니다. -이수근-[432]

---

430) 예제(禰祭) : 9월 중에 택일하여 부모에게 올리는 제사. '예(禰)'란 부묘(父廟)를 뜻하며, '가깝다'는 뜻도 있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예서에만 나타나는 제례의 한 종류이다. 주자(朱子)의 《가례》에 나와 있는 제례에는 사당제·사시제(四時祭)·예제·기일제·묘제의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사시제·예제·기일제만 정침(正寢)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시제와 기일제는 대상범위가 4대조까지인 반면 이제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431) 풍녜(豐昵) : 다른 선조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부친만 위하고 존숭하는 것을 말하니, 《서경(書經)》〈고종융일(高宗肜日)〉에, "제사를 거행함에 있어 오직 아비 사당에만 풍성하게 하지 마소서.[典祀無豐于昵.]"라는 말이 보인다.

432) 이수근 : 1805~?.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계현(季賢), 호는 모와(茅窩)이다. 전라남도 장성(長城)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父之禰祭, 父亡遂已, 則恐非事死如生之義.【李守根】

[답]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면 예묘(禰廟)[433]에 제사 지낼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초상이 나서 사당에 고할 때 예묘에 이미 예묘의 일이 거행되지 못함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죽은 이를 산 사람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을 가지고 혐의해서는 안 된다.
父旣亡, 則祭禰者何人耶? 初喪告廟時, 禰廟已知禰事之不修矣, 此不可以事死如生爲嫌耳.

[문] 부제사(祔祭祀)의 존자(尊者)는 비자(卑者)에게 미칠 수 있지만 비자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는 존자를 끌어올 수 없다는 의리로 미루어 보면 선고(先考)의 기일(忌日)에 선비(先妣)의 제사는 지낼 수 있겠으나 선비의 기일에는 선고를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선비의 기일에 또한 선고를 제사지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434] -김한기-
以祔祭尊可及卑, 卑不敢援尊之義, 推之, 考忌可祭妣, 妣忌不可祭考. 而《備要》, 妣忌亦祭考, 何?【金漢驥】

[답] 대개 정자(程子)에게서 나온 것이다.
蓋出於程子.

[문]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부모의 기일(忌日)에 관직이 없는 자는 옥색단령(玉色團領)을 한다고 하였는데 옥색은 옅은 청색이니 상례(喪禮)의

---

433) 예묘(禰廟) :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이다.

434) 부제사(祔祭祀)……어째서입니까 : 이 이하 14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忌日'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기일(忌日)'은 '기일제(忌日祭 기제사)'로, 일주년마다 제사를 받는 사람이 사망한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남은 일부인 기일[435]에 옅은 청색 옷을 입는 것은 혹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말대로 마의(麻衣)와 포대(布帶)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재필-
《要訣》, 父母忌, 無官者玉色團領. 玉色淺靑色也, 喪之餘日服淺靑, 或未安. 依張子言, 麻衣布帶, 何如?【鄭在弼】

[답] 나라에서 규정하는 색으로 청색을 쓰기 때문에 옅은 색을 재계하고 소식(素食)[436]하는 복으로 삼으니 이러한 일은 단지 시왕(時王 당시의 군주)의 제도로 참작하는 것이다.
國色用靑, 故淺色爲齊素之服. 此等事, 但以時王之制參酌之.

[문] 혹자가 말하기를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에서는 신주를 꺼낼 때, 초헌(初獻)할 때, 사신(辭神 신을 작별하여 보냄)할 때에 모두 곡을 하는데 기제(忌祭)에는 단지 초헌할 때에만 슬픔을 다해 곡합니다. 무릇 슬퍼하여 곡하는 것은 마땅히 참신(參神 신에게 인사함)하고 사신하는 때에 있어야 하겠는데 이때에 곡하지 않는 것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여 말하기를 "삼년 동안 애통함이 한참 절절하다가 기제에는 어버이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어 비록 독실한 효자라도 애통함이 삼년 동안만큼은 못하다. 그러므로 곡에 강쇄(降殺)를 두되 초헌에는 반드시 곡을 하니 그 뜻이 매우 정밀하다. 대개 효자가 제사를 지낼 적에 참으로 그 정성을 쓰지 않는 것이 없지만 강신(降神)하는 한 가지 의절에 있어서는 더욱 그 마음을 다하니 분향하고 뇌주(酹酒 술을 땅에

---

435) 상례(喪禮)의……기일 : 원문은 '喪之餘日'에 해당한다. 이는 주희(朱熹)가 두문경(竇文卿)에게 답한 편지에 "기제(忌祭)는 상례의 남은 일부이다.[忌者喪之餘.]"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상례의 남은 일부인 기일인 날' 정도로 풀 수 있으니, 기일을 단순히 바꾸어 쓴 표현이라 할 것이다.《晦庵集 卷59 答竇文卿》 이익(李瀷)도 "기일이라는 것은 바로 상례의 남은 일부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모두 상례로 간주하여 '하루의 초상'이라 불렀다.[忌日者, 乃喪之餘. 故古人皆以喪禮處之, 所謂一日之喪也.]"라고 한 말이 보인다.《星湖全集 卷11 答鄭汝逸 庚子》

436) 소식(素食) : 죽음을 애통해 하여 밥을 먹을 적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이른다.

부어 강신함)하여 신을 구하는 데에 이 마음을 전일하기 때문에 곡은 행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초헌에 이르러서는 신령이 양양(洋洋)하게 있는 듯하여[437] 이미 몰세(沒世)한 어버이를 다시 뵐 수 있는 것 같으니 효자가 이에 비록 곡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되겠는가. 사신(辭神)에 이르러서는 슬픔이 이르지 않았는데 곡하는 것이 지나치면 거짓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효자가 사신하는 때에 슬픔이 남아있어 곡을 한다면 천하에 어느 사람이 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김석귀-

或曰: "虞卒哭大小祥, 則出主, 初獻, 辭神, 皆哭, 忌祭則只於初獻哭盡哀. 夫哀哭, 當在參神辭神之時, 而此時無哭, 其義何也?", 曰: "三年之內, 哀痛方切, 忌祭則親沒已久, 雖篤於孝者, 哀痛不如三年之內. 故哭有降殺, 而必於初獻哭之, 其義甚精矣. 蓋孝子之於祭, 固無所不用其誠, 而於降神一節, 尤盡其心, 焚香酹酒, 此心專一於求神, 而哭則不暇也. 至於初獻, 則洋洋如在, 已沒之親如得復見, 孝子於是, 雖欲不哭, 得乎? 至於辭神, 若哀未至而哭有餘, 則不其虛乎? 然孝子於辭神之時, 哀有餘而哭之, 天下孰能禁之?" 【金錫龜】

[답] 논한 바가 옳다.

所論然.

[문] 수조(受胙)[438]하지 않고 준(餕 음복연을 함)도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박계만-

不受胙, 不餕, 何也?【朴契晩】

[답] 기제(忌祭)는 상례(喪禮)의 남은 일부이므로 상제(喪祭)의 예(禮)를

---

437) 신령이……듯하여 : 원문의 '양양여재(洋洋如在)'는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의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인데, 양양은 유동(流動), 충만(充滿)의 뜻이다.

438) 수조(受胙) : 제사 의식의 하나로, 제사를 마치고서 제육(祭肉)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참작하여 쓰는 것이다.
忌是喪之餘, 故參用喪祭之禮.

[문] 기제(忌祭)를 지내는 날에 주인은 소식(素食)을 합니다. 이 때 집에 있는 손님이 고기를 보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까? -김훈-
祭日, 主人行素, 在家之賓, 餽肉未安耶?【金勳】

[답] 기제를 지내는 날은 더러 상중(喪中)과는 조금 구별이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다.
忌祭日, 或與喪中, 有差別, 未知如何.

[문] 기제(忌祭)의 축문식(祝文式)에 남편이 아내를 제사할 때에 "슬픈 마음이 하늘같이 끝이 없습니다.[昊天罔極]"라고 한 것을 무슨 말로 고칩니까? -이종호(李宗浩)-
忌祭祝式, 夫祭妻, 改'昊天罔極'以何語?【李宗浩】

[답] 축문식에 실리지 않은 것은 모두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창(感愴)함을 견디지 못한다.[不勝感愴]"라고 한다거나 "비도(悲悼)함을 견디기 어렵다.[悲悼難勝]"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祝式之所不載, 皆厝語用之. 如曰'不勝感愴''悲悼難勝'之類.

[문] 기제를 지내는 날이 "삭(朔 초하루)"이라면 삭과 날짜의 간지를 굳이 중첩하여 쓰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또 상순(上旬)에는 "모일(某日)" 위에 더러 "초(初)"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봉섭-
祭日在朔, 則'朔'與日干支, 不必疊書, 如何? 且上旬, 則'某日'上, 或用'初'字,

或不用, 何者爲是?【呂鳳燮】

[답] "삭(朔)"과 날짜의 간지는 중첩하여 쓸 이치가 없는 듯하다. "일(日)" 자 위에 "초" 자는 《대통력(大統曆)》[439]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 중에 비록 서찰의 연월(年月)이라도 "초" 자를 쓰지 않는 자가 있다. 내가 《대통력》을 보지는 못했지만 장로(長老)에게 전해 들은 것이 이러하다.
'朔'日干支, 似無疊書之理. '日'上'初'字, 《大統曆》無之, 故今人雖書札年月, 有不書'初'者, 吾未見《大統曆》, 而傳聞於長老者如此.

[문] 어머니의 기제(忌祭)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아 그것을 대신 지낸다면 축문에 말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택희-
母祭, 父不參而代行, 則祝文措語, 如何?【禹宅禧】

[답] 망실(亡室)의 축문에 있어서 남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편이 아들로 하여금 고하게 한다는 것으로 말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 듯하다.
亡室祝文, 夫若未參, 則以夫使子告爲辭, 恐當.

[문] 아직 신주를 만들지 않은 집에서 상중(喪中)에 선조에게 제사할 때에 지방(紙榜)에 망자(亡者)의 속칭(屬稱)을 적습니까? -정희원-
未造主家, 喪中祭先, 紙榜, 以亡者屬書之耶?【鄭禧源】

[답] 산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어찌 망자의 속칭을 적겠는가.
生者祭, 豈以亡者屬書之.

---

439) 《대통력(大統曆)》 : 명(明)나라 초기 홍무(洪武) 연간에 제정한 역서(曆書)의 명칭이다.

[문] 상중(喪中)에 제사를 폐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이승환-[440]
喪中廢祭云云.【李升煥】

[답] 고례(古禮)는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하는 것이지만 주 선생(朱先生 주희(朱熹))이 정론(定論)을 세운 뒤로 장사 지내기 전에는 고례대로 제사를 폐하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묵최(墨衰)를 하고 대략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니 묵최는 시속으로 말하자면 직령의(直領衣)이다. 이미 축문이 없고 단헌(單獻 술을 한 번 올림)을 한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굳이 논할 것이 없다. 더구나 장손(長孫)이 차례로 승중(承重)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찌 차자(次子)가 제사를 섭행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장손이 헌작(獻酌)하여야 한다.
古禮三年廢祭, 而自朱先生定論以後, 葬前依禮廢祭, 葬後以墨衰略設行祀. 墨衰以今俗言之, 則直領衣也. 旣無祝單獻, 則主祀不必論, 况長孫次當承重, 則豈有次子攝祀之理也? 長孫當獻酌矣.

[문] 기년(期年)과 대공(大功)의 상에는 장사를 치르기 전까지 제사를 폐하고, 시마(緦麻)와 소공(小功)의 상에는 성복(成服)하기 전까지 제사를 폐하는데, 스승에 대한 복인 심상(心喪)과 처부모(妻父母)를 위한 복인 시마 또한 모두 규례대로 제사를 폐합니까? -이태로-
期大功, 則葬前廢祭, 緦小功, 則成服前廢祭, 如師服心喪, 妻父母服緦, 亦皆依例廢祭耶?【李泰魯】

[답] 제사를 폐하는 것은 마땅히 본종(本宗)을 기준으로 논해야 할 듯하고 문외(門外)의 상에는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는 듯하다.
廢祭, 似當以本宗論, 門外之喪, 恐不必然.

---

440) 이승환(李升煥) : 1829~1895. 본관은 청안(淸安), 자는 일서(日瑞), 호는 기산(岐山)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기우만(奇宇萬)의 《송사집(松沙集)》에 〈제이기산문(祭李岐山文)〉 〈기산 이공 행장(岐山李公行狀)〉이 실려 있다.

[문] 혹자가 말하기를 “삼년 동안 기제(忌祭)에 축문이 없이 신주를 꺼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축문이 있으면 속칭(屬稱) 또한 곤란한 문제이므로 단지 ‘모관(某官)’이라고 적는다.”라고 하는데, 옳은 듯합니다. 이 설이 어떠합니까? -박정현-
或言: “三年內忌祀, 無祝出主, 未安, 有祝則屬稱亦難, 只書某官云云”, 似可, 此說何如?【朴鼎鉉】

[답] 삼년 동안에 신주를 꺼낼 때의 축문에 대해 혹인(或人)이 한 말은 깊이 헤아린 것이지만 내 뜻은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미 축문이 없는 헌작을 행하는 것이라면 어디에 신주를 꺼낸 축문을 쓰겠는가. 또 속칭을 쓰지 않고 그저 모(某) 관함(官銜)만을 적는 것 또한 행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만약 관계(官階)가 우연히 같은 자가 있다거나 대를 이어 학생(學生)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축문을 읽을 필요 없이 축문을 읽을 시간만큼 잠깐 지체하여 심축(心祝)을 올리는 것이 옳을 듯하다.
三年內出主祝, 或人之言, 甚有商量, 而愚意有不能符合者. 旣行無祝之獻, 安用出主之祝? 且不書屬稱, 只書官銜, 亦有行不得, 若官階有偶同者, 且連代學生則柰之何? 愚見則不用讀祝, 以讀祝之頃, 少爲遲滯心祝, 似可矣.

[문] 고비(考妣)를 함께 제사하는 축사에 ‘해가 바뀌어[歲序遷易]’ 아래에 “모친의 제삿날[某親諱日]”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전처(前妻)와 후처(後妻)가 있다면 단지 “현비휘일(顯妣諱日)”이라고 하지 않고 “모봉모씨(某封某氏)”라고 적어서 구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봉섭-
考妣竝祭祝辭, ‘歲序遷易’下, 書‘某親諱日’, 而有前後配, 則不直曰‘顯妣諱日’, 而書‘某封某氏’, 分別如何?【呂鳳燮】

[답] 옳은 듯하다.
似然.

[문] 종자(宗子)가 밖에 나갔다면 아들과 아우 중에 누가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까? -김석귀-
宗子出外, 則子與弟, 誰當主之?【金錫龜】

[답] 그 아우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
使其弟, 主之.

[문] 묘제(墓祭)를 율곡(栗谷)은 한식(寒食)과 추석(秋夕) 두 명절로 말하였는데, 한 해에 두 번 묘소에 제사하는 것 또한 과중한 듯합니다. 《가례(家禮)》를 따라 3월에 한 번 제사를 지내되, 3월에는 날짜를 별도로 가리지 말고 한식을 묘제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한식에 사정이 있으면 추석을 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441] -김한기-
墓祭, 栗谷以寒食秋夕二節, 言之, 一年再祭墓所, 恐亦過重. 從《家禮》, 三月一祭, 三月則不別擇日, 用寒食, 何如? 寒食有故, 則用秋夕, 似可.【金漢驥】

[답] 잘 헤아려 행하라.
商量爲之.

[문] 친진(親盡)[442]한 묘(墓)에 대한 시향(時享)은 누가 주관합니까?-정오현-
親盡墓時享, 誰爲主之?【鄭五鉉】

[답] 지금 사람이 말하는 "시향"은 바로 한 해에 한 번 지내는 제사의 별명(別名)인데, 친진한 묘는 문장(門長)이 족인(族人)들을 데리고 한 해에 한 번

---

441) 묘제(墓祭)를……듯합니다 : 이 이하 7개 조항의 문답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 '墓祭'라는 소제목 아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실려 있다. '묘제(墓祭)'는 가묘제(家廟祭)와 별개로 한 해에 한 번 날을 가려 3월 상순(上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442) 친진(親盡) : 제사를 지내는 대(代)의 수가 다된 것을 말한다.

제사를 지낸다.
今人所謂'時享', 乃歲一祭之別名, 親盡之墓, 門長率族人, 歲一祭之.

[문] 선영(先塋)이 위치한 언덕에 후손이 없는 족산(族山 일족(一族)의 묘소)이 같이 있는데, 선영에 제사를 마치고 잔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진황-[443]
先塋同岡, 有無後族山, 祭畢奠盞, 何如?【蘇鎭璜】

[답] 선산(先山)에 해마다 한 번 제사를 지낼 때에 후손이 없는 족산에도 술잔을 올리는 일은 비록 예서(禮書)에는 분명한 글이 없으나 방계의 친척을 반부(班祔)[444]하여 집안 사당에서 제사지내 주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참조할 수 있다. 집사가 오늘날 행한 바는 다른 집안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니 무엇을 혐의하고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先壟歲一祭, 盞酒之及於無後族山, 此雖禮無明文, 然傍親班祔, 祭於家廟, 自古有之, 則可以傍照. 執事今日所行, 足爲他家法則, 何嫌何疑?

[문]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단지 강남으로 내려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하지 않을 뿐이다. 호북(湖北) 지방 사람들은 성묘(省墓)할 때에 먼 조상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또한 곡을 하니 이것이 도리어 좋다. 사람의 한 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미루어 나가면 반드시 근본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곧 먼 조상(遠祖)일 것이고, 나는 필경 그의 혈맥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비록 고비(考妣)의 묘소라도 삼년 뒤에는 으레 곡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시의 정제(正祭)와 같은 것은 향속에서 폐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

443) 소진황(蘇鎭璜) :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담양(潭陽)에서 태어났으며, 아들은 소필기(蘇弼基)이다.

444) 반부(班祔) : 대를 잇는 아들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사당에 모실 때 별도로 안치하지 않고 곧바로 조부의 신주와 합쳐 모시다가 대수가 차서 땅에 묻을 때 역시 조부의 신주와 같이 묻는 것을 말한다.

멀리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관해 공자(孔子)께서 시속을 따르거나 원칙을 고수하시는 의리[445]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최숙민-
語類曰: "只江南來, 不如此. 湖北人上墳, 不問遠祖也哭, 這却好. 人之一身, 推其所自, 則必有本, 便是遠祖, 畢竟我是他血脉."云, 今人雖考妣墓, 三年後例不哭, 且如四時正祭, 鄉鄙間, 廢之久矣, 甚非追遠之意, 此等事, 於孔子從衆從下之義, 如何爲當?【崔琡民】

[답] 성묘할 때에 곡하는 것은 이 또한 그대로 습속을 따르는 탓에 일찍이 행하지 못하여 지금 감히 크게 입을 열어 말하지는 못하나 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 송강(鄭松江 정철(鄭澈))이 성묘할 때에 반드시 곡했다고 한다. 사시의 정제를 지내지 않은 것이 진실로 개탄할 만하니 예(禮)를 좋아하는 선비라면 의당 처신할 바를 알아야 한다.
上墳之哭, 此亦因仍習俗, 未曾行得, 今不敢大開口說, 而行得固好. 我國鄭松江上墳必哭云. 四時正祭之廢, 誠可慨然, 好禮者宜知所處矣.

[문] 묘제(墓祭)와 산신(山神 후토신(后土神))에 대한 제사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합니까? -여봉섭-
墓祭, 山神祭, 何先何後?【呂鳳燮】

[답] 《가례(家禮)》에 "마침내 산신에게 제사지낸다.[遂祭山神]"[446]라고 하였다. "마침내[遂]"라는 것은 앞을 이어받는 말이니 산신에 대한 제사를 뒤에 하는

---

445) 시속을……고수하시는 : 원문은 '從衆從下'인데, 《논어》 〈자한(子罕)〉에 "삼베로 만든 면관(冕冠)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생사(生絲)인 준(純)으로 만들어 쓰니, 검소하다. 나는 중인(衆人)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임금을 뵐 적에 당(堂)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禮)인데, 지금은 당 위에서 절을 하니 거만스럽다. 비록 중인들이 하는 것과 어긋나더라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겠다.[麻冕禮也, 今也純儉. 吾從衆. 拜下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라는 말이 보인다. 이는 예와 관련하여 공자의 융통성 있는 자세를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446) 마침내……제사지낸다 : 《가례》에는 "마침내 '후토신'에게 제사지낸다.[遂祭后土]"라고 되어있다.

것이 분명하다.
《家禮》, '遂祭山神', '遂'者, 承上之辭, 其在後也明矣.

[문] 후토신을 제사하는 축문 "모가 공손히 모친(某親)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某恭修歲事于某親]"에서 위의 "모(某)" 자는 묘제사의 주인이고 "모친(某親)"의 "모" 또한 주인으로 생각되는데, 남으로 하여금 대신 지내게 하는 경우 또한 이 축사를 쓰는 것입니까? -우택희-
祠土地祝, '某恭修歲事于某親.', 上'某'字, 墓祭主人, '某親'亦以主人計之, 使人代行, 亦用此辭歟?【禹宅禧】

[답] 주인 스스로 지내기 때문에 그 축사가 이러한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쓴다면 합당하게 변통하여야 하니 어찌 구애될 수 있겠는가.
主人自行, 故其祝辭如此, 若用他人, 則當隨宜變通, 豈可拘也.

[문] 《가례(家禮)》와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거론하고 있는 제사의 조목이 너무나 번다합니다. 예를 들자면 삭망(朔望)의 참례(參禮), 신물(新物)을 올리는 예, 기제(忌祭), 예제(禰祭), 세일사(歲一祀 묘제(墓祭)), 사중월(四仲月)의 정제(正祭), 사명일(四名日)에 지내는 묘제 및 청명제(淸明祭), 한식제(寒食祭), 중삼제(重三祭 삼짓날 제사), 단오제(端午祭), 천칠제(荐七祭 칠석 제사), 중양제(重陽祭), 동지제(冬至祭), 납향제(臘享祭) 등인데, 한 해 동안에 남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조(正朝 정월 초하루), 삼원(三元), 유두(流頭), 추석(秋夕)은 삭망 안에 포함되므로 다시 말할 것은 없지만 이러한 제사들은 가정(家庭)의 역량으로는 미치지 못할 뿐만이 아닙니다. 예에 이르기를 "제사는 자주 지내려고 하지 않으니 자주 지내면 경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석귀-
家禮與國俗所擧祭目甚繁. 如朔望參, 新物薦, 忌禰祭, 歲一祀, 四仲月正祭,

四名日墓祭, 及淸明, 寒食, 重三, 端午, 荐七, 重陽, 冬至, 臘等, 一年內, 餘日無幾. 正朝, 三元, 流頭, 秋夕, 包在朔望中, 不更說, 非但人家事力之不逮. 禮云'祭不欲數, 數則不敬.', 然則恐當有折衷.【金錫龜】

[답] 삭일(朔日)의 참례와 신물을 올리는 예는 제례(祭禮)로 논의해서는 안 되고, 사명일의 제사는 제례에 해당하지만 사시(四時)의 정제(正祭)에서 감쇄(減殺)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밖의 절사(節祀) 가운데 가정에서 늘 지내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하나 나는 평소 타인에게 의지해 사느라 지내야 할 제사를 더러 걸러서 집안의 규범이 전혀 없다.
朔參薦新, 不當以祭禮論, 四名日祭, 則祭禮也, 而要當減殺於四時正祭, 可也. 其外節祀, 人家當有常行之祭, 而吾則平生寄口於他人, 當行之祭或闕, 都無家規.

방례-향교와 서원의 의절을 덧붙임- 5-6

邦禮【校院儀節附】五之六

[문] 본조(本朝)의 사당을 세우는 제도와 관련하여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목조(穆祖)[447]를 태묘(太廟)로 삼은 반면에 동춘당(同春堂)은 태조(太祖)를 태묘로 삼았으니 두 선생의 설 가운데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민기용-
本朝立廟之制, 尤庵則以穆祖爲太廟, 同春則以太祖爲太廟, 兩先生之說, 孰得其正?【閔璣容】

[답] 정주(程朱)가 송(宋)나라의 묘제(廟制)[448]를 논한 것이 우로(尤老 송시열) 설의 근거인데, 말하기 어렵다.
程朱論宋廟制, 尤老之所本也, 難言.

[문] 종묘의 세실(世室)[449]에 대해 묻습니다. -민의행-
宗廟世室云云【閔誼行】

[답] 《예기》 〈왕제(王制)〉 본문에는 단지 "3소(昭)와 3목(穆)이 태조(太祖)의 묘와 함께 7묘가 된다.[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라고만 하였고, 세실(世室)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분명한 말로 매듭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유(諸儒)의 설이 두 갈래로 나왔고, 주자(朱子) 또한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 "1소(昭)와 1목(穆)이 종(宗)이 된다.[一昭一穆爲宗.]" 이하에 운운한 말은 바로 후세 유자의 설이지 〈왕제〉의 글이 아니다. "7세(世)의

---

447) 목조(穆祖) :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인 이안사(李安社)로, 조선이 개국된 뒤에 추존(追尊)되었다.

448) 송(宋)나라의 묘제 : 송 태조 조광윤(趙光胤)의 고조(高祖)인 조조(趙朓 묘호가 희조(僖祖)임)를 시조로 보아서 계속해서 희조를 태조 동향의 자리에 둔 것을 말한다.

449) 세실(世室) : 공덕(功德)이 큰 임금에 대해서는 대수가 다해 신주를 옮길 때가 되더라도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지 않고 영원히 종묘에 모셔 두는 것을 말한다.

사당[七世之廟]"[450] 네 글자로 6대(代)에 체천(遞遷)한다는 증거로 삼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닌 듯하다. 비록 조천(祧遷)한 두 조상과 사친(四親)[451]을 아울러 7세로 삼더라도 덕행을 관찰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제후가 한 종(宗)이 된다.[諸侯一宗.]"라는 것도 선유의 설이니 경문(經文)에 이런 말이 있는가. 만약 우리나라를 삼대(三代)의 봉건 제후(封建諸侯)와 비교해 보면 일의 체모가 자별하거늘 질문한 본뜻을 모르겠다.

《王制》本文, 不過曰: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其於世室一事, 未嘗明言下落, 故諸儒之說生兩歧, 朱子亦不能畫一指定矣. "一昭一穆爲宗."以下云云, 乃後儒說, 非《王制》文也. 以七世之廟四字, 爲六代遞遷之證, 恐亦未的. 雖幷兩祧四親而爲七世, 有何妨於觀德乎? 諸侯一宗, 亦先儒之說, 經文有之乎? 若以我朝, 方之三代封建諸侯, 則事體自別, 未知俯詢之本意耳.

[문] 국가에서 입승(入承)[452]하는 데에 혹 아우가 형을 대신하고 혹 숙부가 조카를 잇는데 제주(題主)하고 방제(旁題)[453]할 때에는 어떻게 칭합니까? 5세(世)에 조천(祧遷)하는 예(禮)는 부자간(父子間)에 서로 계승하는 제도와 같도록 해야 합니까? -민기용-

國家之入承, 或弟代兄, 或叔繼姪, 其題主與傍題, 何以稱之? 而五世祧遷之禮, 當如父子相承之制乎?【閔璣容】

[답] 부자간에서와 같게 하는 것이 정례(正禮)이지만 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如父子, 正禮也, 然不行久矣.

---

450) 7세(世)의 사당 : 《서경》〈함유일덕(咸有一德)〉에 "칠세의 사당에서 덕을 관찰할 수 있다.[七世之廟, 可以觀德.]"라는 말이 보인다.

451) 사친(四親) : 부(父), 조(祖), 증조(曾祖), 고조(高祖)의 직계 4대를 가리킨다

452) 입승(入承) : 입승대통(入承大統)을 말하니, 임금에게 아들이 없을 때 가까운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후사가 되어 임금의 대를 잇는 것을 말한다.

453) 방제(旁題) : 방제(傍題)라고도 하는 바, 신주 하단의 왼쪽에 봉사자(奉祀者)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문] 제왕가(帝王家)에 조손(祖孫)이 서로 계승하는 경우가 있고 형제가 서로 계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세대 수가 혹 친(親)이 다하지 않았는데 이미 4대를 지나는 경우가 있고 혹 친(親)이 이미 다했는데 4대가 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니, 마땅히 한결같이 왕위를 계승한 차례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태자(太子)의 아들 환왕(桓王) 임(林)이 조부 평왕(平王)과 똑같이 하나의 소(昭)가 됩니까? 평왕이 소가 되면 환왕이 목(穆)이 되는 것입니까?[454] 차자(次子)인 외병(外丙)은 그 아우 중임(仲任)[455]과 똑같이 하나의 목(穆)이 되는 것입니까, 외병이 목이 된다면 중임이 소가 되는 것입니까?[456] -정의림-

帝王家, 有祖孫相承兄弟相承, 則其間代數, 或有親未盡, 而已過四代者, 或有親已盡, 而未滿四代者, 當一以統位之序爲主耶? 太子之子桓王林, 與其祖平王, 同爲一昭耶? 平王爲昭, 則桓王爲穆耶? 次子外丙, 與其弟仲壬, 同爲一穆耶? 外丙爲穆, 則仲壬爲昭耶?【鄭義林】

[답] 태묘(太廟)의 위차(位次)에 관하여는 옛날부터 논의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 진실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갑자기 확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말을 하자면 설명이 매우 길어진다.

太廟位次, 自古論者不一, 誠有難處. 未可卒乍指定, 又言之則其說甚長.

[문] 제왕가에서 형이 아우를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윤종의-[457]

---

454) 태자(太子)의……것입니까 : 여기의 인물은 동주(東周) 시대의 사람들로 태자의 이름은 설보(洩父)이다. 아버지 평왕 의구(宜臼)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바로 아들 임(林)에게 자리가 계승되었기 때문에 부자간의 전승과 군위의 계승이 불일치하여 소목(昭穆)을 따지는 일이 복잡하게 된 것이다.

455) 차자(次子)인 외병(外丙)은 그 아우 중임(仲任) : 모두 탕(湯)의 장자인 태정(太丁)의 아우이다.

456) 차자(次子)인……것입니까 : 외병과 중임은 모두 상(商)나라 탕(湯) 임금의 아들인데 탕을 이어 외병이, 외병을 이어 중임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대를 기준으로 소목을 배치하는 제도가 같은 세대에서 복수의 계승자가 나옴으로 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457) 윤종의(尹宗儀) : 1805~188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사연(士淵), 호는 연재(淵齋)이다. 환재의

帝王家, 兄繼弟, 叔繼姪.【尹宗儀】

[답] 제왕의 승계에서 형이 아우의 뒤를 잇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잇는 것은 천지 사이에 큰 전례(典禮)인데, 《예기》에 증명할 만한 글이 없으니 이것은 천지 사이에 큰 궐문(闕文)이다. 다행히 하보불기(夏父弗綦)가 희공(僖公)의 신주를 위로 올린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역사(逆祀)' 두 자가 공자의 입에서 나왔고,[458] 《춘추》의 세 전(傳)에서 혹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먹는 격이다."라고 하고, 혹은 "예(禰 아버지 사당)를 앞에 하고 조(祖 할아버지 사당)를 뒤에 하는 격이다."라고 하며, 혹은 "소목(昭穆)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춘추》가 단란조보(團爛朝報)[459]라면 그만이지만 《춘추》가 백왕(百王)의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명백한 글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구한다면 기리는 것이 오히려 총악(璁萼)[460]과 같을 뿐이다.

帝王之兄繼弟叔繼姪, 是天地間大典禮, 而《禮經》無明文, 是天地間大闕

평생지기였다. 1852년(철종3)에 음직으로 종부시 주부가 되었고 이후 김포 군수(金浦郡守), 대흥 군수(大興郡守) 등 외직을 전전했으며, 만년에 공조 참의, 호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882년(고종19)에 파광군(波光君)에 습봉(襲封)되었다. 병(兵)·농(農)·율력(律曆) 등에 조예가 깊었으며 예학(禮學)에도 밝았다. 저서로 《상서도전변해(尙書圖傳辨解)》, 《벽위신편(闢衛新編)》, 《방례고증(邦禮考證)》, 《고사통휘(古史統彙)》 등이 있다.

458) 하보불기(夏父弗綦)가……나왔고 : 《예기》 〈예기(禮器)〉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장문중을 어찌 예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보불기가 제사의 차례를 바꾸었으나 중지시키지 않았다.[臧文仲安知禮? 夏父弗綦逆祀而弗止也.]"라고 하였는데, 역사(逆祀)는 희공(僖公)과 민공(閔公)의 신주 차례를 바꾸었다는 말이다. 희공이 민공보다 형이기는 하지만 민공이 먼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희공을 민공의 위에 올려 제사하는 것은 예에 어긋났다고 지적한 것이다.

459) 단란조보(斷爛朝報) : 송(宋)나라의 왕안석이 《춘추》를 폄하하여 부른 말로, 《춘추》는 조정에서 발행하는 조보처럼 잔결(殘缺)된 곳이 많아 불완전한 책이란 뜻이다. 《송사(宋史)》 327권 〈왕안석전(王安石傳)〉에서 "선유(先儒)의 전주(傳注)를 일체 무시했으며, 《춘추》를 폄출(貶黜)하여 학관(學官)에 넣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장난삼아 《춘추》를 지목하여 단란조보라고 했다."라고 한 말이 보인다.

460) 총악(璁萼) : 명(明)나라 세종(世宗)의 신하인 장총(張璁, 1475~1539)과 계악(桂萼, ?~1531)인데, 여기서는 별난 방법으로 전례(典禮)를 무너뜨린 인물로 지칭하였다. 세종이 황제가 되어 자신의 생부 흥헌왕(興獻王)을 추숭하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이 세종의 뜻에 영합하여 효종(孝宗)을 황백고(皇伯考)로, 흥헌제를 황고(皇考)로 부를 것을 청하고, 이에 반대하는 조정의 수많은 신하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다.

文. 賴有夏父弗綦躋僖公一事, “逆祀”二字, 發於夫子之口,《春秋》三傳, 或以爲“子先父食”, 或以爲“先禰後祖”, 或以爲“無昭穆. ”《春秋》爲斷爛朝報, 則已矣,《春秋》, 苟爲百王不易之法, 則明文孰有加於此哉? 外此而別求方法, 則褒猶璁蕚已矣.

[문] 국휼(國恤)의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대중소(大中小)의 제사를 모두 지내지 않는데, 세 가지 제사의 명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재필-
國恤葬前, 大中小祀, 皆廢, 三祀名目, 可得聞歟?【鄭在弼】

[답] 대중소의 제사는《오례의(五禮儀)》에 당연히 상세한 내용이 있을 듯한데 이곳에는 서책이 없어서 살필 수 없다. 사견을 말해보면 사시(四時)의 정제(正祭) 및 대상(大祥), 소상(小祥)이 대사(大祀)가 되어야 할 듯하고, 기제(忌祭)와 묘사(墓祀)가 중사(中祀)가 되어야 할 듯하고, 삭참(朔參)하는 따위가 소사(小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대중소” 세 글자는 공가(公家)를 두고 말한 것인데, 내가 말한 것은 착오이다.
大中小祀, 似當詳於五禮儀, 此無書冊, 未之考也. 以臆見言之, 則四時正祭, 及大小祥, 似當爲大祀, 忌墓祀, 似當爲中祀, 朔參之類, 合爲小祀.
更思之, 大中小三字, 以公家言, 吾所云云, 誤矣.

[문] 옛 성인과 후대의 스승을 배향(配享)하는 제사에 모두 날것[生物]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종호-
先聖後師, 腶享俎豆, 皆用生物, 何義?【李宗浩】

[답] 날것은 천연(天然)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지극히 공경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生物近於天, 故至敬處用之.

[문] 성묘(聖廟)의 사성(四聖)[461] 위판(位版)에 "자(子)"라고 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습니다. -윤주헌-[462]
聖廟四聖位板, 不稱子.【尹柱憲】

[답] 대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 보자면 '종주(從周)' 두 글자로 설명이 다 되니[463] 마땅히 태학(太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수(禮數)를 한결같이 따라야지 다시 다른 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 소견으로 그 인정(人情)과 예문(禮文)을 논해 보자면 위패에 '자사자(子思子)'라고 써야 온당하게 되니 이는 대개 '공(孔)'이라고 칭하면 대성위(大聖位 공자의 신위(神位))에 혐의가 되고 '자(子)'를 칭하지 않으면 후학이 종사(宗師)로 받드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판에 이미 이처럼 썼다면 축판(祝板)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위에 성(姓)을 말하지 않았다 하여 사성위(四聖位)에 모두 성씨를 빼버린다면 일의 체모가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 죽은 이와 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를 수도 있으니 《논어》에서 안회(顔回)와 증삼(曾參)을 성사(聖師 공자) 앞에서는 '자(子)'로 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지는 못한다.
蓋以目下施行言, 則"從周"二字盡之. 當一遵太學已行禮數, 不當更容他議. 若以臆見論其情文, 則位板書"子思子", 方爲穩當. 蓋稱"孔"則嫌於大聖位, 不稱"子", 則非後學宗師之稱也. 位板旣如是, 則祝板從可知矣. 若以大聖位之不言姓, 而四聖位都闕姓氏, 則未知事體安否何如? 且事死事生, 容有不同, 《論語》顔,曾之不稱"子"於聖師之前, 未爲的據也.

---

461) 사성(四聖) : 안자(顔子 안회(顔回)), 증자(曾子 증삼(曾參)), 자사자(子思子 공급(孔伋)), 맹자(孟子 맹가(孟軻))를 가리킨다.

462) 윤주헌(尹柱憲) :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백문(伯文), 호는 수정(壽汀)이다. 강진(康津)에서 거주하였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463) 종주(宗周)……되니 : 지금의 국법과 제도를 따르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종주(從周)'는 당대의 제도를 긍정하는 공자의 언사이니, 《논어》 〈팔일(八佾)〉에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두 왕조를 본받았으니 그 문화가 찬란하구나. 나는 주나라의 예법을 따르겠다.[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라고 하였다.

[문] 서원에서 배향을 설시(設施)할 때에 일렬(一列)로 하면 서쪽을 상위로 삼고, 동서를 서로 향하게 하면 동쪽을 상위로 하는데 이는 어째서입니까? -유낙호-
院享之設, 一列則西上, 東西相向則東上, 何?【柳樂浩】

[답] 서쪽을 상위로 하는 것은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동쪽을 상위로 하는 것은 동쪽이 주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듯하다.
以西爲上, 無可疑. 東上者, 東爲主席而然耶?

[문] 영귀서원(詠歸書院)[464]의 위차도(位次圖)에 영사(永思)[465]가 오른쪽에 있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는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조철영-[466]
詠歸書院位次圖, 永思居右, 河西居左.【趙徹永】

[답] 영귀서원의 위차(位次)를 개정한 일은 저번에 광주(光州)의 사림(士林)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다. 그때 들은 바는 대개 "영사정(永思亭)을 북쪽 벽으로 옮겨 봉안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으나, 북쪽 벽에서 왼편에 봉안할지 오른편에 봉안할지를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

---

464) 영귀서원(詠歸書院)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에 있는 조선후기에 건립한 서원이다. 1694년(숙종20)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인후(金麟厚)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옥과면 죽림리에 창건하여 그 위패를 모신 것을 시작으로, 1729년(영조5)에 유팽로(柳彭老)와 신이강(辛二剛)을 추가 배향하고, 1797년(정조21)에 허계(許繼), 1846년(헌종12)에 허소(許紹)를 추가 배향하였다. 지금 사우(祠宇)에는 김인후를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허소 유팽로 위백규(魏伯珪) 허계 신이강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65) 영사(永思) : 영사정(永思亭)으로 최형한(崔亨漢, ?~1504)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영암(靈巖), 자는 탁경(卓卿), 아버지는 영원(永源)으로 광주(光州) 출신이다. 1483년(성종14)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1489년(성종20)에 옥과 현감으로 부임하여 영귀정(詠歸亭)을 지었다.

466) 조철영(趙徹永) : 1777~1853.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경여(敬汝), 호는 신전(莘田)이다. 조진명(趙鎭明)의 아들이다. 1801년(순조1) 생원시에 합격하고 1841년(헌종7)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부임하였다.

근자에 영귀서원의 옛날 위차도(位次圖)와 개정한 뒤의 위차도를 전달해 보여준 사람이 있었으므로 비로소 이 예(禮)가 이미 거행되어 영사정이 하서(河西)의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세대의 순서로 자리의 차례를 정한 것으로 이는 본래 원우(院宇)의 통례(通例)이다. 다만 객위(客位)가 주향(主享)을 누르고 있으니 나는 이 점에 대해 끝내 해결하기 어려운 의혹을 가지고 있다.[467] 가령 원우(院宇)는 공체(公體)이니 주객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과 여론으로 보면 끝내 그렇지 않다. 저번에 사림(士林)들을 접견했을 때 이미 사견을 대략 말한 바 있으니, 이제 와서 이전의 말을 되풀이해본들 마려(磨驢)가 옛 자국만 밟는 격이다.[468] 더구나 이미 이루어진 예를 어찌 감히 의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심히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혹시 조금이라도 잘 살피지 못했다가 후세 사람의 지적을 받게 되면 현인을 공경하는 의례에 흠이 된다는 점이다. 지금 춘향(春享)이 아직 멀었으니, 청컨대 마땅히 벼슬하는 사람을 통해 두 고을의 사림들을 지휘하게 하여 이러한 전말(顚末)을 현관(賢關)[469]과 국중의 예법을 아는 학자들에게 널리 상의하게 함으로써 그 처변(處變)하는 예수(禮數)가 최선으로 돌아가도록 힘써 다른 서원의 본보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詠歸書院位次改定事, 頃因光鄕士林, 有所參聞. 其時所聞大槪以爲"永思之移奉北壁, 在所不已, 而一壁之或左或右, 姑未質正"云矣. 近日有以詠歸舊位次圖及改定後位次圖轉示者, 始知此禮旣擧行, 而永思居右於河西矣. 此以世序爲坐次, 固院宇之通例, 但以客位壓主享, 陋見於此終抱難破之惑.

---

467) 객위(客位)가……있다 : 객위는 최형한(崔亨漢)의 위패를 말하고 주향은 김인후(金麟厚)의 위패를 말한다. 영귀서원은 본래 김인후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므로 주향이 되어야 합당한데, 최형한이 옥과 현감으로 있을 때 영귀정(詠歸亭)을 지었고 김인후보다 앞 선 시기의 인물이라 하여, 김인후의 위패보다 높은 오른쪽에 위치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468) 마려(磨驢)가……격이다 : 마려는 빙글빙글 돌면서 맷돌을 끄는 나귀라는 뜻으로, 진전이 없이 겉돌기만 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소식(蘇軾)의 시에 "나의 생계가 졸렬하니, 맷돌 끄는 나귀처럼 돌기만 하는 것을 비웃겠지.[應笑謀生拙, 團團如磨驢.]"라고 하였다.《東坡全集 卷12 伯父送先人下第歸蜀詩云》

469) 현관(賢關) : 현인의 길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보통 성균관(成均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향교나 서원을 말하는 듯하다.

藉曰院宇是公體, 不論主客, 參以人情物議, 終有不然者. 曩接士林時, 旣以私見略有云云, 今雖欲再伸前說, 不過磨驢之舊跡. 況已成之禮, 焉敢容議? 但區區過慮, 今日或有一半未審, 以致來者之指摘, 則其於敬賢之禮, 未爲圓全也. 見今春享尙遠, 請宜自搢紳官指揮兩邑士林, 以此顚末, 博謀於賢關及國中識禮家, 凡其處變禮數, 務歸於盡善, 使他院取法, 豈不休哉?

[문] 본원(本院)이 위판(位版)을 철거하려고 하여 막 묘소(墓所)에 묻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고유문(告由文)은 어떻게 말을 만들며 주관하여 고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김영숙-
本院將掇位版, 方議埋於墓所, 何如? 告由, 當如何措語, 主告者, 以誰爲之? 【金永璹】

[답] 위판을 묘소에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다. 서원의 뒤는 필시 깨끗한 땅일 것이니 하필 다른 곳을 구하겠는가. 만약 오환(五患)[470]을 피하고자 한다면 봉축(封築)이 어떠한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고유문은 그저 "서원의 배향이 장구하여 지금 조정의 명으로 매안(埋安)합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말을 끼워 넣음으로써 일의 체모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주관하여 고하는 자로는 원임(院任)이 아주 좋고 그 다음은 본손(本孫)이 좋으니 알맞게 헤아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位板墓埋, 恐無意味, 院後必是淨潔地, 何必他求耶? 若欲避五患, 當在於封築之如何耳. 告由文但言"院享滋久, 今以朝令埋安", 不可攙入他語, 以傷事面. 主告, 院任甚好, 而其次本孫也, 量宜行之如何?

---

470) 오환(五患) : 묘지로 쓸 때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장소적 고려 사항이다. 정이천(程伊川)은 뒷날 도로가 될 곳, 성곽이 될 곳, 도랑이나 못이 될 곳, 세력가에게 빼앗기게 될 곳, 농지가 될 곳을 오환으로 지적하였다.《二程全書 卷10 葬說》

[문] 서원에 배향하는 위차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훈-
院享位次云云.【金勳】

[답] 서원에 배향하는 위차에 관하여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단지 사견으로 미루어 보건대 만약 다수의 신위를 일시에 모두 배향한다면 서쪽을 상위로 하는 것이 본디 통용되는 예(例)이지만, 만약 이전부터 주벽(主壁)[471]의 본위(本位)가 있어서 옮기기가 곤란하다면 동서(東西)로 나누어 배향하는 것 또한 일의 형편상 혹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동서의 벽으로 위패를 마련하였다면 동서의 상위와 하위에 관한 것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랴만[472] 이치를 궁구함이 끝이 없음을 삼가 알겠다.
院享位次, 曾未有聞. 但以臆見推之, 多位若一時竝享, 則以西爲上, 固通行之例. 若是先有主壁坐位, 難於遷動, 則分享東西, 亦事勢之或不容已也. 旣以東西壁設位, 則東西上下不須論也, 此時豈有此事? 仰見窮理之無所不到.

---

471) 주벽(主壁) : 좌우로 벌려 앉은 자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주(主)가 되는 자리, 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즉 서원(書院)과 사찰(寺刹)의 으뜸 되는 위패를 말한다.

472) 이러한 일이 있으랴만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훼철령(書院毁撤令)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원의 위차를 논할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말인 듯하다.

《답문류편》
答問類編

권15 卷之十五

제6편 논사(論史第六)

제7편 문인을 훈계함
-지구에 대한 것을 덧붙임-(訓門人附知舊第七)

답문류편 발문(答問類編跋)

부록(附錄) 1

부록(附錄) 2

제6편 논사
論史第六

[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473]는 중자(仲子)가 있으니 군위(君位)가 귀착할 곳이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믿고 도망간 것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이을 사람의 유무를 헤아리지 않고 의(義)만을 살핀 것입니까? -정의림-
伯夷叔齊, 以爲仲子在則位有所歸, 故恃此而逃歟? 不計其嗣位者之有無, 而惟義是視歟?【鄭義林】

[답] 순(舜)임금은 몰래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 즐거이 천하를 잊었을 것이니 성인의 심사(心思)에는 허다한 속박이 없다.
舜竊負而逃, 樂而忘天下, 蓋聖人心事, 無許多惹絆.

[문] 공자께서는 세 도읍의 성을 허물려고 하였는데 맹씨(孟氏 맹손씨(孟孫氏))의 신하[474]가 성읍(成邑)을 허물려고 하지 않고 공(公)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명을 거역한 죄가 마땅히 맹씨에게 있는데도 부자(夫子)께서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신 것은 삼가(三家)가 강성하여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박철현-[475]
孔子將隳三都, 而孟氏之臣, 不肯隳郕以拒公師, 逆命之罪當在孟氏, 而夫子不言之者, 得非三家之强有未易制故耶?【朴喆炫】

---

473)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 은(殷)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자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숨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고 한다.《史記 卷61 伯夷列傳》

474) 맹씨(孟氏)의 신하 : 성읍의 읍재인 공렴처보(公斂處父)를 말한다. 그는 성읍을 허물면 제(齊)나라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맹손(孟孫)의 보루가 없어진다는 주장으로 맹손을 설득하여 모르는 척하게 하고는, 정공(定公)이 성읍을 포위하자 이에 항거하였다.《春秋左氏傳 定公12年》

475) 박철현(朴喆炫) : 1831~?. 본관은 진원(珍原), 자는 원식(元式), 호는 원재(遠齋)이다. 고흥에서 살았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노사선생원원록(蘆沙先生淵源錄)》에는 이름이 철현(喆鉉)으로 되어 있다.

[답] 주자(朱子)가 이미 말하였다. 명년(明年)에 공자께서 비로소 국정(國政)에 참여하였으니 당시의 일은 아마 공자님을 통하지 않은 것이다. 《좌전(左傳)》에 "중유(仲由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재(宰)가 되어 삼도(三都)를 허물려 한다.[仲由爲季氏宰, 將隳三都.]"[476]라고 말하였으니 공자께서 건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朱子已言之. 明年孔子始與聞國政, 當日事, 蓋有不由孔子者. 左傳, 仲由爲季氏宰, 將隳三都云云, 非孔子建議而然, 可知.

[문] 전국 시대(戰國時代)에는 열국(列國)을 두루 돌며 임금을 섬겼는데 소진(蘇秦)이나 장의(張儀)[477] 같은 무리는 모두 공리(功利)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다면[478] 비유컨대 모두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나온 형제국과 같아서 두루 돌며 섬기더라도 무방한 것입니까? -정의림-
戰國時, 歷事列國, 如蘇張輩, 皆出於功利之心, 然若有公心人爲之, 則譬如一父之下, 莫非兄弟之國, 歷事無妨否?【鄭義林】

[답]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 공자님도 국경을 나갈 적에 반드시 폐백을 싣고 가셨다.[479]
不須疑, 出疆必載贄.

---

476) 중유(仲由)……한다 : 자로가 계씨의 재가 되어 숙손씨(叔孫氏)의 후읍(邱邑) 성을 허물고 끝내는 비읍(費邑)의 성까지 허물고 성읍(成邑)까지 허물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는 자로가 이 일을 벌인 것이 공자와는 무관하다고 말을 위의 《좌전》의 기록을 들어 주장하는 것이다.《春秋左氏傳 定公12年》

477) 소진(蘇秦)이나 장의(張儀) : 전국(戰國) 시대의 변론가로서, 귀곡자(鬼谷子)의 제자들이었으나, 서로 상반되는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였다. 소진은 합종술(合縱術)을 주장하여 진(秦)나라를 막기 위해 산동(山東)의 여섯 나라가 힘을 합칠 것을 건의하였고, 장의는 연횡술(連橫術)을 주장하여 여섯 나라를 설득해서 진나라를 섬기게 하자고 하였다.

478) 그런 일을 행한다면 :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여러 명의 주군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479) 공자님도……가셨다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서 "공자님은 석 달 동안 섬기는 임금이 없으시면 황황한 듯하여 국경을 나서실 때 반드시 폐백을 지니셨다.[孔子三月無君, 則皇皇如也, 出疆必載質.]"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인데, 공자의 고사를 끌어서 당시에는 예(禮)를 갖춘다면 여러 주군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문] 장량(張良)이 한 고조(漢高祖)에게 천하를 반으로 나누자는 항우(項羽)의 말[480]을 따르지 않도록 권유한 일에 대해 정자(程子)는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고조는 이미 문왕(文王)과 같은 성인의 덕이 없어 천하 사람이 스스로 귀의할 리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어찌 곤궁한 도적을 놓아 주어 훗날에 천하 백성의 우환을 만들겠습니까. -정의림-
張良勸漢祖不聽項羽中分之說, 程子非之. 然漢祖, 旣無文王之德而天下無自歸之理, 則豈有放窮寇而他日生靈之患乎?【鄭義林】

[답] 만약 문왕의 덕이 없어서 천하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귀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성공(成功)을 구하는 마음이지 공심(公心)이 아니다.
若曰無文王之德, 而天下不我歸云爾, 則是求有成之心, 非公心也.

[문] 진 시황(秦始皇)과 진 원제(晉元帝)는 모두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혈통이 아닌데[481]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진(晉)나라와 진(秦)나라의 계통으로 이었으니 이는 여불위(呂不韋)와 우씨(牛氏)에 관한 말이 허탄하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숨긴 것입니까? 안으로는 혈속(血屬)이 아닌데 겉으로 국통(國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찌 추악하지 않겠습니까. -정시림-
秦始皇, 晉元帝, 皆非秦晉血脈, 而《綱目》承秦晉之統, 呂牛之說, 涉虛誕而然耶, 抑隱諱之歟? 內非血屬, 而外冒國統, 豈不醜瀆.【鄭時林】

---

480) 천하의……말 : 형양(滎陽)의 동쪽에서 항우와 한 고조가 오래 대치하면서 항우의 군대가 지치고 굶주리자, 항우는 육가(陸賈)를 한 고조에게 보내 천하를 둘로 나누어 홍구(鴻溝)로부터 서쪽은 한(漢)나라가 차지하고 동쪽은 초나라가 차지하는 약속을 하면 한 고조의 부친 및 처자식을 돌려주고 즉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을 말한다. 참고로 고조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였는데, 이를 반대하는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설득으로 한 고조는 퇴각하는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승기를 굳혔다. 《史記 卷7 項羽本記》《史略 卷2 西漢》

481) 진……아닌데 : 전국 시대 여불위(呂不韋)가 자신이 총애하던 미희(美姬)를 장양왕(莊襄王)에게 바쳤는데, 미희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진 시황(秦始皇)이 되었으므로 진 시황이 영씨(嬴氏)가 아니고 여씨라고 하는 설이 있었고, 진나라 공왕(恭王)의 비(妃) 하후씨(夏侯氏)가 소리(小吏) 우씨(牛氏)와 간통하여 원제(元帝)를 낳았다는 설이 있다. 《史記史 卷6 秦始皇本紀》《晉書 卷6 元帝紀》

[답] 논한 말은 크게 사리(事理)에 맞는 말이 아니다.
所論大非事理.

[문] 형경(荊卿 형가(荊軻))이 진 시황(秦始皇)을 척살하려 한 것을《자치통감강목》에서 도적으로 여겼는데, 장자방(張子房 장량(張良))이 진 시황을 철퇴로 공격한 것은《자치통감강목》에서 포장하였습니다. 일은 같은데 논한 말이 다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정시림-
荊卿刺秦, 而《綱目》盜之, 子房椎秦, 而《綱目》褒之, 事同而異辭, 何也? 【鄭時林】

[답] 형경은 사적으로 잘 보살펴 준 데 대한 사정(私情)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장자방의 경우는 바로 군부(君父)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荊卿, 不過豢養之私, 子房, 乃是君父之讎.

[문] 여동래(呂東萊 여조겸(呂祖謙))가 말하기를 "공빈(孔斌)이 '지금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말은 공자(孔子)의 가법(家法)이 아닌 듯하다."라고 한 것[482]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비록 없더라도 없다고 기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공자께서 각지를 주유하여 공산불뉴(公山不狃)의 부름에 가려고 하시기까지 한 것[483]은 천하에 도를 행할 수 없는 시대는 없으며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 이는 천지가

---

482) 여동래(呂東萊)……것 : 공빈(孔斌)은 공자의 6세손으로, 그는 전국(戰國) 시대(時代) 말에 위 안희왕(魏安釐王)의 재상(宰相)이 되었는데, 안리왕이 천하의 고사(高士)가 누구인가 묻자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일이 있었다. 이 대답에 대하여 송 나라의 여조겸(呂祖謙)이 "공빈의 이 말은 공씨(孔氏)의 가법이 아닌 듯하다."라고 하였다.《資治通鑑 卷6》《東萊集 別集 卷12 讀書雜記1》

483) 공자께서……것은 : 공산불뉴(公山不狃)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사읍(私邑)인 비(費)의 읍재(邑宰)였다. 비 땅을 점거하여 계씨에게 반역을 꾀하고는 공자를 부른 일이 있었는데, 이에 공자는 그의 부름에 응하려고 하였다.《論語 陽貨》

만물을 내는 마음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또 어찌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장담하겠습니까. 이것이 자순(子順 공빈의 자(字))의 말이 가법을 잃은 이유가 되는 듯합니다. -정시림-
呂東萊曰: "孔斌'世無其人'之語, 似非孔子家法.", 以有其人故耶? 雖無而不可必其無耶? 孔子轍環, 至欲往佛公山之召, 以其天下無不可爲之世, 不可爲之人, 此天地生物之心也. 雖不見其人, 而又安知不有其人也? 此子順之語, 所以失家法耶?【鄭時林】

[답] 동래의 말이 매우 좋으니 끝부분에서 논한 말은 대개 이러한 것이다.
東萊之言, 甚好, 末段所論, 大槩如是.

[문] 한 고조(漢高祖)의 남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사호(四皓)[484]를 보고는 태자(太子)를 바꾸지 않았으니 사호는 생각건대 필시 남보다 뛰어난 수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보도(輔導)하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태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지 못하게 하고 고조가 군사를 거느리도록 청한 이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강수은(姜睡隱)[485]은 "장자방(張子房)이 흰 수염을 한 사람을 가짜로 구해왔다."라고 하였는데 혹시 그런 것입니까? -정시림-
以漢高之知人, 見四皓而不易太子, 四皓想必有過人手段. 而後來無一言輔導, 黥布叛時, 使太子不將兵, 請高祖將兵, 惟有此一事. 姜睡隱謂: "子房假得皓鬚來.", 或然耶?【鄭時林】

---

484) 사호(四皓) : 진(秦)나라 말기에 전란을 피해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은거했던 4인의 백발노인으로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甪里先生)을 가리키는데 상산사호(商山四皓)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한 고조가 초빙할 때에는 전혀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 장량의 권유를 받고 나와서 입지가 위태로웠던 태자(太子)를 보필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485) 강수은(姜睡隱) : 강항(姜沆, 1567~1618)으로, 자는 태초(太初)이며 수은은 그의 호이다. 경사백가(經史百家)에 통달하였고 정유재란 때에 남원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싸우다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성리학을 전하였다. 저서에는 《간양록(看羊錄)》, 《수은집(睡隱集)》이 있다.

[답] 설령 진짜 사호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을 것이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판별할 수 있겠는가.
借使眞四皓, 恐無別般動靜, 其眞其假, 孰能卞別.

[문] 가의(賈誼)가 이르기를 "신의 계책을 시행해 주신다면 반드시 선우(單于)[486]의 목에 올가미를 매어 그 목숨을 제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487] 만약 문제(文帝)가 그 말대로 시행했다면 과연 이대로 되었겠습니까? -정시림-
賈誼云: "行臣之計, 請必係單于之頸, 而制其命.", 使文帝行之, 則果能致此耶?【鄭時林】

[답] 젊은이의 호기(豪氣)이다.
少年豪氣.

[문] 직불의(直不疑)가 금(金)을 갚은 일[488]은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닌 듯하니 만약 동료 낭관이 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금을 훔쳤다는 오명을 어디에서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맹자(孟子)의 신을 훔친 것에 대한 말[489]을 살펴보면

---

486) 선우(單于) : 한(漢)나라 때 흉노족을 다스리던 우두머리의 칭호이다.

487) 가의(賈誼)가……하였는데 : 가의(賈誼)가 한 문제(漢文帝)에게 올린 〈치안책(治安策)〉에 "반드시 선우(單于)의 목목에 올가미를 매어 그 목숨을 제압하고, 중항열(中行說)을 무릎 꿇려 그의 등을 매질함으로써, 흉노의 무리 전체가 오직 상의 명령을 따르게 하겠습니다.[請必繫單于之頸而制其命, 伏中行說而笞其背, 擧匈奴之衆唯上之令.]"라는 말이 나온다. 《漢書 卷48 賈誼傳》

488) 직불의(直不疑)……일 : 한 문제(漢文帝) 때 직불의가 낭관(郎官)으로 있을 적에, 동료 낭관 중에 고향에 가는 자가 다른 동료 낭관의 금(金)을 잘못 가지고 떠났는데, 이윽고 그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직불의를 의심하자, 그는 두말없이 자기가 가져갔다고 사과하고 즉시 금을 사서 갚아 주었다. 그런데 뒤에 고향 갔던 동료 낭관이 돌아와서는 자기가 금을 가져갔다며 금을 돌려주자,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 《漢書 卷46 直不疑傳》

489) 맹자(孟子)의……일 : 맹자가 등(滕)나라에 가서 상궁(上宮)에 묵고 있을 적에, 관인(館人)이 들창 위에 신을 두었다가 잃어버리고는 맹자의 종자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니, 맹자가 '그대는 이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정의림-
直不疑償金事, 似非中理, 若非同舍郎還金, 則盜金之名, 何處可白乎? 觀孟子竊屨之言, 可知.【鄭義林】

[답] 그야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正宜深思.

[문] 재상(宰相)이 몸소 자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출행(出行)했을 때에 사람이 싸우다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면 비록 친히 심문하지는 않더라도 그 곡절을 물어서 담당 관리가 혹시 오인하는 것에 대비를 하였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백성이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490] 그러나 병길(丙吉)은 물어보지 않았으니 경조윤(京兆尹)이 혹시나 오인하여 억울함이 생기게 하였다면 이것이 어찌 자잘한 일이겠습니까. -정시림-
宰相不親細事, 固然, 出行時, 見人爭殺, 則雖不親鞫, 當問其曲折以備主司者之或誤, 然後民無冤枉. 而丙吉不問, 尹京者, 或誤使有冤, 則豈細事耶?【鄭時林】

[답] 가벼이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有難輕議.

[문] 이윤(伊尹)은 한 지아비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우리가 신발이나 훔치러 왔다고 보는가.['子以是爲竊屨來與?'라고 말했다고 한다.《孟子 盡心下》

490) 출행(出行)했을……것입니다 : 한(漢)나라의 재상 병길에 관한 고사이다. 병길은 길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반면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가 혀를 빼고서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는 소가 몇 리나 왔는지 물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병길은 싸움을 하다 죽은 사람은 경조윤(京兆尹)의 소관이고, 소가 더위가 오기 전에 헐떡이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니 이는 재상의 직분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보인다.《漢書 卷74 丙吉傳》

책임으로 여겼고,[491] 병길(丙吉)은 살인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을 대체(大體)를 아는 것으로 여겼는데[492] 두 사람의 마음에 관해 언급할 만한 과불급(過不及)이 또한 있습니까? -정의림-
伊尹, 以匹夫不獲爲己責, 丙吉以不問殺人爲識大體, 未知二子之心, 亦有過不及之可言?【鄭義林】

[답] 이윤의 마음으로 병길의 일을 행할 것이다.
以伊尹之心, 行丙吉之事.

[문]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여후(呂后)가 종묘사직을 거의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고조(高祖)의 사당에 배향하지 않았는데, 만약 광무제가 효혜제(孝惠帝)의 혈손(血孫)이라면 혐의(嫌疑)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493] -정희원-
漢光武, 以呂后幾危宗社, 不配高廟, 使光武爲孝惠血孫, 得無嫌耶?【鄭禧源】

[답] 이는 실로 난처한 일이다. 당(唐)나라 무후(武后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일에 관해 선유(先儒)의 여러 논의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

491) 이윤(伊尹)은……여겼고 : 《서경》 〈열명(說命)〉에 "한 지아비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一夫不獲, 則曰時予之辜.]"라고 한 이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492) 병길(丙吉)은……여겼는데 : 병길은 길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반면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가 혀를 빼고서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는 소가 몇 리나 왔는지 물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병길은 싸움을 하다 죽은 사람은 경조윤(京兆尹)의 소관이고, 소가 더위가 오기 전에 헐떡이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니 이는 재상의 직분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漢書 卷74 丙吉傳》

493) 한(漢)나라……있겠습니까 : 《후한서(後漢書)》〈광무제기(光武帝紀)〉 중원(中元) 원년조의 기록에 따르면 광무제는 한 고조(漢高祖)의 비인 여후(呂后)를 한나라를 위태롭게 한 황후라 하여 종묘에서 끌어내려 원(園)으로 따로 제사지내게 하고 한나라의 3대 왕인 효문제(孝文帝)의 모후(母后) 박희(薄姬)를 고조의 정비로 인정해 종묘에 그 신주를 올려 배향하였다. 여기 정희원의 질문은 아무래도 광무제가 여후가 낳은 효혜제를 계승한 혈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후를 종묘에서 내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此果難處之事, 唐武后事, 先儒議論, 在綱目, 可考也.
[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한 헌제(漢獻帝)[494]가 사망한 곳에서 특별히 "위 산양공이 졸하다.[魏山陽公卒]"라고 썼고 또 장사(葬事)한 곳에 특별히 "위나라가 효헌황제를 선릉에 장사하였다.[魏葬孝獻皇帝于禪陵]"라고 썼습니다. "공(公)"이라고 쓰고 "졸(卒)"이라고 쓴 것은 사직(社稷)을 위해 죽지 않고 공(公)에 봉작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일을 폄하한 것이고, "제(帝)"라고 쓰고 "능(陵)"이라고 쓴 것은 역적 조비(曹丕)가 제위(帝位)를 찬탈한 죄를 주벌하고 헌제가 오히려 천자가 됨을 드러낸 것입니까? -정시림-
《綱目》, 於漢獻帝卒處, 特書'魏山陽公卒.', 又於葬處, 特書'魏葬孝獻皇帝于禪陵.', 公之卒之, 貶其不死社稷, 而甘受公位之封, 帝之陵之, 誅曹賊之簒位, 而著獻帝之猶爲天子耶?【鄭時林】

[답] 그렇다.
然.

[문]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이 이윤(伊尹)과 여상(呂尙 강태공(姜太公))의 포부가 있었다면 소열황제(昭烈皇帝)가 덕을 닦고 인(仁)을 행하도록 보좌하기를 이윤과 여상이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을 보좌하는 것처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군대를 출동시켜 중원을 취하기를 도모하였으니 이는 어째서입니까? -정시림-
孔明有伊呂抱負, 則其佐昭烈, 修德行仁, 當如伊呂之輔佐湯文, 而乃以兵甲圖進取, 何也?【鄭時林】

---

494) 한 헌제(漢獻帝) : 중국 후한(後漢)의 마지막 황제로, 이름은 협(協)이다. 영제(靈帝)의 아들로, 영제가 죽자 동탁(董卓)이 왕위에 있던 소제(少帝)를 쫓아내고 당시 9살이던 헌제를 진류왕(陳留王)에 봉하였다. 후에 조조(曹操)의 옹립을 받았지만 실권이 없었고, 건강(建康) 원년(220)에 조조가 죽고 아들 조비(曹丕)가 한나라를 대신해 칭제(稱帝)함으로써 폐위되어 산양공(山陽公)이 되고, 후한은 마침내 멸망하였다.

[답] 탕왕(湯王)이 첫 번째 정벌을 갈(葛)나라로부터 시작하였고,[495] 문왕(文王)이 밀(密)나라를 정벌하고 숭(崇)나라를 정벌하였으니, 어찌 일찍이 군대를 쓰지 않았던가.
一征自葛, 伐崇伐密, 何嘗不用兵甲耶?

[문] 소열황제(昭烈皇帝)가 손권(孫權)을 정벌하여 육손(陸遜, 183~245)에게 패하자,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효직(孝直)[496]이 살아 있었다면 주상이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공명이 스스로 간하여 제지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효직을 언급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공명이 수행을 하였다면 필시 그런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촉(蜀)을 지킬 사람이 부족해서 였습니까? -정시림-
昭烈之征孫權也, 爲陸遜所敗, 孔明歎, 曰: "孝直若在, 必能制主上東行.", 孔明自不能諫止, 而以已亡之孝直爲言, 何也? 孔明隨之, 則必不至如是, 以其守蜀之乏人耶?【鄭時林】

[답] 공명은 요컨대 필시 스스로 실착(失錯)할 곳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았으니 후세 사람이 억지로 헤아려 따라갈 수 있는 바가 아니다.
孔明, 要必有自知失着處, 故其言如此, 非後人臆料所及也.

[문] 《자치통감강목》의 대서(大書)[497]에 "황태후 무씨(武氏 측천무후(則天武

---

495) 탕왕(湯王)이……시작하였고 :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서경》에 '탕 임금이 처음 정벌을 갈(葛)나라로부터 시작하였다.[書曰, 湯一征, 自葛始.]'"라고 한 말이 보이고, 《시경》 〈황의(皇矣)〉에 문왕이 숭(崇)나라의 성을 치는 것에 관한 말이 있고, 같은 편에 밀(密) 땅 사람들이 주(周)나라에 대항하여 완(阮)을 침략하기 위해 공(共)으로 갔을 때 문왕이 군대를 정돈하여 침략하러 가는 무리를 막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496) 효직(孝直) : 촉한(蜀漢) 법정(法正)의 자(字)이다. 법정은 모책(謀策)에 능하였는데, 유비가 촉한(蜀漢)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유비의 신임을 받았으나 45세에 죽었다.

497) 대서(大書) : 대자(大字)와 같은 말로, 강목체(綱目體)의 강(綱)에 해당되는 큰 글씨로 쓴 부분을

后))가 붕(崩)하였다.[皇太后武氏崩]"라고 하였는데 "붕(崩)" 자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唐)나라를 제거하고 주(周)나라를 세움으로써 당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당실(唐室)의 자손을 거의 다 살해하여 여주(女主)로서 천하에 군림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큰 변고로, 찬역(簒逆)을 저지른 것이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王莽)과 다름이 없고 그 변괴는 더욱 심한 점이 있습니다. 도적(盜賊)에게는 "사(死)"라고 쓰는 예(例)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데 "붕"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입니까? -정시림-
《綱目》大書, '皇太后武氏崩.', 崩字有可疑. 去唐爲周, 變其制度, 殺唐子孫殆盡, 以女主君天下, 是天地之大變, 其爲簒逆, 與新莽無異, 而其變異尤有甚焉. 以盜賊書死之例, 待之宜也, 書崩何也?【鄭時林】

[답] 《춘추(春秋)》에서 "공이 즉위하였다.[公卽位.]"라는 말과 관련해서 그 뜻과 같게 하여 적는 경우가 있다.[498]
《春秋》, 公卽位, 有如其意而書之者.

[문] 유평(劉平)이 굶주린 도적(盜賊)에게 잡혔을 때에 도적이 그를 해치려고 하니 노모에게 돌아가 아뢴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과연 다시 도적에게 갔으니[499] 이는 신의를 잃을까 해서입니까? 미생(尾生)의 신의[500]와 같은

말한다.

498) 춘추(春秋)에서……있다 : 환공(桓公) 원년 "원년 봄 주왕 정월에 공이 즉위하였다.[元年春王正月, 公卽位.]"라는 《춘추》의 경문에 대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군주를 시해하고 계승한 것은 즉위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즉위'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뜻과 같게 한 것이다.[繼弑君不言卽位, 此其言卽位, 何?, 如其意也.]"라고 한 말이 보이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주에 "임금을 시해하여 즉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뜻과 같게 하여 그 악함을 드러내었다.[弑君欲卽位, 故如其意, 以著其惡.]"라고 하였다.

499) 유평(劉平)이……갔으니 : 유평은 동한(東漢) 초군(楚郡) 팽성(彭城) 사람으로, 자가 공자(公子)이고 이름이 '광(曠)'었는데, 뒤에 '평(平)'으로 고쳤다. 이 이야기가 《후한서》 권69 〈유평전(劉平傳)〉에 보인다.

500) 미생(尾生)의 신의 : 융통성이 전혀 없이 약속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 〈도척(盜跖)〉에, 미생이란 사내가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침 큰비가 내려 물이

듯합니다. -정시림-
劉平, 爲餓賊所止, 而欲害之, 以歸稟老母更來爲說, 而果再往, 爲其失信耶? 似與尾生之信同.【鄭時林】

[답] 그 마음이 전일(專一)한 것은 경외할 만하나 깊이 논할 필요는 없다.
其心之專一, 可畏, 不須深論也.

[문] 장홍(臧洪)[501]이 죽을 때에 그 휘하 7천여 인 중에 한 사람도 배반하는 자가 없었으니 필시 의(義)로써 사람을 감동시킨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과연 제자리를 얻은 것입니까? -정시림-
臧洪之死也, 其下七千餘人, 無一人離畔, 必有以義激人者, 而其死也, 果得所耶?【鄭時林】

[답] 한때의 기개와 의로움이 격발한 것이니 어찌 완비(完備)하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一時氣義所激, 何可責備.

[문] 석륵(石勒)이 하남(河南)의 선묘(先墓)를 보수하자 조적(祖逖)이 은덕에

불어나는데도 떠나지 않고 교각(橋脚)을 안고 기다리다가 익사했다는 고사가 있다.

501) 장홍(臧洪) : 후한(後漢) 때 사람이며, 자는 자원(子源)이고 광릉군(廣陵郡) 사양현(射陽縣) 사람이다. 효렴(孝廉)에 천거되었으며, 태수 장초(張超)가 불러서 공조(功曹)로 삼자 장초를 설득하여 여러 고을과 연합하여 동탁(董卓)을 토벌하였다. 나중에 원소(袁紹)의 휘하에서 청주 자사(青州刺史)를 지냈으나, 원소가 그의 능력을 꺼려서 동군 태수(東郡太守)로 좌천시켰다. 이때 조조(曹操)가 옹구(雍丘)에서 장초를 포위하였으므로 장홍이 원소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원소가 허락하지 않아 결국 옹구가 조조에게 함락되고 이에 장홍은 원소에게 원한을 품고 동무양(東武陽)에서 원소에게 항거하다가 생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성에서 1년이 넘게 포위되어 있을 때 애첩(愛妾)을 죽여 장사(將士)를 먹이고, 남녀 7, 8천명이 서로 뒤엉켜 죽으면서도 도망가고 배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三國志 卷7 魏志 臧洪傳》

감격하였고,[502] 주자(朱泚)가 장안(長安)의 백구(百口)를 돌보았으나 이성(李晟)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으니,[503] 두 사람의 마음에 또한 공(公)과 사(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의림-
石勒修河南先墓, 而祖逖德之, 朱泚撫長安百口, 而李晟不以爲恩, 二子之心, 亦有公私之異歟?【鄭義林】

[답] 일에 완급(緩急)이 있는 것이다.
事有緩急.

[문] 실달모(悉怛謀)가 토번(吐蕃)의 신하로써 당(唐)나라에 투항한 것을 두고 이덕유(李德裕)는 받아들이고 우승유(牛僧孺)는 거절하였습니다.[504]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은 우승유를 옳게 여기고 치당(致堂 호인(胡寅))은 이덕유를 옳게 여겼는데 어느 설을 따라야 합니까? -정의림-
悉怛謀, 以吐蕃之臣, 降于唐, 德裕受之, 僧孺拒之. 溫公是僧孺, 致堂是德

---

502) 석륵(石勒)이……감격하였고 : 조적은 동진(東晋) 때 사람으로 자는 사치(士稚)이고, 석륵은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 후조(後趙)의 개국 황제인 명제(明帝)이다. 조적이 예주 자사(豫州刺史)가 되어 북벌을 주장하였으며 몇 년 만에 황하 이남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후조의 진영(鎭營)에서는 조적에게 귀부(歸附)하는 자가 많아 후조의 국경이 줄어들었다. 이에 석륵은 유주(幽州)로 내려가 조적의 조부와 부친의 묘를 수축하여 지켜주고, 또 동건(童建)이란 자가 조적을 배반하고 투항하였는데 그의 목을 베어 보냄으로써 유화책을 썼다. 조적이 그의 은덕에 감격하여 귀부하는 후조 사람들을 받아 주지 않고, 후조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제장(諸將)을 단속하니 변경이 차츰 안정되어 갔다고 한다.《資治通鑑綱目 晉紀 元帝 3年》

503) 주자(朱泚)가……않았으니 : 당 덕종(唐德宗) 때 반적(叛賊) 요영언(姚令言)과 주자(朱泚)가 황제를 참칭하고 수도 장안(長安)을 침범하자 명장 이성(李晟)이 주자를 토벌하기 위해 봉천(奉天)에 주둔해 있었다. 주자가 이성의 핍박을 풀려고 장안에 있는 이성의 집안 식구 백 명 등을 잘 대우하고는 이성과 가까운 사람을 시켜 가서(家書)와 함께 그 사실을 전하게 하였는데, 이성은 전달한 자를 죽이고 그 뒤 마침내 주자를 장안에서 쫓아내어 장안을 수복하였다.《資治通鑑 卷230 唐紀46》

504) 실달모(悉怛謀)가……거절하였습니다 : 태화(太和) 5년(831)에 토번(吐藩)의 유주성 수장(守將)인 실달모가 항복을 청하였는데, 당시 서천 절도사로 있던 이덕유는 이들을 받아들여 유주성을 점거한 뒤 이를 기회로 토번을 공격하는 것이 이롭다고 조정에 보고하여 대부분의 조정 관료들이 이덕유의 주장에 찬성하였지만, 이덕유와 정적(政敵)이던 재상 우승유(牛僧孺)는 새로 토번과 맹약을 맺었으므로 어길 수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반대하였다.《舊唐書 卷174 李德裕列傳》

裕, 當從何說?【鄭義林】

[답] 나는 치당을 따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적에 대응할 계책이 있은 뒤라야 옳을 것이다.
吾則從致堂, 然而必先有應敵之策, 而後可.

[문] 한 위공(韓魏公 한기(韓琦))[505]이 자객을 보고 잠자리에 들며 말하기를 "너는 내 머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였는데,[506]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시림-
韓魏公, 見刺客就枕曰: "汝携予首去.", 知其不害而如是耶?【鄭時林】

[답] 이렇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不如是處之, 處得如何?

[문] 서중거(徐仲車 서적(徐積, 1028~110))가 옷을 팔아 금값을 갚자 책 주인이 희언(戱言)으로 스스로 사죄하였는데 서중거는 오히려 받지 않았으니[507] 옳지 않은 듯합니다. 옛날에 말을 잃어버린 자가 탁무(卓茂)[508]의 말을 보고 자기의

505) 한 위공(韓魏公) : 1008~1075. 자가 치규(稚圭), 호가 공수(贛叟)인데, 1027년(인종5) 진사시에 급제하고 벼슬이 우복야(右僕射)에 이르렀다. 인종(仁宗) 경력(慶曆) 연간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였으며 범중엄과 함께 서하(西夏)의 침략을 막았으나,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과 대립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다.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지고 시호가 충헌(忠獻)이다.

506) 한……하였는데 : 한기가 연안(延安)에 머무를 때, 밤에 비수를 들고 침범한 자객을 보고는 일어나 앉아 누가 시켰느냐고 물은 뒤 다시 자리에 누우면서 한 말이다.《宋名臣言行錄 後集 卷1 韓琦》

507) 서중거(徐仲車)가……않았으니 : 서중거는 서적(徐積)으로 송(宋)나라 때의 인물이다. 그가 서울로 들어와 어떤 사람에게 책을 빌려 보고 저녁에 돌려주었는데, 책 주인이 그 안에 금엽(金葉)이 있었다고 속였다. 서적이 공손히 인사한 뒤 옷을 팔아 금값을 갚으니, 이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불만을 터뜨리자 책 주인이 억지로 돌려주게 되고, 서적은 끝내 받지 않았다고 한다.《宋名臣言行錄 後集 卷14 徐積節孝先生》

508) 탁무(卓茂) : 전한(前漢) 말기의 유명한 지방관이다. 밀현 영(密縣令)이 되어 선정(善政)을 베풀어

말로 여기자 탁무가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아니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시림-
徐仲車賣衣償金, 而冊主以戱言自謝, 仲車猶不之受, 似不可. 昔有失馬者, 見卓茂之馬以爲己馬, 卓茂與之曰: “若非君馬, 須還之.”, 此可謂得宜也. 【鄭時林】

[답]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듯하다.
恐合如是.

[문] 사첩산(謝疊山 사방득(謝枋得, 1226~1289))은 성(城)이 함락되던 때에는 피신을 하였다가 징소(徵召)하는 때에는 목숨을 바쳤으니[509] 만약 목숨을 바친 한 가지 의절이 없었다면 피신한 일이 아마 소인(小人)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의림-
謝疊山, 脫身於城敗之日, 而致命於徵召之日, 若無致命一節, 則脫身之事, 或不爲小人畏死之資歟?【鄭義林】

[답] 잡혀서 도망한 것은 문산(文山)[510] 또한 하였다.
被執而逃, 文山亦爲之.

[문]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이 연옥(燕獄)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죽지

인망이 높아, 광무제(光武帝)가 한(漢)나라를 중흥하자마자 조정에 불러 등용한 인물이다.《後漢書 卷55 卓茂列傳》

509) 사첩산(謝疊山)은……바쳤으니 : 사첩산은 사방득(謝枋得)이니 첩산은 그의 호이다. 송(宋)나라 말의 충신으로, 원(元)나라 군사와 신주(信州)에서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건녕(建寧)의 당석산(唐石山)으로 피신하였으며, 송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민중(閩中)에서 원나라 대도(大都)로 잡혀 와서 출사(出仕)를 누차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다 끝내 먹지 않다가 죽었다.《宋史 卷425 謝枋得列傳》

510) 문산(文山) : 남송(南宋) 때의 충신인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호이다. 덕우(德祐) 초에 원(元)나라가 침입해 오자 그는 가산(家産)을 털어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하여 신국공(信國公)에 봉해졌고, 그 후 원나라 장군 장홍범(張弘範)에게 패하여 3년 동안 연옥(燕獄)에 수감되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였다.《宋史 卷418 文天祥列傳》

않고[511]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치희(金致熙)[512]는 말하기를 "문산의 충의(忠義)는 우주에 흘러넘치니 어찌 목숨을 버리는 것을 절개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겠는가. 이는 대개 내가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내가 송(宋)나라를 섬기는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떠합니까? -박철현-

文山燕獄三年, 未知不死將欲何待? 金致熙, 以爲'文山忠義, 橫亘宇宙, 豈以判一死爲盡節之地? 蓋就吾有生之日, 盡吾事宋之心也.', 此說如何?【朴喆炫】

[답] 굽히지 않는 것을 절개로 삼는 것이니 어찌 일찍이 빨리 죽는 것을 절의로 여기겠는가. 더구나 하늘의 뜻은 알 수가 없으니 송나라에 복을 내릴 날이 절대로 없을지를 어찌 장담하겠는가.

不屈爲節, 何嘗必以速死爲節? 况天意不可知, 安知必無祚宋之日乎?

[문] 북방(北方)은 유벽(幽僻)하고 어두워 "촉룡(燭龍)"의 설[513]이 있기까지 한데, 결골(結骨)[514]은 그 나라에 양의 어깨살이 익을 시간이면 해가 나온다는 말[515]이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민의행-

---

511) 문산(文山)이……않고 : 문천상이 덕우(德祐) 초기에 원(元)나라가 침입해 오자 가산(家産)을 털어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하여 신국공(信國公)에 봉해졌고, 그 후 원나라 장군 장홍범(張弘範)에게 패하여 3년 동안 연옥(燕獄)에 수감되어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였다.《宋史 卷418 文天祥列傳》

512) 김치희(金致熙) : 1828~?. 기정진의 문인으로 자는 장여(章汝), 호는 애일재(愛日齋),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낙안(樂安)에 살았다.

513) 촉룡(燭龍)의 설 : 촉룡은 촛불을 입에 물고 비춰 준다는 용이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천문(天問)〉에 "태양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텐데, 촉룡이 어째서 비춰 주는가.[日安不到, 燭龍何照?]"라고 하였는데, 후한(後漢) 왕일(王逸)의 해설에 "하늘의 서북쪽에 해가 없는 암흑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용이 촛불을 입에 물고 비춰 준다.[天之西北, 有幽冥無日之國, 有龍銜燭而照之也.]"라고 하였다.

514) 결골(結骨)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의하면, 당(唐)나라 초기에 '골리간(骨利幹)'을 결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芝峯類說 卷2 諸國部 外國》이에 따르면 결골과 골리간은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515) 양의……설 :《구당서(舊唐書)》에 "골리간(骨利幹)이 회흘(回紇)의 북방, 한해(瀚海)의 북쪽에 있는데……낮은 길고 밤은 짧아서 해가 진 뒤 하늘에 노을이 붉어졌을 때 양의 어깨를 굽기 시작하여

北方幽暗, 至有燭龍之說, 而結骨, 其國有羊胛日出之說, 何也?【閔誼行】

[답] 하루 12시(時) 내내 햇빛은 그대로 빛나지만 밤에는 지륜(地輪)에 가려져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땅이 모서리지고 뾰족한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 많지 않아 더러 어깨 살을 구워 익힐 짧은 시간 만에 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다만 골리간(骨利幹)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방의 유벽하고 어두운 곳은 바로 심하게 가려진 곳이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516]

一日十二時, 日光自若, 而夜則爲地輪所蔽, 而不見耳. 故地角尖處, 其蔽不厚, 容有炙胛日出者, 但骨利幹則未必然. 北方幽暗, 乃是蔽深處, 不可以此疑彼.

겨우 익자마자 동쪽의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니 이는 해가 출입하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다.[骨利幹, 居回紇北方瀚海之北……晝長而夕短, 旣日沒後天色正曛, 煮一羊胛纔熟, 而東方已曙, 蓋近日出入之所云.]"라고 하였다.《舊唐書 卷35 志15 天文上》

제7편 문인을 훈계함 -지구에 대한 것을 덧붙임-
訓門人知舊附第七

[문] 제가 《효경(孝經)》의 "효도에 시작과 마침을 잘하지 못한다.[孝無終始.]" 라는 구절을 읽을 때면 일찍이 책을 덮고 울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기용-
璣容, 讀孝經'孝無終始', 未嘗不廢書泣云云.【閔璣容】

[답] 말한 바 사정은 눈에 가득하여 목이 메니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인정(人情)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래도록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남겨둔다면 또한 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 가까울 것이니 두 가지 중에서 내 무엇으로 그대를 위해 도모해 준단 말인가. 보내 준 편지에서 인용한 "효도에 시작과 마침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 구절의 "시작과 마침[終始]" 두 글자에 관해 나의 얕은 견해로 무게를 헤아려 보자면 중점이 "마침[終]"이라는 글자에 있으니, 성인(聖人)께서는 대개 시작은 있으나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자를 두고 이 가르침을 내리신 것이다.
시작이 있는 자도 오히려 마침이 없을까 걱정하는데, 하물며 내가 이미 시작에 흠결이 있고 또 마치는 것에서도 빠뜨림이 있다면 죄를 지음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마땅히 자신을 위해 도모해야 할 것은 "마침[終]" 한 글자 외에는 없을 듯하다. 원망하고 허물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바꾸어서 두렵게 여기고 자신을 닦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음으로써 매 순간이 실로 어버이에게 흐르고 통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여 반쪽이라도 잘 수습하는 때가 곧 반쪽이라도 수고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 비록 앞에 빠진 것을 뒤따라가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으나 당일(當日)에 허물을 더하는 것은 거의 면할 것이다. 그대가 힘써야 할 것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듯한데, 이와 같이 한다면 잡아 지키는 것이 반드시 굳건해지고 의(義)를 보면 반드시 용감해 질 것이니 어찌 다시 전일에 하다가 만 것처럼 하겠는가.
所言情事, 滿目嗚咽. 人無此心則非人情也, 長以此心留置方寸間, 則亦近於不知命者. 二者之間, 吾何以爲賢者謀哉? 來書所引"孝無終始"一句, "終

始”二字, 以吾淺見, 計其斤兩, 重在“終”字, 聖人蓋爲有始無終者, 發此訓也. 有始者, 猶患無終, 况吾旣缺於始, 又闕於終, 則其罪負當復如何? 然則賢者所當自爲謀, 恐不在一箇終字之外. 轉怨咎悲悔之情, 爲恐懼修省之心, 一喘一息, 實流通於親而無間. 一半分收拾得好時, 便報一半分劬勞之恩, 雖不足以追補前闕, 庶免當日添咎, 賢者之所當勉者, 恐無出此矣. 若是則持守必牢固, 見義必勇, 豈復如前日之半上落下乎?

[문] 저는 일찌감치 고아가 되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한마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노응현[517]-
應鉉早孤失學, 乞賜一言敎誨.【盧應鉉】

[답] 너의 선친(先親)이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성취하지 못한 채 불행히도 일찍 돌아갔다. 너의 오늘날 계책으로는 단지 하루 동안에 두세 차례 돌아가신 부친의 숙원을 생각하는 것뿐이니, 그렇게 한다면 저절로 하루를 함부로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과연 남에게 달린 일이겠는가.
汝之先親, 有志未就, 不幸早世, 爲汝今日之計, 但一日之間, 思亡親宿心二三次, 則自不放過一日矣. 此果在人之事乎?

[문] 비록 품팔이를 하고 신을 삼고 베를 짜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천직(天職)임을 반드시 안다면 원망이 없을 수 있고, 비록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천록(天祿)임을 반드시 안다면 분수에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민기용-
雖賃傭捆織, 必知其爲天職, 則可以無怨, 雖弊衣惡食, 必知其爲天祿, 則可以安分乎?【閔璣容】

---

517) 노응현 : 1852~?.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공서(公瑞), 호는 풍남(楓南)이다. 옥계(玉溪) 노진(盧禛)의 후손이고, 남원에서 살았다. 기정진의 문인이다.

[답] 매우 좋다.
甚好.

[문] 성정(性情)의 선함과 이목(耳目)의 쓰임새와 수족(手足)의 이로움이 모두 내가 자족하는 바이니 이것을 족함으로 삼는다면 근심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지극한 즐거움이 육친(六親)이 무고(無故)함만 한 것은 없으니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군자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민기용-
性情之善, 耳目之用, 手足之利, 莫非吾所自足. 以此爲足, 則可以忘憂乎? 天下之至樂, 莫過於六親. 以此爲樂, 則可以知君子之樂乎?【閔璣容】

[답] 매우 가까울 것이다.
切近.

[문] 태산(太山)이 묵묵히 있는 것처럼 덕을 이룬 사람은 정(靜)하고, 장천(長川)이 흐르는 것처럼 도를 체득한 사람은 동(動)한 법이니 그 이치를 미루어 살펴보면 천하의 일이 동정(動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자(小子)가 기뻐하여 그것을 체득하여 배우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배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기용-
太山默而成德者靜也, 長川流而體道者動也, 而推觀其理, 則天下之事不外乎動靜. 故小子悅之, 欲體以學之者久矣, 未知其學之之方.【閔璣容】

[답] 산과 내는 지세가 같지 않고 동과 정은 형세가 같지 않은데,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우느라 두 갈래로 나누어 행한다면 수고롭기만 하고 공효가 없을까 나는 두렵다. 내가 들은 바로는 욕심이 없으면 정(靜)하니 이 정은 동(動)할 때도 정하며, 주재(主宰)가 있다면 동하니 이 동은 정할 때도 동하다.

이와 같이 행한다면 동과 정이 한 근원이라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소란[518] 이 없을 것이니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山川不同地, 動靜不同形, 學此學彼, 兩歧二頭, 吾恐其勞而無功. 以吾所聞, 無欲則靜, 是靜也, 動亦靜, 有主則動, 是動也, 靜亦動也. 若是則動靜一原, 無騎驢覓驢之擾, 試思之如何?

[문] 색목(色目)을 논하는 것은 근래 학자의 고질병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좇아 학문에 전력한 뒤로 타인이 모두 저더러 논의가 바뀌었다고 지목하니 너무나도 가소롭습니다. 사우(師友)의 관계에서는 어진 사람을 따르는 법이니 어찌 색목에 구애되겠습니까. 특별히 한마디 말씀을 내려주시어 명백하게 깨뜨려 주십시오. -우기주-
色目之論, 近來學者之痼疾也. 小子自從事先生, 外人皆以變論指目, 極可胡笑. 師友之間, 惟賢是從, 豈拘色目乎? 特垂一言, 明白打破.【禹琪疇】

[답] 옛사람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옛사람은 본래 색목을 논한 것이 없었고, 지금 사람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지금 사람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欲行古人之道, 則古人本無色論也, 欲行今人之道, 則往問于今人.

[문] "군자(君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偏黨)하지 않으며, 소인(小人)은 편당(偏黨)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519] 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최유윤-[520]

---

518) 나귀를……소란 : 송(宋)나라 도원(道原)의《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권28에 "불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살피지 않는다면 실로 나귀를 타고서 다시 나귀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誦經不見有無義, 眞似騎驢更覓驢.]"라고 한 데서 나온 불교의 말인데, 주자가 일찍이 편지에서 이 표현을 차용해 쓴 적이 있다.《晦庵集 卷64 答或人》

519) 군자(君子)는……않는다 :《논어》〈위정(爲政)〉에 보이는 공자의 말이다.

520) 최유윤(崔惟允) : 1809~1877.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성진(誠進), 호는 몽관(夢關)이다. 10여 년 간 성리학을 독학(獨學)하였고, 송내희(宋來熙), 송달수(宋達洙), 기정진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만년에는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云云.【崔惟允】

[답] 색목(色目)에 관해서는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色目, 寧欲無言.

[문] 안우산(安牛山)[521]이 일찍이 말하기를 “당론(黨論)에 힘쓰고 당인(黨人)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모두 점잖은 덕을 갖춘 군자가 아니다.”[522]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편당(偏黨)을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여 매번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시역(弑逆)의 무리라고 여긴다.”[523]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세가 쇠퇴하여 당색이 나뉜 뒤로 현달한 벼슬이 있지 않았으나 또한 이른바 “당인으로서의 지목(指目)”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대오를 따르고 방식을 지켰지만 마음은 실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仇敵]”라고 한 것은 과격한 논의이지만, “점잖은 덕을 갖춘 군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훈-
安牛山嘗曰: “務黨論親黨人, 皆非雅德君子.” 又曰: “疾偏黨如仇敵, 每言及必以爲弑逆之徒.”, 勳家勢衰替, 自分黨後, 未有顯仕, 而亦不無所謂指目, 未免隨行遵例而心實不然. 仇敵云云, 是過激之論, 非雅德君子則必矣. 未知如何.【金勳】

임곡(林谷)에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자신의 서당에서 공부하던 정재규를 기정진의 문하로 이끌어 주었다. 저서에《몽관집(夢關集)》이 있다.

521) 안우산(安牛山) :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이니 우산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또 다른 호는 은봉(隱峰)으로 전라도 보성 출신이다. 박광전(朴光前)과 성혼(成渾)의 제자이며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효종 초에 공조 좌랑,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공조 참의가 되었다.《은봉전서》,《항의신편(抗義新編)》,《호남의록(湖南義錄)》,《혼정편록(混定編錄)》,《기묘유적(己卯遺蹟)》 등을 남겼다.

522) 당론(黨論)에……아니다 : 이는 안방준의 말이 아니라 이식(李植)이 안방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고, 안방준은 답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며 단순한 동감을 표시하였을 뿐이다.《隱峯全書 卷3 答李澤堂》《澤堂集 卷18 與安牛山》

523) 편당(偏黨)을……여긴다 : 이 또한 안방준의 직접적인 언사가 아니고 혹자가 설문(設問)을 위하여 안방준에 대한 세평을 끌어대면서 한 말이다.《隱峯全書 卷10 師友鑑戒》

[답] 논한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所論極當.

[문] 종족(宗族)에게 처신하는 것은 간략하고 질박하게 하고, 남을 대하는 것은 정의(情誼)를 매우 돈독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우기주-
處宗族以簡質, 待人以情好.【禹琪疇】

[답] "간략하고 질박함[簡質]" 두 글자는 종족에게 처신하는 것으로 불가할 것이 없지만, 남을 대하는 데에 "정의를 매우 돈독하게 한다.[情好]"라는 두 글자는 약간의 병통이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한다. 대개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아서[524] 단지 따뜻한 용색(容色)과 온화한 기운이면 충분한 것이다.
"簡質"二字, 處宗族未爲不可, 而"情好"二字之於待人, 似未免帶些病痛. 蓋"君子之交如水", 但色溫氣和則足矣.

[문] 세상 일이 많은 것에 관해 묻습니다. -우기주-
世故多端云云.【禹琪疇】

[답] 세상일이 많으나, 사람의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겠는가.[525] 싫증내고 괴로운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
世故多端, 人事不教人做, 更教誰做? 勿生厭苦可也.

---

524) 군자의……같아서 : 《예기(禮記)》〈표기(表記)〉에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감주와 같다. 군자는 담박함으로 이루어지고, 소인은 달콤함으로 망가진다.[君子之接如水, 小人之接如醴, 君子淡以成, 小人甘以壞.]"라는 내용이 보인다.

525) 세상일이……하겠는가 : 《이정전서(二程全書)》 권15에 "사람들은 일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혹자는 이것을 괴로워하는데, 세상일이 비록 많으나 모두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누가 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人惡多事, 或人憫之, 世事雖多, 盡是人事. 人事不教人做, 更責誰何?]"라고 한 정이(程頤)의 말이 보인다.

[문] 종전의 문목(問目)에서 '혹자가 질문으로 말하고, 석귀가 대답으로 말한 것[或曰錫龜曰]'은 실제로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답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경우는 "신종구(申鍾求)가 말하기를", "송시일(宋時一)이 말하기를", "김치희(金致熙)가 말하기를" 등과 같은 몇 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或曰]"이라고 칭한 것은 남의 예사스런 말에 스스로 의심이 들었거나 우연히 생각한 바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답을 가설하여 나아가 질정한 것입니다. -김석귀-
從前問目中, '或曰錫龜曰', 非實有人問而答之也. 其實有其人, 如申鍾求, 宋時一, 金致熙曰, 不過數條而已. 其稱以"或曰"者, 或因人尋常語, 自有所疑, 及偶有所思, 未能自決者, 設爲問答以就正.【金錫龜】

[답] 문답을 가설한 것이 반드시 실제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옛사람이 문자에서 문답을 가설한 것은 공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필시 많은 곡절이 있어 곧장 말해 내려가는 것으로는 완전히 다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해야 할 말을 남기거나 빠뜨림이 없고자 한 것이다. 그대는 도리어 이것을 한 가지 기량으로 삼아 매번 논설을 할 때마다 번번이 이와 같이 하니 기상이 좋지 않음을 곧 깨달았다. 이는 어째서인가? 소리에 반응하여 문득 답하기를 마치 사마(駟馬)가 혀를 따라잡지 못하듯이 한다면[526] 비록 구절구절이 합당하더라도 오히려 경솔하다는 허물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은 경우는 오죽하겠는가. 매양 한번 말하고자 하다가 저번에야 비로소 마음을 나타내었으니, 매번 문답에 모두 실제 그 사람이 있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다.
設爲問答, 未必實有其人, 吾非不知. 但古人文字間, 設爲問答, 非徒然也, 必有多少曲折, 非一直說下之所能說盡, 故以問答翻之覆之, 欲其無遺漏也.

---

526) 사마(駟馬)가……한다면 : 말실수를 비유한 말이다. 《논어》〈안연(顔淵)〉에 극자성(棘子成)이 "군자는 질박하기만 하면 된다. 문식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라고 하자, 자공(子貢)이 "애석하도다. 선생의 말씀이 군자다우나, 실수를 하는 그 혀는 사마(駟馬)도 따라잡지 못하겠도다.[惜乎! 夫子之說, 君子也, 駟不及舌.]"라고 답한 말이 보인다.

賢者却以此爲一副伎倆, 每有論說, 輒如是, 便覺氣像不好. 何者? 應聲輒答, 有若駟不及舌, 雖句句是當, 猶欠輕率, 况未必然者乎! 每欲一言, 頃始發之, 非謂每問答, 皆實有其人也.

[문]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와 강절(康節 소옹(邵雍))이 육합(六合)의 바깥을 논하고 언급한 것[527]에 대해 묻습니다. -정시림-
濂溪康節, 論及六合外云云.【鄭時林】

[답] 나는 육합 안에 있는 사람인데 육합 바깥에 관한 말을 어찌 알겠는가.
我是六合內人, 安知六合外說話?

[문] 부형(父兄)이 가숙(家塾) 몇 칸을 지어 약간의 책을 소장하여 학업을 닦는 장소로 삼았으니 원컨대 말 한마디의 가르침을 얻어서 문미(門楣)에 게시함으로써 대야에도 명(銘)을 새겼던 의리[528]를 담게 해 주십시오. -민치량-[529]
父兄構家塾數間, 藏書若干, 以爲肄業之所. 願得一言之敎, 揭諸楣間, 以寓盤銘之義.【閔致亮】

[답] 집에 책을 쌓아 보관하는 것은 이미 식곡(式穀)[530]하는 생각을 낸 것이니

527) 염계(濂溪)와……것 : 염계는 북송(北宋)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호이며, 강절 역시 북송 유학자 소옹(邵雍)의 시호인데, 두 사람은 각각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등으로 대표되는 작품을 통해 종래 사회윤리와 제도문제에 치중했던 유학(儒學)을 일신하여 성리학(性理學)이라는 우주론적이면서 심성론적인 탐구를 본질로 하는 새로운 학문 풍토를 개창(開創)하는 역할을 하였다.

528) 대야에도……의리 :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대야에다 경계하는 글을 새겨 넣었는데, 그 글에 "진실로 하루 새로워졌으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하였다. 《大學章句 傳2章》

529) 민치량(閔致亮) : 자는 주현(周賢), 호는 계초(稽樵)로 민재규(閔在奎)의 아들이다. 기정진의 문인으로 1870년(고종7) 식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530) 식곡(式穀) : 자식이나 제자를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을 뜻하니, 《시경》 〈소완(小宛)〉에 "뽕나무 벌레 새끼를 나나니벌이 업고 가도다. 네 자식을 잘 가르쳐서, 착한 것을 닮게 하라.[螟蛉有子, 蜾蠃負之.

공(公)이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다만 요구한 글은 내가 붓과 벼루를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하겠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수재(秀才)가 변하여 학구(學究)가 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거늘, 미원(薇垣)의 명사(名士)[531]가 갑자기 변하여 장구(章句)나 따지는 부유(腐儒)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겠는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절대 스스로를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글을 먼저 구하는 것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미덥게 한다는 의리[532]에 비추어 어떠한가. 공이 능히 학문을 착실하게 행한다면 3년이나 5년 뒤에는 공을 위해 글을 지어줄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급급하게 여기지 말라.

儲書屋子, 旣出式穀之念, 公能不負此意, 則甚善. 但文字之需, 吾之閣筆硯久矣, 奈何? 抑又有一說焉. 秀才變爲學究, 亦非易事. 薇垣名士猝然變爲章句腐儒, 人誰信之? 非但他人不信, 自家亦必不能自信, 而先之以文, 其於言必信之義, 何如? 公能拄脚堅實, 則三五年之後, 必有爲公作文字者, 勿汲汲也.

[문] 비록 마음으로는 효를 행하고자 하나 효를 행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송한종-

心雖欲孝, 而未知爲孝之方.【宋漢宗】

[답] 어찌하여 《효경(孝經)》을 읽지 않는가.

何不讀《孝經》?

敎誨爾子, 式穀似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31) 미원(薇垣)의 명사(名士) : 미원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키는데 여기의 명사는 민치량을 가리킨다. 민치량은 1870년, 1876년에 각각 사간원 벼슬인 정언(正言)과 헌납(獻納)에 제수된 기록이 보인다.《承政院日記 高宗 7年 12月 13日, 13年 4月 6日》

532) 말을……의리 : 《논어》 〈자로(子路)〉에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숙을 지어 착실히 공부하겠다는 말을 해놓고는 문장부터 구하는 것이 미덥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다.

[문] 붕우(朋友)를 사귈 때에 어떻게 해야만 교유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송한종-
朋友之交, 何如可以善交乎?【宋漢宗】

[답] 먼저 좋은 벗을 잘 가려 택하고, 오래되어도 공경할 것이다.[533]
先擇友, 久而敬之.

[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자 가운데 인(仁)한 사람이 드물다.[巧言令色, 鮮矣仁]"[534]라고 하셨고, "질박하고 어눌(語訥)함이 인(仁)에 가깝다."[535]라고 하셨으며, "말을 어눌하게 하고자 한다.[予欲無言.]"[536]라고 하셨으며,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537]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것은 취하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문송규-[538]
孔子曰: "巧言令色鮮矣仁. " 曰: "木訥近仁. " 曰: "欲訥於言. " 曰: "予欲無言. " 然則善爲說辭者, 不足取乎?【文頌奎】

[답] 이는 백규(白圭)를 읊은 시(詩)를 세 번 반복해서 외울 곳이다.[539] 그런데

---

533) 오래되어도 공경할 것이다 : 《논어》〈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제(齊)나라 대부 안영(晏嬰)을 평하여 "안평중은 남과 사귐을 잘하는도다. 오래되어도 공경하는구나.[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라고 하였다.

534) 말을……드물다 :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535) 질박하고……가깝다 : 《논어》〈자로(子路)〉에 "강하고 굳세며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인에 가깝다.[彊毅木訥, 近仁.]"라고 한 말이 보인다.

536) 말을……한다 : 《논어》〈이인(里仁)〉에서 공자가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실행에는 민첩하고자 한다.[君子欲訥於言, 而敏於行.]"라고 한 말이 보인다.

537) 나는……한다 : 《논어》〈양화(陽貨)〉에 보인다.

538) 문송규(文頌奎) : 1859~1888. 개항기 화순 출신의 학자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계원(啓元), 호는 구암(龜巖). 면수재(勉修齋) 문자수(文自修)의 후손으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의 요체를 깨닫고, 심성과 이기의 묘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539) 이는……곳이다 : 《논어》〈선진(先進)〉에 공자의 제자 남용(南容)이 말을 신중히 가려 하려는 뜻으로 백규(白圭)를 읊은 시를 하루 세 번 반복해서 외운 이야기가 보인다. 백규는 백옥으로 만든

도리어 그 사이에서 의난(疑難)을 낸다면 이는 성인(聖人)의 뜻과 멀어질 것이다.
此是"白圭三復"處, 却就其間, 生疑難, 與聖人之意遠矣.

[문] 저 만생(晩生)은 7세에 배움에 들어갔으나 가난이 뼈에 사무쳐 품팔이를 업으로 삼느라 어렸을 때에 읽은 것이라고는 그저 《통감(通鑑)》, 《사략(史略)》 4, 5권뿐이고 경전(經傳)에 있어서는 대략 구두만을 이해합니다. 독서한 것이 이러하니 비록 수고를 쏟더라도 무엇을 터득하겠습니까. 지금 가르침을 청하는 날에 감히 실정을 드러냅니다. -우택희-
宅禧晩生, 七歲入學, 貧困到骨, 雇傭爲業, 故兒時所讀, 只《通》,《史》四五卷, 至經傳, 畧曉句讀, 讀書如此, 雖勞何得? 今於請敎之日, 敢暴情實.【禹宅禧】

[답] 앞에서는 전부 신고(辛苦)를 실컷 맛본 것이니 끝에는 아마 단맛이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 하늘이 너를 옥(玉)처럼 갈고 연마하기 위함이다.[540]
以上皆飽喫辛苦, 末梢庶有甘味, 皆天之所以玉汝也.

[문] 가군(家君)께서 항상 말하시기를 "학문만 하고 농사일을 모른다면 평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마침내 농사일을 시켜 여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게 하셨습니다. 비록 "먹는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541]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필시 항심(恒心)이

제후의 신표(信標)인데, 백규를 읊은 시란 《시경》 〈억(抑)〉의 "백규(白圭)의 흠은 오히려 갈아 없앨 수 있지만 이 말의 흠은 다스릴 수가 없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여기 기정진의 언사는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에 공연히 의심하여 질문하였으니 벌써 말을 신중히 하는 도리에 어긋나고 말았다는 뜻인 듯하다.

540) 너를……위함이다 :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가난하고 천함, 근심과 걱정은 너를 옥처럼 갈고 연마하여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라고 하였다.

541) 먹는……않는다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는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학문을 해도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君子謀道, 不謀食. 耕也, 祿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라는 내용이 보인다.

없을 것입니다. -우택희-
家君常言, 學而不知農, 多誤平生, 遂使夏稼而秋穡. 雖曰不謀食, 然不爾則必無恒心.【禹宅禧】

[답] 이상은 모두 합당한 말이다. 먹는 것을 도모하기를 감미(甘美)를 도모한다는 것처럼 할 것이니, 농사일을 잘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以上皆的當語. 謀食如曰謀甘美, 用天因地, 以養父母, 何可已也?

[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형제가 분가하는 것을 가군(家君)께서 평소 싫어하여 소자의 형제로 하여금 한 집에 살게 한 것이 19년이 됩니다. 하지만 제사(娣姒 동서)가 조금 소원해져 어쩔 수 없이 분가하게 되었고 재용(財用)은 가군에게 통제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까? -우택희-
父母在時, 兄弟分門, 家君平日所惡, 使小子兄弟併居一室, 爲十九年. 娣姒稍疎, 未免分異, 而財用則統於家君, 爲無害否?【禹宅禧】

[답] 형제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분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지만 더러 어쩔 수 없는 사정에 구애된다면 분가하여 살림하는 것 또한 심하게 비난할 수 없다. 각각 그 사람의 역량과 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획일적으로 논할 수 없다.
兄弟, 父母在時不分異, 常法也. 而或拘於事勢之不得已, 則分炊亦不可深非. 各在其人之力量處地, 未可爲一定論也.

[문] 지금부터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우택희-
自今, 欲不事擧業, 未知如何?【禹宅禧】

[답] 과거 공부 외에 반드시 무엇을 일삼는 것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다만 마음을 쏟아 부을 곳이 없을까 두려울 뿐이다.
擧業之外, 必有事焉則可, 但恐其無所用心耳.

[문] 저의 선조부(先祖父)의 효행은 실로 묻혀서는 안 되는 점이 있기에 지난번 향론(鄕論)을 계기로 묘명(墓銘)을 청하기 위해 가장(家狀)을 품고 있었으나 궁박하여 현양(顯揚)할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은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얻어 선조부께 바친다면 소자의 소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우택희-
宅禧祖父孝行實. 有不可泯者, 昔因鄕論, 請名抱狀, 而顧窮約無闡揚之路, 或得先生一言, 及於隧道, 則小子之志願畢矣.【禹宅禧】

[답] 효(孝)는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 묘명을 청하기 위해 가장을 올리는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증원(曾元)과 증신(曾申)[542]이 또한 증자(曾子)를 위해 묘명을 청하기 위해 가장을 올렸겠는가. 이 일은 내 알지 못하겠다. 게다가 나는 90의 늙은이로 여러 해 신병을 앓아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남을 위해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지으려고 할 정신이 있겠는가. 그대 또한 이러한 말을 하니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는 풍도[543]를 다시 볼 수 없단 말인가.
孝非求知, 請名投狀, 非求知乎? 曾元曾申, 亦爲曾子請名投狀乎? 此事吾所不知. 且九十老者, 加以多年身病, 氣息奄奄, 寧有精神爲人墓道計乎? 君亦有此言, 老吾及人之風, 不可復見耶?

---

542) 증원(曾元)과 증신(曾申) : 모두 증자의 아들이다.

543) 내……풍도 : 자신의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버이에까지 그러한 마음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라고 한 말이 보인다.

[문] 감히 묻습니다. 구봉(龜峯)[544]이 우계(牛溪)와 율곡(栗谷)[545]과의 관계에서 도의(道義)로 사귄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상(鵝相)[546]을 자(字)로 부른 것은 과연 중도에 맞는 행동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소자(小子)처럼 한미한 자가 감히 호령(湖嶺 충청도와 경상도)의 사대부와 태연히 동렬(同列)로 자처한다면 참으로 외람되지 않겠습니까.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오늘날 학자가 《서명(西銘)》을 말하고 태극(太極)을 말하는데 일종(一種)의 무리들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니 비유하자면 남이 하수(河水)를 말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자신은 목말라 죽는 것을 달게 여기는 격이다."[547]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근심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김현옥-

敢問龜峯之於牛栗爲道義交則可也,　而至於字呼鵝相則未知果爲中行否? 小子以若寒微, 敢與湖嶺士大夫偃然自處於同列, 無乃猥屑乎? 朱子曰: "今之學者, 說《西銘》說太極, 而一種者流, 絶口不談, 譬如惡人說河而自甘於渴死.", 如之何則可免此患?【金顯玉】

---

544) 구봉(龜峯) :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호이다.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峰), 현승(玄繩), 본관은 여산(礪山),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이이(李珥), 성혼(成渾)과 함께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논변하였고, 예학(禮學)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저서에 《구봉집(龜峰集)》이 있다.

545)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 각각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호이다.

546) 아상(鵝相) :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를 말하니 그가 영의정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그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 외에 종남수옹(終南睡翁),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부친은 이지번(李之蕃)이고, 숙부가 이지함(李之菡)이다. 1561년(명종16) 문과에 급제하였고, 1590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문집에 《아계유고(鵝溪遺稿)》가 있다.

547) 오늘날……격이다 : 《회암집(晦庵集)》의 본문과는 적지 않은 출입이 있으니 《회암집》에는 "지금 남들이 인(仁)이나 서(恕), 〈서명(西銘)〉이나 태극을 어지러이 떠들어대는 것을 싫어하면서 나는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통해 철저하게 살필 수 없다면 이것은 남들이 하수(河水)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신은 목말라 죽는 것을 달게 여기는 꼴이니 어찌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와 주신다면 반드시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今惡人言仁言恕言西銘言太極者之紛紛, 而吾乃不能一出其思慮以致察焉, 是惡人說河而甘自渴死也, 豈不誤哉! 承許枉臨, 尙須面論.]"라고 되어 있다. 《晦庵集 卷59 答楊子順》

[답] 나의 졸렬한 계책으로는 우선 비교하고 근심하는 수고를 내버리고 처음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로 자처하되, 일과(日課)를 세우고 과정을 밟아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3년이나 5년을 지난다면 거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도리(道理)가 모여드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만약 하수(河水)를 말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갈증에 도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소 발자국에 고인 빗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자에게도 비웃음을 받을 것이니 깊이 염려스럽다.
以吾拙計, 姑舍比方懸想之勞, 自處以初上學小兒, 課日作程, 念不及他, 如此三五年, 庶幾心地平穩, 道理有湊泊處, 若說河不已, 則非但無補於渴, 反爲手掬涔蹄者所笑, 深可慮念.

[문] 감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잊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몸가짐을 삼가지 않으며, 말을 함에 법도가 없는 것이 모두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이다."[548]라고 하였는데 부모를 잊지 않는 방법이란 이러할 뿐인 것입니까? -김현옥-[549]
敢問何爲不忘親之方? 栗谷曰: "持身不謹, 出言無章, 皆是忘父母." 不忘親之方, 如斯而已乎?【金顯玉】

[답] 외물을 쫓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양심(良心)이 날로 줄어드니, 주재(主宰)가 굳게 안정되어 외물과 함께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버이를 잊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은 어버이를 잊지 않는 것이지 부모를 잊지 않는 방법은 아니다.

---

548) 몸가짐을……것이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사친장(事親章)〉에 "일상생활 하는 사이와 잠깐 동안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은 뒤에야 효도한다고 이름 할 수 있으니, 저 몸가짐을 삼가지 않으며 말을 함에 법도가 없어 장난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 부모를 잊어버린 것이다.[日用之間, 一毫之頃, 不忘父母然後, 乃名爲孝, 持身不謹, 出言無章, 嬉戲度日者, 皆是忘父母者也.]"라는 말이 보인다.

549) 김현옥(金顯玉) : 1844~1910. 자는 풍오(豐五), 호는 산석(山石),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이다. 저서로는 《산석집》이 있다.

逐物日多, 則良心日淺. 主宰凝定. 不與物俱往. 斯爲不忘親之方乎. 若身之謹言之章. 是不忘親. 非方也.

[문] 혹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았던 것도 일이 도래하면 곧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지난 뒤에 뉘우치는 것이 그래도 뉘우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앞에 생긴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뉘우칠 일이 없겠습니까? -김현옥-
或事前已知者, 事到便錯了. 事過追悔, 猶勝於不悔, 然無補於前事, 何以則無悔乎?【金顯玉】

[답] 성인(聖人)도 허물을 줄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니[550] 창졸간에 후회가 없고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인 듯하다.
聖人猶曰寡過. 倉卒欲其無悔. 似太早計.

[문] 정자(程子) 문하의 학자들은 이미 벼슬을 한 자는 작록을 잊었고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자는 굶주림과 추위를 잊었습니다.[551] 사람이 이미 혈육(血肉)을 가진 상황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잊는 방법을 감히 묻습니다. -김현옥-
程門學者, 已仕者忘爵祿, 未仕者忘飢寒. 人旣有血肉, 敢問所以忘飢寒之方.【金顯玉】

---

550) 성인(聖人)도……말씀하셨으니 : 《중용장구》 제29장에 "천하에 왕노릇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함이 있으니, 이것을 잘 행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王天下, 有三重焉, 其寡過矣乎!]"라고 한 내용이 보이고,《논어》〈헌문(憲問)〉에 거백옥(蘧伯玉)이 보낸 사자가 와서 거백옥의 동정을 묻는 공자의 말에 "허물을 줄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치 못합니다.[欲寡其過而未能也.]"라고 대답하자 공자가 그 사자를 크게 칭찬한 일도 보인다.

551) 정자(程子)……잊었습니다 : '정자'는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를 높여서 같이 부르는 말이다. 이 말은 《회암집》 권43 〈이백간에게 답함[答李伯諫]〉에 보이는 바 주희(朱熹)가 편지에서 쓴 말인데, 주(注)에 유작(游酢)의 말이라고 하였다.

[답] 굶주림과 추위를 잊는 것이 어찌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는 것을 이르겠는가. 굶주림과 추위를 당하였다면 굶주림과 추위에 대처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내면이 무거우면 내 몸 밖은 절로 하찮아지니 이것을 굶주림과 추위를 잊는다고 하는 것이다.
忘飢寒, 豈不飢不寒之謂也? 當飢寒則有處飢寒之道, 內重則外自輕, 此之謂忘飢寒也.

[문] 마음에 새길 한마디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김현옥-
願得珮服一言【金顯玉】

[답] 어리석음으로 지키라.[552]
守之以愚.

[문] 대저 마음에 편치 않은 점이 있으면 일은 필시 의롭지 않기 마련입니다. 제가 약간의 동몽(童蒙)을 가르치고 선물을 받아 생계로 삼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최유윤-
大凡心有所未安者, 事必不義, 惟允敎誨. 若干童蒙受饋資生, 心甚不安云云.【崔惟允】

[답] 동몽을 가르치고 쌀을 받는 것이 일 없이 먹는 것이 아니니 의리에 있어 문제가 없다. 옛날에 학교에는 반드시 학관이 있고 학관에는 반드시 녹이 있었으니 가르쳐서 생계로 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만 힘써 그 마음을 다하여 항상 가르침에 잘못이 있어 촌리(村里)의 아동을 그르칠까

552) 어리석음으로 지키라 : 《공자가어(孔子家語)》 권2 〈삼서(三恕)〉에 "총명하고 지혜롭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더라도 사양으로 지키고, 용력이 있어 세상을 떨치더라도 두려움으로 지키고, 부유하여 사해를 다 소유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지키니 이것을 이른바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聰明睿智, 守之以愚, 功被天下, 守之以讓, 勇力振世, 守之以怯, 富有四海, 守之以謙, 此所謂損之又損之之道也.]"라고 하였다.

두려워해야 하니 이것이 공밥을 먹지 않는 것이 된다. 아동의 성취(成就)가 얼마나 될지는 각각의 재질에 달려 있으니 비록 성인(聖人)이 함께 거처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이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敎童蒙取米, 非無事而食, 於義無害. 古者學必有官, 官必有祿食, 與此何別? 但務盡其心, 常恐敎有所失而誤了村兒, 此爲不素餐矣. 兒之成就多寡, 各有才分, 雖聖人與居, 不能使之齊一也. 奈何奈何?

[문] 사람의 근심은 분수가 아닌 것을 희구하여 외양을 교묘히 꾸미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날마다 "정해진 운명은 지혜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심성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命分所定, 智力難容, 言行攸出, 心性可推.]"라는 16자를 외우니 스스로 득력(得力)하는 곳이 있다고 여깁니다. 원컨대 이 뜻으로 책선(責善)하는 글을 지어서 주십시오. -민재남-[553]
人之患在希覬非分巧飾邊幅, 故愚日誦"命分所定, 智力難容, 言行攸出, 心性可推"十六字, 自謂有得力處. 願以此意作責善數行語, 以付如何?【閔在南】

[답] 4언(言) 16자(字)가 나로 하여금 취하게 하니 전국술[醇醪]을 마실 필요도 없다. '책선(責善)'이 좋은 제목이긴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나는 노인을 만날 때마다 말하기를 "늙은이의 사업(事業)은 오직 부질없는 근심이 두 눈썹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에게 이 16자가 있으니 또한 살아서는 이치에 순히 하늘을 섬기고 죽어서는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554] 내가 말한 바에 비하면 이미 핵심을 얻었으니, 서로 권면할 바는 기미(幾微)가 나타날 즈음에 더욱 더 정밀하게

553) 민재남(閔在南) :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겸오, 호는 청천(聽天), 자소옹(自笑翁), 회정(晦亭)이다. 고려조 절신(節臣) 민안부(閔安富)의 후손이며 경상도 산청(山淸)에서 거주하였다. 과거에 세 번 낙방한 후 벼슬을 단념하고 학당(學堂)을 세워 후진양성에 힘썼는데, 1867년(고종4)에 헌릉 참봉(獻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회정집(晦亭集)》을 남겼다.

554) 살아서는……것이다 : 원문 '生順死安'에 해당하는데,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살아서는 내 순히 하늘을 섬기고 죽어서는 내 편안하다.[存吾順事, 沒吾寧也.]"라는 말이 보인다.

살필 따름이다.
四言十六字, 令人心醉, 不待飮醇醪矣. 責善雖是好題目, 而其於力不及何? 吾每逢老人爲言, 老去事業, 惟有勿使閒愁到兩眉. 今公有此十六字, 亦可以生順死安, 比諸吾所言, 已得骨髓. 所可相勉者, 幾微之際, 益加精察而已.

[문] 질아(姪兒)가 날개도 나지 않았는데 날기를 배워 공연히 장안의 쌀만 낭비하였으니[555] 문하에 유학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배운 것은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진실로 배웠지만 제대로 달라지지 못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민재남-
姪兒未羽而學飛, 徒費長安米, 遊門下幾年, 所學何事? 眞可謂不善變.【閔在南】

[답] 군현(君賢)[556]이 오랫동안 객지생활을 하니 매우 염려된다. 공명(功名)을 오랜 객지 생활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는 집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늙은이가 항상 하는 말이고, 존형 집안의 부자와 형제간에는 필시 이미 계획을 정하였을 것이니, 어찌 감히 내가 망녕되이 말을 거들겠는가.
君賢久客, 極可念. 功名, 以久客可辦, 則世上無屋裏人矣. 然而此是老生常談, 尊門父子兄弟間, 必已有成筭, 吾何敢贊辭?

---

555) 장안의 쌀만 낭비하였으니 : 한(漢) 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무제(武帝)에게 "난쟁이는 키가 석 자 남짓밖에 안 되지만 한 자루의 곡식을 받고, 돈 240을 받는데, 신 삭(朔)은 키가 9자 남짓이나 되지만 역시 한 자루 곡식을 받고 돈 240을 받습니다. 난쟁이는 배가 불러서 죽을 지경이고, 신 삭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신의 말을 채용할 만하시면 예우를 그들보다 다르게 해 주시고, 채용할 만하지 못하면 파면해 주시어, 단지 장안의 쌀만 구걸하게 하지 마소서.[朱儒長三尺餘, 奉一囊粟, 錢二百四十. 臣朔長九尺餘, 亦一囊粟, 錢二百四十. 朱儒飽欲死, 臣朔飢欲死, 臣言可用, 幸異其禮, 不可用, 罷之, 無令但索長安米.]"라고 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漢書 卷65 東方朔傳》 '장안의 쌀'은 봉록(俸祿)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조카인 민치완이 능력이 모자람에도 억지로 벼슬살이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한 말인 듯하다.

556) 군현(君賢) : 민치완(閔致完, 1838~1911)이니, 군현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지강(芝岡)으로 기정진의 문인인데, 민재규(閔在圭)의 아들이고 민재남의 조카이다. 학업으로 천거되어 효문전 참봉(孝文殿參奉)에 임명되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의영 봉사(義盈奉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집에《지강문집(芝岡文集)》이 있다.

[문]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의문점에 대해 묻습니다. -김이권-
《庸》,《學》疑問.【金以權】

[답] 그대는 경전의 뜻을 논하는 데에 어쩌면 그리도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다 쓰는가. 그대는 배가 굶주리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자를 보지 못했는가. 본인은 노고를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맛이 푸지고 깊어서 옆 사람으로 하여금 입에서 침이 고이게 할 것이다. 만약 바다에 들어가 신선을 구한다거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려 한다면 수고로울 것이니 그대는 경전의 뜻을 음료와 밥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신선과 약초로 여기기 때문에 수고롭기만 한 것이다.

그대의 말은 어찌 그리도 의심이 많으며 확신이 부족한가. 성인(聖人)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557]라고 하셨는데, 그대는 의심할 만한 곳에 "여(歟)"자나 "야(耶)"자를 놓고,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도 역시 "여(歟)"자나 "야(耶)"자를 놓고서 여러 장의 지면과 이어 붙인 종이에 "여"와 "야"로 편(篇)을 마치고 있다. 《역(易)》에 이르기를 "중심(中心)이 의심스러운 자는 그 말이 산만하다."[558]라고 하였으니, 필시 내면에 정견(定見)이 없어 도무지 앞뒤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대는 필시 스스로 해명하면서 "질문하는 말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얻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고서도 또한 의심하는 것을 보았는가. 내 생각으로는 그대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의 큰 덩어리의 말을 우선 내버려두고,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두 책을 가져다가 세세하게 마음을 써가며 당해 구(句)와

---

557) 아는……것이다 : 《논어》 〈위정(爲政)〉에, 공자가 자로(子路)에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고 알려준 말이 보인다.

558) 중심(中心)이……산만하다 :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장차 배반할 자는 그 말이 부끄럽고, 중심이 의심스러운 자는 그 말이 산만하고, 길한 사람의 말은 적고, 조급한 사람의 말은 많고, 선을 모함하는 사람은 그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 지킴을 잃은 자는 그 말이 굽힌다.[將叛者其辭慙, 中心疑者其辭枝, 吉人之辭寡, 躁人之辭多, 誣善之人其辭游, 失其守者其辭屈.]"라는 말이 보인다.

당해 장(章)에서 한 갈래의 길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대로 한다면 옳고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상반된 흑백과 주야(晝夜)처럼 마음속에 명확히 구별해 가며 2, 3년의 공부를 쌓아 나간다면 종전의 의심하고 망설이며 애만 쓰고 정곡을 찌르지 못하던 습관이 거의 낫게 될 것이다.

賢者之論經義, 何其勞心極力也? 不見飢食而渴飮者乎? 不惟當人不覺其勞苦, 其滋味之津津, 能令傍人口中生涎. 若入海求仙, 登山採藥, 則勞矣. 賢者不以經訓爲飮食, 而以爲仙藥, 故勞耳.

賢者之言, 何其多疑而少決也? 聖人有言,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 賢者於可疑處下歟字耶字, 不當疑處亦下歟字耶字, 累紙連幅, 以歟耶終篇. 《易》曰: "中心疑者, 其辭枝. " 必是內無定見, 都無向背, 致得發語如此. 賢者必自解曰: "質問之辭不得不然. " 賢者見飢人得食, 渴人得水, 而亦歟耶者耶? 吾意賢者姑舍《庸》《學》大片段說話, 將《論》,《孟》二書仔細用心, 務於當句當章內, 尋一條路. 如此則是, 不如此則不是, 心下另別, 如黑白晝夜之相反, 積二三年工夫, 從前依違隔靴爬癢之習, 庶其有瘳.

[문] 성(性)이 선하다는 주장과 성이 선하지 않다는 주장[559]에 대해 묻습니다. -김이권-

性善, 性不善云云.【金以權】

[답] "성이 선하다."라고 운운한 것 또한 마땅히 의심하여야 할 곳이다. 하지만 말을 해 줘도 꼭 믿지는 않고 또 대뜸 믿는 것은 참으로 깨우친 것이 아니니, 마땅히 마음속에 남겨 두고서 성인과 현인이 이 일을 논하여 언급한 곳을 마주칠 때마다 정신(精神)을 맹렬히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0년 뒤에 흡사 큰 잠에서 깬 것처럼 각성하더라도 늦은 것은 아닐 것이다.

---

559) 성(性)이……주장 : 《맹자》 〈고자 상(告子下)〉에, "성(性)에는 선(善)도 없고 불선(不善)도 없다.[性無善, 無不善也.]"라고 하는 고자(告子)의 주장과, "성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불선하게 될 수도 있다.[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라고 하는 혹자의 말이 언급되어 있다.

惟善云云, 亦是合當疑處. 然而言之, 未必信且遽信, 非眞悟. 惟當留置心下, 凡遇聖人賢人論及此事處, 猛着精神. 十年後, 怳然如大寐之得醒, 未晩也.

[문] 지난번 횡역(橫逆)[560]으로 인해 욕을 당한 것에 대해 묻습니다. -안정회-[561]
向者, 橫逆之辱云云.【安貞晦】

[답] 사군자(士君子)가 마음을 유지하고 세상에 처신하는 데에는 본래 떳떳한 법이 있다. 어찌 일찍이 옛날의 군자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영욕(榮辱)으로 삼았던 것을 보았으며, 또한 어느 경전(經傳)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횡역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도록 한 것을 보았는가.
士君子持心處世, 自有常法. 曷嘗見古君子以自外來者爲榮辱乎? 亦見何經何傳, 使人橫逆必報乎?

[문] 몸소 농사를 짓는 탓에 남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강인회-[562]
躬執耒耜, 未免受侮於人云云.【姜寅會】

[답] 몸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남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여기니 비루(鄙陋)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이와 같다면 우(禹)와 직(稷) 이하로부터 도연명(陶淵明) 이상까지는 남에게 수모를 당한 사람이 또한 많을 것이다.

---

560) 횡역(橫逆) :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나오는 말로 강포(强暴)하여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561) 안정회(安貞晦) : 1830~1898. 호는 관산(管山),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사람들은 그를 관산선생이라 일컬어 왔다. 권재규(權載奎, 1870~1952)의 《이당집(而堂集)》 권43에 〈묘갈명(墓碣銘)〉이 실려 있다.

562) 강인회 : 1807~1880.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태화(太和), 호는 춘파(春坡)이다.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으로, 전라도 장사현(長沙縣) 행정(杏亭)에서 태어났으며 기정진의 문인이다. 저서에 《춘파유고(春坡遺稿)》가 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젊었을 때에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다.
以躬執耒耜, 爲受侮於人, 則陋莫甚焉. 若是則禹,稷以下, 淵明以上, 受侮於人者亦多矣. 吾則所悔者, 少時不能執耒耜耳.

[문] 처세(處世)하는 방도에 관해 묻습니다. -김훈-
處世之方云云.【金勳】

[답] 나에게 있는 도리가 처세하는 방도이니, "진실하고 미더우며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한다.[忠信篤敬]"[563]라는 가르침이 성인(聖人)께서 어찌 나를 속이신 말씀이겠는가. 만일 혹시 스스로의 수양이 미진한데도 대번에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책망하는 데에 엄격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에는 너그럽게 한다는 의리로 볼 때 어떠하겠는가.
在我之道, 處世之方, 忠信篤敬之訓, 聖人豈欺我哉? 苟或自修未盡, 而遽謂他人不可與處, 則其於躬厚薄責之義, 何如哉?

[문] 듣지 않을 바를 듣고 보지 않을 바를 봅니다. -기희진-[564]
聞所不聞, 見所不見云云.【奇禧鎭】

[답] "듣지 않을 바를 듣고 보지 않을 바를 본다.[聞所不聞, 見所不見.]"라고 한 이 여덟 글자는 남을 탓하는 뜻인 듯하고, 이로부터 아래는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이다. 남을 탓하는 것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형세상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데에 꼼꼼한 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563) 진실하고……한다 : 《논어》〈위령공〉에 "말이 진실하고 미더우며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도 행해질 수 있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라고 한 공자의 말이 보인다.

564) 기희진(奇禧鎭) : 1805~1870. 자는 치수(穉受), 호는 노재(魯齋)이다. 기정진의 삼종제(三從弟)로, 기정진의 문인이기도 하였다. 조부는 기태원(奇泰源), 부친은 기재린(奇在麟)이다.

데에는 반드시 대충대충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에 엄격한 자는 남을 탓하는 것이 반드시 가벼운 것이다. 대저 공(公)을 위한 계책으로는 "남을 탓함[尤人]" 두 글자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자연히 마음이 안정되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정밀하고 밝아져서 덕(德)을 진전시키고 업(業)을 닦는 일이 그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聞所不聞, 見所不見"此八字, 似尤人之意. 自此以下, 皆反己之語. 尤人反己, 勢不兩立, 尤人詳者, 反己必畧, 反己重者, 尤人必輕. 大抵爲公計, 尤人二字, 全然掃却, 則自然胸次安靜, 反己精明, 進德修業, 在其中矣.

[문] 타고난 재주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박정우-[565]
天才不及云云.【朴正佑】

[답] 자기의 정성이 부족할까 근심하고 타고난 재주가 미치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말며, 내일을 헛되이 보낼 것을 애석해 하고 어제를 허송한 것을 애석해 하지 말며, 내가 혹시 남을 저버릴까 두려워하고 남이 혹시 나를 저버릴까 두려워하지 말라.
患己誠之不足, 無患天才之不及, 惜來日之虛過, 無惜昨日之浪度, 懼我之或負人, 無懼人之或負我也.

[문]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박정현-
欲不作無狀人云云.【朴鼎鉉】

[답] 대저 천하에 많은 일이 없으니 "옳음[是]"과 "옳지 않음[不是]"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옮음이란 성명(性命)의 본체(本體)와 내 마음의 생도(生道)이고, 옳지 않음은 이것과 반대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형편없는 사람이

565) 박정우(朴正佑) : 생몰년 미상.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문서(文瑞)이다. 순천에서 살았고 기정진의 문인이다.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글자 "옳음[是]"에서 잠깐이라도 실추(失墜)할까 두려워해야 하니, 이는 줄을 타는 재인(才人)이 높은 기둥에 눈을 주시하면 거의 동(東)으로 넘어지고 서(西)로 추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大抵天下無多事, 是與不是而已. 所謂是者, 性命之本體, 吾心之生道, 不是者反是. 人欲不作無狀人, 但於一"是"字, 恐其頃刻墜失, 如步索才人注眼於高柱, 則庶不東倒西墜矣.

[문] 몸소 나무를 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오조지정(烏鳥之情)[566]을 다하고 싶지만 과거 공부를 이루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김현주-[567]
身執樵菜, 以遂烏鳥之情, 而科業難成可悶.【金顯周】

[답] 옛사람은 어버이를 하루 봉양하는 일을 삼공(三公)의 지위와 바꾸지 않았다.[568]
古人一日養, 不以三公換.

[문] 집이 가난해서 어버이가 늙었는데도 봉양할 수 없으니 마땅히 몸소 경작하여 어버이를 봉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독서하는 데에 더러 방해가 됩니다. -안최환-

---

566) 오조지정(烏鳥之情) : 오조는 까마귀로, 까마귀 새끼는 자란 다음에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 주어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바, 늙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진(晉)나라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에 "오조의 사사로운 정이 끝까지 봉양하기를 원합니다.[烏鳥私情, 願乞終養.]"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古文眞寶後集 卷1 陳情表》

567) 김현주(金顯周) : 1792~?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광백(光伯),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순조(純祖) 31년(183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7위(12/100)이다.

568) 옛사람은……않았다 : 송(宋)나라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의 시에 "옛사람이 하루 부모 봉양을 삼공과 바꾸지 않는다네.[古人一日養, 不以三公換.]"라고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臨川文集 卷9 送喬執中秀才歸高郵》

家貧親老, 無以爲養, 當躬耕養親, 而又與讀書或相妨.【安最煥】

[답]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었다면 힘을 다하여 밭을 가는 것이 학문에서의 한 가지 큰 일이 된다. 만약 이 일을 버리고서 글줄이나 읽는 것을 가지고 학문하는 길이 여기에 다 있다고 여긴다면 나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家貧親老, 竭力耕田, 爲學問中一件大事. 若捨此, 以尋行數墨, 爲學問之道盡於此, 則吾不知其可也

[문] 남을 책망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안최환-
責人責己云云.【安最煥】

[답] 성인(聖人)의 도는 자신을 책망하고 남을 책망하지 않는 까닭에 지키는 것이 지극히 간단하지만 미치는 바가 넓은데, 보통 사람의 정은 남을 책망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탓에 수고롭기만 하고 공효는 없는 것이다.
聖人之道, 責己不責人, 故所操者至約, 而所及者廣, 常人之情, 責人不責己, 勞而無功.

[문] 인사(人事)가 걱정되고 어수선하여 독서에 방해가 됩니다. -박영로-[569]
人事憂擾, 妨於讀書.【朴永魯】

[답] 인사가 걱정되고 어수선하여 독서에 방해가 되니, 참으로 마음에 걸리는 바이다. 그러나 성인(聖人)께서는 "할 일을 행하고 여력(餘力)이 있으면

569) 박영로(朴永魯) : 1814~1904. 자는 백현(伯賢), 호는 암거(巖居),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경북 의흥(義興)에 거주하였으며 부친은 박기욱(朴基旭)이다.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으로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예학(禮學)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었다. 사후 제자인 홍정수(洪禎修)가 《암거선생문집(巖居先生文集)》을 간행하여 전한다.

글을 배운다.[行有餘力, 則以學文.]”[570]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일 “으면[則]” 한 글자에 능히 힘을 붙일 수 있다면 또한 글을 배우는 데에 여력이 없을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人事憂撓, 妨於讀字, 固所關念. 然而聖人說“則以學文”, 苟能於一箇“則”字著力, 則亦不患無學文之餘力矣.

[문] 군명(君明)[571]의 상(喪)을 치르고 돌아오고 나니 다시 돌림병을 겪었습니다. -위봉조-[572]
治君明喪而來, 則復經癘云云.【魏鳳祚】

[답] 그대가 군명을 위해 돌림병을 피하지 않았으니 이는 붕우에게 좋은 소식이다. 한 차례 5일 동안 땀을 흘린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君之不避癘疫於君明, 此朋友之喜消息, 一經五日汗, 有何傷乎?

[문] 남의 손을 빌려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김요덕-
假手應擧云云.【金堯悳】

[답] 지금 세상은 염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상실된 탓에 이 일을 예사로 여긴다. 그러나 자신이 능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바로 선대(先代)에서 전래하는 마음의 한줄기 맥(脈)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한줄기 맥을 보존한다면 선조고(先祖考)께서 지하에서 부끄러운 기색이

---

570) 할……배운다 : 《논어》 〈학이(學而)〉에 “할 일을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운다.[行有餘力, 則以學文.]”라고 한 공자의 말이 보인다.

571) 군명(君明) : 소필기(蘇弼基)이니, 군명은 그의 자이다, 호가 추남(秋南)이고 본관은 진주(晉州)로 기정진의 문인이다.

572) 위봉조(魏鳳祚) : 1827~? 창평에서 거주하였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노사 연원록(淵源錄)에 실려 있다. 安晋吾 著《호남유학의 탐구》p397 참조.

없으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세속 사람의 망녕된 평가를 어찌 입에 올릴 것이 있겠는가. 다만 깊고 멀리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능히 옛글을 잃고 옛 도를 행하여 속인(俗人)보다 스스로 빼어날 수 있다면 과거를 보고 안 보고는 이미 제이의(第二義)로 떨어진 것이니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 스스로 유속과 동화되어 진세(塵世)의 구덩이에 매몰될 뿐이라면 지난번에 말한 과장(科場) 간에 염치를 지킨다는 말과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은 격으로 어긋나는 데에 불과할 것이다.
今之世廉恥頓喪, 故視爲常事. 而自家能有心如此, 此乃先世所傳來之心一脈, 不墜於地者也. 保此一脈, 可見先祖考於地下無愧怍之色, 世俗人妄評, 何足掛齒牙間也? 但所可深長思者則有之, 能讀古書行古道, 自拔於俗人, 則科之見不見, 已落第二義, 勿論可也. 若自同流俗埋頭塵臼而已, 則向所謂科場間廉恥, 不過一脚長一脚短.

[문] 공령(功令)[573] 때문에 공부가 분산됩니다. -박원국-
分工於功令云云.【朴源國】

[답] 과거(科擧) 시험을 이미 편안히 마음에서 잊지 못하였다면 공부가 분산되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후에는 스스로 주장(主張)하는 바가 있어서 합격 여부로 마음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場屋旣不能恬然忘情, 則分工勢所不免. 下梢事, 自有主張者, 能不以得失嬰情, 則善矣.

[문] 몸을 편안히 하는 계책에 대해 묻습니다. -정종택-
安身之計云云.【鄭鍾澤】

---

573) 공령(功令) : 원래는 왕조 시대에 국가에서 학자들을 시험하고 등용하는 법령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科擧)에 필요한 시문을 뜻하는 말로로 쓰였다. 여기서는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가리킨다.

[답] "명(命)을 알지 못하면 군자(君子)가 될 수 없다."[574]라고 하였고, "요절하거나 장수함에 의심하지 않아, 몸을 닦고 천명(天命)을 기다림은 명(命)을 세우는 것이다."[575]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의 가르침이 해와 별처럼 환하니 몸을 편안히 할 곳은 여기에서 구하면 충분하다.

"不知命, 無以爲君子.",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 《論》《孟》之訓, 炳如日星. 所以安身之地, 求之於此足矣.

[문] 근래에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이교문-[576]
近讀論語.【李敎文】

[답] 현재 《노론(魯論)》[577]을 과독(課讀)[578]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주공(周公) 이하로 첫째가는 책이다. 송(宋)나라 조한왕(趙韓王)[579]이 어찌 책을 읽을 줄 아는 자이랴마는, 오히려 말하기를 "《논어》 반부(半部)로는 태조(太祖)를 보좌하고 반부로는 태종(太宗)을 보좌하였다."[580]라고 하였으니

---

574) 명(命)을……없다 : 《논어》 〈요왈(堯曰)〉에,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不知命, 無以爲君子.]"라고 한 공자의 말이 보인다.

575) 요절하거나……것이다 :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요절하거나 장수함에 의심하지 않아, 몸을 닦고 천명을 기다림은 명을 세우는 것이다.[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라고 하였다.

576) 이교문(李敎文) : 1846~1914.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예백(禮伯), 호는 일봉(日峯)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항일 의병장이다. 기정진의 문인이다. 저서에 《일봉유고(日峯遺稿)》가 있다.

577) 노론(魯論) : 《노논어(魯論語)》이니, 여기서는 《논어》를 일컫는다. 원래 《논어》는 《노논어》, 《제논어(齊論語)》, 《고문논어(古文論語)》 3가(家)의 것이 전해졌는데, 현재의 《논어》는 《노논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578) 과독(課讀) : 계획을 세워서 하는 독서를 말한다.

579) 조한왕(趙韓王) : 북송(北宋)의 문신 조보(趙普, 922~992)를 가리킨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이 컸고, 태종(太宗) 때에 태사(太師)가 되어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으며, 죽은 뒤 한왕(韓王)에 추봉되었다. 복잡한 정무가 있으면 《논어(論語)》를 읽고 처리함이 많았는데, 마치 물이 흐르듯 하였다고 전해진다.《宋史 卷256 趙普列傳》

580) 논어……보좌한다 : 《십팔사략(十八史略)》 권6 〈송 태종(宋太宗)〉에, 조보가 태종(太宗)에게

오늘날 무턱대고 읽기만 하는 자가 어찌 얼굴을 붉힐 지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읽기 전에도 이러한 사람이요, 다 읽고 난 뒤에도 또 다만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는 곧 읽지 않은 것이다."[581]라고 말한 것이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대저 그대의 심지(心地)는 평소 세밀하게 헤아리는 것이 부족한데 이는 기질(氣質)의 병통이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타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깊이 생각할지어다.

課讀方在魯論. 此是由周公以下第一書. 宋之趙韓王. 豈會讀書者. 猶云半部佐太祖. 半部佐太宗. 今之徒讀者. 豈非辟顔處. 故曰未讀時是這樣人. 讀了後是這樣人. 便是不曾讀. 可畏可畏. 大抵君之心地. 素來短於細商量. 此是氣質之病. 變化氣質. 難仰他人. 幸深念之.

[문] 따로 문방(文房 글방)을 두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이교문-
別置文房云云.【李敎文】

[답] 남조(南朝)의 심유지(沈攸之)[582]가 말하기를 "곤궁하고 현달(顯達)함이 운명에 달린 것인 줄 일찍 알았는데, 10년 동안 글을 읽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早知窮達有命, 恨不十年讀書.]"[583]라고 하였다. 심유지는 유가(儒家)의 인물이 아닌데도 그 말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심유지를 하지 않는 자이겠는가. 보내준 편지에서 따로 문방을 두어 10년의 독서를 하겠다는 글귀는 매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니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빈말이 되지 않는다면 지고(至高)한 사업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신에게 《논어》 한 부가 있는데, 반부(半部)로는 태조(太祖)를 보필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반부로는 폐하를 도와 태평을 이룩하였습니다."라고 한 조보의 말이 보인다

581) 읽기……것이다 : 《논어집주(論語集註)》 서설(序說)에 실린 정이(程頤)의 말로, "지금 사람들은 책을 읽을 줄 모른다. 가령 《논어》를 읽는 경우에 읽기 전에도 이러한 사람이요, 다 읽고 난 뒤에도 또 다만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곧 읽지 않은 것이다.[今人不會讀書, 如讀論語, 未讀時是此等人, 讀了後又只是此等人, 便是不曾讀.]"라고 하였다.

582) 심유지(沈攸之) : ?~478. 자는 중달(仲達)이며, 남북조 시기 송(宋)나라의 장군이다.

583) 곤궁하고……한스럽다 : 《송서(宋書)》 권74 〈심유지열전(沈攸之列傳)〉에 보인다.

南朝沈攸之曰: “早知窮達有命, 恨不十年讀書. ” 沈非儒家人, 而其言猶如此, 况不爲沈者乎? 來書中, “別置文房, 讀十年書”一段, 最是開眼. 苟此書不爲空言, 則無上事業在此.

[문]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김욱-
處世養親云云.【金稶】

[답] 군자(君子)는 자신에게서 찾을 뿐이니[584] 안으로 반성하여 조그마한 하자도 없게 하는[585] 공부를 날마다 해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다른 사람을 점검하겠는가. 그대는 남몰래 세상과 곡직(曲直)을 다투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옛사람이 “가장 나쁜 것은 함께 다투는 것이다.”[586]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광대한 천지간에 필시 한 몸도 용납할 땅이 없을 것이니 사소한 병통이 아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 그대는 과연 의심스러워 물어보는 것인가. 아첨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필시 날마다 훔치는 데에 이르고, 날마다 훔치는 것으로 부족하면 장차 벽을 뚫고 담을 넘어 도둑질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옳겠는가, 옳지 않겠는가.[587] 성인(聖人)께서

584) 군자(君子)는……뿐이니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라는 말이 보인다.

585) 안으로……하는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3장에 “군자는 안으로 살펴보아 하자가 없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군자를 따라갈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바에 있는 것이다.[君子內省不疚, 無惡於志, 君子之所不可及者, 其唯人之所不見乎!]”라고 하였다.

586) 옛사람이……것이다 : 옛사람은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키는 것이니,《사기》 권129 〈화식열전(貨殖列傳)〉에 “그러므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따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인데, 가장 나쁜 것은 함께 다투는 것이다.[故善者因之, 其次利道之, 其次教誨之, 其次整齊之, 最下者與之爭.]”라고 한 말이 보인다.

587) 아첨하는……않겠는가 :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면 즉시 고쳐야지 시간을 끌며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날마다 훔친다.’는 것은 원문 ‘日攘’에 해당하는데,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거늘, 누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 수를 줄여서 달마다 닭 한 마리를 훔쳐먹다가 내년을 기다린 뒤에

"편안하면 그리하라."라고 하신 말이 이러한 따위를 일컫는 것이리라.
君子求諸己而已, 內省不疚, 日亦不足, 奚暇點撿他人也? 賢者隱然有與世爭曲直底意思, 古人不云乎? "最下者與之爭. " 以此爲心, 則廣大天地, 必無容身之地, 非小病也. 以非其道養親, 不知賢者果疑之而問耶? 諂諛之不止, 必至於日攘, 日攘之不足, 將至於穿窬, 可乎不可乎? 聖人所謂"安則爲之", 此類之謂歟?

[문]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588]라는 말에 대해 묻습니다. -김욱-
朝聞夕可云云.【金稶】

[답] 도(道)는 빈틈이 없으니 삶에는 삶에 처신하는 도가 있고 죽음에는 죽음에 처신하는 도가 있다. 다만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뜻은 절로 그 가운데에 있으니, 원래 아침에 도를 들음이 없으면서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는 경지만을 구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道無空隙, 生則有處生之道, 死則有處死之道. 但能朝聞則夕可, 自在其中, 元無朝聞而但求夕可, 何可得也?

[문] 가난하고 곤궁하여 괴롭습니다. -김욱-
貧窮爲病.【金稶】
[답] 슬프다, 가난이여. 큰일을 당하여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석일 것이다. 내면이 진중하면 외물은 가벼우니[589] 군자의 근심은 속인의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今有人, 日攘其隣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請損之, 月攘一鷄, 而待來年然後已, 如知其非矣, 斯速已矣, 何待來年?]"라고 한 맹자의 말이 보인다.

588) 아침에……괜찮다 : 《논어》〈이인(里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한 공자의 말이 보인다.

589) 내면이……가벼우니 :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爲學)〉의 "내면이 진중하면 외물의 가벼움을

근심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傷哉, 貧也! 當大事, 無憂貧之心, 則木石也. 然而內重則外輕, 君子之憂與俗人之憂, 意味不同.

[문] 삼가 예를 행하려고 하는데 시의(時議)에 구애됩니다. 이에 부동심(不動心)[590]을 배우려고 합니다. -김욱-
竊欲行禮, 有碍時議, 於此欲學不動心.【金稶】

[답] 부동심은 반드시 지언(知言 말을 앎)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 것에서 나와야 참으로 "부동(不動)"인 것이다.[591] 아직 예를 익히지 않았는데 예를 행할 때에 부동심을 하려 한다면 이는 고자(告子)의 부동심[592]이니 이것을 배워 무엇 하겠는가.
不動心, 必自知言養氣來, 方是眞不動. 未習禮而欲其行禮時不動心, 此告子之不動心, 學此何爲?

[문] 띠에 적어 항상 마음에 새길 한마디 말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인-
願得書紳一言.【或人】

이길 수 있고, 얻은 것이 깊으면 유혹이 작음을 알 수 있다.[內重則可以勝外之輕, 得深則可以見誘之小.]"라고 한 말을 차용하여 쓴 것이다.

590) 부동심(不動心) :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수양의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가 "나는 40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吾四十不動心.]"라고 한 말에서 온 것이다.

591) 부동심은……것이다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가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라고 한 말이 보인다.

592) 고자(告子)의 부동심 : 고자는 이름이 불해(不害)이며,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는 고자가 '나보다 먼저 부동심의 경지에 올랐다.[先我不動心.]"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 대해 《맹자집주》에서 "고자가 도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마침내 나보다 먼저 부동심을 하였으니, 이것은 족히 어려울 것이 없다.[告子未爲知道, 乃能先我不動心, 則此未足爲難也.]"라는 말로 맹자의 뜻을 풀이하였다. 여기서 답변한 취지는 예(禮)의 근본 이치를 먼저 잘 이해한 뒤에야 시의에 구애되지 않는 부동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답] 성현의 큰 가르침이 방책(方冊)에 펼쳐져 있는데, 만약 띠에 적으려고 한다면 적을 말이 없을까 근심할 것은 아니니,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의 말을 끄집어내어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 사람의 한 몸은 보고 듣고 말하고 동(動)하는 것 외에 남은 일은 없는데, 정자(程子)가 《사물잠(四勿箴)》[593]을 지어 이에 대해 친절하게 발명(發明)하였다. 오늘로 바로 착수할 만하니 원컨대 이것을 노자로 삼을지어다. 옛사람이 밝힌 것은 도(道)이고 지금 학자가 밝히는 것은 기(氣)인데, 기는 원래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어찌 사람이 그것을 밝힐 것을 기다리겠는가. 지금 세상은 거의 기가 리(理)의 자리를 빼앗아 그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니 원컨대 이것을 경계로 삼을지어다.

聖賢大訓, 布在方冊, 苟欲書紳, 不患無言. 吾儕惟當拈出一言, 以相勸勉. 人之一身, 視聽言動之外, 無餘事焉. 程子四箴, 發明親切, 今日便可下手, 願以此爲贐. 古之人所明者道, 今之學者所明者氣, 氣是原來顯著底, 豈待人明之耶? 今世幾乎氣奪理座, 直是令人苦痛, 願以此爲戒.

---

593) 사물잠(四勿箴) : 《논어》 〈안연(顔淵)〉에, 공자가 제자 안회(顔回)에게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는 말로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 네 가지 조목을 말해 주었는데, 정이(程頤)가 이것을 주제로 각각에 잠을 지어 경계한 것이다.

《답문류편》 발문[594]
答問類編跋

성현(聖賢)이 나오실 때에 하늘보다 앞서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셨으나 또한 때를 인하여 가르침을 세우셨다. 이런 까닭에 풍기(風氣)가 열리자 서계(書契)가 만들어지고[595] 큰 통나무가 흩어지자[596] 육경(六經)이 지어졌으며 세교(世敎)가 쇠퇴하자 사자(四子 사서(四書))가 저술되었고,[597] 성인의 세대가 멀어지고 말씀이 묻히자 낙건(洛建)의 여러 철인[598]의 책이 나온 것이다. 낙건의 뒤에 태어났으니 오직 그 설을 삼가 지켜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의리가 퇴색되고 의론이 제멋대로 쏟아지는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게 되었단 말인가. 이것이 《유편》이 나온 까닭이다.

선생은 학문은 천지를 포괄하고 치수(錙銖)[599]를 분석함으로써 곧장 끝까지 나아가 근원에 도달하고 한계가 없이 훤하게 꿰뚫었으니, 천차만별(千差萬別)한 천하의 시비에 대해 씻어내고 일신하며 공평하고 온당하게 하셨다.

---

594) 답문류편(答問類編) 발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답문류편(答問類編)》(무구재古1247-30-1-6)에는 이 발문의 앞에 문인 정재규(鄭載圭)와 김현옥(金顯玉)이 쓴 두 개의 발문이 차례로 붙어있다. 참고를 위해 두 사람의 발문은 책의 끝에 실었다.

595) 서계(書契)가 만들어지고 :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상고에는 노끈을 맺어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이 글과 문서로 바꾸어서 백관이 다스려지고 만민이 살펴지게 되었다.[上古, 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라는 말이 보인다.

596) 큰 통나무가 흩어지자 : '큰 통나무'는 원문 '大樸'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시 상태의 질박한 대도(大道)를 일컫는 말이다. '흩어진다.[散]'라는 말은 인간세가 점점 문명화됨에 따라 질박한 데서 복잡한 인위의 세계로 바뀌었음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97) 사자(四子 사서(四書))가……저술되고 : '사자'는 곧 '사자서(四子書)'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가리키니 《대학》은 증자(曾子)가, 《논어》는 공자(孔子)가, 《맹자》는 맹자(孟子)가, 《중용》은 자사자(子思子)가 직접 지었거나 그들의 언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품이므로 붙여진 말이다. 이는 주자(朱子)가 《사서》의 편정 작업을 한 뒤에 생긴 말인데, 이 발문에서 주자 이전 시대에 이들이 벌써 성립 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서물 자체는 모두 당시에 존재하였고, 또 여기서는 《육경(六經)》과의 맥락을 드러내야 하므로 일부러 이렇게 쓴 듯하다.

598) 낙건(洛建)의 여러 철인 : 송(宋)나라 낙양(洛陽) 출신인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와 복건성(福建省) 출신인 주희(朱熹)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정호, 정이와 주희를 들어 송나라의 성리학자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99) 치수(錙銖) : 둘 다 아주 작은 무게의 단위이니 극도로 미세한 것을 말한다.

아래로는 학자의 나아가야 할 문로(門路)를 바르게 하고 위로는 낙건의 여러 철인과 사자와 육경의 지취(旨趣)를 밝히시어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고 성쇠에 관여하시니 생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남기신 것이다.

태산(泰山 스승 기정진을 가리킴)은 우러러 볼 수 없고 은미한 말은 뜻을 잃기 쉬우므로 모두가 수집(蒐輯)하기를 도모하여 판각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심원(深遠)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아, 책을 펴면 숙연하여 선생님이 자리에 계신 듯하다. 당시에 듣지 못한 것이 지금 모두 여기에 있으니 남겨진 깊은 뜻을 더욱 연구하고 옛 공부를 힘써 마침으로써 선생님의 제자들 몸에서 대의(大義)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른바 부처의 은혜를 갚는다[600]는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요, 오늘의 역사(役事)가 거의 뜻을 잃고 말만 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묘년(1891, 고종28) 중하(仲夏)에 문인 정의림(鄭義林)은 삼가 쓰다.

聖賢有作, 不先天而開人, 亦因時而立教. 是以風氣開而書契造, 大樸散而六經作, 世教衰而四子著, 聖遠言堙, 洛建羣哲之書出. 生於洛建之後, 惟宜謹守其說, 而何義理晦塞, 議論横決, 未有甚於此時, 此《類編》之書所以出也. 先生之學, 包圍天地, 剖析錙銖, 直窮到源, 洞澈無疆, 凡天下是非, 千差萬別, 無不有以刷滌更張稱停的當. 下以正學者趨向之門, 上以明洛建羣哲四子六經之旨, 參天地關盛衰, 有生民不可無之言也. 泰嶽靡瞻, 微言易失, 僉謀蒐輯以至鋟梓, 誠斯文深遠慮也, 嗚呼! 開卷, 肅然先生在座. 當日所未聞者, 今皆在是, 益究餘蘊, 勉卒舊業, 使大義不泯於七十子之身, 則所謂報佛恩在此, 而今日之役, 庶不爲失意而傳言也. 辛卯仲夏門人鄭義林謹書.

부록 1 -정재규의 발문

이 책은 경진년(1880, 고종17)에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에야 겨우 완성하였으니 대개 문인 김석귀(金錫龜)와 정의림(鄭義林)이 맨 처음 의논하였고 손자 우만(宇萬)이 그 결정에 찬성하여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도(道)가 선생에게 있지만 선생님이 몰세한 뒤에는 도가 남은 책에 있으니 스승님이 갑자기 서거하신 지금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도(道)를 전하겠는가. 이에 외람되고 망녕됨을 헤아리지 않고서 편집을 거쳐 몇 권을 만들게 되었다. 의심점이 있어 감히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김석귀에게 편지를 보내어 바로잡았고, 때로 수습한 것이 완전하지 못하여 마무리 할 수 없었던 것은 이후 문집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의 상자에 흩어져 보관 중인 것이 거의 다 모여진 기회를 통하여 호상(湖上)에 직접 가 취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책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모두 15권이다. 수습하고 선사(繕寫)하며 정정(訂定)하고 분류하는 데에 시종 힘을 다 쏟느라 김현옥(金顯玉)이 홀로 고생했다. 아, 선생의 도는 크고도 심원하니 이 책이 어찌 깊은 뜻을 다하기에 충분하겠는가. 거대한 종에 비유하자면 큰 것으로 치면 크게 울리는 것과 같으니 다만 치는 것이 한결같이 작을 따름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치에 대소가 없으므로 능히 여기에 침잠하고 반복하여 터득함이 있으면 미진하였던 깊은 뜻을 또한 이를 통해 얻을 것이니 배우는 자는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해년(1887, 고종24) 중춘(仲春)에 문인 정재규(鄭載圭)는 삼가 쓰다.

此編始於庚辰, 而今始甫就. 蓋門人金錫龜, 鄭義林首其議之, 孫宇萬贊其決, 以屬載圭. 竊伏惟念先生在, 道在先生, 先生沒, 道在遺書. 樑摧遽矣, 微是何述? 乃不揆僭妄, 編輯爲若干卷, 而其有疑不敢專輒者, 寄書錫龜以相訂焉. 時以收拾之未完, 不能斷手, 後因文集之役, 散在諸子巾衍者, 庶幾畢集, 往取湖上, 始克成編總十五卷. 其收拾繕寫, 訂定門類, 始終致力, 金顯玉獨賢. 嗚呼! 先生之道, 大而遠矣, 是編何足以盡其蘊? 譬諸洪鍾, 大叩則大鳴, 顧叩之者, 槩乎其小者耳. 雖然理無大小, 苟能於此沉潛反覆而有得焉, 則其未盡之蘊, 亦將因此而得之, 學者宜盡心焉. 丁亥仲春, 門人鄭載圭謹識.

부록 2 -김현옥의 발문

내가 삼가 일찍이 찬집(纂輯)하는 뜻을 참여하여 들었으니, 이 책은 대개 후생과 초학이 지향해야 할 문로(門路)와 공부할 계제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논도체(論道體)〉 한 편은 경지가 오묘하여 초학자에게 갑자기 말해 줄 것이 아니지만 권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또한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근사록(近思錄)》을 편찬할 때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책의 첫머리에 둔 뜻이다.[601] 〈논학(論學)〉 이하는 하나의 병통에 하나의 약을 쓴 것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양(持養)하는 여러 조항은 특히 핵심이 된다.

무릇 '경(敬)'이라는 한 글자는 성학(聖學)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인데 진실한 이락(伊洛 정호 정이 형제)은 실로 이것을 드러내었고 위대한 고정(考亭 주희(朱熹))은 극도로 발휘(發揮)하시어 배우는 자가 거의 힘을 쓰는 방법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후세에 그 말이 지엽에 빠지고부터는 이 뜻이 또한 언어와 문자의 사이를 넘지 못하여 진실로 능히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드물게 되었으니 이것이 선생께서 여러 차례 뜻을 다하신 까닭이다. 그렇다면 오당(吾黨)의 선비가 어찌 함께 삼가 지켜서 잃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곳을 향해 나아가 구한다면 원집(原集)이 있을 것인데,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많음[602]이 그곳에 있지만 그 들어가는 곳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함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문인 김현옥(金顯玉)은 삼가 쓰다.

顯玉竊嘗與聞次輯之意, 是編也, 蓋爲後生初學趨向門路工夫階級而述也.

---

601)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뜻이다 : 주자(朱子)는 46세가 되던 해에 친구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40일간 기거하며 《근사록》을 편집하였는데, 여조겸의 〈근사록 서제(近思錄書題)〉에 첫 권(卷)에 음양과 성명의 명의(名義)를 넣어 그 대체를 알게 함으로써 지향하는 바가 있도록 하였다는 찬집 의도가 나타나 있다.

602) 종묘의……있지만 : 《논어》 〈자장(子張)〉에, "부자의 담장은 몇 길이나 된다. 따라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많음을 볼 수가 없다.[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스승의 덕행과 학문의 위대함을 비유하는 말로 쓴 것이다.

〈論道體〉一篇, 閫域奧妙, 有非驟語於初學, 而置之卷首, 亦寒泉編首《太極圖說》之意也. 〈論學〉以下, 一病一藥, 罔非切近, 而持養諸條, 尤是本根. 夫敬之一字, 聖學之所以成始成終也. 允矣伊洛實是表章, 大哉考亭極其發揮. 學者庶得其用力之方, 而自後世之言有枝葉, 斯義也, 亦不越乎言語文字之間, 而眞能用力者鮮矣, 此先生所以累致意也. 吾黨之士, 盍與謹守而勿失哉! 進此以求, 則有原集在, 宗廟之美, 百官之富在此, 而其入處則自此編始, 不可誣也. 門人金顯玉謹書.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1 『**답문류편**』 **3**
기정진(奇正鎭) 지음

인쇄 2021. 2. 14
발행 2021. 2. 19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기정진(奇正鎭)
역자 김우재 - 한국고전번역원 일성록 번역위원
유종수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09-1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